발간등록번호
73-6430044-000001-11

議政白書

第7代 後半期

忠清北道議會

發 刊 辭

지난 2002년 7월 개원한 제7대 충청북도의회는「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도민에게 부여받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특히, 150만 도민의 염원이며 충북발전의 새 장을 마련하는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오창과학단지조성 완료,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청남대 개방, 증평군 승격, 제85회 전국체전유치 등 굵직한 도민의 숙원사업해결에 몸과 마음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펼쳐온 의정활동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충북의회의 역사자료로 올바른 지방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로 마련되어 의정발전과 충북도민께 값지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장 준 호

• 第7代 忠淸北道議會 後半期 議長團 •

의 장 張 準 浩

부의장 吳 長 世

부의장 庾 東 燦

• 第7代 議會 後半期 常任委員長 •

의회운영위원장
金 洪 云

기획행정위원장
崔 在 玉

교육사회위원장
李 大 遠

산업경제위원장
金 煥 東

관광건설위원장
沈 興 燮

· 第7代 忠淸北道議會 議員 ·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吳 長 世 ('55. 5.12)	청주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중앙동,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율량 · 사천동, 오근장동]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제6대 도의회 의원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현)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 화양청소년수련원장(현)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제7대 도의회 부의장(후반기)
 李 大 遠 ('56. 2. 5)	청주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성안동, 탑 ·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 · 명암 · 산성동, 용암 · 용정 · 방서동]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육거리 종합시장 연합회장 ■ 청주시 재래시장 협의회장 ■ 전국 재래시장 연합회장 ■ 한나라당 청주상당지구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현) ■ 청주 경실련 집행위원(현)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후반기)
 朴 在 國 ('40. 11. 5)	청주시 제3선거구 (한나라당)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모충동, 산 · 미 · 분 · 장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 · 개신 · 죽림동]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건영정기화물 대표 ■ 청주지검 청소년지도 상임위원 ■ 청주경찰서 방범연합회 부위원장 ■ 산미분장동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산미분장동 주민자치위원회고문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청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한나라당 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전반기)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正 福 ('59. 12. 22)	청주시 제4선거구 (한나라당) [운천 · 신봉동, 복대1동, 복대2동, 가경동, 봉명1동, 봉명2 · 송정동, 강서1동, 강서2동]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NGO · UN IAEWP)스포츠대사(현) ■한 · 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현)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현) ■제7대 도의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도의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도의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 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1기)
 沈 興 燮 ('62. 4. 14)	충주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교현1동, 교현2동, 용산동, 연수동, 목행 · 용탄동, 종민 · 안림 · 목벌동]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회의원 비서관 ■제6대 도의회 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현) ■지방의회연구소 연구위원(현) ■충청북도체육회 이사(현) ■충청북도관광협의회 위원 ■지방자치학회 이사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기)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金 文 天 ('54. 9. 7)	제천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영천1동, 영천2동]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제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제천동중학교 운영위원장 ■제천시탁구협회 회장 ■제천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제천 · 단양지구당 부위원장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현)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현)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현)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현)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延 哲 雄 ('42. 7. 12)	제천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중앙동, 남천동, 동현동, 두학동, 화산1동, 화산2동]	■시장상회 대표 ■화산동 개발위원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민주산악회 제천시 부회장 ■전국농산물협회 회장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한나라당 제천 · 단양지구당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총원우회6기회장, 총원우회 고문(현)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3기)
 韓 昌 東 ('56. 2. 26)	청원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제1~3대 청원군의회 의원 ■청원군의회 2대 부의장, 3대 운영위원장 · 의장 ■한나라당청원군지구당 부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자유총연맹청원지부 지부장(현) ■청원군새마을지도자 이사(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전반기) ■한창농원대표(현)
 朴 鍾 甲 ('59. 3. 30)	청원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내수읍]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청원군 내수농협협동조합 감사 ■농업경영인 청원군연합회 회장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사 ■청원군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충청북도농정심의회 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현) ■양백여자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현)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현) ■청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金 洪 云 ('38. 7. 4)	보은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은군청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 보은군청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 보은군 보은읍장 ■ 종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현)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후원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후반기)
 庾 東 燦 ('39. 10. 25)	옥천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제7대 도의회 부의장(후반기)
 張 準 浩 ('41. 4. 1)	영동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 영동중학교 졸업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 제6대 도의원 ■ 제7대 도의회 부의장(전반기) ■ 지전장학회 회장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장 ■ 지전빌딩 대표 ■ 제16대 충청북도의회 의장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曺 永 在 ('53. 6. 19)	영동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원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현)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현)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현)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현)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전반기)
 崔 在 玉 ('54. 10. 4)	증평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증평읍, 도안면]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원군청 근무 ■ 증평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 증평출장소체육회 전무이사, 부회장(현)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 대한씨름협회 이사(현) ■ 증평문화원 감사(현) ■ 증평군 새마을지회장(현) ■ 증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장(현) ■ 동성산업(주)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후반기)
 張 柱 植 ('57. 11. 12)	진천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진천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군 재향군인회 이사(현) ■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회 위원(현) ■ 진천군 체육회 섭외이사(현) ■ 진천군 문화원 이사(현) ■ 청주상공회의소 위원(현)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현) ■ 2004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운영위원(현)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현)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宋 殷 燮 ('40. 9. 16)	진천군 제2선거구 (자유민주연합)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이월리 농협조합장 ■진천군 농협이사 ■진천군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진천군의회 초대, 3대의회 부의장 ■이월면 장학회이사장 ■생거진천 21 추진협의회장 ■이월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자유민주연합 음성 · 괴산 · 진천지구당 부위원장 ■제7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金 煥 東 ('50. 3. 10)	괴산군 제1선거구 (무소속) [괴산읍, 감물면, 장안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괴산고등학교 졸업 ■남산농약사(현) ■충청일보 괴산지사장 ■충청북도 홍농종묘 친목회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충청북도비료판매조합 친목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정보통신진흥재단 이사(현) ■충청북도정혁신위원회 위원(현)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후반기)
 李 基 東 ('59. 7. 28)	음성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성업공사 근무(11년) ■성업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전국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감사 ■음성군수 출마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4기)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李 泌 鎔 ('61. 11. 28)	음성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 한나라당 음성 · 괴산 · 진천지구당 사무처장 ■ 제16대 대선 한나라당 음성군선거연락소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현)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李 光 鍾 ('44. 2. 26)	단양군 제1선거구 (한나라당)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신양회(주)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지역개발회장 ■ 단양군토지평가위원 ■ 단양군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전반기)
 李 範 潤 ('39. 5. 12)	단양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매포읍번영회장 ■ 신민주공화당 제원 · 단양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 단양군협의회장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매포중학교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 매포운송대표(현)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姜 祐 信 ('46. 1. 30)	비 례 대 표 (한나라)	■수도여자사범대학교생활미술학과 2년 중퇴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 이사 ■청주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재무이사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한나라당 15대대선대책위원회 여성부본부장 ■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현) ■증평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현) ■한나라당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趙 季 淑 ('41. 1. 22)	비 례 대 표 (한나라)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4년 졸업 ■한국은행 근무 ■청주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총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 ■충북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위원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한나라당 여성중앙위원회 충북지회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현) ■삶의질 향상위원회 위원(현)
 鄭 潤 淑 ('56. 9. 23)	비 례 대 표 (자유민주연합)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충청북도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 · 2대 회장 ■KBS시청자 위원 ■신지식인(중소기업부문) 선정(현)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자문위원(현) ■충북지방 노동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현) ■청주 경실련 자문위원(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명예회장(현)

• 제7대 후반기 사퇴의원 •

성 명	선거구 및 정당	학 력 및 경 력
 權 寧 觀 ('47. 1. 9)	충주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주덕읍, 살미면, 상모면, 이류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성내 · 성남 · 성서동, 충인 · 충의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 · 직동, 단월 · 풍 · 가주동, 용관 · 용두 · 달천동, 봉방동, 칠금 · 금능동]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현)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4대 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5대 의장 ■ 2006. 3.31 사퇴
 鄭 相 赫 ('41. 12. 25)	보은군 제2선거구 (한나라당)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 충청북도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청 근무 ■ 천세산업(주)기획실장, 이사, 상무 ■ 천수산업(주) 부사장 ■ 보광산업(주) 대표이사 ■ 충북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재경보은군민회 수석부회장 ■ (사)환경동우회 이사(현) ■ 제7대 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현) ■ 2006. 4. 3 사퇴
 姜 求 星 ('46. 7. 7)	옥천군 제1선거구 (열린 우리당)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4년 ■ 옥천청년회의소(JC)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옥천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의장 ■ 민족통일옥천군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현) ■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현)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기) ■ 제7대 도의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 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2기) ■ 2006. 4.10 사퇴

본회의 및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회의

제7대의회 후반기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2004. 7.20)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회의(2004. 8.25)

의회운영위원회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의결(2005. 1.11)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결(2005. 4.19)

기획행정위원회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수정가결(2005. 4.20)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추진상황점검 충북대현지확인(2005. 7.15)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005. 6.14)

진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개원과 관련 운영실태 현지확인(2006.11.24)

산업경제위원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2005. 7.12)

경제관련재단임원과의 간담회에서 2006년 주요업무청취(2006. 6.23)

관광건설위원회

2004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2005. 7.12)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이전효율화방안 직무연찬회실시(2006. 2.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5회 정례회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종합심사(2005.12. 9)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2006. 2.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2004. 8.19)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235회 임시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특위재구성(2005. 1.1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의정워크숍 개최(2004.10.22)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2005. 1. 3)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도 시 · 군의회 결의(2004. 7.23)

제241회 임시회 지역주민 방청 장면(2005. 9)

제15차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주최(2006. 3. 7)

•일 러 두 기•

- 이 백서는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 개원이후 후반기(2004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동안의 회기별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음.

- 제1장은 의회개관편으로 의회연혁, 의회구성, 의회의 지위와 권한,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처 현황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 제2장은 의정활동편으로 제229회 임시회부터 제250회 임시회까지 22회에 걸친 회기별 집회공고, 회기, 본회의 활동, 위원회 활동상황을 요약 수록하였으며, 주요안건별 처리결과 부문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그 경과 및 결과를 다루었으나 일부 경미한 안건처리 결과는 생략하였음.

- 제3장은 행정사무감사편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 제4장은 청원 및 진정처리편으로 청원과 진정에 관한 처리 개요, 처리현황, 처리절차,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수록하였으며

- 제5장은 의정연구회 2004년도, 2005년도 활동을 정리 수록하였음.

- 끝으로 부록편에서는 역대도의원 명단, 회기별 개회사,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정통계 자료를 수록하였음.

目　　次

第 1 章　議 會 概 觀 ····· 11

第 1 節　一般現況 ····· 13

1. 議會沿革 ····· 13
2. 議會機構 ····· 14
3. 議會構成 ····· 15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 23

1. 議會의 地位 ····· 23
2. 議會의 權限 ····· 23

第 3 節　議會의 運營 ····· 33

1. 會　期 ····· 33
2. 本會議 ····· 33
3. 委員會 ····· 35
4. 議案의 處理 ····· 36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 44
6. 會議場 傍聽 ····· 47

第 4 節　議會事務處 ····· 49

1. 機構 및 定員 ····· 49
2. 部署別 機能 ····· 50
3. 議會資料室 運營 ····· 51
4. 議會施設 ····· 52

5. 議會事務處 幹部 名單 ····· 54
6. 主要業務 推進狀況 ····· 55

第 2 章 議政活動 ····· 79

第 1 節 第229回 臨時會 ····· 81
1. 集會公告 및 開會 ····· 81
2. 會 期 ····· 81
3. 本會議 活動 ····· 81
4. 委員會 活動 ····· 83

第 2 節 第230回 定例會 ····· 84
1. 集會公告 및 開會 ····· 84
2. 會 期 ····· 84
3. 本會議 活動 ····· 84
4. 委員會 活動 ····· 86

第 3 節 第231回 臨時會 ····· 103
1. 集會公告 및 開會 ····· 103
2. 會 期 ····· 103
3. 本會議 活動 ····· 103
4. 委員會 活動 ····· 105

第 4 節 第232回 臨時會 ····· 117
1. 集會公告 및 開會 ····· 117
2. 會 期 ····· 117
3. 本會議 活動 ····· 117
4. 委員會 活動 ····· 119

第 5 節　第233回 臨時會 ····· 124
1. 集會公告 및 開會 ····· 124
2. 會　期 ····· 124
3. 本會議 活動 ····· 124
4. 委員會 活動 ····· 159

第 6 節　第234回 定例會 ····· 164
1. 集會公告 및 開會 ····· 164
2. 會　期 ····· 164
3. 本會議 活動 ····· 164
4. 委員會 活動 ····· 167

第 7 節　第235回 臨時會 ····· 182
1. 集會公告 및 開會 ····· 182
2. 會　期 ····· 182
3. 本會議 活動 ····· 182
4. 委員會 活動 ····· 183

第 8 節　第236回 臨時會 ····· 188
1. 集會公告 및 開會 ····· 188
2. 會　期 ····· 188
3. 本會議 活動 ····· 188
4. 委員會 活動 ····· 190

第 9 節　第237回 臨時會 ····· 200
1. 集會公告 및 開會 ····· 200
2. 會　期 ····· 200
3. 本會議 活動 ····· 200

4. 委員會 活動 ····· 238

第 10 節　第238回 臨時會 ····· 243

1. 集會公告 및 開會 ····· 243
2. 會　期 ····· 243
3. 本會議 活動 ····· 243
4. 委員會 活動 ····· 245

第 11 節　第239回 臨時會 ····· 251

1. 集會公告 및 開會 ····· 251
2. 會　期 ····· 251
3. 本會議 活動 ····· 251
4. 委員會 活動 ····· 287

第 12 節　第240回 定例會 ····· 304

1. 集會公告 및 開會 ····· 304
2. 會　期 ····· 304
3. 本會議 活動 ····· 304
4. 委員會 活動 ····· 306

第 13 節　第241回 臨時會 ····· 321

1. 集會公告 및 開會 ····· 321
2. 會　期 ····· 321
3. 本會議 活動 ····· 321
4. 委員會 活動 ····· 322

第 14 節　第242回 臨時會 ····· 324

1. 集會公告 및 開會 ····· 324
2. 會　期 ····· 324

3. 本會議 活動 ····· 324
4. 委員會 活動 ····· 325

第 15 節　第243回 臨時會 ····· 327
1. 集會公告 및 開會 ····· 327
2. 會　期 ····· 327
3. 本會議 活動 ····· 327
4. 委員會 活動 ····· 329

第 16 節　第244回 臨時會 ····· 333
1. 集會公告 및 開會 ····· 333
2. 會　期 ····· 333
3. 本會議 活動 ····· 333
4. 委員會 活動 ····· 346

第 17 節　第245回 定例會 ····· 354
1. 集會公告 및 開會 ····· 354
2. 會　期 ····· 354
3. 本會議 活動 ····· 354
4. 委員會 活動 ····· 356

第 18 節　第246回 臨時會 ····· 368
1. 集會公告 및 開會 ····· 368
2. 會　期 ····· 368
3. 本會議 活動 ····· 368
4. 委員會 活動 ····· 370

第 19 節　第247回 臨時會 ····· 378
1. 集會公告 및 開會 ····· 378

2. 會　期 ····· 378
3. 本會議 活動 ····· 378
4. 委員會 活動 ····· 380

第 20 節　第248回 臨時會 ····· 386
1. 集會公告 및 開會 ····· 386
2. 會　期 ····· 386
3. 本會議 活動 ····· 386
4. 委員會 活動 ····· 420

第 21 節　第249回 臨時會 ····· 425
1. 集會公告 및 開會 ····· 425
2. 會　期 ····· 425
3. 本會議 活動 ····· 425
4. 委員會 活動 ····· 428

第 22 節　第250回 臨時會 ····· 440
1. 集會公告 및 開會 ····· 440
2. 會　期 ····· 440
3. 本會議 活動 ····· 440
4. 委員會 活動 ····· 442

第 3 章　行政事務監査 ····· 453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 455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 455
2. 監査過程 및 節次 ····· 456

第 2 節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 457
1. 監査의 目的 ····· 457
2. 監査期間 ····· 457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458
4. 監査班 編成 ····· 459
5. 監査日程 및 場所 ····· 460
6. 委員會別 指摘事項 ····· 462
7. 主要 指摘內容 ····· 462

第 3 節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 481
1. 監査의 目的 ····· 481
2. 監査期間 ····· 481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482
4. 監査班 編成 ····· 483
5. 監査日程 및 場所 ····· 484
6. 委員會別 指摘事項 ····· 486
7. 主要 指摘內容 ····· 486

第 4 章　請願 및 陳情處理 ····· 507

第 1 節　請 願 ····· 509
1. 處理概要 ····· 509
2. 請援 不受理 ····· 509
3. 處理現況 ····· 509
4. 處理節次 ····· 510

第 2 節　陳 情 ····· 511

1. 處理概要 ····· 511
2. 處理現況 ····· 511
3. 處理節次 ····· 512
4. 處理內容 ····· 513

第 5 章 議政研究會 活動 ····· 521

第 1 節 2004年度 活動 ····· 523

1. 概 要 ····· 523
2. 研究成果 ····· 523
3. 活動報告書 製作 ····· 523

第 1 節 2005年度 活動 ····· 524

1. 概 要 ····· 524
2. 研究成果 ····· 524
3. 活動報告書 製作 ····· 524

附 錄

Ⅰ. 歷代 道議員 名單 ····· 527

1. 初 代 道議員 ····· 527
2. 第2代 道議員 ····· 528
3. 第3代 道議員 ····· 529
4. 第4代 道議員 ····· 530
5. 第5代 道議員 ····· 531

6. 第6代 道議員 ····· 533
7. 第7代 道議員 ····· 535

Ⅱ. 議會日誌 ····· 537
1. 2004年度 ····· 537
2. 2005年度 ····· 540
3. 2006年度 ····· 547

Ⅲ. 演說文集 ····· 551

Ⅳ. 議政統計 및 資料 ····· 601
1. 會期運營 ····· 601
2. 議案處理 現況 ····· 602
3. 道政質問 ····· 603
4. 行政事務監査 指摘現況 ····· 604
5. 議員硏鑽 活動 ····· 605

Ⅴ. 議事堂 施設配置圖 ····· 606

第 1 章　議會概觀

第 1 節　一般現況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第 3 節　議會의 運營
第 4 節　議會事務處

第 1 節 一 般 現 況

1. 議會沿革

1952. 5. 10.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8명 당선)
1952.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2. 5. 29.	충청북도의회 제1대 의장선임(최동선)
1956.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56.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0명 당선)
1956. 9. 1.	제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6. 9. 1.	충청북도의회 제2대 의장선임(노의중)
1957. 8. 26.	충청북도의회 제3대 의장선임(노의중)
1958. 3. 6.	충청북도의회 제4대 의장선임(최동선)
1959. 1. 15.	충청북도의회 제5대 의장선임(이기호)
1960.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60. 12. 12.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6명 당선)
1960. 12. 20.	제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60. 12. 21.	충청북도의회 제6대 의장선임(서병주)
1961. 5. 16.	제3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1. 6. 20.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8명 당선)
1991. 7. 8.	제4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1. 7. 8.	충청북도의회 제7대 의장선임(한현구)
1993. 7. 1.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장선임(조성훈)
1995. 6. 27.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40명 당선)
1995. 6. 30.	제4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5. 7. 12.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5. 7. 12.	충청북도의회 제9대 의장 선임(차주원)
1997. 1. 12.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의장 선임(김동진)
1998. 6. 4.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7명 당선)

1998. 6. 30.	제5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8. 7. 9.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8. 7. 9.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의장 선임(김준석)
2000. 7. 9.	충청북도의회 제12대 의장 선임(김진호)
2002. 6. 13.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7명 당선)
2002. 6. 30.	제6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2002. 7. 9.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2002. 7. 9.	충청북도의회 제13대 의장 선임(유주열)
2003. 10. 9.	충청북도의회 제14대 의장 선임(권영관)
2004. 7. 9.	충청북도의회 제15대 의장 선임(권영관)
2006. 4. 11.	충청북도의회 제16대 의장 선임(장준호)
2006. 5. 31.	제8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31명 당선)

2. 議會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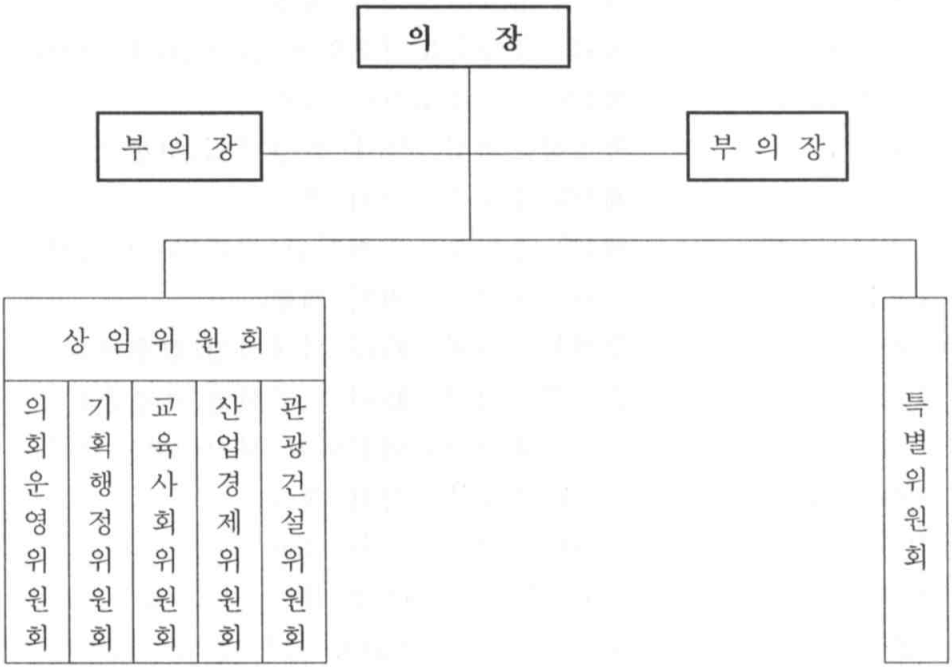

※ 상임위원회 : 5, 특별위원회 : 3

3. 議會構成

1) 의 원

제7대 충청북도의회는 2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 24인과 비례대표 3인, 총 2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도정을 심의 결정하는 등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 제7대 도의회 의원임기 : 2002. 7. 1. ~2006. 6. 30.

2) 의 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위 원 회

가) 상임위원회

의회는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 소관 집행기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별 소관부서

위 원 회 별	의원정수	소 관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8	○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7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교육사회위원회	6	○ 교육청 ○ 여성정책관실 ○ 복지환경국 ○ 충북과학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6	○ 경제통상국 ○ 농정국 ○ 농업기술원
관광건설위원회	7	○ 문화관광국 ○ 건설교통국 ○ 소방본부

나) 특별위원회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7대 후반기 의회 구성현황 >

○ 의 장 : 권영관(충주 제1) - 2006. 4. 10. 의원직 사퇴
장준호(영동 제1) - 2006. 4. 11. 의장보궐선거 당선
○ 부의장 : 오장세(청주 제1), 유동찬(옥천 제2)

위원회별 (정원)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8)	김홍운 (기획행정)	정윤숙 (산업경제)	이필용(기획행정), 이범윤(교육사회) 조계숙(교육사회), 박종갑(산업경제) 이광종(관광건설), 강우신(관광건설)
기획행정위원회 (7)	최재옥 (증평 제1)	이필용 (음성 제2)	오장세(청주 제1), 김정복(청주 제4) 김홍운(보은 제1), 유동찬(옥천 제2) ※정상혁(보은 제2) : 2006.4.10 사퇴
교육사회위원회 (6)	이대원 (청주 제2)	조계숙 (비례대표)	김문천(제천 제1), 이기동(음성 제1) 이범윤(비례대표) ※ 장준호(영동 제1) : 2006.4.10의장 당선
산업경제위원회 (6)	김환동 (괴산 제1)	박종갑 (청원 제2)	박재국(청주 제3), 장주식(진천 제1) 정윤숙(비례대표) ※강구성(옥천 제1) : 2006. 4. 3 사퇴
관광건설위원회 (7)	심홍섭 (충주 제2)	강우신 (비례대표)	연철웅(제천 제2), 한창동(청원 제1) 조영재(영동 제2), 송은섭(진천 제2) 이광종(단양 제1)

"※" 표시 의원은 전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이었음

< 의원신분 변동사항 >

- 강구성 의원(옥천 제1) 의원직 사퇴(2006. 4. 3)
- 권영관 의장(충주 제1) 의원직 사퇴(2006. 4.10)
- 정상혁 의원(보은 제2) 의원직 사퇴(2006. 4.10)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4. 7.12 (2005. 7.10)	위원장 : 연철웅 간 사 : 강구성 위 원 : 강우신, 김정복 박종갑, 장주식 장준호, 정상혁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2004. 7월, 제230회 정례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 9월, 제231회 임시회>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4. 12월, 제234회 정례회>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산안 심사 3.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5. 6월, 제239회 임시회> 1. 200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5. 7.11 (2006. 6.30)	위원장 : 이기동 간 사 : 정윤숙 위 원 : 강구성, 김문천 김정복, 송은섭 이광종, 이필용 정상혁, 조영재 한창동	<2005. 7월, 제240회 정례회>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4.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 5.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 12월, 제245회 정례회> 1.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 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산안 심사 3. 2005년도제2회 충청북도추가경 정예산안 심사 4.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 4월, 제249회 임시회> 1. 2006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 6월, 제250회 임시회> 1. 200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당초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2. 9. 9 (2006. 1.20)	위원장 : 김정복 간 사 : 강우신 위 원 : 강구성, 박재국 박종갑, 송은섭 이기동, 정윤숙 조계숙, 최재옥	<2004. 7월, 제230회 정례회>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 건의문채택의건	
		<2005. 1월,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1.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관련 우리의 입장성명서 채택의 건	
		<2005. 6월, 제239회 정례회> 1.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추진상황보고의 건 2.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건의문안 채택의 건	
		<2006. 1월, 제246회 임시회>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추진상황 보고	

오송분기역유치를 위한 도민의 역량결집, 타시도의회와의 연대, 다수 국민 공감대 형성,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의회차원의 총력지원 활동, 기타 오송분기역 유치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3. 5.29 (2006. 2.11)	위원장 : 김정복 간 사 : 강우신 위 원 : 박재국, 박종갑 송은섭, 최재옥 이기동, 강구성 조계숙, 정윤숙	※ 2003. 5. 29. 제213회 임시회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 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 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분리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3. 5.29 ( )		<2005. 10월, 제244회 임시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헌법 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2005. 11월, 제245회 정례회>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헌법 재판소 판결관련성명서 채택의 건	
		<2005. 11월, 제245회 정례회>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 재판소판결관련성명서 채택의 건	
		<2006. 2월, 제247회 임시회> 1.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지선정과 도시건설 등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4. 2.20 (2005. 1.14)	위원장 : 김정복 간 사 : 조계숙 위 원 : 이필용,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박종갑, 정윤숙 심홍섭, 강구성 강우신	<2004. 7월, 제230회 정례회> 1.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 유치추진상황보고 2.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 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채택의건 <2005. 1월, 제235회 임시회> 1. 위원회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2004. 7월, 제230회 정례회> 1.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 유치추진상황보고 2.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 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채택의건	
2005. 1.14 (2006. 3.22)	위원장 : 강구성 간 사 : 이필용 위 원 : 김문천, 김환동 김홍섭, 이범윤 장주식, 정상혁 정윤숙, 조영재 한창동,	<2005. 1월, 제235회 임시회> 1. 위원회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2005. 7월, 제240회 정례회>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보고의 건	
		<2005. 12월, 제245회 정례회> 1. 혁신도시 입지선정관련 추진 상황 보고의 건	
		<2006. 2월, 제247회 임시회> 1.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우리도의 방향정립과 논리를 개발하여 반영시키고자 구성

第 2 節 議會의 地位와 權限

1. 議會의 地位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도 가진다.

2. 議會의 權限

1)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써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다.

조례안은 도의원과 위원회, 도지사·교육감이 제안할 수 있으며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한다.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며, 의결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조례안이 의결될 때에는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조례안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조례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공포한다.

< 의회 권한의 범위 >

○ 의회 권한의 전권기능의 원칙(Prinzip der Allzustandigkeit des Rates)에 의거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관할권 가짐

○ 지방의회의 관할 범위는 곧 의결사항의 범위의 문제

○ 필요적 의결사항,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및 임의적 의결사항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됨

① 필요적 의결사항 (법정의결사항)

○ 지방의회가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법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5조 ①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앞서의 법정의결사항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5조 ②항)

○ 조례에 의한 의결사항도 반드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하나, 의결의무가 법률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지는 점에 필요적 의결사항과 차이

③ 임의적 의결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방자치 법상의 규정 없음

○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주민 대표기관 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전권기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임의적 의결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음.

※ 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음

2) 재정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주민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주요한 권능의 하나이다. 예산안은 도 및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된다.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하여 승인한다.

재정에 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예산의 심의 확정권
○ 결산 승인권
○ 예비비 지출 승인건
○ 지방세의 부과 징수조례제정권
○ 지방채 발행 동의권
○ 예산외의 재정 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
○ 주요재산 등의 취득·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조례 제정권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권 등

3) 도정통제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나 현안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을 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와 직접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의 보조기관 중 부지사,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그 보조기관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음은 물론 본회의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교육감, 부지사 또는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도정통제에 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집행기관 견제권
- 동의권
- 보고 및 서류제출 청구권
- 의견 표명권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특정사안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의회자율운영에 관한 권한

도의회는 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집회·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선출 등의 내부 조직권, 의사와 내부법률에 관한 규칙제정권,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에 관한 권한, 내부경호등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 의회 자율권한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청원수리에 관한 권한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다.

○ 청원수리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별표 1] 법령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35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법 제35조	시 · 도 시 · 군 · 구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	〃	
③ 결산의 승인	〃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⑤ 기금의 설치 운용	〃	〃	
⑥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	
⑦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⑩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⑫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	
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의 조사	법제36조제1항	〃	
⑭ 지방의회의 개회 · 휴회 · 폐회의 의결	법제41조제1항	〃	
⑮ 지방의회의 회기 의결	법제41조제2항	〃	
⑯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의결	법제49조제1항	〃	
⑰ 폐회중 위원회의 개회	법제53조	〃	
⑱ 지방의회 회의의 비공개 결정	법제57조	〃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⑲ 비밀을 요하는 지방의회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	법제64조제4항	시 · 도 시 · 군 · 구	
⑳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의결	법제72조제1항	〃	
㉑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법제78조	〃	
㉒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의결	법제19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59조제2항	〃	
㉓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법제115조제1항	〃	
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 · 세출 예산 외의 채무부담원인행위	법제115조제2항	〃	
㉕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 행위	법제115조제3항	〃	
㉖ 지방자체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의 면제 또는 효력의 변경	법제115조제5항	〃	
㉗ 회계년도 예산안 의결	법제118조제2항	〃	
㉘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비의 의결	법제119조	〃	
㉙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의결	법제121조	〃	
㉚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일부를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시 그 규약의 제정	법제141조제2항	〃	
㉛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 제정	법제142조제2항	〃	
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법제148조	〃	
㉝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과 규약 제정	법제149조제1항	〃	
㉞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변경과 조합해산	법제154조제1항	〃	
㉟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령제17조의3 제1항	〃	

□ 타 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12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조상충용	지방재정법 제3조제3항	시 · 도 시·군·구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요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시 차입금	〃 제11조제1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공사, 공단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제15조제2항	〃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 제38조제1항	〃	
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명시이월	〃 제40조제1항		
⑥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77조제1항	〃	
⑦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 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한함)	지방재정법 제109조제1항	〃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⑧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시 · 도	
⑨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 제9조제2항	〃	
⑩ 교육·학예에 관한 결산	〃 제9조제2항	〃	
⑪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제9조제2항	〃	
⑫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세법 제9조의2	시 · 도 시·군·구	

[별표 2] 지방의회 자율권(24건)

제 목	근 거	실시기관	비 고
① 의회규칙 제정권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시 · 도 시 · 군 · 구	
② 임시회 소집권	〃 제39조제2항		
③ 개회, 휴회, 폐회의 의결	〃 제41조제1항	〃	
④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	〃 제41조제2항	〃	
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	〃 제42조	〃	
⑥ 지방의회 임시의장의 선출	〃 제46조	〃	
⑦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	〃 제49조	〃	
⑧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	〃 제50조제1항	〃	
⑨ 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50조제3항	〃	
⑩ 위원회의 개회	〃 제53조	〃	
⑪ 회의의 비공개 의결	〃 제57조	〃	
⑫ 의안의 발의권	〃 제58조	〃	
⑬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제61조제1항	〃	
⑭ 회의규칙의 제정권	〃 제63조	〃	
⑮ 비밀을 요하는 회의록의 비공개	〃 제64조제4항	〃	
⑯ 청원의 심사 · 처리	〃 제67조제1항 제68조	〃	
⑰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 설명 요구	〃 제67조제2항	〃	
⑱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	〃 제69조	〃	
⑲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및 의결	〃 제71조	〃	
⑳ 지방의회의원 자격상실 의결	〃 제72조제1항	〃	
㉑ 방청인의 단속에 관한 회의규칙 제정	〃 제77조제4항	〃	
㉒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권	〃 제78조	〃	
㉓ 타 의원을 모욕한 의원의 징계 요구	〃 제79조제2항	〃	
㉔ 징계에 대한 회의규칙의 제정	〃 제81조	〃	

第 3 節 議會의 運營

1. 會 期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本 會 議

도의회의 최종의사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지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행하며, 일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 도의회의 운영 》

회 의 종 류

■ **본회의** : 의회의사의 최종결정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 **정례회** : 매년 2회
1차 : 7월 10일
2차 : 11월 20일

· **임시회** : 필요시(도지사 및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 **위원회**

	기 능	소 집
상 임 위원회	소관 의안 · 청원 등 심사처리	위원장 ·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시
특 별 위원회	특정사안의 일시적 처리	위원장 ·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시

회 의 진 행

소 집

↓

개 회

↓

보 고

↓ · 안건회부현황등

의사일정 상정

↓

제 안 설 명
(심사보고)

↓

질의, 답변, 토론

↓

표 결 , 의 결

↓

산 회

3. 委 員 會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장을 제외한 의원이 각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1) 의안의 심사

본회의에 보고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인다.

2) 발 언

의안에 대한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3) 표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議案의 處理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모든 사안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도지사, 교육감,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단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 질　　의

④ 토　　론

⑤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1) 조례제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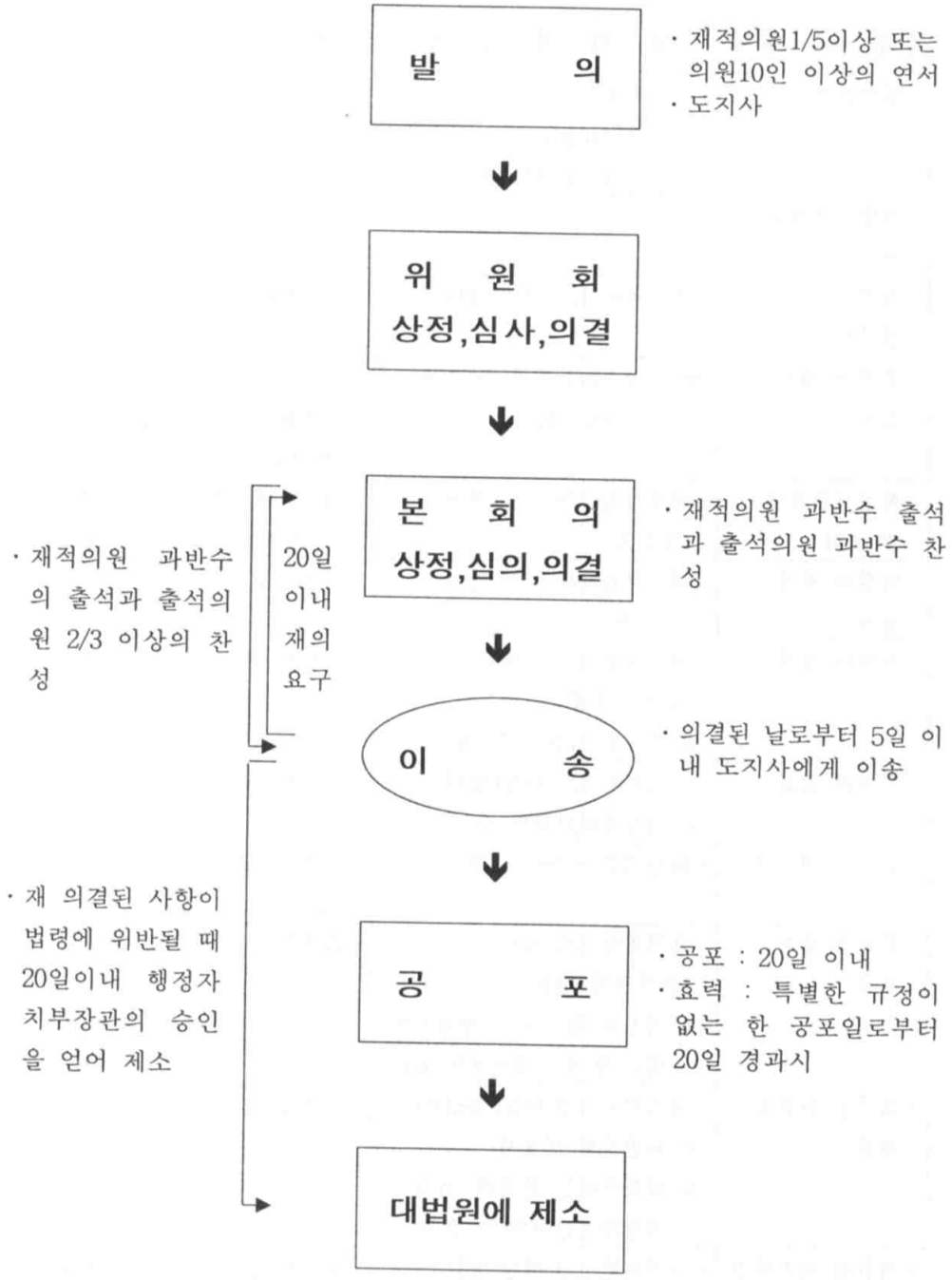
발 의
·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 도지사
위 원 회
상정,심사,의결
본 회 의
상정,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20일 이내 재의 요구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도지사에게 이송
·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20일이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소
공 포
· 공포 : 20일 이내
·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시
대법원에 제소

2) 의안의 발의 및 의결요건

안건 또는 동의	발 의 정 족 수	의 결 정 족 수
·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법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56조)
· 의장 · 부의장 선거		〃 (회의규칙 8조)
· 의장 · 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법49조)	· 재적의원 과반수(법49조)
· 조례안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법 19조, 9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법19조, 98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법3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법56조)
· 의원의 자격 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법71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법72조)
·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 이상 (회의규칙 89조) ※ 모욕을 당한 의원 요구	·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법80조)
· 임시회 집회	· 재적의원 1/3 이상(법3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집회
· 회의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법57조)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법57조)
· 휴회중 회의 재개	· 재적의원 1/3 이상 (회의규칙 16조) ※ 의장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회의규칙 16조)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회기중 위원회 개회	· 재적위원 1/3 이상(법53조) ※ 위원장의 필요시 ※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구	· 요구가 있으면 개회
·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 이상(법61조) ※ 의장의 요구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3) 의안(조례안) 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의장, 의원, 위원회) 제출(제의 ·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이 의회에 환부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 처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또는 통지하여 공포절차를 거치므로 그 조례 등 의안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중 하나가 안건심사로서 안건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숙원사업, 의원의 공약사업, 집행기관의 시책사업들을 안건화 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안건심사의 성격 · 기능 ·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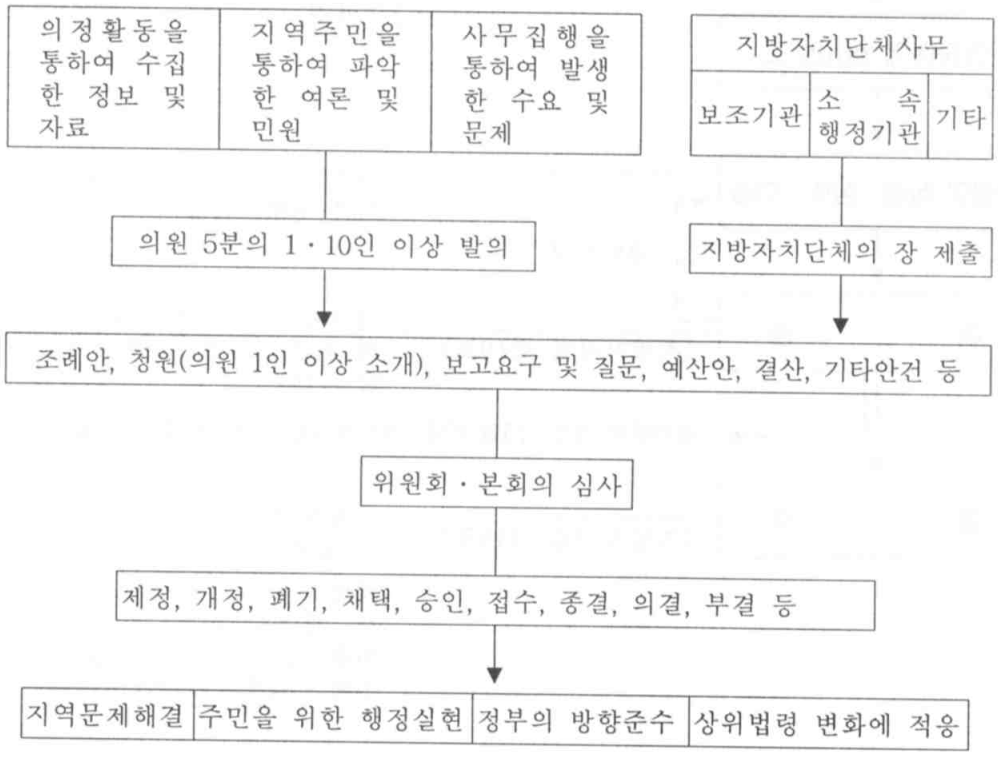

《 의안(조례안) 심의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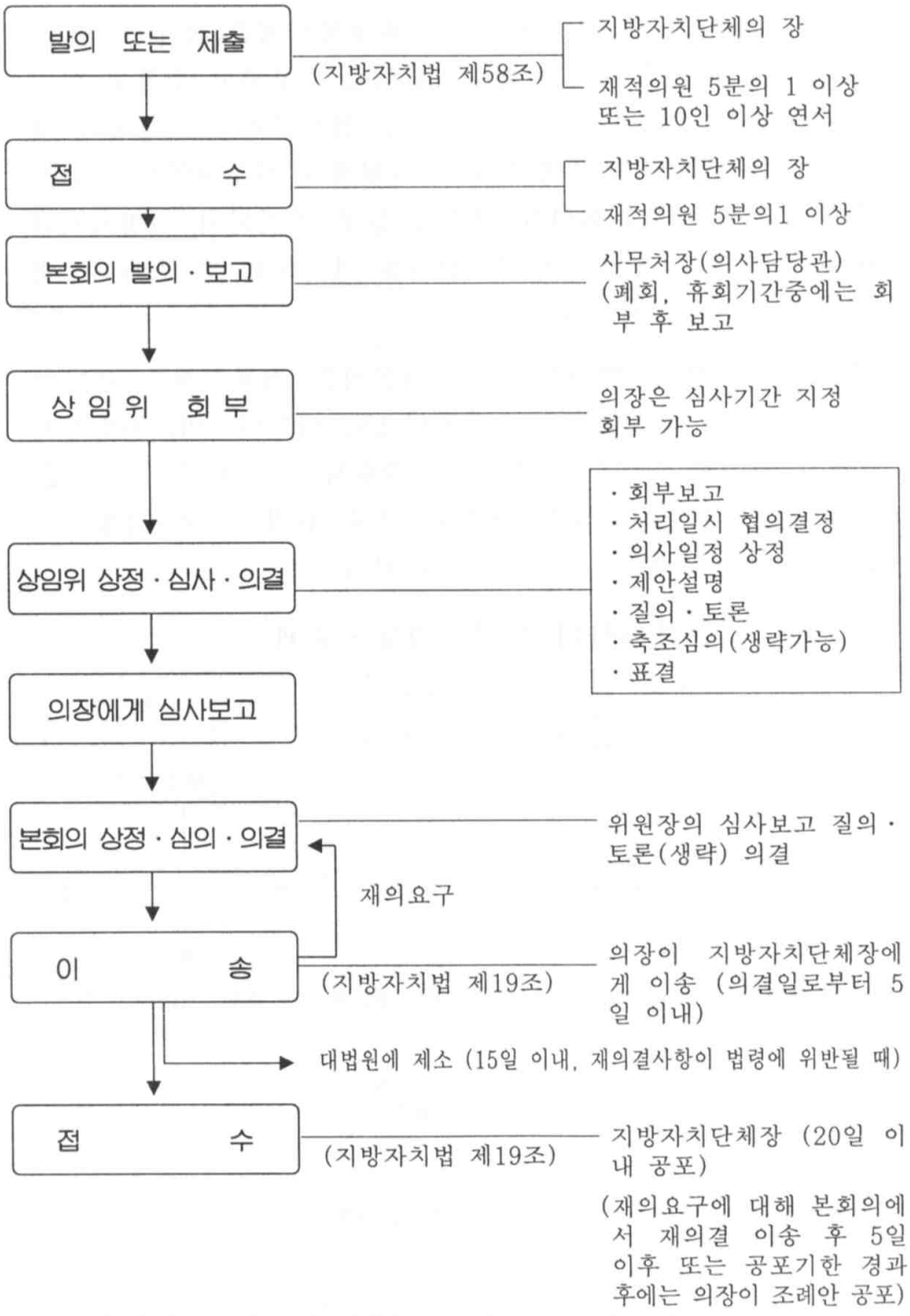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접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본회의 발의 · 보고
사무처장(의사담당관)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 후 보고
상 임 위 회 부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상임위 상정 · 심사 · 의결
· 회부보고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질의 · 토론
· 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 토론(생략) 의결
재의요구
이 송
(지방자치법 제19조)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15일 이내,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접 수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장 (20일 이내 공포)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 후 5일 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 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4) 예산안과 결산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가) 제출시기

○ 예산안 :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법118조) → 11월11일까지제출

○ 결산안 :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나) 심사방법

○ 예산안 : ①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고유영역
② 집행기관의 심사참여와 긴밀한 협력에 의한 심사
③ 제안설명 또는 시정연설-행정사무감사-전년도결산-위원회심사-본회의 의결(12월16일까지 의결)

○ 결산안 : 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 영역
② 예비비지출사항과 병행심사가능
③ 출납정리(2월말까지) - 출납사무완결(3월말까지)-세입세출결산서작성(5월20일까지)-결산검사위원선임 및 회계검사-지적사항·시정 및 조치-결산서의회제출(예산안과동시)-결산심사- 의결

다) 기능 및 성격

구분	예 산 안	결 산 안
기능	① 지방의회의 사업분석 또는 시책평가능력 ② 사업수준의확정, 예산총액의 결정, 행정에대한통제기능	① 정치기능적, 사후적기능 ② 집행의 책임의 확인,해제기능 ③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
성격	① 재정 민주주의 실현 ② 재정규모결정	①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예산안심사와 연계활용

《 예산안 처리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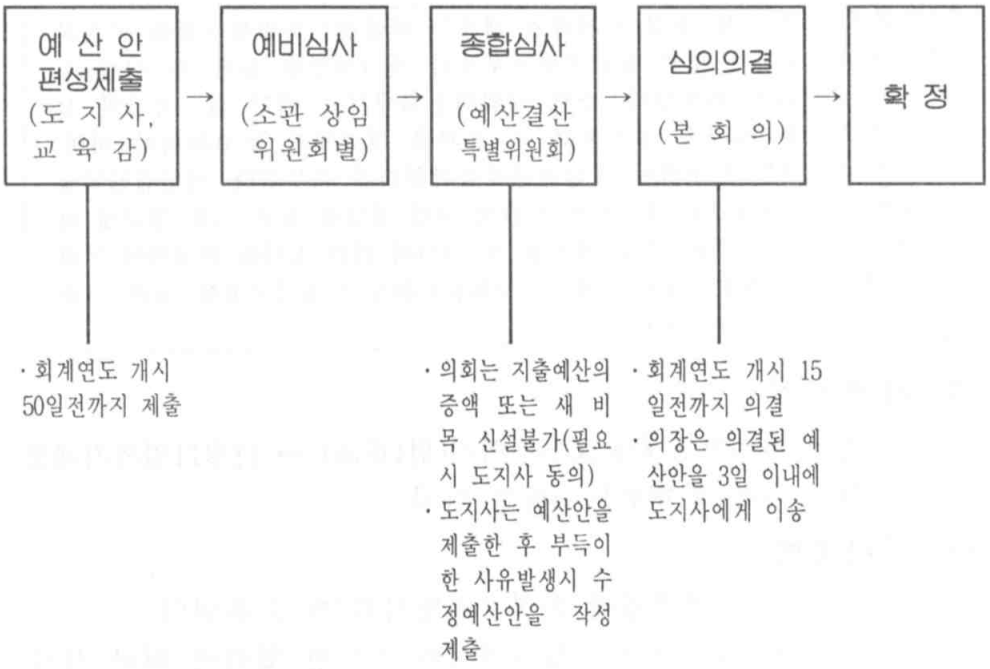

《 결산승인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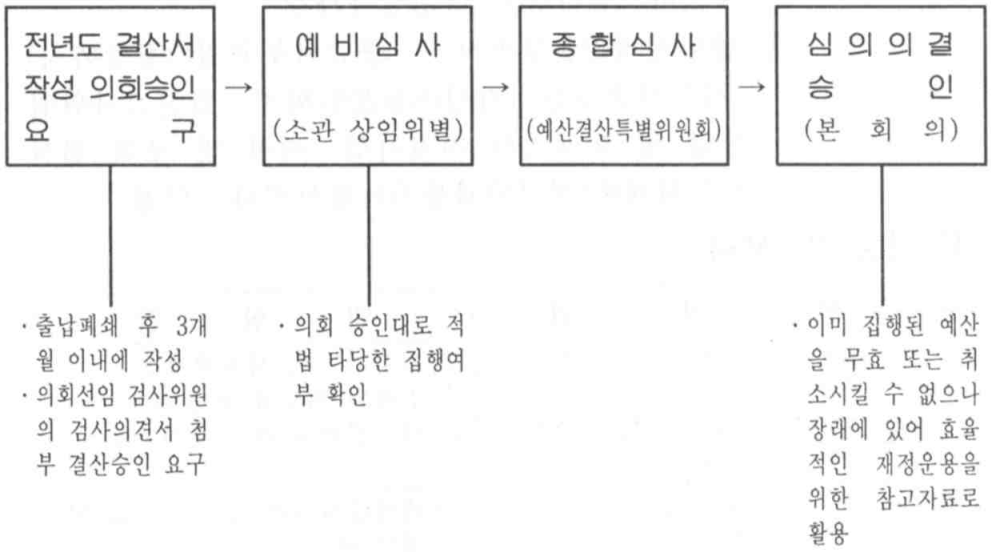

《 예산안(추경) 및 결산(예비비) 》

① 제 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본회의 보고		
↓		
③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상임위 회부(공문)	←	의장 심사시간 지정가능
↓		
⑤ 상임위 상정 · 심사 · 의결	←	소관 실 · 국장이 내용설명
↓		
⑥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⑦ 예결특위 회부		
↓		
⑧ 예결특위 상정 · 심사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동의 여부 청취
↓		
⑨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⑩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 필요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가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 없이, 결산은 5일 이내)

재의요구

※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 시는「0000년도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으로 상정함 (예산안 자체를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아님)

5. 會議錄 作成 및 發刊

1) 회의록 작성

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증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대의회 들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전산시스템』을 구축, 기 발행된 4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분량의 회의록을 관계형데이타베이스 형태로 전산처리 하여 Internet에 게재,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시·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회의 역사를 보존,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회의록은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 하여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작성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본 회 의 >

①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③ 의사일정

④ 개회식에 관한 사항

⑤ 출석의원의 성명 수

⑥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⑦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⑧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제반 보고사항

⑨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⑩ 부의안건과 그 내용

⑪ 의사

⑫ 표결수

⑬ 기명·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서명

⑭ 서면질문과 답변서

⑮ 의원의 발언 보충서

⑯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원 회 >

①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② 의사일정

③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④ 출석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⑤ 출석한 공무원·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⑥ 심사안건명

⑦ 의사

⑧ 표결수

⑨ 위원장의 보고

⑩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내용

⑪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 발간

회의록은 발간하여 의원 전원에게 배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대의회 회의록은 인터넷 전자회의록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어 회의록 발간부수를 대폭 축소 총 26회(1회 50부) 발간하여 도의원, 충청북도, 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의회관련 최소필요기관만 배부하고 있으며, 의회 속기체제를 수필속기에서 컴퓨터 속기체제로 전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간 또는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컴퓨터(CAS)속기체제 도입 : 2002. 3월부터 시행

3) 인터넷회의록 작성작업 개요

가) Text문서

화 일 분 류
· 본회의 · 상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특별위원회

⇒

다 단 수 정 작 업
· 2단 문서를 1단 문서화

⇒

태 그 (TAG) 작 업
· 본문정리작업
(표,머릿말,꼬릿말제거)
· 태그부여
- 구역구분자 - 설명선
- 안건명 - 시간 · 상황표기
- 참조(링크태그)
- 부 록 - 발언자
- 매쪽
· 도정질문 · 답변 태그작성

⇒

Internet 파일명 부여(Text)
· 제195회본회의2차 본문
→195za0002b.txt
· 제195회기획행정위1차 본문
→195kh0001b.txt
· 제195회교육사회위1차 부록
→195ks0001a.in

나). Image문서

책자 회의록 파 본 ⇒ 원문 스캐닝 ⇒ 이 미 지 보 정 ⇒ Image 파일명 부여

⇩

Text 문서 + Image 문서 영구보존CD 기록 및 Internet 등재

6. 會議場 傍聽

의회 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방청권을 교부한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137석으로 한정되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1)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자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자
○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 모자, 외투,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통화 또는 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케 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 끽연 및 껌을 씹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거나 방송 및 음악청취 행위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소란행위 등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연도별 방청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학 생	일 반	비 고
계	6,461	1,867	4,594	
1991	149	1	148	
1992	114	-	114	
1993	797	80	717	
1994	288	80	208	
1995	464	120	344	
1996	578	120	458	
1997	261	-	261	
1998	488	176	312	
1999	1,505	571	934	
2000	1,217	482	735	
2001	493	194	299	
2002	415	327	88	
2003	873	384	489	
2004	837	176	661	
2005	884	116	768	
2006. 6.30	127	63	64	

第 4 節 議會事務處

1. 機構 및 定員

1)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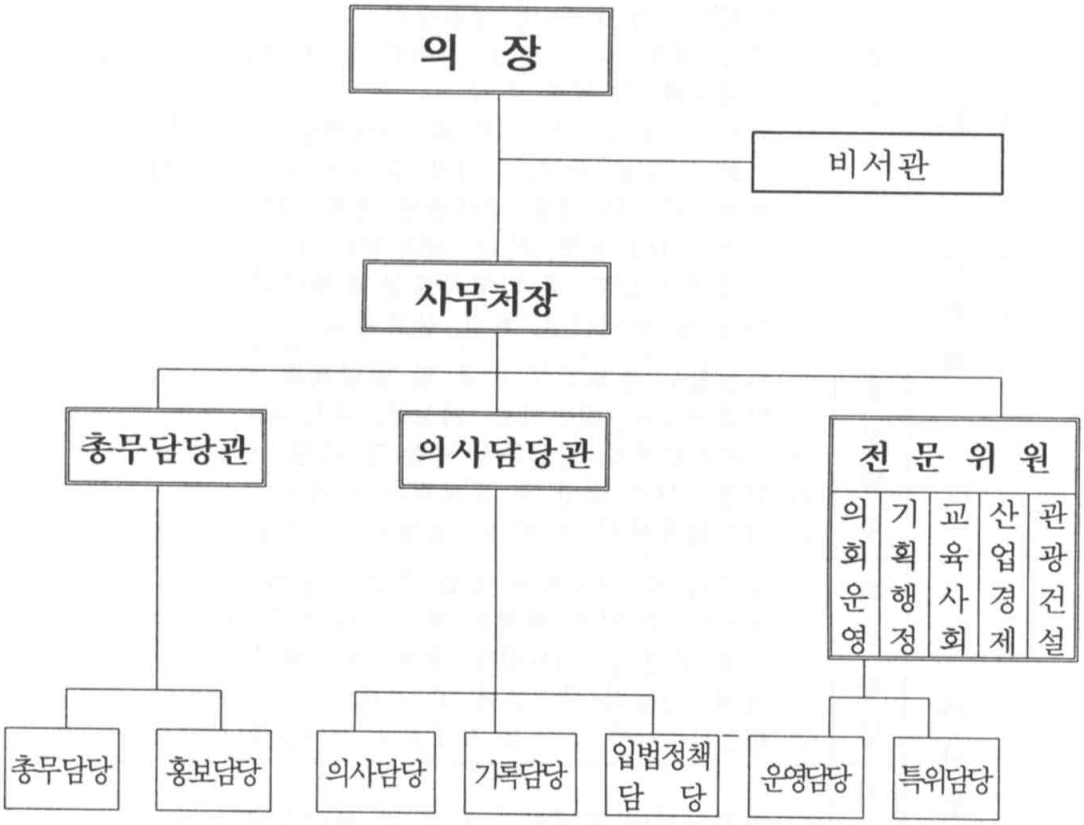

2) 정 원

구분	계	일 반 직						일반·별정		별 정			기 능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5급	소계	7급	9급	소계	속기	사진방송	운전	사무
정원	65	40	1	7	7	13	12	1	1	1	1		23	8	3	3	9
현원	65	40	1	7	7	13	12	1	1 (일반)	2	1	1	22	8	3	3	8

2. 部署別 機能

구 분		분 장 사 무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 의회사무처업무 종합기획 조정 ○ 각종행사 의전 관리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 인사, 복무, 교육, 포상, 기록물, 관인 관리 및 보안업무 ○ 국제교류 및 협력 추진 ○ 의원신분관리(등록·사직·퇴직·신분변동통지 및 신분증발급 등) ○ 의회의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집행 · 결산 ○ 의정모니터 운영, 의원 ·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 ○ 의정백서 발간 및 의회자료실 운영관리 ○ 청사 및 부대시설, 차량, 물품관리
	홍보담당	○ 의정활동 홍보업무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 의장연설문, 대담자료, 기고문, 보도자료 작성 ○ 의정홍보책자, 연설문집 발간 및 의정관련언론보도분석 ○ 의정소식지 발간 및 홍보비디오 제작 ○ 의정활동사진 및 방송 · 음향시설, 영상촬영 관리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	○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 각종 의안의 관리(접수, 분류, 회 · 배부, 이송등) ○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도정질문, 서면질문 관련 업무처리
	기록담당	○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및 웹서버 운용 · 관리 ○ 각종 회의록 발간 · 열람 · 기록정리 및 보존 ○ 속기록 정리 및 장비 유지관리
	입법정책담당	○ 조례 · 규칙 · 규정 등 법제심사 ○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관련 재송업무 처리 ○ 의회정책개발, 의회 연구용역, 의회장기 · 현안과제 조사 · 분석
전문위원실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 소관부서 도정질문, 서면질의 및 의원 요구자료 처리

3. 議會資料室 運營

1) 현 황

○ 면 적 : 25.5평(동관 1층)

○ 집 기

· 서 가 : 26조 · 열람테이블 : 1조 · 도서수납대 : 1조
· 잡지서가 : 4조 · 전자복사기 : 1대 · 컴 퓨 터 : 2대
· 제 습 기 : 1대 · 제본천공기 : 1대 · 레이저프린터 : 1대
· 진공청소기 : 1대

○ 전담인력 : 사서 7급 1명

○ 장 서 수 : 총 20,615권 (2006. 6. 30현재)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정기간행물	기 타
579	458	114	12,753	65	2,037	322	221	1,998	1,088	450	530

○ 도서관리프로그램 KOLASⅡ 교체 및 데이터오류 수정완료

○ 장서의 질적구조 개선사업 : 일반도서 · 정기간행물 등 폐기

2) 정보검색서비스 및 역대 의정자료 수집

○ 국회도서관 정보검색 원문서비스 실시 협정체결

· 협 정 체 결 일 : 2004. 12.10

· 석 · 박사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정부간행물 등 약 130만권의 원문활용

○ 역대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 역대의원 개인정보의 정리 : 제4~7대 의원 개인정보전산화

· 의정활동자료 수집 : 기사스크랩, 의회소식지 등 활동자료

4. 議會施設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건　　평 : 970평(신관 944.5평, 동관 25.5평)

○ 시설배치

층 별	시 설 명	면적(평)	비 고
총 계		970.0	
2 층	계	124.2	
	관광건설위 전문위원실	10.4	
	의원사무실	21.8	
	회 의 실	36	
	의 회 회 의 실	56	
3 층	계	141.4	
	교육사회위 전문위원실	10.4	
	의원사무실	21.8	
	회 의 실	36	
	산업경제위 전문위원실	10.4	
	의원사무실	32.8	
	회 의 실	30	
4 층	계	124.2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10.4	
	의원사무실	21.8	
	회 의 실	36	
	특별위원회 사 무 실	13	
	회 의 실	27	
	사 진 실	8	
	창 고	8	

층 별	시 설 명	면적(평)	비 고
5 층	계	127.6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	10.4	
	의원사무실	21.8	
	회 의 실	36	
	특별위원회 사 무 실	10.4	
	회 의 실	49	
6 층	계	353.6	
	본 회 의 장	104	
	의 원 휴 게 실	33.6	
	의 정 전 시 관	13	
	도 청 대 기 실	13.2	
	교 육 청 대 기 실	9.2	
	의 장 실	42.2	
	부 속 실	14.5	
	부 의 장 실 (2)	29	
	사 무 처 장 실	14.5	
	총무담당관 사무실	11.2	
	의사담당관 사무실	11.2	
	총 무 담 당 관 실	29	
	의 사 담 당 관 실	29	
7 층	계	165.4	
	기 자 실	16.8	
	창 고	24.7	
	문 서 고	32	
동관 1층	의 회 자 료 실	25.5	

5. 議會事務處 幹部 名單

직 위	직 급	성 명	기 간
사 무 처 장	지방부이사관 지 방 이 사 관 지 방 이 사 관	김 종 록 김 응 기 한 철 환	2004. 1.26 ~ 2005. 1.13 2005. 1.14 ~ 2006. 1.18 2006. 1.19 ~ 현 재
총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신 익 수 김 승 진 이 장 근 함 기 원	2004. 5.12 ~ 2005. 1.16 2005. 1.17 ~ 2005.12.18 2005.12.26 ~ 2006. 3.12 2006. 3.13 ~ 현 재
의 사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박 응 희 이 장 근 한 종 천	2004. 1.27 ~ 2005. 1.16 2005. 1.17 ~ 2006. 1.19 2006. 1.20 ~ 현 재
의회운영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김 승 진 구 홍 회 조 재 학	2004. 1.27 ~ 2005. 1.16 2005. 1.17 ~ 2005. 7.24 2005. 7.25 ~ 현 재
기획행정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이 상 만 연 기 봉	2003. 9.17 ~ 2005. 7.25 2005. 7.25 ~ 현 재
교육사회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임 석 규 지 용 옥 이 중 갑 김 재 준	2001.12.29 ~ 2004. 8.12 2004. 8.13 ~ 2005. 1.16 2005. 1.17 ~ 2005. 9. 2 2005. 9.15 ~ 현 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업 한 종 천 신 순 섭	2004. 1.27 ~ 2005. 7.24 2005. 7.25 ~ 2006. 1.19 2006. 1.20 ~ 현 재
관광건설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박 일 수 윤 기 복 유 인 종	2004. 5.12 ~ 2005. 7.24 2005. 7.25 ~ 2006. 1.19 2006. 1.20 ~ 현 재
총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유 재 길 최 영 배	2003. 5. 2 ~ 2004. 8.12 2004. 8.13 ~ 현 재
홍 보 담 당	〃	정 호 진 한 종 천 신 강 섭	2004. 2. 7 ~ 2004. 8.12 2004. 8.13 ~ 2005. 7.24 2005. 7.29 ~ 현 재
비 서 실 장	〃	최 영 배 정 호 진	2004. 2. 7 ~ 2004. 8.12 2004. 8.13 ~ 현 재
의 사 담 당	〃	박 상 용 박 기 익 오 범 진	2001. 2. 8 ~ 2005. 1.17 2005. 1.18 ~ 2006. 1.30 2006. 1.31 ~ 현 재
기 록 담 당	〃	신 우 인	2004. 2. 7 ~ 현 재
입법정책담당	〃	오 범 진 이 재 덕	2005. 7.29 ~ 2006. 1.30 2006. 1.31 ~ 현 재
의회운영담당	〃	송 병 태 김 창 현	2003. 7.12 ~ 2004. 8.12 2004. 8.13 ~ 현 재
특 위 담 당	〃	박 노 영	2005. 7.29 ~ 현 재

6. 主要業務 推進狀況

〔2004年度〕

◆ 의정활동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자치의정 실현
○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 지역현안 적극 대응으로 충북발전기반 구축

역 점 시 책

1.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 실현
2.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
3.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4.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위상 제고
5. 열린의정 홍보 기능 강화
6. 앞서가는 전자의정 운영
7.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체계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

◆ 主要業務推進

1. 도민에게 다가서는「열린의회」실현

1)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매 회기별 현장방문 활동 정례화

- 현장확인 : 46회(기획4, 교육12, 산업9, 관광13, 특위8)

○ 청원·진정 등 각종 민원 접수·처리 : 15건

- 각종 민원의 현지확인후 처리(상임위원회별)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정에 적극반영

2)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강화

- 각종의회관련자료의 신속한 보완게시 : 396회

○ 의회 견학 및 방청 적극 권장

-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의회방청 : 13회 277명
- 초·중·고 학생 견학실시 : 2회 44명
- 도내 대학생 초청 방청 : 1회 50명

3)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불우청소년 및 가정, 불우시설 등 격려 : 년중

- 의원개인,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의 위문 격려 : 2개 시설

4) 시군 순회 의정간담회 운영

○ 우리도의회 소개와 함께 의정활동 홍보 병행

○ 시군별 지역별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의정에 적극반영

〈 상반기중 운영실적 〉

○ 기　간 : 2004. 2~6월중(기간 중 시군별1일)
○ 대　상 : 7개 시군
○ 참　석 : 의장, 지역구의원, 지역별 기관단체장(15명 내외)
○ 내　용 : 의회소개, 지역현안사항 수렴 등
☞ **미 개최 시·군은 하반기 중에 운영**

5) 지역현안 과제의 적극대응

○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워크샵 운영 : 9월중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주제 선정중(위원회별)

○ 특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추진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 등 5개 위원회

○ 지역현안발생 시 대 정부 정책건의 활동 강화(위원회별)

- 중앙부처·관계기관 방문 2회, 대 정부건의문발송 3회

6) 의정모니터제 운영의 활성화

○ 의견제출과제부여 : 4개과제 54명

- 지정과제의견접수·처리 및 보상지원예정(1인당 50천원)

○ 의원·의정모니터 합동 연찬회 개최 : 하반기 중

○ 참여동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 연말

☞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 창구로서 지속 활용

2.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운영

1) 균형있는 연간 회기운영

○ 임시회의 탄력적 운영 : 7회 51일/년간 10회 80일

- 월 1회 이상 회의소집 원칙운영(하계휴가기간인 8월 제외)

☞ 매회기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탄력적으로 운영

○ 정례회 운영의 내실화 : 총 2회 40일

- 1차 정례회(7. 12/ 8일) :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 2차 정례회(11. 20/32일) :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등

2)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감시기능 수행

○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 1회/년2회(1월, 7월)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 2회 9명(3월, 6월)

○ 조례안 등 각종 당면안건의 처리(수시) : 47건

○ 5분 자유발언 제의 활성화(수시) : 9명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월중 예정

3.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1) 의원연찬 · 연수활동의 강화

○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 2회(3월, 6월)
- 의정분야 실무전문가 초빙, 사례중심 연찬

○ 의정 자문위원의 활용 : 7회(위원회별 1~2회)
- 단위주제 선정, 깊이 있는 의정 연찬회로 운영

○ 내실 있는 해외연수 실시 : 4개 위원회 24명
- 단기간 실용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목적 설정 추진

☞ 충실한 사전 준비와 심의로 연수효과 극대화

2) 각종 기회교육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 의원별로 참석 가능한 교육정보 수집 안내
- 각종 심포지엄, 공청회 참여 : 1회 20명
- 지역현안관련 각종 토론회, 세미나 참여 : 4회 4명
-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제공 : 100부(2004. 1월)

○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직원 연수 추진
- 국회, 의정연수원 등 의정관련 교육 : 7명
- 타 시도 운영실태 비교견학 실시 : 1회 6명
- 의원해외 연수 시 직원참여 : 9명
- 의원연찬 시 직원연수 참여 : 2회 50명

3) 심도 있는 의안심의 기능 보좌

○ 매 회기 상정 예상안건 파악 및 의안 조기제출 유도

○ 회부된 의안의 사전검토 확행 : 각 상임위원회별
- 의안의 신속한 배부로 충분한 검토기회 제공
-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필요 시 집행기관에 요구)

○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
- 의안의 형식, 절차, 적법성 등 사전 검토
- 의안 관련 사안별 사례 등 자료 · 정보 제공

4)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

○ 의원임기 중 1의원 1입법 목표 추진
- 연도별·상임위별 입법목표 설정운영

○ 의원입법 자료 수집 적극 제공 : 상임위원회별
- 의회 홈페이지 의견, 언론보도사항 등

○ 의원 연구활동 지원
- 의정활동 연구모임 구성 운영 : 하반기 중

< 연구모임구성 개요 >

○ 근　　거 :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에 관한 규칙
○ 시　　기 : 하반기 중
○ 참　　여 : 도의원 (희망하는 의원)
○ 인　　원 : 5인 이상
○ 방　　법 : 연구단체 등록
○ 내　　용 : 도정 및 의정발전과제 선정 추진
○ 지원사항 : 필요예산 별도지원(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 **의원입법 발의창구로 적극 활용**

4.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위상 제고

1) 협의·조정기능의 활성화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매 회기 또는 현안발생 시
- 의정관심사항, 현안사항 등 협의 토의

○ 운영위원회 간담회 : 매 회기 개회 전
- 회기일정, 의원공통관심사항 등 사전 협의

○ 의·도정관련 협의 활성화 : 위원회별
- 도정현안 등을 중심으로 수시 간담 정보공유

2) 의원 · 직원간 대화의 장 운영

○ 의원 한마음 수련회 : 3.20~3.22(금강산)

○ 의원 · 직원간 체육대회 : 5. 1(속리산 등반)

○ 의원 · 공무원간 대화 확대

- 상임위별 집행부 공무원, 의원 · 사무처 직원

3) 경쟁력 있는 사무처 조직운영

○ 집행부와의 인사협의제 운영 강화

- 인사교류 시 우수인력 확보 및 희망 부서 전보
- 인사운영창구의 단일화 : 총무담당관 → 사무처장 → 의장

○ 동호인 클럽 구성 및 활동 시 예산 지원 : 정원가산금

○ 직원 사기 진작시책 추진(하반기중)

- 모범공무원특별휴가, 부부동반 산업시찰, 직원M · T실시 등

○ 사무처 인력보강 : 증원 2명(행정7급)

5. 열린의정 홍보 기능 강화

1) 언론 홍보 매체 적극 활용

○ 보도자료 적기 제공 : 161회 302건(1일평균 2건)

- 주요 의정활동 내용·사진·VTR 테이프, 의원동정 등

○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 활동 실시간 중계방송

- 지역 케이블 TV 생중계 : HCN, CCS(6월 임시회 도정질문)

○ 의정 광고 적극 활용 : 23회

○ 언론기관과의 대담 방송 참여 : 4회(CJB,충청일보,충북뉴스, 불교방송)

2)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 흥미있게 보고 읽는 의회소식지 발간 배부 : 매월 7,000부

○ 도정소식지 적극 활용 : 매월 1회 1면

○ 제7대 의회 안내책자 제작 활용 : 1,000부

3) 인터넷 및 영상물 이용 홍보

○ 인터넷「의회소식 ⇒ 새소식」란 적극 활용 : 96건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과 동시에 게시

○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활용 : 100개(테이프 70, CD 30)

○ 전광판을 이용한 의정홍보 : 도청서문외 1개소

4) 의정활동 사진홍보

○ 사진 홍보판 적극 활용 : 3개소
- 현장활동 내용, 시의성 있는 의정모습 홍보

○ 상임위원회별로 교체 게시 : 분기별

6. 앞서가는 전자의정 운영

1) 전자 의정의 활성화

○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운영
- "도민발언대"의 민원성 글 신속 처리 : 46건(답변 5, 참고41)

○ 게시판 기능을 이용한 의정활동 공개 : 396건 게시
- 의회 개최 안내, 위원회 활동, 공지사항 등 게시

○ 의회 『의안정보시스템』 운영
- 다양한 의안검색, 의안통계 자동생성 기능 구축

○ 의원 정보화 능력 배양
- 지속적 정보화 교육 실시(상임위 활동중)

○ 의원 홈페이지 지원 : 5명
- 희망하는 의원 홈페이지 개설지원(수시)

2) 신속한 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 회의록 및 의안관리 시스템 보완
- 주전산기(서버)교체 완료 : 2004. 1월(67백만원)

○ 주전산기(서버)등 관련장비 관리 강화
- 회의록 및 의안관리 시스템 운영상태 등
- 전문업체 위탁 관리 운영 : 12백만원(월1백만원)

7. 의정자료 관리의 체계화

1) 회의록 발간 및 보존관리

○ 책자 회의록 발간 : 매회 50부(소요예산 39백만원)

- 신속·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제작방법 지속적 개선

※ 회의록발간 : 2회 100부(제222회～제227회까지)

○ 속기담당 공무원 기능향상 지속 추진

- 반복적인 자체 속기기능 숙달훈련 : 비회기 중 집중활용

○ 회의록 보존 관리 : 영구 보존(책자, CD), 1년 보존(녹음테이프)

2)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번문 즉시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란에 등재

○ 다양한 회의록 검색의 기능 제공

- 회의별, 회기별, 연도별 등 다양하게 검색

3) 『열린 자료실』 운영

○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용하도록 개방

- 자료의 열람, 복사, 이메일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제공

○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시스템" 완비

- 신착자료 및 소장자료의 인터넷 검색 가능

4)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제공

○ 의정백서 발간 : 하반기 중(제7대의회 전반기 활동내용 수록)

○ 지방자치 관련 전문도서 :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등

○ 기타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시 제공

〔2005年度〕

◆ 議政活動 基本方向

기 본 방 향

○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선진 의정 실현
○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정책기능 활성화

역 점 시 책

1. 열린 의회 및 투명한 의정 실천
2.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4.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
5. 의정활동 홍보 강화
6.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
7.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
8.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

1. 열린 의회 · 투명한 의정 실천

1)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정운영

○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장 등 주민생활현장 방문활동
- 현장확인 : 50회(기획4, 교사10, 산업9, 관광16, 특위11)

○ 청원 · 진정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 : 18건
- 위원회별 현지확인 이행,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도정시책 및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대안마련 촉구 : 99건

⇒ 주민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정에 적극반영

2) 시군 의회와 공조체제 구축

○ 기초의회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협조체제 강화
- 행정수도, 오송분기역,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현안 공동대응

○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 참여 공조활동 : 5월

3) 도민이 참여하는 의정활동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신속공개 : 627회

○ 의회 견학 및 방청 권장 홍보
-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생 등 의회방청 및 견학: 49회 988명

○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 정책제안 수렴 및 인센티브 제공(9건), 합동연찬회 개최(1회 80명)

2.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1) 효율적인 연간 회기운영(총 11회 118일)

○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준하여 임시회의 탄력적 운영
- 임시회 운영 : 9회 75일(상반기 5회/49일, 하반기 4회/26일)
- 5월은 전국 장애인체전, 소년체전으로 미 운영
- 가급적 도정 주요행사, 하계휴가기간 등은 피하여 운영

○ 정례회 운영의 내실화 : 2회 43일
- 1차 정례회(7. 11/10일간) :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 2차 정례회(11.21/33일간) : 행정사무감사, 2006예산안 등

※ 정례회 회기(2회/40일) 규정 폐지로 3일 증가

2)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

○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 2회/연3회(2월, 7월, 11월)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 3회/연3회(3월, 6월, 10월)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 69건(조례안31, 기타38)

○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각종 현안의 적기대응 촉구 : 31회

○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서면 질문 : 68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0일간(11.22~12.1)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1) 효율적인 의원연찬 운영

□ 전체의원 연찬회 : 2회(상·하반기)

○ 상반기 연찬회 개최(1월)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5명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선거법관련 강의 등

○ 하반기 연찬회 개최(9월)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명

- 전문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및 교양분야 강의

□ 위원회별 연찬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별 자문위원과의 연찬회 운영 : 22회

○ 소관업무의 전문성·활동성이 높은 자문위원 위촉(8월)

2) 대외교류 및 연수활동

○ 해외 자매결연지역 교류 방문

- 1.4~1.7 흑룡강성 방문, 전체의원·직원·기자 등 참여

○ 위원회별 해외연수 실시 : 4개 위원회 25명

- 검소하고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목표설정 운영

○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활동 강화

- 심의위원회 개최 : 2회(2월, 5월), 심의위원회 재구성(6명)

⇒ 생산적이고 검소한 대외교류 및 연수활동 정착

3)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적기 정보제공

□ 도정정책 참여확대

○ 각종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 : 22회 45명

○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 : 49개 위원회 23명

□ **의정 정보와 자료의 적기 제공**

○ 실효성 있고 다양한 의정관련 자료의 수집 제공

- 특수조례, 입법정보 및 사례, 선거법 관련자료 등

○ 의정활동에 유용한 정기간행물 구입 제공 : 3종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의정』등

○ 연합프리미엄 뉴스 및 지방자치인터넷 TV방송 서비스 제공

4) 의정 보좌능력 향상

○ 국회의정연수원 등의 의정관련 교육실시 : 4회 5명

○ 지방의회 운영 및 타 시도 우수사례 정보수집 : 1회 7명

○ 전체의원 연찬회, 토론회·공청회 등 직원 참여 : 11회

○ 의안의 신속배부, 사전간담회 등 충분한 검토기회 제공

- 의안의 신속한 배부로 충분한 검토기회 제공

-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 : 필요시 집행기관에 요구

○ 의안의 형식·절차·적법성 등 사전검토, 관련자료 및 정보제공

○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연찬 실시 : 3회

- 전체의원 연찬회 참여(2회), 사무처 여직원 직무연찬(1회)

4.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

1) 화합과 참여로 신뢰성 제고

○ 의회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 : 1회 85명

- 의원부부, 사무처직원, 언론관계자 등 참여

○ 수련회, 단합행사 등 상임위별 모임기회 확대 : 7회

2) 의원과 직원의 신뢰감 조성

○ 의원·직원간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 1회

○ 의원 해외연수 및 교류방문시 직원 참여 : 6회 20명

○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공무원과의 대화실시 : 수시

3) 협의 및 참여분위기 정착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 : 매 회기 또는 수시

- 의정 주요사항, 도정현안에 대한 협의 및 방향정립

○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운영 : 매 회기 개회 전
- 회기일정, 의원 관심사항 등 사전협의
○ 현안해결과 정보공유를 위한 의·도정관련 협의 : 위원회별

4) 활력 있는 사무처조직 운영

○ 우수인력 확보 및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협의제 운영 강화
○ 사무처 직제 신설 및 인력증원 : 1담당 4명
○ 모범공무원 표창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 : 1회 6명

5. 의정활동 홍보 강화

1)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 : 310회 554건
- 주요 의정활동내용, 사진, VTR, 테이프, 의원동정 등
○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 활동 실시간 입체뉴스 제공
- 지역케이블 TV 및 라디오 방송 : 6회(HCN, CCS, CBS)
○ 주요현안·쟁점사항 기자브리핑 및 기고 : 26회
○ 인터뷰, 토론회 등 언론 대담방송 적극 참여 : 18회
○ 양질의 홍보를 위한 장비 구입 : 디지털카메라 2대

2) 간행물을 통한 홍보

○ 도민의 참여와 흥미 있는 의회소식지 발간배부 : 매월 7,000부
- 지질 개선, 2면칼라→전면칼라, 주민관심사항 위주 게재
○ 도정소식지에 의정활동 내용 게재 : 매월(10회)
○ 제7대 의회 안내책자 제작 활용 : 1,500부
○ 2004 의정활동 화보책자 제작 활용 : 3,000부 발간
- 의회 방문객, 각급 학교, 기관·단체, 각종 행사참석자 배부
⇒ 홍보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촉진

3)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 도의회 홈페이지 「새소식」란 활동상황 게재 : 109건
- 주요 현안사항 처리내용, 의정활동 내용 등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과 동시에 게시

○ 의원 개인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주요 의정활동 내용, 비회기 중 지역구 활동 상황 등
○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 활용 : 130개
- 의원, 집행부, 교육청 배부, 각급 학교와 단체에 배부
- 의회 방청·방문객 등에게 상영
○ 도정 영상물「뉴스비전 충북시대」활용
- 공보관실 협조, 매월 주요 의정활동 내용 제공
- 케이블TV·터미널·은행·지역 유선방송 등 방영
○ 전광판을 이용한 생동감 넘치는 의정홍보 : 4개소 4회
- 주요 의정활동, 도민협조사항 등에 대한 자막·영상 홍보
- 도청 서문 및 조흥은행 옥상, 건설종합본부 등 전광판 활용

4) 의정활동 사진 홍보

○ 사진 홍보판 적극 활용 : 3개소(구 민원실, 민원실, 7층)
○ 상임위원회별로 교체 게시 : 분기별

⇒ 영상물을 통한 의정활동의 생생한 모습 도민에게 전달

6.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

1)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자치입법활동 지원 : 9건(제정 3, 개정 6)
○ 불합리한 규정 정비 : 5건(개정 4, 폐지 1)
○ 입법활동 지원 전담기구 신설 : 입법정책담당(4명)
○ 의정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 지원
○ 의정연구활동모임『충북의정연구회』구성운영

○ 구　　성 : 2005. 3. 15, 정상혁 의원 등 7명 ○ 활동기간 : 2005. 3~2005. 11월 ○ 연구과제 : 2개 과제(도계지역실태조사, 쓰레기처리실태 등) ○ 연구활동비 지원 : 3,000,000원

2) 지역현안의 효과적 대응

○ 지역현안과제의 효과적 대응 및 특별위원회 활동강화
- 행정수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공공기관 유치 등

○ 신행정수도(행정도시)건설지원 활동 : 14회
- 간담회, 토론회, 대책회의, 상경집회 등 충청권 공조활동

○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활동 : 22회
- 타 시도 방문, 성명·건의문 발송, 중앙기관방문, 대책회의 등

○ 공공기관유치 등 국가균형발전추진 활동 : 9회

7.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

1) 디지털 e-의정 추진

○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구축 : 6월 (15백만원)
- e-book CD회의록 제작 배부 : 2회 200개
- 회의록, 의정백서, 소식지 등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실시
- 인터넷 방문자에게 책처럼 보는 편리한 e-의정정보 제공

○ 인터넷방송 추진 : 2006년도 본예산 확보추진(165백만원)
- 타시도 운영실태, 효율성 등 기반구축 조사실시

2) 도민의 다양한 알 권리 충족

○ 도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운영
- 『도민발언대』 도민의견 및 민원사항 접수처리 : 182건

○ 게시판 기능을 이용한 의정활동 공개 : 627회
- 의회 개최 안내, 위원회 활동, 공지사항 등 게시

○ 의원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지속실시

3)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 주전산기(서버)등 관련장비 유지보수 : 월 2회
- 회의록, 의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 전문업체 위탁관리 운영(유지보수비 12백만원/월1백만원)

8.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1) 회의록 발간 및 보존관리

○ 책자 회의록 발간 : 매회 50부

○ 신속·정확한 회의록 발간을 위한 책임속기 및 교체 교정

○ 속기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 강화

- 컴퓨터 속기 및 전산교육, 세미나 등에 수시 참여

○ 회의록 보존 관리 : 영구 보존(책자, CD), 1년 보존(녹음테이프)

2)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번문 즉시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란에 등재

○ 다양한 회의록 검색기능 강화

- 회의별, 회기별, 연도별, 의안별 등 다양한 검색 및 열람

○ e-book CD회의록 제작 및 웹서비스 제공(2005. 6월)

3) 의회자료실 이용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자료검색 편의 제공

-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체 및 서버구입 : 20,000천원

- 정보검색 원문서비스 : 107회 470권(22,015쪽)

○ 국회도서관과 자료 공유로 폭넓은 정보제공 이행

[2006년도]

◆ 의정활동 기본방향

비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미션

○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의정 실현
○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 활력 있고 신뢰받는 제8대 의회 출범

전략목표

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
2.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천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4.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
5.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
6. 의정활동 홍보 강화
7. 의정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
8. 제8대 의회 개원 지원

전략목표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

이행과제 1-1 효율적인 회기운영

□ 예측 가능한 연간 회기운영계획수립 운영
  ○ 5월 지방선거, 8월 하계휴가기간은 회기운영 지양
  ○ 연간 회기운영계획 사전 공지로 적기 대응기회 제공
□ 임시회의 탄력적 운영 : 8회 70일
  ○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정례회 운영의 내실화 : 1회 12일
  ○ 1차 정례회 (9월/12일간) :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 2차 정례회(11월/33일간) 예정 : 행정사무감사, 2007예산안 등

이행과제 1-2 도정진단과 대안제시 기능강화

□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 2회(1월, 7월)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 2회(3월, 10월)
□ 2005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추경예산 처리 : 3회
□ 행정사무감사 · 2007년 및 추경 예산안 처리 : 11~12월 예정
□ 5분자유발언 : 12회, 서면질문 : 57건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 88건

전략목표2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천

이행과제 2-1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 상임위원회 주민생활현장 방문활동 지원 : 24회
  ○ 주요사업 추진실태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도정반영
□ 각종 민원사항 및 주민 애로사항 해결 : 19건
  ○ 청원 · 진정, 도민발언대 등 민원사항 신속 처리
  ○ 위원회별 현지확인 이행,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이행과제 2-2 도민의 참여확대 및 의정활동 공개

□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의 신속 공개
  ○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물 활용, 도민의 소리 수렴 반영
□ 의회 견학 및 방청 적극 권장 : 346명
  ○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생 등 의회방청 안내 및 권장
□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 모니터요원 연찬회 개최 : 1회, 의회 소식지 송부 : 매회
  ○ 모범의정모니터 산업시찰(12월), 우수모니터요원 표창(연말)

전략목표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이행과제 3-1 변화에 대응하는 연찬운영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 1회(10월)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정연설 기법, 건강관리 등 연찬
□ 위원회별 연찬회 운영 : 2회
  ○ 소관업무별 자체연찬 정례화(위원회별 년 1회이상)

이행과제 3-2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

□ 외국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및 우호협력 확대
  ○ 흑룡강성 인민대표단 초청 방문 등 도의회 방문 : 3회 38명
  ○ 자매결연기관(흑룡강성 10주년기념 행사 등) 방문 : 2회 4명
□ 위원회별 내실 있는 해외연수 실시 : 4회(위원회별 1회)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검소한 연수, 연수효과 정책반영

이행과제 3-3 정책참여 확대 및 적기 정보제공

□ 도정 및 지역현안 토론회·공청회·세미나 등 참여확대
□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 : 29위원회 24명 참여
□ 정기간행물 구입배부, 연합프리미엄뉴스 등 의정관련자료 제공

이행과제 3-4 의정 보좌능력 향상

□ 사무처직원 전문성 향상
  ○ 의정관련 전문교육기관 연수 : 17회 17명(3일~2주)
  ○ 직무연찬 및 혁신 토론회 : 2회 88명
□ 타 시도 우수사례 수집 : 4회 12명

전략목표4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

이행과제 4-1 의원 입법 활동 지원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자치입법 활동 지원 : 11건
  ○ 의원 임기 중 1의원 1입법을 목표로 추진
□ 의정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 분석 지원 : 3건
  ○ 예상 쟁점사항 사전 파악, 신속·정확한 검토자료 제공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 56건(의회 6, 집행부 50)
  ○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정비대상조례 지속정비
□ 입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정보 배너설치 운영 : 3종 51건

이행과제 4-2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 지역현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 3개위원회
  ○ 활동결과 정리·보고서 작성, 지역현안 관련 특위활동 홍보
□ 지역현안에 대한 집행부·민간단체 등과 공동대응체제 구축
  ○ 현안발생시 특위구성 등 신속대응

전략목표5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

이행과제 5-1 의원 화합을 통한 역량제고

□ 의원 간 화합행사 개최 : 10월, 46명(의원31, 직원15)
  ○ 의원, 사무처간부 등 참여
□ 상임위원간 단합을 위한 연찬 등 화합행사 : 5회

이행과제 5-2 의원과 직원의 일체감 조성

□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시 상임위원장단 참여 : 10월
□ 의정행사 직원참여 : 연찬회, 화합행사, 해외연수 등
□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사무처 직원과의 대화확대

이행과제 5-3 의정 협의기능 정착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매 회기 또는 수시) : 8회
  ○ 의정 주요사항, 도정현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방향정립
□ 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운영(매 회기 개회전) : 8회
  ○ 회기운영 등 의회운영에 대한 내용 협의
□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여 : 8회
  ○ 의정발전에 필요한 현안사항 및 시·도간 협조사항 협의

이행과제 5-4 활력있는 사무처 조직운영

□ 집행부와의 사전 인사추천협의 운영 : 4회
  ○ 우수인력 확보 및 희망 부서 전보, 승진시 집행부와 형평유지
□ 직원 수련회, 국내주요행사 견학, 취미활동 지원체계 마련
□ 모범공무원 표창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 : 3박4일, 10명

전략목표6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행과제 6-1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 : 225회 460건
□ 도정질문 등 주요활동상황 실시간 생방송 실시 : 4회
  ○ 지역케이블 TV(HCN 충북방송)
□ 주요현안·쟁점사항에 대한 기자브리핑, 기고 : 4회
□ 언론기관 대담방송 적극 참여 : 인터뷰 및 토론회 9회

이행과제 6-2 간행물을 통한 홍보

□ 도민이 참여하고 읽고 싶어 하는 의회소식지 발간 : 8회
  ○ 매월 1회 7,000부 발간, 의원동정 및 논단 고정란 운영
□ 도정소식지에 의정활동상황 게재 : 9회
□ 의정화보 책자발간(3,000부), 8대의회 안내책자 발간(12월중)

이행과제 6-3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전반사항 게재 : 65건
  ○ 『새소식』, 상임위별 『의정활동』 활용
□ 의원 개인 홈페이지 활용 홍보(주요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 2명
□ 전광판을 이용한 의정홍보(조흥은행 건물 등 4개소) : 8회

전략목표7 의정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

이행과제 7-1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서비스 제공
  ○ 회의록, 의정백서, 의정화보, 소식지 등 의정자료의 웹서비스 실시
  ○ 인터넷 방문자에게 책처럼 보는 편리한 e-의정 정보제공
□ 도민발언대, 게시판 등 민원사항 및 의정활동 신속 공개 : 826회
□ 의원 정보화 교육 실시 : 1회 7명(기획행정위)
□ 주전산기(서버)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12회

이행과제 7-2 회의록 발간 및 보존관리

□ e-book CD 회의록 발간 : 9회
□ 회의록 보존 관리 : 영구 보존(책자, CD), 1년 보존(녹음테이프)
□ 도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번문 즉시공개,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 완벽한 속기를 위한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실시 : 1회 5명

이행과제 7-3 의회자료실 기능 강화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 장서 관리 : 21,665권
□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원문서비스제공 : 55회 205권 21,000장
  ○ 국회도서관과의 협정체결로 정보검색 원문서비스 제공
□ 역대 도의원 DB 및 의정활동신문기사스크랩 DB 구축
  ○제7대 의정활동신문기사스크랩 기사 : 11,000여건 입력

전략목표8 제8대 의회 개원 지원

이행과제 8-1 제7대 의회 알찬 마무리 지원

□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300부) : 12월예정
□ 제7대 의회 폐원기념을 위한 도자기제작 : 30개
□ 각종 현황·기록·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 인터넷, 간행물,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

이행과제 8-2 제8대 의회 개원 지원

□ 개원관련 지원실적
  ○ 위원회 이전배치 및 환경정비 : 10월
  ○ 본회의장·위원회 등 각종 집기 정비 및 확충(의원 4명 증원)
    : 회의장 재배치, 책상·의자·명패 등 집기 배치완료
  ○ 의원등록 준비 : 6.15~19등록, 배지, 신분증, 주차증 등 지급
  ○ 당선자 교육 및 상견례(6.28), 개원일정 등 사전 안내 조치
  ○ 각종 현황 및 자료, 홈페이지, 관련규정 등 정비 : 6월말 완료
□ 원구성에 따른 지원실적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거 및 위원회 구성 : 7.4~5 완료
  ○ 제8대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 : 7.4(화), 120명 참석
  ○ 개원안내, 원구성, 주요일정 홍보 등 경축분위기 조성

第2章 議政活動

第 1 節	第229回	臨時會(2004. 7. 2)
第 2 節	第230回	定例會(2004. 7.12)
第 3 節	第231回	臨時會(2004. 9.13)
第 4 節	第232回	臨時會(2004.10.21)
第 5 節	第233回	臨時會(2004.11. 5)
第 6 節	第234回	定例會(2004.11.20)
第 7 節	第235回	臨時會(2005. 1.11)
第 8 節	第236回	臨時會(2005. 2.15)
第 9 節	第237回	臨時會(2005. 3.15)
第10節	第238回	臨時會(2005. 4.19)
第11節	第239回	臨時會(2005. 6. 8)
第12節	第240回	定例會(2005. 7.11)
第13節	第241回	臨時會(2005. 8. 1)
第14節	第242回	臨時會(2005. 8.11)
第15節	第243回	臨時會(2005. 9. 5)
第16節	第244回	臨時會(2005.10.19)
第17節	第245回	定例會(2005.11.21)
第18節	第246回	臨時會(2006. 1.20)
第19節	第247回	臨時會(2006. 2.21)
第20節	第248回	臨時會(2006. 3.22)
第21節	第249回	臨時會(2006. 4.21)
第22節	第250回	臨時會(2006. 6.12)

第 1 節 第229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6. 25(2004 - 8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집회공고

○ 개회 : 2004. 7. 2(금) 오후 2시

2. 會 期 : 2004. 7. 2 ~ 7. 5(4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집회에관한보고

○ 제2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 부의장선거

○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석결정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7건			1		6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7. 2(금)**

1. 의장 · 부의장선거

○ 의장당선인사(권영관 의원)

○ 부의장당선인사(오장세 의원, 유동찬 의원)

2. 제2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투표결과>

○ 의장투표

- 1차투표 : 권영관 17, 박재국 9, 기권 1

○ 부의장투표(제1부의장)

- 1차투표 : 오장세 15, 한창동 12

○ 부의장투표(제2부의장)

- 1차투표 : 유동찬 12, 송은섭 7, 이광종 7, 기권 1
- 2차투표 : 유동찬 12, 송은섭 7, 이광종 7, 기권 1
- 3차투표 : 유동찬 15, 송은섭 9, 기권 2, 무효 1

□ 제2차 본회의 - 2004. 7. 5(월)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석결정및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회의록서명의원 : 이필용 의원, 이범윤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7. 4(금) 13:58~14:04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시간 47분(1시간 54분)	
1차(7. 2)	14:04~16:06	2시간 02분
2차(7. 5)	11:01~12:46	1시간 4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100%)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4. 7. 5	1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이필용 위원 선임
교육사회 위 원 회	2004. 7. 5	1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조계숙 위원 선임
산업경제 위 원 회	2004. 7. 5	1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 박종갑 위원 선임
관광건설 위 원 회	2004. 7. 5	1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 강우신 위원 선임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기획행정 위 원 회							1
교육사회 위 원 회							1
산업경제 위 원 회							1
관광건설 위 원 회							1

第 2 節 第230回 定例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7. 5(2004 - 9호)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 개회 : 2004. 7. 12(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4. 7. 12 ~ 7. 20(9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004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2003회계연도결산승인 : 4건

○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 조례안 : 10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0건	10	4	4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7. 12(월)**

1.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2004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과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강우신 의원, 조계숙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4. 7. 20(화)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가결)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원안가결)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5.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수정가결)
6.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9.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수정가결)
14.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1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16.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17.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7. 12(월) 14:00~14:12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시간 24분 (1시간 12분)	
1차(7. 12)	14:13~15:22	1시09분
2차(7. 20)	11:00~12:15	1시1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4%)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3
2차 본회의	27명	25	1	92.5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4. 7.12	1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3. 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행정위원회	2004. 7.12	1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4. 7.13	2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마. 기획관리실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마. 기획관리실
	2004. 7.14	3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라. 공보관실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2-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7.15	4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2004. 7.19	5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2004. 7.13	1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교육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청 3.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4. 7.14	2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복지환경국 라. 충북과학대학 마. 보건환경연구원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복지환경국 라. 충북과학대학 마. 보건환경연구원 3.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004. 7.15	3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복지환경국
	2004. 7.20	4	1.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04. 7.13	1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004. 7.14	2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2004. 7.15	3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3-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관광건설 위 원 회	2004. 7.13	1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건설교통국 라. 소방본부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2004. 7.14	2	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한창동의원발의) 2.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소방본부
	2004. 7.15	3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4. 7.12	1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004. 7.16	2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 별 위 원 회	2004. 7.15	1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문채택의건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004. 7.15	1	1.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유치추진상황보고 2. 미래형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 관련건의안채택의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3	33	28	5			7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5
기획행정 위 원 회	10	10	7	3			
교육사회 위 원 회	6	6	6				
산업경제 위 원 회	5	5	4	1			
관광건설 위 원 회	4	4	3	1			
예산결산 위 원 회	4	4	4				2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1	1	1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주요골자]

○ 제230회 정례회 기간을 2004. 7. 12일부터 7. 20일까지 9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주요골자]

○ 제231회 임시회 기간을 2004. 9. 13일부터 9. 20일까지 8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회 실현
○ 시·군별 순회 의정간담회 운영
○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
○ 탄력적인 회기 운영
○ 의정활동연구모임을 구성 의원입법창구로 활용
○ 홍보매체를 통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 의정운영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의정활동 기록보존
○ 의정백서 발간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4(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제3조)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함(제4조)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총수의 16분의 1로 함(제5조)

○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간으로 함(제7조)

○ 청구인서명부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제8조)

○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제10조)

○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함(제16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4(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제1조 및 제3조)

○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 정비(제4조 및 제5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 → 충청북도새마을회
- 도지부회장 → 도새마을회장
- 시·군지회장 → 시·군지회장, 시·군새마을회장

※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군지회는 기존 명칭 사용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4(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주선허가 등 12개 사무 삭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관련 수수료 신설

- 사용(신규·변경) 신고 : 1건당 1,400원
-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 1건당 1,400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5(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총무과〕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농산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 사무를 위임

〔환경과〕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

〔교통과〕

○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권한의 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권한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의 사무가 시장·군수에서 도지

사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무'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함

〔도로과〕

○ 원거리 주민편익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

[심사결과] 수정가결

◉ 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5(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7

○ 상 정 : 2004. 7. 15(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조정

-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 조정

-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7

○ 상　정 : 2004. 7. 15(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65명 ⇒ 2,484명 (증 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6명 ⇒ 1383명 (증 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8명　⇒　60명 (증 2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공보관실 소관]

○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활성화

○ 전광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

○ 뉴스비전 충북시대 영상홍보물의 제작 방영

○ 도정소식지 발간

○ 도정홍보의 설문조사 반영

○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

○ 전국체전 홍보지원

[총무과 소관]

○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 조성

○ 보람과 긍지 높은 근무여건 마련

○ 일과 능력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

○ 인사위원회 매월 정례화

○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 정원의 조경수와 원두막, 진입로 정비

[감사관실 소관]

○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 활동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

[기획관리실 소관]

○ 도정 기획·정책 입안능력 강화
○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
○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주요도정 조정·환류기능 강화
○ 도정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열린 행정·투명한 도정실천
○ 건전재정 운영 정착과 자율성 확대
○ 도민의 신뢰와 권익을 위한 도정 실천
○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 확대 운영
○ 제85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 제85회 전국체전 자매결연 및 응원

[청주의료원 소관]

○ 장례식장 신축
○ 의료장비의 현대화
○ 전산의 현대화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백내장 및 무료개안수술 실시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무료건강검진 실시
○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
○ 실내분위기 환경개선
○ 직원아이디어포인트제 실시
○ 주40시간 근무제 운영

[충주의료원 소관]

○ 의료장비 현대화
○ 전산시스템 현대화
○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축
○ 시민건강교실 운영
○ 노사화합으로 신문화 창조
○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 자기개발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의 다양한 의료혜택
○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운영방안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방안
○ 테크노파크를 기본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전략
○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개선 방안
○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 DDA, FTA 협상진전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
○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방안
○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 방안
○ 지구 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 교육사회위원회

◉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여성정책관실 소관]

○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제고, 독려
○ 성인지교육을 위한 충북여성아카데미 운영 지속
○ 모자복지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추진
○ 성폭력의료전담기관 홍보활동 강화
○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
○ 여성지도자 양성 여학생교육, 여대생캠프 운영
○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차별화된 여성발전센터 교육 운영
○ 틈새공간을 이용한 사회교육 시설물 활용
○ 상담원 보수교육 및 홍보사업

[복지환경국 소관]

○ 더불어 잘사는 선진 복지기반 구축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충북과학대학 소관]

○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신입생 유치 강화 대책
○ 지식기반사회 전문기술인 양성
○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
○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
○ 국제 학술교류 추진
○ 도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실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 공무원 교육의 내실 운영
○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 도정시책 및 추진역량의 강화 및 공직윤리관 확립
○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테마형 현장학습 실시
○ 고품질의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훈련의 내실화
○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강사인력 확보
○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 활성화
○ 친환경 농업교육 및 재해예방 교육
○ 노후·불량시설 정비 및 보강계획
○ 교육원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열린교육
○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
○ 교육생의견 반영시스템의 구축
○ 열린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행정 실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
○ 전염병 유행 예측 사업
○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 사업
○ 수질관리정보화시스템 운영
○ 보건·환경분야의 시험검사의 내실화
○ 전국체전 대비 도로변 즉석 판매식품 유해실태 조사
○ 전국체전 관련시설 및 주변 관광지의 먹는물, 목욕수의 수질검사
○ 전국체전 경기장 지역의 대기환경 정보 제공

[교육청 소관]

○ 감사우수사례 발굴표창
○ 공직자의 재산등록
○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 주5일수업제 실시 대비 추진실무대책반 구성·운영
○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자율공모제 추진
○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 충북21」 추진
○ HACCP시스템 정착과 식재료 안전성 확보
○ 교육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화
○ 충북교육사료관 운영
○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이행
○ 행정자료실교육정보센터 구축
○ 병설 및 단설유치원 확대 운영
○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운영
○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활성화 및 문화학교 운영
○ 학교시설의 현대화 추진
○ 학생 교육시설의 확충

□ 산업경제위원회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5(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제명변경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전통의약품연구개발원센터"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 (제2조)

○ 사업의 범위를 전통의약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서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 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산업의 연구개발·창업보육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센터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함(제5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5(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시사분야는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기업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으로 함

○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도내 기업으로 함(제3조)

○ 대상심사를 위하여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장 부지사, 위원 15인 이내) 심사함(제4조)

○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제6조)

○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제7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 경제주체 네트워크 구축 및 서민경제 보호

○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

○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

○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안정

○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우수기능인 양성

○ 차세대성장동력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

○ 차세대성장동력산업5개년계획 반영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운영 활성화
○ 지역혁신체계기반 구축

[농정국 소관]

○ IT · 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치화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
○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
○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 축 · 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 예방
○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있는 산림 육성

[농업기술원 소관]

○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
○ BT · N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실용화 연구
○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제고 연구
○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영개선 연구
○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
○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지도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농촌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소득원 창출
○ 다원적 기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 신속한 영농정보의 확산
○ 농촌지도사들의 조직경영과 전문지도 역량 강화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7. 5
○ 상　정 : 2004. 7. 14(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
○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 주5일근무 시행에 따른 생활관광기반 강화
○ 지역특화 테마관광상품 개발 육성
○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 국민의 사랑받는 청남대 조성

[건설교통국 소관]

○ 친환경적인 국토계획 관리계획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균형발전 촉진
○ 재난·재해 대비 관리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하천관리 및 취약시설물 관리
○ 주민편의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조기 구축
○ 건설공무원의 연구·연찬분위기 조성
○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지원

[소방본부 소관]

○ 소방조직 운영의 경쟁력 강화
○ 소방력 확충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 인명중시 재난대응능력 배양
○ 도민과 함께하는 예방행정수행
○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 엑스포 후속사업 추진
○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 바이오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 오송상징 소공원 조성
○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의 건립

第 3 節 第231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9. 2(2004 - 10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4. 9. 13(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4. 9. 13 ~ 9. 20(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 8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1	8	2	1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9. 13(월)**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4.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강구성 의원, 장주식 의원)

-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달성을 위한 노력 촉구
-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재검토 촉구

※ **회의록서명의원 : 박재국 의원, 김정복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4. 9. 20(월)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수정가결)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8.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9.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12.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

○ 5분 자유발언(한창동 의원, 송은섭 의원)
- 청주시 화장장 설치 관련,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9. 13(월)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29분 (45분)	
1차(9. 13)	14:08~14:44	36분
2차(9. 20)	11:00~11:53	5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0%)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4	3	88
2차 본회의	27명	25	2	92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4. 9.13	1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5.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04.10. 8	2	1.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기획행정위원회	2004. 9.14	1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2004. 9.15	2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4. 9.14	1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나. 여성정책관실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9.15	2	1.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 9.16	3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산업경제 위 원 회	2004. 9.14	1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통상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 9.20	2	1.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채택의건
관광건설 위 원 회	2004. 9.14	1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 9.15	2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소방본부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4. 9.17	1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1	31	22	9			
의회운영위원회	9	9	9				
기획행정위원회	4	4	3	1			
교육사회위원회	10	10	6	4			
산업경제위원회	3	3	2	1			
관광건설위원회	2	2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3	1	2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주요골자]

○ 제231회 임시회 기간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04. 9. 13일부터 9. 20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주요골자]

○ 제232회 임시회 기간을 2004. 10. 20일부터 10. 28일까지 9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

○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시점(11월말)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현행 : 10월 31일 → 변경 : 12월 10일)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주요골자]

○ 충북의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골자]

○ 충북의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9. 7

○ 상　정 : 2004. 9. 15(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
(안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을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10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시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안 제17조)

○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안 제4조제2호)

· 부위원장 1인(기획관리실장)을 2인으로 하고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 수정

-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9. 6

○ 상　정 : 2004. 9. 15(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84명 ⇨ 2,494명(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3명 ⇨ 1,393명(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9. 6

○ 상　정 : 2004. 9. 14(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26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함

·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함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13~15인으로 하고 위원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안 제5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7조)
○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별표2)

[심사결과] 원안가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사 5

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원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외부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안 제2조제2항)

□ 산업경제위원회

◉ 백두대간보호법폐지촉구건의안채택의건

[심사경과]

○ 제 안 : 2004. 9. 20(산업경제위원장)

○ 상 정 : 2004. 9. 20(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며 백두대간의 부문별한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지난해 말 제정 공포한 백두대간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요인이 되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 폐지를 건의하기 위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9. 17

○ 상 정 : 2004. 9. 17(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증 감 액	비 율
총 계	1,439,548,878	1,666,888,625	227,339,747	15.8
ㅇ지방세	307,788,000	328,288,000	20,500,000	6.7
- 보통세	211,768,000	232,268,000	20,500,000	9.7
- 목적세	91,116,000	91,116,000	0	-
- 과년도수입	4,904,000	4,904,000	0	-
ㅇ세외수입	112,844,519	114,427,019	1,582,500	1.4
-경상적세외수입	18,430,480	19,557,980	1,127,500	6.1
-임시적세외수입	94,414,039	94,869,039	0	-
• 재산매각수입	2,473,750	2,473,750	0	-
• 순세계잉여금	46,186,352	46,165,100	△21,252	-
• 이월금	343,622	364,874	21,252	6.2
• 융자금원금수입	3,000,000	3,000,000	0	-
• 부담금	8,820,851	8,820,851	0	-
• 잡수입	33,489,464	33,944,464	455,000	1.4
• 과년도수입	100,000	100,000	0	-
ㅇ지방교부세	279,478,223	288,478,550	9,000,327	3.2
ㅇ지방양여금	155,733,611	155,733,611	0	-
ㅇ보조금(국고등)	501,837,525	655,094,445	153,256,920	30.5
ㅇ지방채	81,867,000	124,867,000	43,000,000	52.5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6,668억8,862만5천원 중 1억2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 세출예산

(단위:천원, %)

장 관 별	제1회추경	%	제2회추경	%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내역 %
합 계	1,439,548,878	100	1,666,888,625	100	227,339,747	15.8
1000 일반행정비	185,598,745	12.9	193,962,463	11.6	8,782,718	4.7
1100입법및선거관계	4,711,613	0.3	4,859,817	0.3	148,204	3.1
1200일반행정비	180,468,132	12.5	189,102,646	11.3	8,634,514	4.8
2000 사회개발비	477,943,272	33.2	530,812,128	31.8	52,868,856	11.1
2100교육및문화비	86,432,007	6.0	87,396,163	5.2	964,156	1.1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34,849,207	9.4	137,117,336	8.2	2,268,129	1.7
2300사회보장비	226,153,310	15.7	228,785,244	13.7	2,631,934	1.2
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30,508,748	2.1	77,513,385	4.7	47,004,637	154.1
3000 경제개발비	496,495,964	34.5	648,047,207	38.9	151,551,243	30.5
3100농수산개발비	151,046,920	10.5	178,451,507	10.7	27,404,587	18.1
3200지역경제개발비	78,031,343	5.4	85,767,407	5.1	7,736,064	9.9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257,074,415	17.9	374,545,941	22.5	117,471,526	45.7
3400교통관리비	10,343,286	0.7	9,282,352	0.6	△1,060,934	△10.3
4000 민방위비	67,150,554	4.7	67,867,909	4.1	717,355	1.1
4100민방위관리비	1,060,181	0.1	1,070,181	0.1	10,000	0.9
4200소방관리비	66,090,373	4.6	66,797,728	4.0	707,355	1.1
5000 지원및기타경비	212,779,343	14.8	226,198,918	13.6	13,419,575	6.3
5100지방채상환	88,236,712	6.1	88,236,712	5.3	0	0
5200제지출금	343,622	-	540,298	-	196,676	57.2
5300교부금	105,164,791	7.3	112,273,010	6.7	7,108,219	6.8
5400예비비	19,034,218	1.3	25,148,898	1.5	6,114,680	32.1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6,668억8,862만5천원 중 4억4,02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심사경과]

○ 제　출 : 2004. 9. 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9. 3

○ 상　정 : 2004. 9. 15(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관 별	예 산 액 (제2회추경)	예 산 액 (제1회추경)	증 /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149,714,951	1,128,778,042	20,936,909	1.9
유 치 원	9,077,522	8,981,761	95,761	1.1
초 등 학 교	151,938,785	151,471,936	475,849	0.3
중 학 교	87,488,885	84,344,597	3,144,288	3.7
고 등 학 교	100,949,844	94,589,188	6,360,656	6.7
특 수 학 교	16,191,628	13,383,330	2,808,298	21.0
기 타 학 교	149,518	129,173	20,345	15.8
평 생 교 육	3,156,904	3,057,281	99,623	3.3
급 여 관 리	641,705,588	641,705,588	0	0.0
복지 · 후생	63,094,749	63,094,749	0	0.0
교육위원회	454,045	454,045	0	0.0
교 육 청	17,201,345	16,009,638	1,191,707	7.4
지역교육청	7,016,687	6,404,687	612,000	9.6
교육지원기관	12,735,819	9,969,128	2,766,691	27.8
지방채상환	25,909,571	19,730,345	6,179,226	31.3
예 비 비	12,644,061	15,461,596	△2,817,535	△18.2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 1,497억 1,495만 1천원 중 2억 2,4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第 4 節 第232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10. 21(2004 - 11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4. 10. 21(목) 오후 2시

2. 會 期 : 2004. 10. 21 ~ 10. 27(7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0건	5			2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10. 21(목)

1.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이기동 의원)
-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건의 촉구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한창동 의원, 박종갑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4. 10. 23(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원안가결)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원안가결)
8.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원안가결)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강구성 의원)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 촉구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10. 21(목) 13:27~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51분 (26분)	
1차(10. 21)	14:07~14:25	18분
2차(10. 27)	11:01~11:34	3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4.10.26	1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행정위원회	2004.10.25	1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교육사회위원회	2004.10.25	1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산업경제위원회	2004.10.25	1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관광건설위원회	2004.10.25	1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4.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1.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7	17	16	1			
의회운영위원회	6	6	6				
기획행정위원회	2	2	2				
교육사회위원회	2	2	2				
산업경제위원회	3	3	3				
관광건설위원회	4	4	3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13(이범윤 의원 외 6인)

○ 회 부 : 2004. 10. 14

○ 상 정 : 2004. 10. 26(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13(이필용 의원 외 6인)

○ 회 부 : 2004. 10. 14

○ 상 정 : 2004. 10. 26(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기획행정위원회 직무관련 소관 실과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

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추가

○ 관광건설위원회 직무관련 실과중 바이오산업추진단 추가

○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부조항에서 "본회의의" 의결이나 "도의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자구정비(제7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13(강우신 의원 외 6인)

○ 회　부 : 2004. 10. 14

○ 상　정 : 2004. 10. 26(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으로 삭제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13(조계숙 의원 외 6인)

○ 회　부 : 2004. 10. 14

○ 상　정 : 2004. 10. 26(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외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 의회에 참석하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으로 개정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21(박종갑 의원 외 6인)

○ 회　부 : 2004. 10. 22

○ 상　정 : 2004. 10. 26(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12(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0. 14

○ 상 정 : 2004. 10. 25(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토록 규정

○ 2004. 6. 11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공유재산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8(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0. 11

○ 상 정 : 2004. 10. 25(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조례 제2807호 2004. 7. 1)에 따라 동절기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하도록 함(제6조, 제8조)

○ 입장료면제 규정중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제7조)

○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제9조, 제9조의1)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 제9조 제2항 1호의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지정된 장소외 흡연"으로 하며 제9조 제2항 4호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신설함.

第 5 節 第233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10. 29(2004 - 12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4. 11. 05(금) 오후 2시

2. 會 期 : 2004. 11. 05 ~ 11. 12(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도유임야확대조성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5건	1				4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11. 5(금)

1. 제2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 회의록서명의원 : 정상혁 의원, 강구성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4. 11. 8(월)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질문요지]

○ 도의 농업예산 편성 관련
○ 주요 농정시책 추진방향
○ 쌀 농업을 비롯한 농촌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 고유가로 인한 시설농업에 대한 대책
○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타 도와 농업부문 예산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자주재원의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조금은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음. 따라서 타 도에 비해서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도의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또한 적게 편성되어 왔음.

○ 앞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박종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 내년도의 주요 농정시책 추진방향은 농업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농정의 실현, 고부가가치 생명농업의 집중육성 또 농업인이 원하고 농촌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정 등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임.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 또 못자리 Bank 및 영농자재 지원 확대 또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과 농촌이 되도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쌀 산업은 수입개방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입쌀의 경쟁심화와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됨. 정부에서는 금년도 쌀협상을 관세화 유예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쌀 수입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쌀의 품질관리, 민간주도의 고품질 쌀 유통체제의 정착 그리고 직불제도를 통한 소득보전 등 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우리 도에서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과 바이오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내 28개 RPC를 고품질의 쌀 생산과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가의 동반상승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시설원예의 경우에는 전체 경영비 중 난방비의 비중이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음.

○ 따라서 시설채소와 화훼 가온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2,000만원 한도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석탄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시범사업과 이중피복, 수막시설, 태양열 이용 기술 등을 적극 개발 보급함으로써 어려운 시설농가 지원에 더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그밖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의 체질개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 도에서는 금년에 수립된 바이오농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이미 특화된 제천의 약초, 청원에 바이오농산물, 옥천에 묘목, 영동의 포도 등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

도록 하겠음.

○ 특히 남부3군에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업단지를 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명실상부한 바이오농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 이 계획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서 열심히 연구 용역 중에 있고 현지도 확인 중에 있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부3군 이외에도 지역별 특산품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3개 시·군을 한개의 권역으로 특화하여 농업클러스터가 육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지역주민 고용창출 대책

○ 지방이주기업유치 및 활성화대책

○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개선대책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92년 당초 개발계획에 의하면 130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인력 4만3,000명, 5만3,000명이 거주하는 전원기술도시로 계획되었으며 4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된바 있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동북아 IT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IT, BT관련 첨단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113개 업체 74만9,000평을 유치하여 94%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72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음.

○ 생산인력은 총 3,4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후 신규채용 규모는 총 생산인력의 59%인 2,051명임. 다만 당초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유치업종이 IT, BT 등 최첨단 업체로 대부분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자동화설비 시설로 산업구조가 변화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금년 10월말 현재 가동하고 있는 63개 업체의 분양면적은 22만9,000평으로 총 분양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가동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며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의 증축, 유한양행, 녹십자 등의 대기업과 외국인전용공단의 외국기업, 생명공학

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설립중인 각종 재단법인의 입주가 모두 끝나면 고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총 생산인력 2만명, 신규 채용인력이 1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우선채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곧 발족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오창과학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하여 입주기업과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시키고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는 산·학·연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입주기업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지방이주기업유치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한계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지난 3년간 5,382개의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40개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60여개의 업체가 도내로 이주하거나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오창에 15만평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한 개 업체에 2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 촉진개발의 마련과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오송, 오창, 충주, 제천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 개발과 5대 개발권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입지에 따른 각종 규제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창, 오송, 충주, 제천 등의 산업단지와 시·군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의 수에 맞추어 계획입지 조성을 통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과 연계한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및 보전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판로개척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오초청수출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기술개발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산학연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창업과 자금 및 기술지원, 디자인 특허지원 등 One-Stop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노사문화 정착과 구인구직활동 지원 등 새로운 지원정책의 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1,400억원으로써 9월말 현재 230개 업체에 759억원을 기금에서 지원 결정하였으며 이중 335억원이 대출 실행됨으로써 대출실행율은 44.1%임.

○ 또한 벤처기술 우수업체 지원에 대한 80억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22억원을, 하반기에 46억원을 지원하여 총 68억원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융자지원 결정 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이므로 앞으로도 대출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대출금리가 5.9%로써 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지원정책자금임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중앙차입금 금리가 4.9%로 고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나마도 내년부터는 중앙차입금이 중단되어 기존의 기금으로는 축소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법을 기존에 기금대여방식에서 은행협약자금을 이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변경 개

선하여 기업체 실제 대출금리를 3~4%로 낮게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이차보전에 필요한 소요액은 19억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음.

[질문요지]

○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경감대책

○ 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도약을 충북교육에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음. 사교육비 경감은 학교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충북교육이 가장 크게 경쟁력을 갖춘 e-Learning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를 이용하여 EBS수능방송,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997년 설치 완료된 EBS방송 활용시설을 지난해 점검 보완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증설 19학급, 실업계 고교, 사립고 및 농촌지역학교 210학급 등 총 229학급에 최첨단의 시청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인터넷통신 속도를 2~5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능과외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수능대비 이외에도 e-Learning을 통한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에듀넷」에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별, 학년별, 학기별, 수준별 단위시간 학습지를 개발 보급하고 "사이버 선생님" 및 "사이버 학습도우미" 제도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응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전산직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체제를 갖추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또한 수준별 보충학습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도 활성화하여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방법을 보완하였으며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위해 449개교에 교육비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 진천학생종합수련원에 26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English Camp를 설립할 계획이며 외국어교육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교실수업도약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현장과 교단, 교사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할 것임.

○ 교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 관련하여.

첫째,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음. 2004년도 48개 과정을 개설해 4,159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1만 2,000여명의 교원 중 3분의 1 이상이 연수에 참여했음. 앞으로도 교실수업도약과 관련된 전문교과과정, 원격직무연수과정 증설, 신규교사 임용전 연수의 강화, 현장연수, 부전공연수 등의 다양한 연수를 개설해 나가겠음.

○ 둘째, 우리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단재교육연수원의 자율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영재육성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영재교육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외국의 현지어학연수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셋째, 연수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음.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수정보" 코너를 설치하여 안내하고 교원의 연수희망과정을 조사하여 수요자를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겠으며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자율연수강화를 위해 3,500명에게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물리적 보상은물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학점제를 전문직 전형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심리적 보상체제를 구축하겠음.

○ 또한 2004학년도에는 교실수업도약을 위해 초·중등 최적 학습조건 모형 및 수업의 실제에 관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

며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44개 교과연구회 교원 654명과 16개 영역에서의 수업연구회 교원 1,499 명에게 연구지원을 위하여 3억4,4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음. 그밖에 자율장학실시, 수업연구대회, 교육발전세미나, 전문직연찬회, 장학지도, 해외유학 등의 밀도있는 추진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실수업의 스타가 되고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교수학습풍토를 조성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강우신 의원

[질문요지]

○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소방전문병원의 개설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화마와 싸우는 그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음.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대책강구를 촉구해 주신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으로 암.

○ 그러나 이와 비슷한 취지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경찰병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영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설립할 경우에 엄청난 재정부담은 물론이요 또 경영면의 어려움을 감내치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소방병원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판단을 하고 또 재정부담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결론지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됨.

○ 참고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소방전문 단독병원 건립이 검토되고 논의된 바가 있음. 이때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립후의 경영의 채산성 또 원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편의 또 운영인력의 확보, 조직관리의 어려움 등이 모두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음.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판단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소방전문병원 건립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림.

○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설립·운영중인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등을 활용해서 소방관련 전문치료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이것은 특별한 투자가 없이 기존 인력과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됨.

○ 그리고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대형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소방공무원의 공상을 신속히 치료해 줌으로써 의료혜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특히 근래 우리 소방공무원은 비록 화재뿐만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이러한 주민들을 구출해 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림.

[질문요지]

○ 충주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관련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 도에서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오고 있음. 투자양해각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의지를 확인하고 투자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사자를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우리 도에서는 충주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양해각서를 교환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3건임.

○ 투자이행이 안 된 3건 중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릴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제조업으로서 국내 파트너 기업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투자를 철회한 사업 1건과 합작

투자방법에 상호간 이해가 상충되어 투자를 철회하게 된 사업 1건 등임.

○ 통상적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내용에 관한 일체를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을 하게 됨. 따라서 이 자리에서 기업명이나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앞으로는 관광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투자가 취소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에서부터 투자이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철저하게 투자상담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충주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 관련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충주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충주온천은 26℃의 약알카리성 단순천으로 당초에 '88년 12월달에 발견돼서 발견자가 서광열씨로 '90년 5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음. '92년 3월에 이 지역을 유원지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켜서 '93년 10월 충주시 연수동 산35번지 일원 25만7,000평에 대한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음. '93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발견자의 개발자금 부족으로 2000년까지 약 10여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투자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아서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음.

○ 이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외자유치에 따른 선진국형 온천문화를 이 지역에 도입해서 충북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협상 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

○ 그래서 2000년 5월 독일 테라바트사와 충주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부터 죽 독일측과 지주조합간에 실무협의회를 주선하는 등 많은 중재역할 지원을 해 왔던 사실임.

○ 그 내용은 2000년 7월 2일 독일의 테라바트사 대표가 개발현장을

방문했었고 2000년 8월 9일 토지소유자 대표인 한독스파와 독일 테라바트사간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2000년 8월 26일에는 충주온천개발사업조합 사람들이 자체 창립총회를 해서 토지소유자 전체 315명 중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었고 2000년 11월 22일에는 주식회사 한독스파와 독일 테라바트사, 또 R&P사간에 개발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 2000년 12월에 저희 도에서는 이 지역의 온천지구로서의 개발을 쉽게 하고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01년도에는 지주조합사무실 설치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으며 2001년 7월에는 용역대금 향후 투자자부담을 전제로 지주조합하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간에 이건 설계용역회사임. 조사설계용역을 체결하고 독일 테라바트사와 외자유치협상을 지주조합회사가 계속 추진했으나 당초에 계약과는 달리 그 내부사정으로 외자유치협상대상인 R&P사에서 투자자확보 보장 불가를 주장했고 또 R&P사는 그 내용이 컨설팅회사임.

○ 프로젝트개발 후에 투자자모집을 주장하면서 당초 독일과 조합측이 각각 반씩 부담하기로 한 개발회사자본금 12억원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또 조합측에서는 반대로 투자자의 모집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R&P사에서 투자자에 대한 확보가 안된다면 R&P사에 용역을 줄 수 없다 하는 등의 상당히 내부적인 거래 협상의 과정이 좀 어렵게 진행됐었으며 또 조합 내부에서는 지주조합장의 독단적인 행동 등 내부갈등으로 조합장이 사임하고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컨설팅에 대한 비용충당을 위한 개발회사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토지담보 및 매각방안 등으로 모색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렵게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임.

○ 그렇지만 우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자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상의 물꼬를 터 주었고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며 그동안에 지주조합의 창립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사실임. 그렇지만 저희 도가 개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향후전망과 대책에 대하여는 조합측에서는 향후에 인원을 전면 개편하고 온천개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외자유치추진협상이 무산된 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지주총회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되는 등 회의가 무산된 상태임. 앞으로 개발의 당사자인 지주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명확함.

○ 우리 도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음. 그렇지만 도가 민간개발사업에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는 계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질문요지]

○ 약수터 수질관리 운영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먹는 물 공동시설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의 규정에 의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도내에는 106개소가 지정되어 1일 1만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 그중 상시이용자가 50인 이상인 곳은 85개소이고 50인 미만인 곳은 21개소임.

○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매년 48개 항목 1회, 8개 항목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특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6월에서 9월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음.

○ 금년도 상반기에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1/4분기에는 동파방지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8개소를 제외한 98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음. 2/4분기에는 지하수로 고갈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3개소를 제외한 103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음. 그중에서 1/4분기와 2/4분기 2회연속 수질기준이 초과된 곳은 청주시 율량

동 현대2차아파트, 제천시 장락동 탑안약수터, 영동군 영동읍 부용약수터 등 3개소이며 2/4분기만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은 청주시 수곡동 매봉산 등산로, 청주시 복대동 세원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1호공원, 제천시 하소동 등너머약수터, 제천시 강제동 몽암사약수터, 제천시 봉양읍 팔송우물, 청원군 미원면 옥화유원지우물, 청원군 현도면 양지등산로우물, 청원군 미원면 잠방골옹달샘, 청원군 옥산면 묘안옹달샘, 증평군 증평읍 대봉약수터 등 11개로 전체 106개소중 14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음. 부적합 항목은 총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11개소, 질산성질소 2개소, 색도 및 탁도 1개로 나타났음.

○ 또한 수질기준초과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일단 사용을 중단시킨 다음에 대장균·일반세균 등 미생물이 초과되는 경우 주변오염원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 사용토록 하고 계속 부적합할 때는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음.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초과될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며 계속 부적합할 때에는 안내판에 경고를 부착,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음. 색도·탁도 등 심미적영향물질이 초과된 경우 안내판에 장기간 먹을 시는 유해할 수 있음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1년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할 때는 시설을 폐쇄시키고 있음.

○ 시장·군수가 수원고갈,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먹는물 공동시설이 하절기에 계절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 막연하게 약수를 좋은 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앞으로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안내판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수질실상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
○ 문화예술발전대회 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

[답변 :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1개 전 종목을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모두 564억원을 투자해서 유도, 수영, 배드민턴, 하키, 요트, 카누등 6개 경기장을 신규로 건립하고 청주와 충주종합운동장 등 34개 시설은 대폭적으로 개·보수한 바 있음. 따라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우리 도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150만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바이오토피아충북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이와 같이 금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새롭게 마련하고 단장한 각종 체육시설은 시·군이 소유하는 공공체육시설이 22개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체육시설이 18개소로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도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서 또한 도민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되겠습니다만 당장은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장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시·군별 경기장 특성에 맞는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 실업팀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음.
○ 또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해 나가겠음.
○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 후속조치계획에 대하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참여정부의 문화규정과 새 예술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지난 9월 17일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 혹은 문화재단설립문제는 향후 타 시·도의 위원회 시범설치지역의 운영결과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제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은 중앙정부의 생활문화형 예술인프라 확충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문제는 문화시설공간의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문운영요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개념의 확대에 따른 대응문제는 지방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유적지 및 문화재발굴은 물론이고 무형문화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도 추진해 볼 계획임.

○ 충북문화예술발전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아직도 문화예술정책이 핵심적인 중심정책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주변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문화예술발전정책이 도정의 주요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문화적 정체성이 투영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음. 그리고 향후 정부계획에 따라 문화환경분야 영향평가사업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사업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중앙문화예술기관의 유치문제에 대하여는 충북의 대응전략에 대하여는 당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이전대상기관은 73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상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당초 이전대상기관은 아니었지만 국립국악

원을 영동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임.

○ 앞으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문화예술 관련 국가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있으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대하여.
지역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국내관광을 진흥시키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은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발표하고 있으며 선정된 시·도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국내외 홍보·이벤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음. 시행 첫 해인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가 선정된 바 있음.

○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를 목표로 "충북방문의 해" 사업 유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대규모 이벤트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2007년도 개최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 진천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시켜서 충북방문의 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임.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기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현황과 운영관리실태

○ 학교급식 관리 및 위생관리체계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2004년 11월 현재 도내 451개 초·중·고등학교 중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298개 학교로서 1,18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별 정수기 관리담당자를 지정 주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필터교환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수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 또한 2002년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의무화하여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금년도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27개 학교의 44대 정수기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조치한 바 있음.

○ 학교급식 관리 및 위생관리체계에 대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2004년 11월 현재 도내 451개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리에 있어서는 409개교가 직영급식으로, 42개교가 위탁급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중점관리시책으로는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생활교육으로서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수요자 참여 확대를 통하여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식재료 검수와 식품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2000년도부터 학교급식 위생시스템인 HACCP제도를 도입하여 급식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급식학교의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매급식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정기적인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 지역교육청 단위 학부모 및 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

검단」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또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보건소와 협조하여 식재료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앞으로도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와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제3차 본회의 - 2004. 11. 9(화)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질문요지]

○ 경제동향담당 설치 문제

○ 기업하기 좋은 도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경제동향담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기존의 담당인력을 좀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동향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해 보겠음. 그리고 앞으로 업무가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든지 확장될 때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그때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

○ 우리 도에 기여도가 큰 기업 또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트터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기업하기 좋은 도.

지적하신 청주LG전자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공장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로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림. 그러나 이번 LG그룹의 사업장 교환은 핵심사업의 집중화를 통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세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음. LG의 단말기 사업부는 서울의 R&D연구소와 청주의 사업장을 통합해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LG의 시스템사업부는 평택의 사업장을 대덕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KT연구센터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주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서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LG 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임. 다만 LG의 단말기 사업장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LG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과 수출은 일부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됨.

○ 그리고 이전해 오는 시스템사업부는 최첨단인 IT통신중계장비 사업부로써 향후 수출 및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지난 9월 1일 LG그룹의 경영진과 단말기 사업부의 이전과 관련한 면담시에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도내 첨단 신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또 산·학·연 지원사업 참여 및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당부한 바 있음. 참고로 사업장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LG그룹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10만평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오창테크노파크를 건설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2차전지와 LCD용 편광판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지금은 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2단계 투자가 완료되는 2010년쯤에는 세계1위의 소재·부품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LG의 충북기여도는 괄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늘 지혜를 모으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겠음.

【 질문요지 】

○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

○ 민간과의 인사교류제도

○ 공유재산관리분야

○ 도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관련

○ 도유재산관리의 유공공무원의 대우 관련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기관간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과 균형 있는 인력배치 그리고 공직자 개인의 능력발전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임. 먼저 중앙부처와 인사교류사항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4급 1명과 5급 2명 등 총 3명이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상호파견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임. 도와 시·군간 5급교류는 도 자체에서 교류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해 11월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공무원노조와 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와 시·군 실무핵심계층인 6급 교류를 적극 검토 함. 6급 교류는 도와 시·군간 1:1 교류원칙 하에 실시하고 교류대상은 당해 직급에 5년내외 경력자로서 50세 미만으로 하여 교류수당, 주거보상, 복귀시 희망부서 우선배치와 승진배수내에 들어왔을 시에 우선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방안을 수립하던 중에 교류수당과 주거보상이 현행법규상 중앙과 광역단체간은 지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할 시에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음. 건의사항이 수용되는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이밖에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참여기관에는 재정지원과 정원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음.

○ 민간과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마련된 제도임.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상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또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이며 휴직대상 공무원은 4급 내지 6급으로 만50세 이하이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상의

문제는 없음. 다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9개 기업에 10여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이유는 민간기업에서 수요제기가 없기 때문임.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민간기업에서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요가 있을 시에는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민간교류제도는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기업과 협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등 이미 조직을 통해서 이 제도가 소개된 바 있음.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상공회의소 또 기업인협의회 등에 본 제도를 소개하고 희망업체를 파악하던 중 앞서서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한 10여명 밖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의사를 물어 가지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공유재산관리분야에 대하여.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추진상황과 2003년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재산관리관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 금년에는 3월부터 9월말까지 7개월에 걸쳐 토지 4만5,364필지 2억4,061만7,000㎡와 건물 363동 23만9,000㎡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점유, 등기미필, 유휴상태 등 관리실태를 분석 중에 있음.

○ 2003년도 도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실적에 대하여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63필지 10만㎡를 적발하여 13필지 1만4,000㎡에 대하여 41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는 도로 등 일부를 소규모로 점유한 것으로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미등기재산 62필지 256만4,000㎡에 대하여는 권리보존조치를 한 바 있음.

○ 행정자치부의 전산화 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실적과 새로운 도

유지 및 국유지를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전산화는 공유재산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한 그 물량이 방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6월에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2년말까지 토지 17만2,495필지와 건물 2,842동에 대해서 자료의 입력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운용에 대비하였음. 그러나 잦은 서버의 다운과 처리속도의 지연,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용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임.

○ 내년 7월에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관련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또한 새로운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발굴을 위하여 재산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음. 특히 금년에는 「충청북도지방비」명의의 토지를 우리 도의 재산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올린바 있음.

○ 그동안 「충청북도지방비」명의의 토지는 국가 귀속 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토지의 연혁 및 취득재원의 근거가 되는 구한말 법령 및 조선도지방비령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과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충청북도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서 이를 근거로 충청북도 지방비 명의재산 135필지 42만6,000㎡ 공시지가로 한 24억원임. 이것을 충청북도 명의로 권리보존하는 등 소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 밖에도 1937년부터 국가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도청부지 3만690㎡중 62%에 해당하는 1만8,877㎡를 중앙정부와 수 없는 협의를 통해서 충청북도로 무상양여가 되도록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얻어냄으로서 이번 회기내에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이 되면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음. 또한 1939년 건립되어서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던 도지사 구관사 건물도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양여받기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찾

아낼 것은 찾아내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음.

○ 도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도민들이 거주를 위해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는 총 158필지에 3만9,600㎡임. 노후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도유지로 인해서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10필지 1,336㎡를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그런데 이것이 매각을 요구해도 일정규모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일정규모에 들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일정규모 이상은 쉽게 매각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금년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로 정한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매수신청을 받아서 2005년도 초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각을 해나갈 계획임.

○ 도유재산관리의 유공공무원의 대우 관련하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특수공적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또 모범공무원 등 선발을 해서 포상으로 공적을 인정해 주는 방법 또 특별승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성과금을 주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 또 신분상의 혜택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적절히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 공적에 대한 대우를 반드시 하겠음.

[질문요지]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

○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의향 관련

[답변 :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1990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으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음. 충북개발연구원이 당초 경제연구소

로 출범함에 따라 전체 11명의 연구원 중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으로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지역의 연구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도에서 개발연구원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등 개발연구원의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아서 단기간 내에 필요한 분야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개발연구원의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신규 충원시에는 사회복지와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충북개발연구원의 보수 수준은 전국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할 때 중간정도 수준임. 충남, 경북, 대구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 경기, 강원, 대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재정형편상 급격한 보수의 인상보다는 타 시·도연구원과 균형있는 보수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이사는 총 18명이며 그 중 우리 도 실·국장은 3명으로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나머지 이사는 도의원, 개발연구원장, 출연기관인 조흥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학계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은 도가 출연기관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의향 관련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북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된 지휘체계나 지도·감독 면에서는 다소 유연한 조직이고 조직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전반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도 운영사례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규정 및 기구 등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음.

기획행정위원회 조계숙 의원

[질문요지]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추진대책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주최로 내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청원 등 3개 시·군에서 개최가 됨. 그리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게 되고 시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역시 4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게 됨. 또한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는 모두 우리 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임. 금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역대 어느 대회보다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사회적 편견을 고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음.

○ 이를 위해서 그간 이루어졌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한편 대회 홍보 및 손님맞이 준비에 있어서도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음.

○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장애인체전은 금년에 개최한 전국체전의 경험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체전이 되도록 말씀하신 바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음. 우선 지금까지 준비된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선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 승하차대 그리고 휠체어는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전국체전 때 이미 확보가 됐음.

○ 지난달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화합을 형상화한 엠블렘 또 마스코트 이 두 가지가 다 선정이 완료가 됐음. 그리고 장애인체전의 대

회 상징물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온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장애 선수들의 편의를 도와줄 이러한 자원봉사자제는 특히 1:1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그리고 경기와 각종 행사에 선수가족과 비장애인 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음.

○ 또한 선수들과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개회식, 폐회식 기타 모든 공식행사와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안마시연과 사진전시 등 이렇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음.

○ 금년도에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선수단이 금년도에 종합 4위를 차지했음. 내년도에는 여기에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면 경기력 향상도 무척 높아지고 또 전국에서 으뜸가는 장애인의 저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대회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아동학대 관련

○ 도내 그룹홈 관련

[답변 : 행정부지사 김영호]

○ 최근 경기침체, 실업증가에 따른 이혼, 가출 등 가정해체 요인이 늘어나면서 자녀에 대한 방임, 폭행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가정내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0년 10월부터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제천에 "충북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음. 또한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실, 응급치료실, 교육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 옥천, 영동 등의 아동을 위한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문제는 피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남부지역의 수혜 아동수, 잠재적 학대아동수 등 센터의 이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겠음.

○ 그룹홈 운영에 대해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운영지침과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그룹홈별로 종사자 각 1명씩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적하신 종사자 2교대 문제는 그룹홈 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또 2교대 근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음.

○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아동보호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요지]

○ 장애인 시책 관련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장애인 욕구조사 관련

○ 도내 계곡의 쓰레기 문제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1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임. 이 제도는 서울시가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의 요금을 받으며 연료비 및 인건비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년 동안의 운영사례 또 우리 도 지역 장애인들의 수요,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시행 이후 신규 및 변경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시설수 1만3,876건 중 1만165건을 설치하여 설치율이 73.3%이고 이중 3,116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설치 및 추진 중에 있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에서 건축관련 요원을 채용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목포시의 경우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를 보면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하여 건축 입안부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 도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무대상 건축허가시 시·군에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시·군의 편의시설관련 조례제정은 타시·도 사례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군에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겠음.

○ 장애인 욕구조사에 대하여.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급변하고 다양화된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권, 이동권 확보 등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도 각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군에 매년 복지관련 예산신청을 받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화된 욕구에 비해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사실임. 장애인 욕구조사는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깊이 동감함.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욕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도내 계곡의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행락철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등에 따라서 주민들의 야외활동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여건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가져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그 동안 도에서는 산 및 강·하천 등 행락지에서의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행락철마다 도민운동으로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 왔음.

○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처리 결과 2003년도에는 총 3,700건에 대해 3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중 주민이 직접 신고하신 2,000건에 대하여는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3,000건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주민이 직접 신고하신 2,600건에 대하여는 1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주민신고가 배 이상 증가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음.

○ 발생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실시한 국토 대청결 활동 결과로 2003년도에는 주요 관광지, 행락지 연 1만4,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학생, 기업체, 자연보호협의회, 민간사회단체 등 연인원 29만3,000여명과 차량 및 경운기 등 장비 2만8,000대를 투입하여 캔·병 등 재활용품 1만5,000톤을 포함한 쓰레기 4만7,000톤을 수거·처리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연인원 25만4,000명과 장비 7,800대를 투입하여 재활용품 2,300톤을 포함한 쓰레기 4,200톤을 수거·처리한 바가 있음.

○ 앞으로도 행락객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홍보와 더불어 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주민들이 쓰레기를 행락지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는 풍토를 조성하는 주민의식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음.

○ 이를 위해 대청호 및 충주호의 상류지역 시·군에 행락철 쓰레기 발생방지를 위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각종 시민사회단체, 언론·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주민홍보강화를 통한 의식 전환에 노력하겠음.

○ 주요관광지, 행락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실시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쓰레기 투기금지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또한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보전교육시행시 교육내용에 포

함시켜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금지 풍토가 주민의식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사업 참여와 더불어 민간협력사업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행락지에서의 쓰레기발생 방지대책부터 수거·처리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특히 행락지에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금지와 더불어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풍토가 주민의식개혁운동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음. 행락지의 하류지역이며 상수원인 대청호 및 충주호의 부유쓰레기 발생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 학력성취도 조사결과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2004년 9월 10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2001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보고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하여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명과 같이 2001학년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저희 도의 경우 도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6교 등 초·중학교 1%에 대한 표집학력의 결과로 충북학생 전체의 학력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시과정이나 방법 등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다고 생각함.

○ 현재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력수준 비교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의하여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력상황으로 연도별 분석결과 2002학년도 1만9,034명, 2003학년도 1만6,882명, 2004학년도 1만6,692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이었으나 350점 이상 고득점 학생이 2002학년도 212명, 2003학년도 251명, 2004학년도 271명으로 증가하였고 1등급 비율도 2002학년도 2.8%, 2003학년도 3.1%, 2004학년도 3.4%로 증가하였음.

2004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우리 도의 서울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2002년도 2.4%, 2003년 2.5%, 2004년 2.6%로 3년간 계속 상승세에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이후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충북교육 최우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육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수업★스타제 운영 등 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초·중·고 장학사별 학력제고 책임제 및 학력제고 지원단 조직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제고 지원금 지원 등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키고 있음.

○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각종 연수 실시 및 D-30 수능★스타 마무리 학습 전략 등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고3 학생의 학력제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범도민대책위원회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차 등으로 단위학교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학력제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교육장회의 4회, 교장 및 교감회의 4회, 전문직연찬회 3회, 학교운영위원장 및 지역사회인사와의 교육발전협의회 4회, 학부모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위한 진로지도설명회 4회 등 학력제고를 위한 각종 연찬 및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아울러 단위 학교별로 학교장, 교사,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학력제고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학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그리고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지향하는 충북교육행정 기본방향에 따라 학력제고도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와 각종 평가실시 결과분석에 따른 피드백 등 학생 학력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연구하고 추진할 것임.

[질문요지]

○ 아동학대 관련

[답변 : 부교육감 김용호]

○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한 현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의 전인교육의 책임을 담당하며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들이 학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관련자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치료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림.

○ 금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3,096회의 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403명의 담당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전문직연찬회 등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회의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은 물론 홍보에도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아동학대관련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아동스스로 자기방어와 안전을 위한 자기 보호훈련에 대하여도 사안에 적절한 학생상담교육을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당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도록 담임교사와의 대화, 자진신고 등의 방안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상담의 기회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담임교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하겠음.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 장학관 1명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례판정 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급학교 단위로 가정통신과 범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음.

[질문요지]

○ 특수교육과 관련

[답변 : 교육국장 김전원]

○ 도내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보면 2003년도에는 특수학급 담당교원 130명 중 자격증 소지자가 71명, 미소지자가 59명으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54.6%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원 133명중 자격증소지 교사가 96명, 미소지 교사가 37명으로 자격증소지 비율이 72.2%로 2003년도 대비 17.6%가 증가되었음.

○ 2005년도에는 공립학교 특수교사 담당교사 20명을 공채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 11월 1일자로 이미 전국에 공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중에 있음. 그렇게 된다면 2005년도에는 전체 특수학급 담당교사 133명중 자격증 소지자가 116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자격증 소지비율은 87.2%로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전체적인 공·사립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은 2003년도에 78%, 2004년도에 84.1%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89.2%가 확보되도록 할 예정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중 특수교육 비자격 교사를 점진적으로 자격증소지자로 대체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수교육 관련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는 시·도별 중등부 학급당 교원수가 전국 평균에 2.0명인데 비하여 우리 도는 1.48명으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임.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체 75학급에 교원수가 152명으로 2003년도 대비 41명이 증원되어 학급당 교원수가 2.03명으로 증가됨.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중등 공·사립특수학교교원 12명 정도가 증원될 예정으로 학급당 교원수를 2.13명으로 확보할 계획임.

○ 장애차별 사례중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시 학부모의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시 학부모나 보건교사가 학생을 보조하여 동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들의 도움으로 무리없이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내에서 학부모님들의 각서를 징구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림.

○ 참고로 도내 특수교육보조원 임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 5명, 2004년 83명을 임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신변욕구 및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한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사들이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각급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연수과정에 특수교육에 대한 강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담당자 연수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체험이나 장애학생과의 결연을 통해서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통합교육 실시로 장애 차별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특수학교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장애교육 욕구충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들의 교육낙원을 지향하는 핸드토피아 구현을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의 실천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충북특수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제4차 본회의 - 2004. 11. 12(금)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 도유임야확대조성
   ·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 5분자유발언(김홍운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11. 5(금) 14:01~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0시간 53분 (2시간 43분)	
1차(11. 5)	14:10~14:17	07분
2차(11. 8)	10:33~15:56	5시간 23분
3차(11. 9)	10:32~15:35	5시간 03분
4차(11. 12)	11:01~11:21	2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97.2%)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3차 본회의	27명	27	-	100
4차 본회의	27명	24	3	88.89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4.11. 5	1	1.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행정위원회	2004.11.10	1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 도유임야확대조성 ·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산업경제위원회	2004.11. 9	1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	4	4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2	2	2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

[주요골자]

○ 제234회 정례회 기간을 2004. 11. 20일부터 12.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30(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1. 2

○ 상 정 : 2004. 11. 10(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국유 충북도청 청사부지 무상양수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재산규모 : 대지 18,877.2㎡

○ 사업기간 : 2004. 11~12(2개월)

○ 재산가액 : 18,292백만원
○ 사 업 비 : 불 요
※ 청사개요
○ 연 혁
- 1896. 8. 4 충주시내에 도청 청사 신설
- 1908. 6. 5 청사이전(청주시 남문로 2가 현 중앙공원)
- 1937. 6. 청사이전(청주시 문화동 89 현 위치)
○ 부 지 : 30,690.0㎡(국유 18,877.2㎡, 도유 11,812.8㎡)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오창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 **도유임야확대조성**
-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30(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1. 2
○ 상 정 : 2004. 11. 10(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오창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53-3(오창과학산업단지내)
○ 단지규모 : 310,084.8㎡(93,800평)
○ 사업기간 : 2005. 1~12
○ 사 업 비 : 46,013백만원
- 국 비(75%) : 34,510백만원(232,563.6㎡)
- 도 비(25%) : 11,503백만원(77,521.2㎡)
※ 310,084.8㎡중 25%인 77,521.2㎡를 지분으로 취득

《 도유임야 확대조성 》
○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 등 4필지
○ 매입규모 : 202ha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 117ha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4-1 19ha

-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56-1 24ha
-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96 42ha

○ 사업기간 : 2005. 1~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3,000)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등 2필지
○ 사업내역
- 부지매입 : 3,154.0㎡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3,077.0㎡
  ·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2번지 77.0㎡
- 건물신축 : 지상 2층, 1,320.0㎡(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사업기간 : 2005 ~ 2006(2년간)
○ 사 업 비 : 1,970백만원(도비 1,970)

《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등 5필지
○ 사업내역
- 부지매입 : 6,480.0㎡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18-3번지 213.0㎡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1-2번지 423.0㎡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4,648.0㎡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4번지 264.0㎡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25번지 932.0㎡
  · 건물신축 : 지상 3층 3,300.0㎡(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사업기간 : 2005 ~2006(2년간)
○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4,500)

[심사결과]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1. 3(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1. 4

○ 상　　정 : 2004. 11. 9(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내용]

○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10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안 제4조 및 제5조)

○ 국내기업 지원대상(안 제8조)
-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한 후 상시고용이 100인 이상일 경우
- 낙후지역에 100인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기업 지원내용(안 제9조 내지 제12조)
- 입지보조금 : 매입토지가격의 50%범위내에서 지원
- 건축비등 보조금 : 20억 이상 투자액의 3%범위 최대 2억원 이내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20명 초과 1인 50만원 6월 범위

○ 외국기업 지원 대상(안 제22조 및 제23조)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 6월 범위 총 1억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 6월 범위 총 2억원

○ 지원금 재원분담 : 지방재정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함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안 제27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6 節 第234回 定例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4. 11. 11(2004 - 13호)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 개회 : 2004. 11. 20(토) 오전 11시

2. 會 期 : 2004. 11. 20 ~ 12. 20(3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005년도예산안 : 2건(도, 교육청)

○ 조례안 : 14건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건(도, 교육청)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0건	14	4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4. 11. 20(토)**

1. 제23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 5분 자유발언(강구성 의원)

- 대다수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전공노의 파업, 단체행동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4. 12. 13(월)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수정가결)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수정가결)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김환동 의원, 송은섭 의원)

- 문장대온천관광개발 재허가에 따른 개발저지 대책촉구와 관련
-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촉진대책 관련

□ 제3차 본회의 - 2004. 12. 20(월)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수정가결)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5.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6.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8.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9.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3.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14.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안가결)

15.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
16.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장주식 의원, 강우신 의원)
-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유치 무산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대책 촉구 관련
- 성숙한 질서의식 함양 촉구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11. 20(토) 11:00~11: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시간(1시간)	
1차(11. 20)	11:11~12:04	53분
2차(12. 13)	10:02~10:47	45분
3차(12. 20)	11:00~12:22	1시간2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5%)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3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3차 본회의	27명	25	2	92.6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4.11.30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14	2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17	3	1.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2004.12. 2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2004.12. 3	2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2004.12. 6	3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14	4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2004.12.15	5	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4.12.15	5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8-1.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9.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1.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교육사회위원회	2004.12. 2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충북과학대학
	2004.12. 3	2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004.12. 6	3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004.12. 7	4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14	5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12.15	6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 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04.12. 2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농정국
	2004.12. 3	2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2004.12. 6	3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 14	4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박종갑의원외5인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관광건설 위 원 회	2004.12. 2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004.12. 3	2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004.12. 6	3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2004.12. 7	4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12.14	5	1. 2004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나. 건설교통국 다. 소방본부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4.12. 8	1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2004.12. 9	2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4.12.10	3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04.12.16	4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6	36	17	19			
의회운영 위 원 회	6	6	4	2			
기획행정 위 원 회	11	11	6	5			
교육사회 위 원 회	8	8	4	4			
산업경제 위 원 회	4	4	1	3			
관광건설 위 원 회	3	3	1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	4	1	3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주요골자]

○ 제235회 임시회기간을 2005. 1. 11일부터 1. 14일까지 4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14(박종갑의원외6인)

○ 회　부 : 2004. 12. 15

○ 상　정 : 2004. 12. 17(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제10조)

○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과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 조사부분을 추가(별표 1~2)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함(안 제2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충청북도지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안 제3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간사는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안 제7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행동기간동안 존속(안 제10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참여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위원 위촉대상에 포함 (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종사자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94명 → 2,512명 (증 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3명 → 1,410명 (증 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 61명 (증 1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항)

- 광주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

○ 종전에는 평생교육시설용(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등록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안 제8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 신설(안 제16조제2항)

○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에게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안 제17조제2호)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변경(제4조제4항)

- 인력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 인력 · 재정동원지원반
- 건설수송지원반 → 산업 · 수송 · 장비동원지원반
- 통신지원반 → 통신 · 전산지원반
- 보급지원반 → 보급 · 급식지원반
- (신설) → 정부기능반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재학생 삭제(안 제7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안전관리과〕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위임사무 신설

○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하천, 제방)의 용도폐지" 위임사무 신설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국제통상과 소관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를 삭제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10(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10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감사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함(안 제2조)
○ 감사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 5인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
- 2인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7조)
○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함(안 제8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위원 위촉범위를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확대하고 대상인원은 기존 5인에서 4인으로 축소(안 제3조제1항제1호)
  ·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 5인
    →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 4인
-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도의회 의원 1인 추가
  (안 제3조제1항제2호 신설)
    → 도의회 의원 : 1인
-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안 제3조제1항제3호로 함

◉ 충청북도민감사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10(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10
○ 상　　정 : 2004. 12. 15(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도민감사관은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
○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공무원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1. 1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1. 11
○ 상 정 : 2004. 12. 14(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4(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 → 연 1%로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5% → 연 12%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 지난 200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11. 11

○ 상 정 : 2004. 12. 14(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교육감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중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제8조제2항)

○ 교육감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제10조제1항)

○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하고(제14조제1항)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함(제15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4. 12. 14(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개정

○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징수(안 제4조)

○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 예약유효(안 제6조)
○ 예약취소에 따른 예약금의 위약금 처리(안 제7조)
○ 산림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조항 신설(안 제11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년도충청북도예산및수정예산

[심사경과]

○ 제 출
- 당초예산안 : 2004. 11. 11(충청북도지사)
- 수정예산안 : 2004. 11. 29(충청북도지사)

○ 회 부
- 당초예산안 : 2004. 11. 11
- 수정예산안 : 2004. 11. 29

○ 상 정 : 2004. 12. 8(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12. 9(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12. 10(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1,314,189,718	1,314,189,718	12,517,835	12,517,835
의회운영위원회	5,155,081	5,208,281	0	53,200
기획행정위원회	326,761,722	315,359,337	12,517,835	1,115,450
교육사회위원회	354,959,924	362,252,784	0	7,292,860
산업경제위원회	275,056,538	278,649,068	0	3,592,530
관광건설위원회	352,256,453	352,720,248	0	463,795

○ 특 별 회 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440,592,498	440,592,498	48,200	48,200
지역개발기금	285,426,972	285,426,972	0	0
공영개발사업	17,958,509	17,958,059	1,200(예비비)	1,200
충북과학대학운영	5,432,842	5,432,842	47,000(예비비)	47,000
의료급여기금	101,724,498	101,724,498	0	0
농어촌개발기금	6,278,353	6,278,353	0	0
학교용지부담금	19,333,324	19,333,324	0	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438,000	4,438,000	0	0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요지

·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1조 7,547억 8,221만 6천원 중 일반회계 125억 6,074만 5천원, 특별회계 4,820만원 등 125억 6,603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11. 11

○ 상 정 : 2004. 12. 10(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요 구 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1,157,956,559	1,157,956,559	646,696	646,696
유치원	9,999,174	9,999,174	0	0
초등학교	138,661,947	138,794,227	0	138,280
중 학 교	59,817,675	59,975,535	0	157,860
고등학교	53,731,335	53,745,375	0	14,040
특수학교	4,464,901	4,474,801	0	9,900
기타학교	233,116	233,116	0	0
평생교육	2,140,566	2,140,566	0	0
급여관리	822,654,318	822,765,684	0	111,366
교육위원회	438,833	456,833	0	18,000
선거관리	0	0	0	0
교 육 청	18,176,739	18,258,989	0	82,250
지역교육청	6,112,349	6,213,349	0	101,000
교육지원기관	18,735,563	18,755,563	0	20,000
지방채상환	9,697,897	9,697,897	0	0
제지출금	0	0	0	0
예 비 비	13,092,146	12,445,450	646,696	0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4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

[심사경과]

○ 제 출

- 당초예산안 : 2004. 12. 9(충청북도지사)
- 수정예산안 : 2004. 12. 13(충청북도지사)

○ 회 부

- 당초예산안 : 2004. 12. 9
- 수정예산안 : 2004. 12. 14

○ 상 정 : 2004. 12. 16(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2,175,403,158	2,177,465,275	2,062,117	0
일반회계	1,689,294,713	1,691,356,830	2,062,117	0
특별회계	486,108,445	486,108,445	0	0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4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8(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12. 9
○ 상 정 : 2004. 12. 16(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요 구 액	수 정 내 역	
			증	감
합 계	1,149,714,951	1,159,203,804	13,484,212	3,995,359
인 건 비	784,557,351	780,561,992	0	3,995,359
경상사업	195,209,006	197,134,009	1,925,003	0
시설사업	131,170,312	138,220,912	7,050,600	0
채무상환	25,909,571	25,909,571	0	0
예비비및기타	12,868,711	17,377,320	4,508,609	0

[주요내용] 원안가결

第 7 節 第235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1. 3(2005 - 1호)

※ 정윤숙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1. 11(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1. 11 ~ 1. 14(4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 조례안 : 4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6건	4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1. 11(화)**

1.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 **회의록서명의원 :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1. 14(금)**

1.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수정가결)
4.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1. 11(화) 14:00~14:10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9분(19분30초)	
1차(1. 11)	14:10~14:18	8분
2차(1. 14)	11:05~11:36	3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2%)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5. 1.11	1	1. 제2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협의의건
교육사회위원회	2005. 1.13	1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2005. 1.13	1	1.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1.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005. 1.14	1	1. 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2. 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회간사선임의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2005. 1.21 (폐회중)	1	1.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관련우리의입장 성명서채택의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0	10	5	1			4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교육사회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4	4	3	1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3	3					3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주요골자]

○ 제236회 임시회 기간을 2005. 2. 15일부터 2.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29(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4. 12. 30
○ 상　정 : 2005. 1. 13(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병설유치원 3개원(사천초, 죽림초, 내토초) 및 초등학교 2개교(사천초, 죽림초), 중학교 1개교(금천중)를 신설하고,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분교장 1개교(장연초 광진분교장), 분교병설유치원 1개원(장연초 광진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14(정상혁의원외8인)
○ 회　부 : 2004. 12. 14
○ 상　정 : 2005. 1. 13(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제2조, 제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 8.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 8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제9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5. 1. 13(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협의 등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도지사)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

○ 조사·연구(안 제8조)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
-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내 지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5. 1. 13(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
- 나머지 금액과 발행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재난의 사전대비,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안 제5조)

-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실비지원
- 주택임차비용 융자 : 소요액의 70%, 융자한도액 3천만원 이하

○ 종전의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2. 8

○ 상 정 : 2005. 1. 13(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 구성(안 제3조)

-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단 회의(안 제6조)

-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 수당 등 지급(안 제13조)

- 자문단회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8 節 第236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2. 2(2005 - 2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2. 15(화)오후 14시 01분

2. 會 期 : 2005. 2. 15 ~ 2. 25(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오장세 의원)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 (한창동 의원, 정상혁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0건	7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2. 15(화)

1.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오장세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2. 25(금)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한창동 의원, 정상혁 의원)

※ 회의록서명의원 : 이기동 의원, 이필용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2. 15(화) 14:01~14:11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34분(42분)	
1차(2. 15)	14:11~15:03	52분
2차(2. 25)	11:00~11:32	3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4%)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
2차 본회의	27명	25	2	9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5. 2.15	1	1.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 2.16	1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2005. 2.17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2005. 2.18	3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나. 기획관리실
	2005. 2.21	4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 2.16	1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나. 충북과학대학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 2.17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교육청
	2005. 2.22	3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2005. 2.23	4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산업경제 위 원 회	2005. 2.17	1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2.21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원
	2005. 2.23	3	1. 2005년도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관광건설 위 원 회	2005. 2.16	1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 2.17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소방본부
	2005. 2.23	3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7	1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3	3	2	1			
교육사회 위 원 회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37회 임시회 기간을 2005. 3. 15일부터 3.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선진의정 실현

○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정책기능 활성화

○ 열린의회, 투명한 의정실천

○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강화

○ 의정활동 홍보강화

○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

○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
○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기획행정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보관실 소관]

○ 도정에 대한 전방위홍보 강화
○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홍보
○ 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홍보
○ 동영상홍보물 제작 홍보

[감사관실 소관]

○ 반부패대책 추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실행
○ 예방·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 실시

[기획관리실 소관]

○ 변화에 대응한 도정 종합계획 및 조정
○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 주요도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으뜸충북 이미지 제고
○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구현
○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마련
○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테마회의 운영

[자치행정국 소관]

○ 앞서가는 도정구현
○ 도민과 함께사는 열린행정 구현
○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
○ 차세대 정보화의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 도민안전을 보장하는 생활민방위대 실천
○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

[청주의료원 소관]

○ 책임경영 구현

○ 효율적 병원관리로 재정자립도 강화

○ 신뢰와 사랑받는 진료환경 조성

○ 공공보건의료사업 확충

[충주의료원 소관]

○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

○ 경영성과를 반영한 직원보수 지급

○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교실 운영

○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

○ 공공의료사업의 시행·확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대응·전략 마련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지역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분석

◉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2. 2(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2. 2

○ 상　정 : 2005. 2. 21(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상향조정

· 공휴일 30,000원 → 공휴일(오전) 40,000, 공휴일(전일) 50,000원

· 평　일 15,000원 → 평일 20,000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2. 11

○ 상　정 : 2005. 2. 21(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명칭변경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

○ 분장사무 조정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등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 기획관리실)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 건설방재국)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2.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2. 11

○ 상　정 : 2005. 2. 21(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512명 → 2,538명(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10명 → 1,436명(증 2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환경국 소관]

○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 구축

○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 및 의료지원
○ 고령화사회의 노인 웰빙시책 추진
○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충북 구현
○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
○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물 안정적 공급

[여성정책관실 소관]

○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폭력방지체제 강화
○ 양성평등의식 확산
○ 여성 및 아동보호서비스 확대

[충북과학대학 소관]

○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정보화를 통한 열린학사 행정서비스 구현
○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
○ 대학의 홍보활동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구현
○ 지역 기업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

[공무원교육원 소관]

○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직무교육 강화
○ 건강한 사회·활력있는 으뜸도민 양성
○ 교육원의 자체교육실시 역량강화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 이미지 제고
○ 혁신마인드 형성 교육과정 운영
○ 참여·토론식 교육훈련 시행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
○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
○ 보건환경분야 기술 지원사업 확대

○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 추진
○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

[교육청 소관]

○ '행복다큐' 교실이 달라진다.
○ 지도 · 예방감사, Ede-Clean 청렴행정 추진
○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들이 혁신역량 강화
○ 학습의 날 운영
○ 교수 · 학습방법 연구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 민원인 중심 전자민원창구 개편
○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

□ 산업경제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창출
○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
○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 육성
○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

[농정국 소관]

○ 미래형 바이오 ·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 개방화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 농업생산기반 확충
○ 축 · 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확보
○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원화

[농업기술원 소관]

○ 식량 · 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 친환경 농업개발과 고품질 버섯 생산 연구
○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과제 기술보급
○ 조화로운 삶을 위한 농촌자원 가치 증진
○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기능강화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안 : 2005. 2.　2(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2.　2(산업경제위원회)
○ 상　정 : 2005. 2. 17(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제안이유]

○ 조례명을 변경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및 기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 창달
○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청소년 육성
○ 편리한 관광기반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의 육성
○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

[건설교통국 소관]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역관리
○ 재난 최소 으뜸안전충북 구현
○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
○ 으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확충

[소방본부 소관]

○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범도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종합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
○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확립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조기 활성화
○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 중부권 국제비지니스 교류공간 마련
○ 오송단지 해외투자 유치방안 개선
○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 개선사업

第 9 節 第237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3. 4(2005 - 4호)

※ 조계숙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3. 15(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3. 15 ~ 3. 25(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조례안 : 5건

○ 일본시네마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8건	5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3. 15(화)**

1. 제23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정상혁 의원)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이광종 의원, 이범윤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3. 16(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질문요지]

○ 노인 일자리 창출대책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최근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관련 업무량이 무척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전담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동감.

○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문제는 도, 시·군, 읍·면·동의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인도우미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또한 적지 않은 추가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현재의 여건으로써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직업전문학교에 노인교육반과 시·군별 노인직업양성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맞춤형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채용코자 하는 수요처가 충분히 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태를 조사해 보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고 또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조치를 하겠음.

○ 농촌노인들이 만든 전통공예품 육성사업은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값진 사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역시 판로개척이나 홍보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아직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홍보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 강구.

○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에 노인인력 취업비율 명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100을 고령자로 채용하도록 규정. 앞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노인인력의 취업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도록 조치하겠음.

○ 택배, 도시락사업, 유기농사업, 번역, 통역사업 등의 창업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들이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할 경우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운영해 본 후에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음.

○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 등의 간병사를 노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간병사는 간호조무사학원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후 수료증을 받은 분들로서 현재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간병사를 채용하고 있고 또 의료원이나 충북대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간병 일은 간병사 1명당 6~8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하고 또 하루 2교대로 운영하는 등 상당히 힘드는 일이 많으므로 노인들의 일자리로 과연 합당한가를 관련기관 또 관련자들과 검토해 본 후에 필요하다면 또 체력이 좋고 또 간병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우선 1~2일 정도 현장견학도 시켜보고 또 실습 등을 실시한 후에 그 이후에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음.

○ 기업체의 노인 채용 협의와 시·군 공동 작업장 설치문제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일정비율의 인원을 고령자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의 호응도가 높지를 못함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관내 기업에 대해서 노인들을 채용하도록 적극 권고토록 하고 또 기업체와 시·군노인회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시·군에 공동작업장이 더 확대 설치되도록 권장도 하겠음.

○ 공무 재택 택배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읍·면·동의 공문서 전달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시·군에 통보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향후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노인분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병행하겠음.

○ 도정소식지 등 시·군에서 발송하는 우편 발송대행업체를 시·군노인회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도정소식지는 노인회의 업무처리 능력과 또 장비운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볼 사항임. 시·

군소식지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시·군노인회와 협조하여 노인들을 좀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시·군에 적극 권고해 나가겠음.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와 건강관리 등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금년에는 청주, 충주, 청원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시작을 하고 2006년인 내년에는 시·군당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

○ 도청 담장철거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계획

[답변 : 행정부지사 김영호]

○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는 1922년 토목관구사무소로 출범하여 중기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2001년 9월 "도로관리사업소"를 "개발사업소"와 통합 "건설종합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였고 2003년 1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개발사업기능은 이관하고 건설부문의 주요기능인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전담조직으로 기구를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종합본부의 주요기능은 지방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과적차량의 지도단속과 건설공사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가경택지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미분양 필지 매각업무와 체비지를 관리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첨단기술 산업체 입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국 광역 시·도의 관련 사업소 운영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가 건설본부를 설치하여 도로보수유지와 건설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충남·경북 3개 도가 광역시와 같이 도로보수유지 기능과 건설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전북·전

남·경남 등 4개 도는 도로보수 유지 관리를 주로 하는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명칭은 건설종합본부이나 업무기능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 방안은 도로개설 및 하천유지관리, 건축공사의 감독 등 종합적인 기능수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청과 업무기능의 일부 중복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력증원 문제 그리고 중앙과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 문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종합본부와 본청의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기구기능을 보강하는 방안과 도로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도청 담장철거 문제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계획에 대해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2003년 4월부터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 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제2별관은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족한 청사형편상 혁신분권담당관실,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청소년상담실이 입주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담장은 그대로 두고 미관을 저해하는 스레트지붕의 차고 등을 철거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한 상태임.

○ 지방경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청사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 경찰청 1층을 도정 및 지역상품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경찰청 앞부분의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 청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음. 다만 도청 담장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잦은 시위 및 보안·경비문제 등으로 청사관리종합계획 확정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들에게 친근감과 만족을 주는 청사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질문요지 】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할 사업이 87개이고 임기내 착수 및 기반조성할 사업이 43개 사업임.

○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해 말까지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등 2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10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

현재 사업비는 총 5조2,771억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 5조8,575억원 대비 90.1%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조3,235억원으로 투자계획 1조5,248억원의 86.7%를 확보한 바 있음. 앞으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예산 등 소요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해서 임기내 완료한 87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질문요지]

○ 입찰수수료 폐지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문제

○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입찰수수료 폐지문제는 저희 도청과 3개 시 즉 청주, 충주, 제천시는 이미 징수를 폐지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입찰수수료 수익이 군당 평균 3억원에 달해 빈약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징수폐지 권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군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폐지시점의 형평성 관계로 군의회간 협의, 조율하여 금년 중에는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조례를 조기에 폐지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음.

○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추정

가격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견적서 제출 희망자 모두에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경쟁입찰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불식 등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액공사도 경쟁입찰에 붙이고 있는 실정임

7,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당해 경리관의 법적 고유권한으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균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치단체별 예산지원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급식비, 운영비 등을 시·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역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78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가 6억3,400만원, 운영비가 9,500만원, 피복비 1억원, 차량유지비 6,100만원 등 총 11억원을 지원해서 방범대별로 평균 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로 당초예산에 1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참고로 전국 시·도 평균 연간 지원액을 보면 1개 방범대별로 연간 최저 60만원에서 많게는 6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타 시·도의 지원사례를 수시로 파악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충청북도 생태지도 제작 · 활용방안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지금까지는 국토이용변경협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환경부에서 제작 배부한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였으나 현재 생태자연도는 녹지등급, 식물상, 지형 및

지질 등 일부 요소만 평가되어 있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환경부에서는 현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환경 정보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산림청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97년서부터 금년까지 약 9년간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생, 야생동·식물, 산, 하천, 농지, 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

○ 금년에 확정 고시되는 생태자연도는 야생동·식물, 자연경관, 습지 등이 추가됨은 물론 산림청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 영상정보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환경부에서 제작한 생태자연도보다 더 세밀한 우리지역 고유의 생태지도를 작성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하도급지역할당제나 사업허가시 지역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지역업체 육성 방안으로 대형아파트와 건설공사의 지역전문건설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나 사업허가시 단서조항을 명시한 사업승인은 현행법상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급적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 관련부서, 시·군 및 유관기관의 협조요구 등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주 신영지구의 하도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12개사가 참여해서 총 공사비 371억원 중 135억원인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오창단지 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등에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권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학력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여건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교육경비 유치를 위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도에 38억원, 2004년도에 33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여건 조성에 사용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로써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청주시에서 시세수입액의 2%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30억여원의 교육경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학교에서의 정수기 설치 시정 요구와 수질검사 강화 대책

[답변 : 교육국장 노재전]

○ 학교에서의 정수기 사용은 잘못하면 수도관리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교과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수도사업소 등 물 관련 기관의 현장학습 권장, 학부모에 대한 홍보활동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전환 및 불신 해소와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음.

○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105개 학교 중 2008년도까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는 52개교로서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 급수시설 개선 계획에 의거 2008년도까지 4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수배관 교체와 상수도 인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7개교에 6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지하수 사용 학교의 수질검사 강화대책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연 4회 수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시설에 한하여 음용하도록 조치하고 갈수기 및 우수기 등 수질변화가 심한 시기 등을 택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연 2회 학교 음용수에 대한 표본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공유재산 관리 철저

[답변 : 부교육감 김용호]

○ 행정재산은 그 자체로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고 있어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놓을 경우, 향후 처분이 필요할 때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매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 도모에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및 사권설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잡종재산에 비해 재산의 관리에 효과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잡종재산으로의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파악하여 잡종재산으로의 전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재산상 세외 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관장 사택의 기능이 점점 미약해지면서 도내 총 511동의 사택중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117동, 일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이 302동,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사택이 7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사택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택 등은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질문요지]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의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딴 작목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작목이 있거나 시장성이 높은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단지화나 또 브랜드화 등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품질의 차별화는 물론이요 지명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득작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새로운 신품종의 육성과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음

○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서 작년도에 1억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상향 조정을 해서 1억5,000만달러 정도를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그 동안 우리 보은과 옥천, 영동의 남부3군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부터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지난해까지 총 829억원이 투자돼 대표적인 특화품목인 포도, 표고버섯, 감, 대추 등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가 되어 왔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고품질 특화품목을 적극 개발·육성하면서 첨단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농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질문요지]

○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

○ 주민자치센터 운영

○ 공정한 공무원 인사운영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최근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지역간 지나친 유치경쟁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군간 지역갈등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 실·과·사업소 및 시·군 실무담당을 대상으로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의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전 교육과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해소를 위한 공무원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각 과정별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단민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 갈등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시행까지는 동법 기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갈등의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

○ 도에서는 지난해에 지역간 갈등과 집단민원 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국책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선정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영향분석을 실시해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가겠음.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그 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양함양, 복지·생활편익, 영농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999년도부터 도내 153개 읍·면·동의 70%인 107개소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농교실, 한지공예와 같은 농한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소재지 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직접선출 문제는 비용문제도 있고 또 무보수직으로 입후보자가 많을 것인지도 확증이 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위원회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면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평가단 구성시 연고·학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직장협의회에서 평가위원의 50%를 추천받아서 평가시작 약 30분전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 다면평가가 평가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점수의 강제배분 또 평가요목의 객관성 유지 등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나가겠음.

○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무

원의 개인능력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다만 사무관 인사교류는 행정환경변화와 도, 시·군의 입장차이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따라서 도에서는 사무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금년 2월에 다시 개별 시·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인사교류방안을 확정하고 전 시·군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류를 희망하는 시·군만이라도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임.

○ 일반직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들이 시험준비에 치중함으로써 업무 공백도 있고 또 시험준비의 부담으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등 시험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임.

○ 또한 금년 2월에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현행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음.

[질문요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지역갈등 대처방안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도에 보다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 다만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관이 확정되어 시·군에 배치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전하는 기관의 의견과 우리 도의 균형발전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이로 인해 시·군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남부3군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갈등 해소방안

[답변 : 농정국장 우병수]

○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인 남부권에 BT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적화된 100만평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바이오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도에서는 남부3군에 대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남부3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또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제3차 본회의 - 2005. 3. 17(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질문요지]

○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미친 성과

○ 금년에 개최되는 양 체전의 예상성과

○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

○ 소년체전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상황

○ 향후 10년 후의 남부권 농촌경제에 대한 전망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지난해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체전사

상 최대 규모인 13개국 해외동포선수단을 포함해서 2만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함으로써 규모도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184개의 풍성한 신기록까지 수립. 또한 바이오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개회식과 폐회식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널리 알렸음.

우리 충청북도의 경기력이 종합 3위로 크게 도약했고 투입예산의 2배에 달하는 1,5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606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거둠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체전의 효과도 확실히 거두었음.

○ 앞으로 꿈나무선수 육성, 또 우수선수 확보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광지, 숙박, 쇼핑시설 등 관광여건을 개선해서 작년에 부족한 점들을 다시 채우고 다시 찾고 싶은 충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음.

○ 체전지원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에 대해 작년에 있었던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1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만여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체전준비기획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컸음.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훈·포장 등의 시상과 함께 체전준비기획단의 우수한 인력들이 도정발전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나가겠음

○ 금년에 개최되는 양 체전의 예상 성과에 대해, 장애인체전은 우리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국단위 장애인스포츠 제전임. 우리 도내 6만여 장애인들의 생활재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희망과 사랑, 감동과 보람의 체전이 될 것임.

또한 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정신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전인교육의 기회가 되는 한편 충북체육의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행사계획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있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개회식·폐회식과 또 12개 시·군의 성화봉송을 통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계속해서 널리 알리고 또 160만 전국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의 체전으로 연출할 계획임.

개·폐회식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1대1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또 시

상방식을 종전의 메달방식 시상에서 이제는 종합시상으로 변경을 하면서 모든 참가선수에게도 기념메달을 수여해서 인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할 계획임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숙박과 교통, 관광, 안전과 질서 유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역대 최고의 스포츠제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에 대해서 이번 체전을 계기로 40여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장애인전용 다목적체육관과 론볼, 그리고 휠체어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청주종합경기장에는 60석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인석을 설치하는 한편 13개의 경기장에는 이동경사로, 점자블록, 보조장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 소년체전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상황에 대해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조직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전, 물자지원, 경기장 안내, 시·도선수단의 숙소대책과 의료지원, 체전홍보 등을 전담함.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시·도선수단의 자매결연, 또 환영 영접과 응원, 선수 선발과 강화훈련 등을 맡고 있음.

충청북도체육회에서는 경기장의 지정, 경기운영의 확보와 교육, 대회운영, 경기진행용품 확보 등의 임무를 분담하고 있음.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홍보계획을 수립해 두었음. 오는 3월 21일 대회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등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광고, 교통방송, 옥외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홍보와 기념 및 후원사업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음.

○ 향후 10년 후의 남부권 농촌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중

부권·북부권과 비교해서 10년 후에 남부권의 농촌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인 바이오농업 특화지구의 조성과 바이오건강식품의 개발, 체험관광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보은지역의 대추, 옥천의 묘목과 포도, 영동의 포도·감 등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우리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탄탄하게 갖추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함.

○ 또한 이웃에 건설되는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행정도시에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첨단 바이오농업지역으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질문요지]

○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향토음식축제 및 충청북도와 시·군의 모범업소 지정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우리 지역의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온 고유의 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특산물을 주 원료로 한 새로운 음식개발을 위하여 매년 청주문화방송과 공동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동안 개발된 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는 충주의 꿩 샤브샤브, 옥천의 도리뱅뱅이와 생선 칼국수, 영동의 우렁쌈밥과 어죽, 제천의 민물비빔회와 박달재 도토리묵, 괴산의 올갱이국밥과 민물매운탕, 진천의 초평 붕어찜, 단양의 마늘국수와 마늘버섯전골 등이 있음.

○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업소와 20년 이상 가업을 전수하여

온 대물림 업소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 도의 대표적 음식으로 전국의 관광객에게 각인시키지 못함.

따라서 금년부터 개최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신상품 개발과 함께 시·군 향토음식의 요리 시연회와 무료시식 등 「향토음식축제」의 장으로 전환하여 모름지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 그리고 도 우수 모범업소 212개소와 시·군의 모범음식점 946개소는 음식의 맛과 깨끗한 시설, 법규 준수 등을 중점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도 우수 모범업소는 지정당시 업소당 200만원 이상, 모범음식점은 시·군별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음.

○ 「유명 음식촌 브랜드」개발을 음식의 맛과 시설 등 내적요인보다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 접근성과 관련한 외적요인에 치중하여야 할 때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 대안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함.

유명 음식촌 집단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는 있지만 음식촌은 주로 관광지 주변이나 인구 유동성에 따라 조성되고 있어서 인위적인 집단 음식촌 개설은 소기의 목적 달성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향토음식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별로 민간과 단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학에 용역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52개 품목을 시·군 향토음식으로 우선 지정하였고 점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으로 압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따라서 앞으로 시·군에서 개발한 향토음식이 지역의 지명이나 특산물, 자연명소 등과 연계된 유명 브랜드가 되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명실공히 우리 도의 대표 음식으로 전국에 널리 인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요지 】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와 투자확대 방안

○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 친환경임산물 활성화의 사업별 추진실적과 부진내용 및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실천계획

[답변 : 농정국장 우병수]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총 829억원을 투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해 왔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옥천·영동의 대표적 농가소득 작목인 포도의 비가림시설 569ha를 지원하여 노지포도보다 2.3배 높은 소득을 올렸고 표고 및 영지재배시설 7ha와 감나무 209ha를 식재해서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보은의 경우 대추과원 295ha와 키 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등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시켜 농가소득을 한층 높이고 있음.

또한 채소 비가림시설 및 자동하우스설치 72ha를 비롯해서 관·배수 및 방조망시설 113ha, 중·소형 관정개발 92공 등을 설치해서 열악한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저온저장시설 1,870평을 비롯한 대추, 감 건조장 1,320평, 유통시설 1,650평, 포도 가공시설 14개소 등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이외에도 각종 농기계장비 211대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에 집중 지원하고 생력재배를 통한 경영비의 절감과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36개 분야에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금년에도 도비 20억원을 비롯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6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남부 3군의 모든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흡족한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앞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을 해서 지원시책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규모를 금년도 1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 정도로 늘리고 보조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해서 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업 육성은 시대적인 과제라는데

공감.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90년대까지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임.

○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야별로 추진한 성과는 토양검정장비 현대화, 폐영농자재 수거 등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에 9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 축산분뇨자원화 등 종합농토배양에 314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댐주변 친환경농업육성·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1,501억원, 친환경임산물 유통활성화 및 산림환경개선에 714억원 등 총 2,621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비 132%의 실적을 달성했음. 또한 2004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1,888ha,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2,142호까지 확대하였고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 3,099톤에서 5만5,560톤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통한 육림사업은 어린 나무가꾸기 등 5종에 7,465ha를 추진하였고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육림사업 1만1,783ha와 사방댐 65개소를 추진하였음.

또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사업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9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임산물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임산물생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24.4ha, 대추생산지원 18개소, 밤작업로 170km를 추진하였음.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규격화 39개소, 저온저장시설 195개소를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714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비 110%의 성과를 달성했음.

표고재배시설 등 단기임산물생산사업은 자부담 및 융자로 인한 신청기피로 다소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음.

○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중장기실천계획은 이미 미래형 고부가가치 바이오친환경농업육성 10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음.

향후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안전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며 실천하기 쉬운 친환경농법을 개발·보급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인증 확산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을 현재 1,888ha에서 1만3,000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현재의 2,000호에서 8,000호로 육성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문요지]

○ 남북3축 보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

○ 수해복구공사 관련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연계 교통망 형성과 신행정도시권의 미래에 대한 고속, 고급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특히 낙후된 우리도 남부지방의 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기왕에 2001년 12월 수립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또 금년 1월 수립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중부고속도로 증평IC에서 미원을 거쳐서 보은~영동~무주~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계획을 앞에 두 계획에 반영했으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4년 8월 30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었으나 신행정수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제4차 국토계획 수정안이 당초에 보류된 바가 있었음.

○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금년 3월경까지 확정한 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안을 재검토할 계획임.

따라서 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

획 수정을 할 때 우리가 계획한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계획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하천공사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기준을 설명 올리면 사업지구의 여건분석과 지형측량을 통해서 구조물 등을 먼저 조사하고 계획홍수량을 산정해서 산정된 것을 가지고 계획하폭과 제방단면 등을 결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음. 특히 하천공사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계획홍수량은 현재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지방1급 하천의 경우에는 80년에서 200년 빈도치를, 지방2급 하천의 경우는 50년에서는 200년 빈도치를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개 하한치 바로 인근수치를 적용하게 됨.

하천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설계빈도치보다 높은 빈도치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그렇다고 빈도치를 너무 크게 적용하게 되면 필요이상의 단면으로 설계돼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됨.

○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지역이 영동군 상촌면 지역의 고자천, 궁촌천 수계의 6개 사업장으로서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가 내륙으로 접근하면서 9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월 13일 새벽 2시 사이에 상촌면 민주지산 일대에 8시간동안 약 155㎜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던 4개 사업장에 약 5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음.

우리 도에서는 수해피해조사와 함께 수자원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즉시 피해의 원인과 복구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피해 원인으로는 물한계곡 등 산간지역에 위치한 사업지구 상류에 단시간 내에 집중폭우가 내리면서 급한 하상 경사와 빠른 유속 및 와류에 의한 하상세굴과 구조물 기초가 세굴이 돼서 호안공이 전도되거나 미끄러지는 피해가 발생된 것이며 상류측 미개수구간에서 다량의 토석이 유입돼서 공사중인 사업구간 내에 퇴적되면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홍수위 월류, 호안 비탈머리 세굴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됐음.

○ 우리 도에서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소요액 16억2,200만원 중에 설계에 기왕 반영돼 있던 5억9,800만원은 시공회사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삭감하고 호안 기초보강 및 하상세굴방지를 위해서 시설보강

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10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음.

○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해복구 등 하천공사 실시설계시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지형조건 검토는 물론 농업용 보 등 기존시설의 보강대책 및 하천설계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해서 "매미" 피해 및 복구의 경험을 살려서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 전국소년체전의 차질없는 준비대책 마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지난해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충북이 종합성적 3위, 고등부 3위로 입상하여 우리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였음.

○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과를 예측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는 달리 점수집계가 아닌 메달집계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순위를 언론 등에서 발표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순위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년체육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되기 때문으로 이번 대회의 목표는 10위권 이내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년체전지원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작년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표창과 연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예년의 타 시·도 대회보다 품격 높은 개회식 연출을 위하여 연출전문 이벤트회사를 충북도내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개 업체를 선정, 개회식 행사 컨셉을 "나눔, 그리고 동감"으로 설정하고 생명과 힘이 넘쳐나는 특색있는 연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행사의 출연프로그램은 도내학교를 대상으로 현상 공모방법을 통해 7개교 7개 작품을 선정하여 출연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전국소년체전기념 백일장 사생대회를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개최하여 문화체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국악 등 7개 분야에 걸쳐 펼쳐지는 "청풍명월 청소년 孝 한마

음 축제"의 당초 개최기간을 조정하여 대회기간인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함으로써 타 시·도 선수단도 동참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우리 교육청은 도청 및 충북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교육청에 소년체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소년체전 업무 추진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색 있고 품격 높은 개회식 연출을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각 시·도 선수단과 경기장 인근 학교간에 자매결연 및 응원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경기장의 환경정비, 전산보조요원 선발 지원 등 도청 상황실의 업무 지원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료 후부터 올해의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전략종목인 인라인롤러, 씨름, 체조, 역도종목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동계강화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년체육대회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널리 알리고 도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별로 소년체전 홍보와 아울러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는 전광 알림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용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입상작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또한 신문, 방송을 통한 체전 홍보로 보다 널리 알려 여러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우리 고장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의 후한 인심을 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도내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운행 관련

○ 시설공사 관련

[답변 : 부교육감 김용호]

○ 운전기사 1명인 학교의 당해 운전기사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 1월 28일자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소속공무원 중 대형면허소지자 44명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하여 사전에 운행구간, 교통법규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 다음 학원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사설학원 차량의 안전운행 지도대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도내 1,900여개의 학원 중에 848개 학원에서 총 1,01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자가차량이 684대, 지입차량이 328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학원운영 조성을 위하여 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생 수송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학원 차량 모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앞으로도 사설학원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원장 및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학원점검 시 승하차 요원 탑승지도, 종합보험 가입증서의 사본 비치 등 엄격한 확인지도로 학원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농촌지역의 103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54대로서 이는 농촌지역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음.

자체차량 운행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통·폐합을 염려한 동문들이 운행하는 경우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부형들이 자체 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있는 경우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자체 통학차량 9대에 대하여도 경비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도내 소규모학교 수를 감안할 때 재정여건상 모든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정부에서도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동 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농촌의 소규모학교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음.

○ 추가공사는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추가공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총 53건으로 약 56억여원이 증액되었음.

○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설계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기초 지반의 상태, 철근단가 인상 등 공사단가 인상분 조정, 마감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추가, 공사현장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 등 토목공사 추가, 신설학교의 수용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음.

계약을 변경하여 당초 계약업자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업자에게 추가이익이 발생하고 건설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로서 변경하지 않으면 건물 완공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으며 이러한 계약변경은 모두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여 왔음.

○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급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부터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 시행에 대하여 상시 일상감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 발생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도 주기적으로 수감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감사를 수감하여 왔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

○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는 당초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동시에 확보하여 완벽하게 설계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현장여건, 관련 기관과의 협의관계,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 앞으로 자체감사 강화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등 시설공사가 투명하고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질문요지]

○ 경제분야의 예산편성 현황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 친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기업규제 완화대책
○ 향토기업 육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다만 금년도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외형상으로는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지만 이는 예산편성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작년보다 대폭 증가되었음.

○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에서 차입해서 지원했는데 그에 따른 도 출연금 180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다시 기금으로 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차입이 중단이 되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180억원이 일반회계의 계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임.

도예산에 편성하여서 시·군에 지원해 오던 실업대책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시·군예산에 직접 편성되게 되었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24억원이 실제로는 나가면서 도예산에 형식적으로 감액되는 등 총 20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게 됐기 때문임.

○ 따라서 IT협동연구센터 건립비 88억원,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비 10억원 또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26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18억원 등 총 1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크게 증액되었음.

○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맞추어서 우리 도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주민의 일자리 창

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3월말까지 집중 발주토록 하고 또 조기집행 대상사업 2,163건에 대한 1조2,225억원의 예산을 금년 상반기까지 80%이상을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음.

○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괴산군 등 5개 군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된 120억원의 사업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아울러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또 국가계약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가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사업자금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음. 뿐만 아니라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지만 재정여건상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먼저 건설하고 이를 정부에서 분할상환해 가는 소위 BTL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보겠음.

○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산업, 차세대 반도체 및 전지, 기능성식품 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을 해 가면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지역의 교통·물류 시스템을 조속하게 더 확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음.

첨단 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등 지역특성을 살린 4대 발전축을 육성하고 8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도내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음.

○ 아울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공공근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또 도내 181개소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의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과 포장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이라든지 또 중소기업과 대형유통 업체와의 만남의 장 마련 등 판로개척 지원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음.

○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 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

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가고 있고 또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중앙차입금 지원방식에서 금년부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이 예산으로 기업에게 지난해보다 약 1.05%정도 낮은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고 있음. 특히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소기업 등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마련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음.

○ 아울러서 또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이라든지 또 제천·음성 유통단지 조성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중소기업 1일 체험봉사 활동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하여 주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끝난 바가 있음. 그 이후에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소기업애로지원단"을 활용해서 기업자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함, 최근 청원군과 청주시 또 충주시 등이 우리 도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와 아울러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 등 향토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형성돼 가고 있음.

○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기업 및 외자유치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부분 3D분야가 대중을 이루고 있음. 구직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인데 3D업종을 기피함에 따라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에 있음.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음.

○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고용안정정보망인 'WORK-NET'와도 연계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를 통해서 직업소개, 직업정보의 제공, 실업자 급여, 고용보험 등이 총괄 처리되고 또 지난 한해동안 구인자 6,367명과 구직자 4,871명이 이용한 바 있음.

앞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방노동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음.

[질문요지]

○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확보 대책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 전문농업인 후계자 확보 및 지원대책

[답변 : 농정국장 우병수]

○ 우리의 농촌은 WTO 출범, FTA체결 확산, 쌀 관세화유예 협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는 물론이고 농촌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여건, 의료·복지서비스의 취약 등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촌의 활력화가 시급한 실정임.

○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농촌지역 활력화 방안으로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목표를 두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의 규모화사업을 확대하며, 영농법인에 대한 농지알선과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금 및 건강보험료 확대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기반을 튼튼히 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음.

○ 우리 도의 강점인 아름답고 청정한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

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노력절감형 중경제초기·육묘상자 공급, 절약형 친환경농법 등을 개발·보급해서 고령 농업인들도 손쉽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정부에서는 쌀 협상 이후 현재의 쌀 소득 직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음을 예상하고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목표가격대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해서 일정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작목보다도 소득에 대한 안전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벼농가에서 갑자기 벼농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용작물의 급격한 재배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쌀 협상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채소 계약재배 및 약정출하 사업과 최저 보장가격 수매제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26개 주요작목별 재배면적, 작황, 수급 및 출하 가격전망 등 농업관측 정보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해서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음.

○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수급조절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산지유통센터 지원 2개소 8억5,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39개소 20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산지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의 확충, 현대화 사업을 지역특화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생산자 단체가 산지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981년부터 육성한 후계농업경영인은 2000년도에 219명, 2002년도에는 127명, 지난해에는 86명, 금년도에는 57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에서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우수농업인과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결연시켜주는 창업농 후견인제도와 장래에 농업을 희망하는 잠재인력에게 농업인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은 지난해까지 1인당 최고 1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인당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방화 및 유통환경의 급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질문요지]

○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에 따른 청정환경 보전대책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음. 이것은 온천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온천 오·폐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자연환경의 훼손, 하천오염 등의 악영향으로 주민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7월 2일 상주시장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 28만9,000평에 대하여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재허가해 줌으로써 청정 수질환경과 자연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우려를 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온천관광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지주조합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과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등 온천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청정 자연환경보전과 괴산 군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하천 최상류 지역을 훼손 및 오염시키는 개발행위를 저지하려는 괴산군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변경 협의과정에서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의 수질 보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온천관광지개발을 규제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오염 및 훼손 또

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을 허가한 상주시장이나 경상북도지사가 반대하여 온천관광지개발 예정 지역인 문장대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은 제외하고 우리 충청북도 관할 지역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이익만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과 개발저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함.

[질문요지]

○ 하천정비 관련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2004년중 우리 도내에서 채취한 전체 골재량은 595만㎥이며 이중에서 산림골재가 432만8,000㎥, 육상골재가 162만2,000㎥이며 하상골재 채취실적은 없음.

하상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산림녹화가 안 되고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과거에는 한 번의 강우에도 하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하류로 유입·퇴적되어 지역적, 부분적으로 하천골재채취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 그렇지만 최근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산지 및 농경지 등에서의 토사 유출은 극히 적어지는 반면 하천의 하상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세굴되면서 낮아져서 교량이나 보, 호안 등의 하천구조물의 기초가 노출되어 수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천골재 채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둘째로, 근래 들어서 수질오염 방지, 상수원 수질보호 및 수서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이 강화돼서 골재채취 허

가를 제한하고 있고 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제방이나 호안 끝에서 30m 또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로부터 약 200m 내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대개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횡단 구조물이 많은 지방1·2급 하천에서는 현실적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임.

○ 미호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서 미호천의 하상 안정과 각종 시설물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천법 제72조에 의거해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토석 및 사력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당분간은 하천골재채취가 불가한 실정임.

○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상정비 및 하도준설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63개 지구 384km를 이미 선정한 바 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와 도비 230억6,700만원을 지원해서 53지구 83.3km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20개 지구에 30.7km 73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하도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어떤 준설이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하천내에 토사 퇴적 등으로 유수소통이 불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임.

[질문요지]

○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대책

○ 폐교학교 활용대책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농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학생수 감소와 학교규모 과소화가 지속되어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행복한 작은 학교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아교육비로 1,953명에 10억4,200만원, 특기·적성교육

비로 3만5,344명에 9억5,500만원, 급식비로 4만7,283명에 34억6,100만원, 통학버스 교체 및 운영비로 10억7,300만원 등 6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도서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에 144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 농촌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첫째,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교장은 계속 유지하되 단순히 학생수 감소로 인한 분교장 격하 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분교장으로 격하하지 않고 교장을 겸임하여 본교로 유지하도록 하여 행·재정적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

둘째,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 학교로 운영함으로써 시설과 설비를 통합 사용하고 교원, 교육과정을 상호 지원하여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및 중등학교 교과목 상치교사를 줄여가도록 하겠음.

셋째, 통학거리 내에 있는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고 차량편의를 제공하여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학교군내 중심학교에 기본시설 현대화와 강당, 도서실, 컴퓨터실을 겸한 정보관 등을 설치하여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음.

넷째, 농촌지역 학교도 수월과 보편의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추진하여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학교 전담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도움센터로서의 좋은 학교 도서관 및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과 독서생활화, 토론문화를 유도하여 학습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다섯째,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에듀넷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e-Learning 체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 미활용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상 임대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폐교시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폐교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폐교일 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등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10여년이 지난 미활용 폐교시설은 영동 심원분교·구강분교, 괴산 신풍분교·삼송분교, 음성 사정분교, 단양 덕문곡분교 등 6개교로서 이중 심원분교는 매각을 추진중이며 그외 구강, 신풍, 삼송, 덕문곡분교는 교통여건이나 급수여건,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환경 등이 열악하여 임대 또는 매입신청이 없어 2005년 3월 현재 미활용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미활용된 폐교가 미관상 좋지 않은 점과 청소년의 탈법장소로 오용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폐교재산의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통하여 폐교가 교육재정 수입증대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구심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제4차 본회의 - 2005. 3. 25(금)

1.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관한 조례안(수정가결)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수정가결)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5분자유발언(이필용 의원, 강구성 의원, 김정복 의원)
- 중부내륙철도 음성 감곡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가결에 강력대응 촉구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노력 촉구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3. 15(화)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1시간 35분 (2시간 54분)	
1차(3. 15)	14:09~14:27	18분
2차(3. 16)	10:31~15:37	5시간 06분
3차(3. 17)	10:30~16:03	5시간 33분
4차(3. 25)	11:01~11:39	3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9.07 %)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3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3차 본회의	27명	27	-	100
4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5. 3.15	1	1. 제238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건
기획행정위원회	2005. 3.21	1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2-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장세의원발의)
교육사회위원회	2005. 3.18	1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수정가결)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5	3			
의회운영위원회	4	4	4				
기획행정위원회	2	2	1	1			
교육사회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주요골자]

○ 제238회 임시회 기간을 2005. 4. 19일부터 4. 26일까지 8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주요골자]

○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회기) 삭제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건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5조에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

○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외 6인으로 구성 등록된 충북의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3.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3. 8

○ 상　정 : 2005. 3. 21(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안 제30조제1항)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안 제30조제2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3. 7(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3. 8

○ 상　정 : 2005. 3. 21(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2조)

○ 충청북도의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가 청구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함(안 제5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동 조례안은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조례안중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 정리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3. 4(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3. 7

○ 상　정 : 2005. 3. 18(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하고(안 제3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함(안 제4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동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3. 4(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3.　7

○ 상　　정 : 2005. 3. 18(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안 제1조),

○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하였으며(안 제8조 및 제9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 및 제9조중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하고,

· 제16조제3항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함

第 10 節 第238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4. 8(2005 - 7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4. 19(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4. 19 ~ 4. 26(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자유발언(김홍운 의원)

○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

○ 5분자유발언(한창동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8건	4		1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4. 19(화)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자유발언(김홍운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4. 26(화)

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6.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

○ 5분자유발언(한창동 의원)

※ 회의록서명의원 : 조계숙 의원, 강우신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4. 19(화)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51분(25분)	
1차(4. 15)	14:08~14:23	15분
2차(4. 25)	11:00~11:36	3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8%)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5. 4.19	1	1.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 4.20	1	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05. 4.21	2	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 위 원 회	2005. 4.21	1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민방위안전관리 · 재난관리과 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2005. 4.26	1	1.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채택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7	7	1	3			3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3	3	1	2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39회 임시회 기간을 2005. 6. 10일부터 6.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충북도의회 의원 : 3명]

○ 이필용 · 조계숙 · 송은섭 의원

[세무사 : 3명]

○ 최용문, 이현주

[공인회계사 : 2명]

○ 김용호, 신명철

[유경험자 : 2명]

○ 이승규, 신춘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4. 10. 30(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4. 11. 5

○ 상　정 : 2005. 4. 20(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이유]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대표:성방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3일 충청북도학교급식 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여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음

○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충청북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을 기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 및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 학교급식과 관련한 도지사,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의무규정(안 제2조)

○ 학교급식 등 용어 정의(안 제3조)

○ 학교급식 직영원칙 규정(안 제4조)

○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도지사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책무

· 도지사, 시·군자치단체장, 교육감 : 최우선적으로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 지도 감독 의무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 의무화(안 제7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안 제9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0조)

·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심의, 의결

○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안 제11조)

○ 지정판매업자의 의무규정(안 제12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4. 1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4. 12

○ 상　정 : 2005. 4. 21(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안 제4조)

○ 집행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해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상황, 도정의 주요통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도민에게 공개(안 제5조)

○ 행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안 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2명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9조)

○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안 제11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4. 1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4. 12

○ 상　정 : 2005. 4. 21(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상속 및 무상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9조)

○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별 최소 1,000분의 0.1에서 최대 1,000분의 0.3을 인하함(안 제59조)

○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주택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세액과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함(안 제60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함(안 제77조 내지 제79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4. 1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4. 12
○ 상　정 : 2005. 4. 21(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
○ 소량위험물의 정의 및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소량위험물 저장소별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시저장 또는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4조)
○ 조례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액을 정함(안 제16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안

○ 발의년월 : 2005. 4. 26
○ 발 의 자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 수　　신 : 의장

[주요골자]

은 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책사업 추진일정을 불과 1년 사이에 변경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듬

○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건의

○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호남과 같이 소외만 받아온 충청북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적의 요충지인 오송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

第 11 節 第239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5. 30(2005 - 8호)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 개회 : 2005. 6. 8(수) 오후 2시

2. 會 期 : 2005. 6. 8 ~ 6. 22(15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3차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 조례안 : 9건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8	7	2	1		8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6. 8(수)

1.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4.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이광종 의원)
- 생태자연도 수정촉구와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정윤숙 의원, 박재국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6. 9(목)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질문요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신청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봉건사회의 개혁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애국애족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뜻에서 지난해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바가 있음.

○ 이로써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과거 농민반란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근대혁명으로 인식되어지는 아주 값진 계기가 되었음.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또 각 시·도 실무위원회가 설치됐고 지난해 11월 3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음.

○ 충청북도에서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유족등록 및 참여자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시·군 홈페이지와 일간지, 도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자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의 자녀와 그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는 1894년 3월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서 1차 봉기하고 또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두 번째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로 제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우리 도의 접수실적은 유적등록이 3건, 참여자 신청이 5건 모두 8건이고 전국적 유족등록은 43건, 시·도별로 서울시 11건, 전북 18건, 충북 3건, 전남 5건, 광주 3건, 경북·대구·경기도 각 1건씩 등록이 됐고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아직 1건의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실정에 있음.

○ 이렇게 전국적으로 접수실적이 적은 이유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감추고 싶어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세월이 11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는 확실한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동학혁명은 오랫동안 농민반란으로 인식되어 후손들도 그 선조들이 혁명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당시의 당사자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세상을 떠났거나 또 유족대상인 손자들까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고령의 나이로 활동력이 거의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또 실무를 담당하여야 할 시·군의 인력과 홍보부족도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언론매체의 활용과 실무위원간 긴밀한 협조,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에서 정한 등록신청 접수기간도 10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1년쯤 더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음.

[질문요지]

○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충청북도가 발간한 관찬사료가 있는지?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충북개발연구원 부설기관인 충북학연구소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자료를 발간해서 도민들이 보다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교양총서로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책을 발간해서 충북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종합 정리한 바가 있음. 충북에서 발간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서 언급하였듯이 동학농민 혁명은 충북지역에서 시작해서 충북지역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충북이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관찬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충북학연구소로 하여금 동학에 대한 깊은 고찰과 증언, 유적지 및 기록물에 대한 조사·발굴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충북지역 관찬사료를 발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질문요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우리 도의 관내에는 동학관련 유적지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등 5개 시·군에 17개소가 있음. 먼저, 보은지역에는 갑오농민전쟁의 최후 전투가 있었던 보은 종곡리 북실전투지를 비롯해서 동학농민군 2,600여명의 집단 매장지인 망나니골, 1893년 3월 수만명의 동학교도들이 교조신원운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장내리 집회터 그리고 벙어리성과 동학 대도소 성터, 북실전투 기념시설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6개소의 유적이 있음.

○ 옥천지역에는 최시형이 1893년 10월부터 1894년 9월까지 대략 1년 정도 거처하며 기포령을 내린 문바위골과 동학군의 훈련장, 최시형 아들 묘소 등 4개의 유적지가 있고 이 외에도 청주지역의 모충사 등 3개의 유적과 비석 등, 영동고을 동학도들의 선처를 호소한 군수 오영근을 기리는 영동지역의 애민선정비 그리고 1894년 12월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 최후의 격전지인 음성지역의 되

자니와 마르택 등의 유적지가 있음.

○ 이들 유적지에 대한 기념사업으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보은군 주관으로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6번지 일원에 2만9,000여평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국비 26억원, 도비 7억8,000만원과 군비 52억2,000만원 등 총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고 1단계 사업으로는 주차장, 조형물, 기타 조경시설을 정비 완료했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 여기에는 전망대, 상징탑, 돌성, 집회광장, 수변휴게소 등을 조성 중에 있음.

○ 또한 3단계 사업인 기념관 건립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보은 동학제가 2003년부터 매년 9월달에 보은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 동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그리고 등록에 관한 사항,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위원회 내에는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 기념사업 지원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1차적으로 동학농민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대상자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참여자 및 유족등록이 마무리되면 명예회복추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임.

○ 최종적으로 기념사업지원 분과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순차적이며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음. 따라서 중앙의 순차적, 단계적 추진방안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분포 현황, 사적지 조성과 기념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 기념사업에 대한 유족, 기념사업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설정해 나감으로써 농민혁

명이 "반란"에서 명실상부한 "근대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또한 혁명정신 선양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난 세월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가슴에 회한을 묻고 살아 온 참여자의 손자녀들도 의로운 후손임을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질문요지]

○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첫 번째, 양 지역의 통합은 주민의사가 정확하게 존중되어야 함.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에 통합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까지 전부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임.

○ 두 번째, 통합의 목표는 바로 주민이익과 지역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시·군 통합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통합과정이나 작업이 정략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연관시켜 추진할 때는 자칫 객관성과 순수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기 때문임.

○ 세 번째로는 통합 추진은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룰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통합은 현행법 규정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야만 함.

○ 네 번째로는 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음. 이러

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청주·청원 통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 앞으로 이러한 원칙하에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실무차원에서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권에 집중투자 계획된 충청북도중장기계획의 조속한 수정필요성 및 향후 대책은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우리 도는 균형발전 촉진을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각종 계획 수립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함. 먼저 도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4대 발전축과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하고 가능한한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난해 수립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서는·4개의 벨트와 8개의 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지역간 더욱 신속한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중에 있고 금년 7월경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고속철도의 개통,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앞으로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또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종합계획의 수정작업은 금년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음. 이러한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12개 시·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도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계획시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관계기관 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음.

[질문요지]

○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우리 충청북도 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래 장장 68년의 세월을 지나온 역사의 현장임.
도청 청사는 9,284평의 대지 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동관, 신관 등 건물을 증·개축하여 현재 12개동에 연건평 9,082평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의 도청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가 부족하고 또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현실임.

○ 그러나 금년도 10월경에는 지금 경찰청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신축중인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본 경찰청 건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무실 부족문제와 주차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임.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의 이전 필요성 제기와 현 청사의 불편한 주차문제, 청주·청원의 통합논의문제가 도청 이전을 위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임. 또한 현 도청의 위치 자체가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만약 도청을 이전할 경우 지역구도와 기능의 대변화 또 특정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뒤따름.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 도청 이전이라는 난제의 제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갈 것임.

[질문요지]

○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사안임. 최근 정부의 "수도권발전특별대책" 발표 및 수도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도권규제의 전면철폐

주장에 대하여는 13개 비수도권 시·도에서 수시로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 등을 통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음.

○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인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기능분산원칙, 선계획 후해제 원칙 및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고 지방의 발전기반이 성숙되기 전에 우선하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비수도권과 연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인사행정에 관하여

○ 승진인사 문제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80%와 다면평가점수 20%를 합산해서 종합서열 명부를 만들고 또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음. 다만 주무과에서 승진이 다소 빠른 것은 동일한 근무성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공서열 상위자가 근무성적평정 상위로 평정 받아오는 관례가 있기 때문임. 대다수 공무원들이 주무과를 선호하고 사업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절감, 세수증대, 시책개발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최대 5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성과 위주로 평정시스템을 운영해 갈 것임. 또한 팀웍과 파트너 중심의 파트너십·희망보직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실적가점포인트제'와 '파트너쉽·희망보직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근무성적우수평정자에 대한 평정사유 공개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원

의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도 해소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개방형직위제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1년 6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도의 과장급이상 직위중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정책수립을 위해서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무분야에 대하여 시·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광역시 단위는 개방형직위 대상이 많은 관계로 다수의 직위를 지정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자리에서 네자리 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02년에 여성정책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고 여성정책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개모집으로 임용하여 충북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2005년도에도 정보통신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고 향후 인사시에 반영할 계획임. 현재 외부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이 짜여지는 도의 기구개편시 개방형 직위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사관학교 출신 특채자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사관학교 출신 사무관 특채는 아시다시피 지난 '76년 '사관학교 출신장교 국가기관 활용' 지시에 의해서 '77년부터 '87년도까지 시행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4급 이상 11명이 근무하고 있음. 다수의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포진과 관련해서 공직 내부의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인사행정의 요체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무

에 대한 성과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학연의 배제나 배려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

○ 앞으로도 승진임용시에 특정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과 원칙을 토대로 하는 그 위에서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임. 아울러 전체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지방직보다 국가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교육감은 국가직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국장은 서울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과 중앙의 업무연락과 협조를 통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 국가차원의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국장의 직급기준이 일반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관계로 기관간의 업무협조 등에 애로점이 많고 과장은 국장과 동일한 직급임에도 하위직에 임명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2003년도에 2차례, 2004년도에도 2차례 등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직급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은 동급인 지방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관계로 배치되어 운영하는 현 조직 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사국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책정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어 수차례 의사국장의 직급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방부이사관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책정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을 수시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본청의 국·과장은 서기관임에도 직속기관의 장은 본청의 국·과장 직급보다 상위직급인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어 직급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기관장은 직속기관의 규모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임.

[질문요지]

○ 시·군 교육장 임명과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교육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교원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교직사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험이 풍부한 장학관을 교육장에 보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함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육장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강구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일반직이 교육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에 대하여

는 시·도 교육감 협의 등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교원 인사시기와 학교용지에 대한 집단민원과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최근 인사발표 현황을 보면 의원님의 지적처럼 학기 개시일 10일전쯤 인사발표가 단행되었고 시·군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인사발표 1~2일후 임지지정을 발표해 학기말 정리에 다소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정기인사 발표 3주일전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하여 교사 본인들의 인사이동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거주이전에 어려움이 없고 단위학교 교내인사와 새학기 교육과정운영 준비에 무리가 없는 인사발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시점에 인사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수도권 집중과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문제에 대해서 비교 보충질문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은 우선은 우리 도가 전통적인 산업도, 또 전통적인 농업도라고 하는 이러한 종래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금부터 10여년 전인 1992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임. 우리 도의 도민 전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선 청주·청원을 육성을 해 나가고 또 IT와 BT의 2대 핵심전략산업을 통해서 우리 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주 청원을 중점 육성하겠음.

○ 우선 우리 도내에 균형적인 발전업무가 새롭게 대두돼서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4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우리 도내 전체를 4개의 벨트와 8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이미 반영해서 국가에 제출했고 이를 대통

령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음. 또한 보은, 증평,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28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역 내 RRC나 TIC 등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같은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도 청주와 청원권에 집중되던 것을 충주, 제천, 영동지역 등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를 했음.

○ 도내 균형발전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도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 중에 있음.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오송분기역유치 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건설됐다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도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도내의 균형발전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음.

[질문요지]

○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문제나 도청이전을 청주권이 아닌 여타지역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사실 도청이전문제, 청사이전문제 같은 것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기능 구도 자체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일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도나 시의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목표와 거기에 대한 당위성, 또 주변여건이 불가피할 때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것임.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크게 변했거나 지역의 구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나 그럴 때 대체로 논의가 됨.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여건으로서는 아직 도청을 이전해야 할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대체로 청사이전에는 한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됨. 그래서 우리 충북의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청 청사보다도 그런 지역발전과 주민경제면에 먼저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청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음.

[질문요지]

○ 사관학교출신 관련한 보충질문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공무원의 신분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 하에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그 신분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음. 다만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라는 충정에서 저한테 들려주신 그러한 충고라고 생각을 함.

□ 제3차 본회의 - 2005. 6. 10(금)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질문요지]

○ 청주·청원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에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주민의견조사를 의뢰할 용의에 대해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존중돼야 함. 따라서 의견조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체가 되어

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조사의 기법이나 이런 것이 매우 과학적으로 발달돼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설계나 기타 조사과정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질문요지]

○ 청주·청원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 대토론회를 개최에 관해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청주·청원 통합은 양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지 못한채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추어져 왔음.

○ 그러나 최근 실무협상단이 구성되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문제는 양 자치단체의 이러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다 정확한 주민들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도의 공식 입장은 어저께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음.

○ 첫째,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존중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 둘째로는 주민 이익과 지역발전이라는 순수한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셋째로는 현행법규정과 상충되는 일이 없어야 진행이 순조로울 수가 있음.

○ 넷째로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도 조화를 이룰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함. 그동안 추상적으로 진행돼온 양 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이제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모든 사항들이 정말 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

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충북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우리 도에서는 친근한 청사만들기 일환으로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 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 경찰청 건물 1층 130평과 구민원실 건물 1, 2층 200평 정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북비전홍보관 및 지역상품홍보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경찰청 건물 2층부터 5층까지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 사무실 이전배치 및 청내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잦은 시위대와 보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쪽문을 세 군데나 만들고 그래서 항시 어느 방향에서나 도청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청 정원과 주차장을 항시 개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 의견이 있음.

○ 이와 같은 경찰청 청사활용방안 계획은 구상안을 가지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도 보고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할 시에는 구민원실 철거문제 등과 함께 도민에게 친근감과 만족을 주는 도 청사가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질문요지]

○ 도청내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방안에 관한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긴 하나 지난 4월부터 직원주차장을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실·과·담당별로 한 대 기준으로 축소조정하고 대형버스 4대를 외곽으로 보내서 차고지를 이전하는 등 민원인 전용주차장 76면을 108면으로 42면을 확대하고 청내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구간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상반기 중에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 및 지방경찰청 이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타운조성 문제는 많은 재원마련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검토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대덕R&D특구지정과 관련해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대덕R&D특구는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대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형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지역 역차별론과 대전지역으로의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지역도 특구로 추가지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변경되었

고 특구의 범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수정 의결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인근지역 범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학계 등으로 특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구포함의 당위성을 정립하고 홍보에 주력해 왔음. 또한 청주상공회의소,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지역기관·단체 등과 함께 도에서도 수십회에 걸쳐 과학기술부, 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특구포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펴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특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특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특구법 시행일인 된 7월 28일까지 지역국회의원, 도의회 및 청원군, 오창단지 입주기업인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오송·오창단지가 특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또한 오송·오창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인 가칭 오송단지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오송·오창단지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현재 오창단지에 추진중인 생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기업체들과 네트워크화하여 BINT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IT협동화센터,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유비쿼터스 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오송단지도 4대 국책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관련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기업체를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바이오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오창단지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겠음.

【 질문요지 】

○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각종 세제지원과 기술지원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우리 도의 벤처기업 동향을 보면 2000년도 149개 업체, 2001년 250업체로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2년 215개 업체, 금년도 현재 193개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벤처기업 등록 및 유지요건 강화로 부실 벤처기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체수가 감소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임대공단 3만평을 조성하여 22개 업체를 유치 가동 중에 있으며 지식·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전진기지인 오창벤처프라자를 건립하여 IT·BT 업종의 견실한 15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음.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오창단지내 40만7,000평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고 16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공영장비실을 운영한 바 한달만에 680여건의 각종 장비를 이용하였고 이밖에도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지난 '99년부터는 매년 도내 벤처기업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벤처기업 3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경영 및 기술개발자금과 마케팅 등을 지원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매년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으로 서울에서 충청권 벤처프라자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37건 685만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창업에서 입지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벤처자금지원, 벤처기업 상설전시장 건립, 공동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가능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를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답변 :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청주국제공항 등을 연계한 중부권의 핵심국제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계획개발을 통한 도시인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교류회의 및 전시·숙박을 위한 컨벤션 시설과 도민문화교육을 위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축 그리고 각종 생활스포츠 시설과 여가휴식공간인 야생화정원, 바이오동산, 위락시설공간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 다만 스포츠시설 중에서 국제교류공간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결여되어 골프장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기본계획이 확정 2002년 12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의 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거쳐서 기본적인 토공과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유토지 매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음.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연차적 계획으로 구분되어 1단계연도인 2004년까지는 토지매입 및 기본 토목공사와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 2단계연도인 2007년도까지는 국제교류를 위한 컨벤션시설 그리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위락시설인 조이월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3단계연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 이중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일반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금년쯤이면 착공될 예정으로 있음.

○ 민자유치사업인 컨벤션시설과 조이월드시설 등은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사업별 수지분석 및 민자유치방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

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중으로 공모안이 나오는 대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 금년 안으로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거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음. 대중골프장은 인근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문요지]

○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관해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체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충북인터넷고 등 4개교를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탄력적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증평정보고를 자율 통합형고등학교로 운영하고 산업현장의 고도화된 기능·기술 습득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청주기계공고를「2+1체제」학교로 운영중이며 전 실업계고가 전문대학과「2+2」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신기술 습득을 위해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는 등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계고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통교과 교과목을 확대 편성한 계속형 교육과정을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교과 교과목을 확대 편성한 완성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진학과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유망한 기업과 연계한 부설학과 설치 운영은 금년 청주농고 골프환경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첨단학과를

2000년 이후 22개교에 52개 학과를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충북공고의 학교기업 설치 운영, 비즈쿨 예비 창업제 운영으로 벤처 창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취업이 보장되는 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문요지]

○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관련한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학교급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식중독 사고임. 2004년 6월 12일부터 청주시 1개교에서 335명의 복통 및 설사환자가 발생하여 6월 18일 전원 완치된 식중독 사고가 있었으며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세균검사결과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식재료 오염 및 취급 부주의로 나타나 학교관계자를 경고 조치하였음. 이러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매일 급식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 도청, 식약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00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한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모두 평점 B등급 이상으로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HACCP)이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급식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위생·안전분야 11건, 관계법규 위반 22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관계자 및 위탁업체는 주의 및 경고 조치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02년부터 보존식, 고무장갑, 앞치마 등 급식소 전반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균 검사인 미생물 오염도 표본조사를 계속 실시한 결과 2002년도에 2개교, 2003년도에 2개교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나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리고 2004년부터 식품의약

품안전청과 협조하여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일일 식중독 위험지수를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 줌으로써 사전에 식중독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위생·안전점검과 단위학교의 자주위생능력을 배양하는 등 식중독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요지]

○ 우리 도의 무료급식 학생의 증가 추이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 휴무토요일 학생들을 위한 급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 및 학생지도 등의 대책은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학생, 결손가정 및 극빈자녀 등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굶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있음. 2005년도 급식비 지원인원 2만1,154명은 전체학생 수의 8.9% 수준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지원액은 약 74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부족액 24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대상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 2004년부터 학기중 급식을 제외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휴무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다만 2005년도부터 학기중 토·공휴일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은 자치단체에서 계속 담당하되 소요경비의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지원 대상자 9,085명에 대한 급식지원비 26억원 중 교육청 부담액 13억원을 제1회 추경예

산에서 확보 지원하여 급식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휴무토요일의 학생 지도대책으로는 학교별 등교 희망학생 수를 사전에 조사하여 등교 학년과 학생 수에 적합한 교사 출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말씀드리면 민속놀이, 독서교실, 독서후 표현활동, 컴퓨터교실, 우암산 극기 훈련, 교육과학연구원 견학, 우암골 자연생태학습 공원 현장학습, 한글사랑관 견학, 홍덕사지 견학, 종이접기, 영화감상, 체육교실, 학교시설 개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질문요지]

○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어야 함. 그런데 청주·청원의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은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의 주체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임. 그러므로 통합의 주체기관이 아닌 도가 필요성과 목적성도 없는 주민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토대 위에서 답변을 드린 것임. 또 박재국 의원님께서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음.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대상도 아닌 것을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찬성을 하고 청주시, 청원군 의회가 찬성을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에게 제청했을 때 행자부장관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옳게 파악이 됐느냐 하는 필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음. 다만 박재국 의원님께

서는 청주·청원 주체의 주민의견조사가 서로 다른 여론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견조사의 기법이 날로 발전되어 있고 또 조사의 방법, 조사의 내용, 조사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함.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있는 청주·청원군에서 주민의견조사 방법을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질문요지]

○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화 방안과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 등에 대해서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2월에 청주시, 청원군, 농협 등 청주시내에 있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북과학대학과 제일은행 청주지점만이 찬성해서 그 해 4월부터 통근버스 4대를 권역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0명이내로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그 해 10월에 도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근버스를 중단하게 되었음.

○ 최근 청내 주차장이 복잡한 것은 도청 주변에는 전부가 유료주차장만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도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시내중심을 활용하는 일반인들이 자꾸 도청에 주차하면서 도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하고 있음. 어제 현재 약 600여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응답자의 60%가 유료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이번에 의원님께도 설문조사를 보내드렸는데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청내 주차난 해소문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주차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

대됨.

[질문요지]

○ 행정타운 조성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도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용의에 대해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기관의 수요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그런 사항과 여건이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겠음. 따라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치권에서 조차 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하는 이런 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음.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

[질문요지]

○ 국정핵심과제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 대비에 대하여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도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에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단을 구성·운영해 왔고 지난해 7월부터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 또한 충주지역의 기업도시평가에 대비해서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4개 분야, 4개 팀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유치지원반을 운영함으로써 충주시와 더불어 함께 고민하며 함께 뛰고 있음.

[질문요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가기준 및 배분방식에 대해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에 논의되던 충청권 배제의 철회라든지 또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 오송단지 혁신도시건설 확정 등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

○ 이와 같은 성과는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150만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임.

○ 공공기관을 배정하는 문제는 지난달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간 체결한 기본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임. 즉,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음. 그리고 시·도 내에서의 배치는 혁신도시 내로 집단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돼 있음.

○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입지결정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또 시·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에 이미 오래 전에 제출한 권역별 중점 유치계획과 지역 특화발전계획의 맥을 따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임. 그리고 이것은 지역간 발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전대상기관,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장 좋은 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국정핵심과제전담대응팀을 도청 내에 발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충주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중·북부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최대 현안사항

인 만큼 전 도민이 함께 나서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이 기업도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관계기관을 상대로 건의·정보교환 등 오랫동안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월 15일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시범사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음.

○ 충주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수화학 등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추가로 포함된 지정신청서 보완자료를 최종 제출한 바가 있음. 우리 도에서는 충주시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와 충주시,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대응논리개발과 제안서 보완작업 등의 활동을 지원해 왔음.

○ 또한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들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방문·건의 등 끈질긴 지원작업을 펼쳤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권영관 의장께서 지난 5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음. 특히 오늘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지에서 실시하는 대상지에 대한 현지평가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 오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그동안 충주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만 오늘 도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라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지 못하고 대신 행정부지사를 파견하여 지원토록 했음.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70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헬기발대식을 서둘러서 어저께 가진 후에 오늘 첫 번째 일로 충주시 기업도시 현지시찰에 파견토록 지원방침을 세웠지만 오늘 우천 관계로 헬기가 뜨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음.

○ 그동안 충주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지부상소, 시민서명운동 등 지역여망을 중앙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

력으로 주민의 뜻을 충분히 표현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함. 그러므로 이제는 결의대회, 궐기대회 같은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를 성사시키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림.

○ 즉, 기업도시선정의 기준이 되는 충주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지가의 안정적 관리, 또 국토의 균형발전 파급효과 등을 중점 분석·홍보하고 중앙에 관련된 부처와 이해와 우호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힘써 주시면 기업도시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질문요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충북발전전략에 대해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우리 도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중에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용지매입에 착수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분야 역시 새로운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충북관광의 위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구성된 후속대책추진기획단내에 문화관광분야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개방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청남대를

지속발전이 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마무리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청남대를 대통령별장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태를 겸비한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남대와 속리산권, 충주권 등 도내 각 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관광경쟁력이 높은 충주호 주변지역을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 참여정부에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2004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민간기업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계획적이며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 완료한 바, 우리 도에서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만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사료됨.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겠음.

○ 앞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특성을 적극 홍보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관광전문시범도시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요지]

○ 충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 문화산업분야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개척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북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단위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시책은 현재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로 특성화·차별화할 수 있는 뚜렷한 업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특성, 전통 문화,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캐릭터, 공예품 등을 상품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또한 문화산업연구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충북의 문화산업 발전의 주축이 되는 연구기관 육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도의 문화산업은 아직은 태동단계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이나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공공의료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 공공의료기관 현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도민들이 질병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도정의 목표이기도 함.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보건소 시설확충 노력과 병행해서 청주·충주의료원 시설 및 장비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됨.

○ 특히 충주의료원의 경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편의시설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 도입 설치 등이 곤란하여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충주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현대화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우리 도에 현대화사업을 건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제84회 전국체전 준비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됨으로써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여부 검토를 유예하여 왔으나 전국체전 등 주요 투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전망과 공공보건 의료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의료망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9월 1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장·단기 국가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7월 5일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원 설립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본 내용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왔고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

○ 금번 용역이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의료원 진료실 확충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북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고품질의 최신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할 것임.

[질문요지]

○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나 대책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시 논의된 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에 대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 대입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 설명회 3회, 각 학교 홍보활동 30여회를 실시하였고 단위학교별로 캠페인 활동 80회, 학부모 홍보 및 교육을 147회 실시하였음. 또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 분석과 대책을 위한 장학자료 수능★예비스타 준비전략.Yes!를 발간·보급하기도 하였음.

○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님에게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다양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개선된 대입제도의 정착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질문요지]

○ 국정혁신과제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원칙은 지난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시·도별 배치는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일괄배치하고 시·도내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결정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이전대상 기관 및 배치방안과 혁신도시 입지결정 원칙과 기준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배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수렴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도, 이전대상 기관간의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공공기관 배정 등을 할 계획임.

[질문요지]

○ 공공기관 지방유치단의 조직체제와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답변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우리 도의 공공기관지방이전유치추진단은 지난 2003년 9월 3일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8명으로 구성·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유치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총괄팀장에 경제통상국장, 혁신도시건설팀장에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5개 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당분야 공공기관유치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시 충북배제 철회 등을 위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 건의하거나 도지사 서한문 등을 통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충북배제 철회를 관철시켰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후에는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송생명과학단지외 혁신도시건설, 대규모 공공기관 배정 등 타 시·도와 대등한 수준의 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함.

□ 제4차 본회의 - 2005. 6. 22(수)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2.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10.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가결)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수정가결)

○ 5분 자유발언(김정복 의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제기 철회촉구와 관련

○ 5분 자유발언(정상혁 의원)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6. 8(수) 14:01~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2시간 14분(3시간 04분)	
1차(6. 8)	14:09~14:42	33분
2차(6. 9)	10:31~16:01	5시간 30분
3차(6. 10)	10:31~15:35	5시간 04분
4차(6. 22)	14:00~15:07	1시간 07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87.1%)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5	2	92.6
2차 본회의	27명	21	6	77.8
3차 본회의	27명	23	4	85.2
4차 본회의	27명	25	2	92.6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5. 6. 8	1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5. 6.14	1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 6.15	2	1.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 매입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국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청주시)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제천 봉양) ·충북개발공사 설립관련 현물출자
	2005. 6.16	3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교육사회위원회	2005. 6.13	1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위원회	2005. 6.14	2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 6.16	3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건
산업경제위원회	2005. 6.13	1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2005. 6.14	2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관광건설위원회	2005. 6.13	1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소방본부
	2005. 6.14	2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1.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 6.20	1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005. 6.14	1	1.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추진 상황보고의 건 2.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9	29	14	9			6
의회운영 위 원 회	4	4	3	1			
기획행정 위 원 회	6	6	3	2			1
교육사회 위 원 회	6	6	4	1			1
산업경제 위 원 회	3	3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4	4	1	2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	4		2			2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	2	2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40회 정례회 기간을 2005. 7. 11일부터 7.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A)		제1회추경(B)		증 감 율(B-A)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314,189,718**	**100**	**1,470,491,508**	**100**	**156,301,709**	**11.9**
공 보 관 실	1,079,750	0.1	1,229,750	0.1	150,000	13.9
감 사 관 실	164,748	0.0	174,448	0.0	9.700	5.9
기 획 관 리 실	103,490,368	7.9	105,603,825	7.2	2,113,457	2.0
자 치 행 정 국	221,673,011	16.8	243,626,115	16.6	21,953,104	9.9
여성정책관실	47,810,224	3.6	54,939,347	3.7	7,129,123	14.9
복 지 환 경 국	295,361,726	22.5	315,690,427	21.5	20,328,701	6.9
충 북 과학대학	3,750,000	0.3	6,150,000	0.4	2,400,000	64.0
공 무 원교육원	3,858,283	0.3	4,177,289	0.3	319,006	8.3
보건환경연구원	4,179,691	0.3	4,785,249	0.3	605,558	14.5
경 제 통 상 국	59,583,192	4.5	91,173,234	6.2	31,590,042	53.0
농 정 국	198,045,920	15.1	218,912,964	14.9	20,867,044	10.5
농 업 기 술 원	17,427,426	1.3	18,340,593	1.3	913,167	5.2
문 화 관 광 국	75,234,275	5.7	84,553,155	5.7	9,318,880	12.4
건 설 교 통 국	216,295,774	16.5	252,183,513	17.1	35,887,739	16.6
소 방 본 부	61,080,249	4.7	63,590,352	4.3	2,510,103	4.1
의 회 사 무 처	**5,155,081**	**0.4**	**5,361,247**	**0.4**	**206,166**	**3.9**

[심사결과] 수정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5. 3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총 무 과〕

○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위임

〔기업지원과〕

○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다음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관한 사항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관 광 과〕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다음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 삭제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 도지사 권한인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5. 3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오창과학산업단지(공단 임대사무 포함) 관리 권한" 신설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9(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10

○ 상　정 : 2005. 6. 1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538명 ⇒ 2,545명 (증 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6명 ⇒ 1,439명 (증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1명　⇒ 65명 (증 4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 일 반 직 : 3명(5급1, 6급2)
- 기 능 직 : 4명(10급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5. 3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도가 전액 출자하는 간접운영방식에 의한 지방공사(안 제4조)

○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심사결과] 보류

○ 수정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구성 미비요건과 개발공사 설립여부 최종용역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간보고회를 기초로 심사한 것을 절차 불이행한 것과 용역보고서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오송분기역역세권사업 등 개발공사가 계획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미비한 점 등 용역보고서의 보완과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5(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사(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 재산의 처분

-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
-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임야 교환
- 공유재산 현물 출자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표-1]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구성비 (%)	당초예산	구성비 (%)	증감	증감율 (%)
합　　계		1,470,492	100.0	1,314,190	100.0	156,302	11.9
자주재원		468,604	31.9	393,785	30.0	74,819	19.0
	지 방 세	334,540	22.8	334,540	25.5	-	-
	세외수입	134,064	9.1	59,245	4.5	74,819	126.3
의존재원		1,001,888	68.1	920,405	70.0	81,483	8.9
	지방교부세	341,569	23.2	323,393	24.6	18,176	5.6
	보 조 금	649,319	44.2	597,012	46.4	52,307	8.8
	지 방 채	11,000	0.7	-	-	11,000	-

□ 교육사회위원회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 총 3,156억 9,04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3억 2,870만 1천원(6.9%)이 증액 편성.

○ 분야별 예산규모

- 보건위생 165억 3,447만 8천원,
- 환경보전 226억 9,732만 1천원,
- 일반사회복지 61억 4,477만원,
- 장애인복지 207억 7,571만원,
- 노인복지 321억 7,457만 9천원,
- 장애인체전운영 49억 7,414만 2천원,
- 생활보호 1,225억 7,570만 2천원,
- 징수교부금 24억 4,665만 5천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 예산안 규모

- 549억 3,93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억 2,912만 3천원(14.9%)이 증액 편성

○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 4,674만 3천원
-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3억 6,154만원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지원 4,402만원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보강 4,050만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8억 8,800만원
- 아동급식지원 36억 7,942만 5천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원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1억원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6억 2,069만 3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예산안 규모

- 총 47억 8,5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555만 8천원

(14.5%)이 증액

[충북과학대학 소관]

○ 예산안 규모

- 총 100억 7,23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 3,948만 7천원(85.4%)이 증액 편성

○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

- 국고보조사업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편성되지 않았음.
- 자체사업 51억 7,148만 2천원,
- 경상예산 42억 9,867만 6천원,
- 예비비 6억 217만1천원

○ 주요사업

-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수당 4억 1,745만원
-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 2억 724만원
- 홈페이지 개편 사이버이벤트 시상 150만원
- IT학과 개편 관련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1,500만원
- 유비쿼터스 사업참여 관련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1,000만원
- 산·학·연 지원센터 증축 38억원
- 장애인겸용 승강기 설치 1억 3,437만 5천원
- 관용차량 구입 2,700만원
- 학적변동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3,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 총예산안 규모

- 총 41억 7,7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1,900만 6천원(8.3%)이 증액

○ 분야별 예산안 규모

- 교육원관리 31억 7,337만 8천원
- 공무원교육 6억 9,864만 2천원
- 도민교육 3억 526만 9천원

○ 세출내용

-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여비 1,500만원
- 장애우 엘리베이터 설치 1억 5,815만원
-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492만 8천원

- 교육과정 외래강사수당 1억 1,748만원
- 전산실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 3,740만원
- 도민교육관 대강당 전동스크린 설치 400만원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5. 30(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조례 제명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하고,
○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임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7(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6. 8
○ 상　정 : 2005. 6.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안 제3조),
○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7(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6. 8
○ 상　정 : 2005. 6. 16(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 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며(안 제23조),

○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안 제24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임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

○ 예산안규모

- 기정 예산 595억 8,319만원 대비 53%가 (315억 9,004만원) 증액된 911억 7,323만원임

[농정국 소관]

○ 예산안규모

- 기정 예산 1,980억 4,592만원 대비 10%가 (208억 6,704만원)증액된 2,189억 1,296만원임

[농업기술원 소관]

○ 예산안규모

- 기정 예산 174억 2,742만원 대비 5.2%가 (9억 1,316만원) 증액된 183억 4,059만원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경제통상국	91,173	59,583	31,590	
농 정 국	218,912	198,045	20,867	
농업기술원	18,340	17,427	913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5. 3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2
○ 상　정 : 2005. 6. 14(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본부의 체계를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편성(안 제4조)
○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경계→비상)에서 2단계(준비→비상)로 축소(안 제7조)
○ 담당 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안 제8조)
○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 지휘(안 제12조)
○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안 제22조)
○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의 연계업무를 총괄하는「기반보호총괄관」지정(안 제26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6. 18
○ 상　정 : 2005. 6. 20(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계상
○ 경상경비는 필수 불가피한 경비 계상
○「현안사업」 및 마무리 위주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 예산총괄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	제1회추경	비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조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1,754,782,216	1,954,786,677	
ㅇ일반회계	1,314,189,718	1,470,491,508	
ㅇ특별회계	440,592,498	484,295,169	
- 공기업특별회계	303,385,481	330,879,421	
- 기타특별회계	137,207,017	153,415,748	
제3조 예비비 (일반회계)	28,316,720	25,368,405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285,426,972	306,651,399	
제2조 업무예정량			
ㅇ 지방채발행 계획	60,000,000	60,000,000	
ㅇ 지방채원리금 총액	59,586,180	59,586,180	
ㅇ 기금융자계획 총액	100,000,000	100,000,000	
ㅇ 융자금회수 총액	24,780,816	24,780,816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ㅇ 사업수익	14,557,797	14,557,797	
ㅇ 사업비용	15,367,672	15,367,672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ㅇ 자본적수입	78,239,175	78,239,175	
ㅇ 자본적지출	270,059,300	291,283,727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60,000,000	60,000,000	
제6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채상환금)	59,672,482	59,672,48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17,958,509	24,228,022	
제2조 공영개발 사업수익	7,290,295	7,290,295	
공영개발 사업비용	130,053	130,053	
제3조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17,828,456	24,097,969	
제4조 예산전용 금지 과목			
- 인건비	12,552	12,552	
- 업무추진비	3,960	3,960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6. 18
○ 상　정 : 2005. 6. 21(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제1회추경)	당초예산액	증/감	비　고
1,244,463,555	1,157,956,559	86,506,996	기정예산대비 7.5%증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제1회 추경)		당 초 예 산 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244,463,555	100.0	1,157,956,559	100.0	86,506,996	7.5
국가부담수입	1,028,501,792	82.7	966,571,839	83.5	61,929,953	6.4
-지방재정교부금	1,024,683,771	82.4	841,847,722	72.7	182,836,049	21.7
-지방교육양여금	0	0.0	122,441,937	10.6	△122,441,937	△100.0
-국고지원금	3,818,021	0.3	2,282,180	0.2	1,535,841	67.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	94,470,913	7.6	93,028,553	8.0	1,442,360	1.6
-법정전입금	94,076,000	7.6	92,954,640	8.0	1,121,360	1.2
-비법정전입금	394,913	0.0	73,913	0.0	321,000	434.3

구 분	예 산 액 (제1회 추경)		당 초 예 산 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자체수입	94,975,436	7.6	98,356,167	8.5	△3,380,731	△3.4
-재산수입	1,346,980	0.1	818,292	0.0	528,688	64.6
-입학금및수업료	26,171,915	2.1	31,011,365	2.7	△4,839,450	△15.6
-사용료및수수료	1,331,960	0.1	932,110	0.1	399,850	42.9
-잡수입	6,124,581	0.5	5,594,400	0.5	530,181	9.5
-이월금	60,000,000	4.8	60,000,000	5.2	0	0.0
지방교육채	26,515,414	2.1			26,515,414	100.0
-지방교육채	26,515,414	2.1			26,515,414	100.0

○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 산 액 (제1회추경)	당초예산액	증 /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244,463,555	1,157,956,559	86,506,996	7.5
학 교 교 육	316,828,668	266,908,148	49,920,520	18.7
유 치 원	10,209,884	9,999,174	210,710	2.1
초 등 학 교	155,368,460	138,661,947	16,706,513	12.0
중 학 교	77,551,482	59,817,675	17,733,807	29.6
고 등 학 교	68,540,422	53,731,335	14,809,087	27.6
특 수 학 교	4,914,212	4,464,901	449,311	10.1
기 타 학 교	244,208	233,116	11,092	4.8
평 생 교 육	3,143,440	2,140,566	1,002,874	46.9

관 별	예 산 액 (제1회추경)	당초예산액	증 / 감	
			금 액	비 율
급 여 관 리	844,547,494	822,654,318	21,893,176	2.7
교 육 행 정	60,778,834	43,463,484	17,315,350	39.8
교육위원회	458,813	438,833	19,980	4.6
교 육 청	23,416,729	18,176,739	5,239,990	28.8
지역교육청	7,029,532	6,112,349	917,183	15.0
교육지원기관	29,873,760	18,735,563	11,138,197	59.4
기 타 경 비	19,165,119	22,790,043	△3,624,924	△15.9
지방채상환	11,194,741	9,697,897	1,496,844	15.4
예 비 비	7,970,378	13,092,146	△5,121,768	△39.1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추진상황보고의 건

[주요골자]

○ 개발유형은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으로 설정, 금년도에는 2개 내지 4개의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계획

○ 참여기업과 기본합의서를 체결(4월13일)
1읍3면 2,600만평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4월22일)

○ 우리 도의 경우 청주, 청원, 음성, 진천지역은 기업도시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

○ 충주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서가 최종 보완이 돼서 건교부에 제출(5월30일)

○ 시범사업 신청개요는 충주시 이류 가금면 일대 210만평
시유지 103만평, 공유지, 산업용지가 19%, 공공용지 57%

○ 신청유형은 지식기반형이고 참여기업은 원래 BBB 이상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충주시의 경우는 포스코, 이수화학, 동화

약품, 임광토건, 대한민국주택공사가 다 트리플B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

○ 시범사업선정은 평가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예비심사로 법령상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충주시는 충족됨

◉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건의문안 채택의 건

[주요골자]

○ 국가의 주요 개발축에서 제외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우리 지역이 기업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된 최적지임.

○ 첫째, 4차선 고속화 국도 완비와 수도권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40분 거리의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완벽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으로 국토개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

○ 둘째, 중원문화의 발상지로서 천혜의 자연과 관광 휴양환경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로 개발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임.

○ 셋째, 건설예정지역은 국·공유지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저렴한 토지수용과 개발의 잇점을 갖고 있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12 節 第240回 定例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7. 1(제2005 - 9호)

※충청북도의회 의장(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 개회 : 2005. 7. 11(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7. 11 ~ 7. 20(1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2	2	3	1	2	4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7. 11(월)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강구성 의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 회의록서명의원 : 김정복 의원, 정상혁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7. 20(수)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가결)
7.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 쌀 생산조정제의 문제점과 제도의 폐지 및 검토 건의에 대하여

○ 5분 자유발언(유동찬 의원)
- 농촌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 5분 자유발언(김환동 의원)
- 도내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7. 11(월) 14:01~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시간 59분 (1시간 29분)	
1차(7. 11)	14:09~16:22	2시간13분
2차(7. 20)	11:00~11:46	4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98.2%)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5. 7.11	1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2005. 7.12	1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지방채 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 7.13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5. 7.14	3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 7.12	1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05. 7.13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 7.15	3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산업경제 위 원 회	2005. 7.12	1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05. 7.13	2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2005. 7.14	3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관광건설 위 원 회	2005. 7.12	1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 7.13	2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5. 7.15	3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 7.11	1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기동 위원 선임 2.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정윤숙 위원 선임
	2005. 7.18	2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 7.19	3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2005. 7.17	1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보고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36	36	22	4			10
의회운영 위 원 회	5	5	3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5	5	4				1
교육사회 위 원 회	10	10	6	2			2
산업경제 위 원 회	5	5	4				1
관광건설 위 원 회	3	3	2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	7	3	1			3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 추진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 열린의회 · 투명한 의정 실천
○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 금년도 상 · 하반기 회기운영 실적과 계획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 도정정책 참여
○ 화합의정 및 지역역량 제고
○ 의정활동 홍보강화
○ 의원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강화
○ 디지털 e-의정 기반구축
○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40회 정례회 기간을 2005. 7. 11일부터 7.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골자]

○ 제241회 임시회 기간을 2005. 9. 2일부터 9.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골자]

○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3인 이내
· 위원선임 :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

· 활동기간 : 2005년 7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위원수 : 13명 이내⇒11명 이내

□ 기획행정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공보관실 소관]

○ 도정에 대한 전방위 홍보강화
○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홍보
○ 도민과 함께 하는 쌍방향 홍보
○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
○ 홍보장비 보강과 도정역사 디지털화
○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
○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 홍보지원

[감사관실 소관]

○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
○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활성화
○ 진정 ·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
○ 부패방지제도의 획기적 개선

[기획관리실 소관]

○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지역발전 과제 추진역량 강화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 행정구현
○ 차세대정보화 U-충북 기반구축
○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테마회의 운영

[자치행정국 소관]

○ 강한 팀워크로 앞서가는 도정 구현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
○ 전국 으뜸의 회계관리 서비스 혁신
○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
○ 팀워크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
○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
○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계획
○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
○ 을지연습 실시계획

[청주의료원 소관]

○ 책임경영 구현
○ 효율적 병원관리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
○ 신뢰와 사랑받는 의료 환경 조성
○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추진 노력
○ 장례식장 신축 추진상황

[충주의료원 소관]

○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
○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 교실 운영
○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
○ 공공의료사업의 확대 시행
○ 의업수입의 안정적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직제개편
○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정착 및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의업수지 개선
○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 연도별 연구실적도
○ 금년도 연구과제

○ 연구원 기금운영
○ 기획사업
○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7.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7. 6
○ 상　정 : 2005. 7. 14(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등 4필지
○주요변경 내역
· 토지매입
- 매입면적 : 3,154㎡ ⇒ 4,522㎡
- 매입대상 : 보은 이평 93 등~ 2필지 ⇒ 보은 죽전 93-8 등 4필지
· 사 업 비 : 1,970백만원 → 1,600백만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여성정책관실 소관]

○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양성평등의식 확산
○ 여성 및 아동보호서비스 확대

[복지환경국 소관]

○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 구축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
○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
○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

○ 청주 · 충주화장장 납골당 건립

[충북과학대학 소관]

○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정보화를 통한 열린 학사행정 서비스 구현
○ 신입생 유치활동의 강화
○ 대학홍보활동 강화
○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의 구현
○ 지역기업체와의 산 · 학협력 강화
○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

[공무원교육원 소관]

○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
○ 건강한 사회, 활력있는 으뜸도민 양성
○ 교육원 자체 교육실시 역량 강화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이미지 제고
○ 혁신마인드형성 교육과정 운영
○ 참여토론식 교육훈련 시행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먼저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
○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예측사업
○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
○ 주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사업 추진
○ 도민이 원하는 봉사행정 실현
○ 보건환경 주요검사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 인프라 확충
○ 생활속 지혜 홍보물 제작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7. 1(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7. 4
○ 상　정 : 2005. 7. 13(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시 해촉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계인, 관계기관, 단체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안 : 2005. 6. 30(장준호 의원 외 7명)

○ 회　부 : 2005. 7. 4

○ 상　정 : 2005. 7. 13(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충청북도지사)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함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업무담

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함

○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제척규정을 둠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안 제3조제3항제3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을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 산업경제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고용창출

○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

○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 육성

○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품질 관리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

○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 구축

○ 중소기업 1일 체험

[농정국 소관]

○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영안정 강화

○ 공격적인 해외시장의 개척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의 조성

○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정성 확보

○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원화

○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수출경쟁력 제고

○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농업기술원 소관]

○ 식량·약용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기술 실용화 연구
○ 첨단 BT기술 활용 신품종 육성 및 대량 번식기술 개발
○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소득 안정과제 기술 개발 보급
○ 조화로운 삶을 위한 농촌자원의 가치증진
○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강화
○ 농업생산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 강화
○ 생봉독 및 키토산을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 FTA대응 고품질 과수생산기술 개발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심사경과]

○ 제　안 : 2005. 7. 4(충청북도지사 제출)
○ 회　부 : 2005. 7. 4
○ 상　정 : 2005. 7. 13(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자매결연체결
- 체결예정 : 2005년 9월 29일
- 체결장소 : 충청북도
- 체결방법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주지사외)초청 협정서 서명·교환

○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
-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분야
-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교류
- 대학간의 협력,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
- 관광활동 지원 및 청소년·스포츠 교류 등 관광 및 스포츠 분야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
○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청소년 육성

○ 편리한 관광기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 육성
○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 우수선수 정예화로 경기력을 향상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결과
○ 중원특급 관광호텔
○ 청주공항 활성화

[건설교통국 소관]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
○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구현
○ 재난최소 으뜸충북 구현
○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
○ 으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사업추진실적
○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
○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 실시
○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

[소방본부 소관]

○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
○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확립
○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어려운 이웃 내집사랑 화재보험 가입
○ 수난사고 다발지역 구명의 대여방 운영
○ 차량용 무전기를 이용한 GPS망 구축
○ 사랑의 119혈액은행제 운영
○ 소방항공대 설치운영
○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및 조기활성화
○ 앞서가는 바이오충북 이미지 구축사업
○ 중부권 국제비즈니스 교류공간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29(충청북도지사 제출)
○ 회　부 : 2005. 7. 15
○ 상　정 : 2005. 7. 18(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2,455,466	1,984,859	470,607
일 반 회 계	1,856,975	1,645,821	211,154
특 별 회 계	598,491	339,038	259,453
충북과학대학운영	6,924	5,232	1,692
의료급여기금	93,847	92,501	1,346
농어촌개발기금	13,189	11,990	1,199
학교용지부담금	14,994	323	14,671
지역개발기금	430,480	216,626	213,854
공영개발사업	39,057	12,366	26,691

- 기금현재액(189,697백만원)
- 채권·채무현재액(채권액 : 252,719백만원, 채무액 : 418,446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공유재산 : 524,029백만원, 물품 : 49,520백

만원)

- 예비비 지출현황
  - · 일반회계 : 7건(14,324백만원), 특별회계 : 2건(275백만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4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6. 30(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7. 15

○ 상 정 : 2005. 7. 19(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 세입 결산액 : 1,185,835,828,140원
- · 세출 결산액 : 1,121,000,315,310원
- · 세계잉여금 : 64,835,512,830원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7,515,663,9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19,848,930원임.

○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원)

지 출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2004. 3. 4~ 3. 5)	2004. 3.11	2,309,400,000	2,046,808,010	262,591,990	우암초 외 33교
태풍디엔무피해 재해복구비 (2004. 6.19~ 6.21)	2004. 6.28	301,000,000	265,352,500	35,647,500	충북공고 외 12교
화재피해 재해복구비 (2004. 6.24)	2004. 6.28 / 7.15	372,500,000	318,488,000	54,012,000	증평정 보고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004. 7.16~ 7.17)	2004. 7.29	107,500,000	82,865,470	24,634,530	옥포초 외 2교
계		3,090,400,000	2,713,513,980	376,886,020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7. 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5. 7. 18
○ 상　정 : 2005. 7. 19(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요지
· 문의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등 9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비 123억 9,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 4,422만원을 삭감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

[주요골자]

○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 우리 도의 추진상황
○ 우리 도의 추진계획

第 13 節 第241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7. 29(2005 - 10호)

※충청북도지사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

○ 개회 : 2005. 8. 1(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8. 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건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8. 1(월)

1. 제2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2.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수정가결)

※ 회의록서명의원 : 강구성 의원, 장준호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8. 1(월) 14:00~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5시간 35분	
1차(8. 1)	14:07~19:42	5시간 3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100%)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5. 7.11	1	1. 제241회 및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 7.11	1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	2	2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1회 및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41회 임시회 기간을 2005. 8. 1일 1일간으로 함

○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7. 29(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5. 7. 29

○ 상 정 : 2005. 8. 1(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의견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14 節 第242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8. 4(2005 - 11호)

※ 오장세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8. 11(목) 오전 10시

2. 會 期 : 2005. 8. 1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건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8. 11(목)

1.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2.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회의록서명의원 : 조영재 의원, 장주식 의원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8. 11(목) 10:00~10:04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2시간 02분	
1차(8. 11)	10:05~12:07	2시간 0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96.3%)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27명	26	1	96.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 원 회	2005. 8.11	1	1. 제242회 및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	1	1				
의회운영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2회 및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8월 11일 1일간으로 한다.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15 節 第243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8. 26(2005 - 12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집회공고

○ 개회 : 2005. 9. 5(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9. 5 ~ 9. 14(1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0건	7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9. 5(월)

1.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 5분자유발언

-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의원 : 에너지절약실천 생활화 촉구
-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의원 :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합리적 촉구

□ 제2차 본회의 - 2005. 9. 14(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회의록서명의원 : 송은섭 의원, 이기동 의원

4) 회의진행시간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55분 (58분)	
1차(9. 5)	14:00~14:26	26분
2차(9. 14)	11:00~12:29	1시간 2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100%)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5. 9. 5	1	1. 충북도의회의원의의정비활동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5. 9.14	2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 9. 7	1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 9. 8	2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 9. 6	1	1.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수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3	13	10	3			
의회운영 위 원 회	5	5	5				
기획행정 위 원 회	5	5	3	2			
교육사회 위 원 회	3	3	2	1			

3) 주요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비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일자 : 2005년 9월 14일

○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 2005년 9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결

[주요골자]

○ 조례제명과 동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80,000원에서 1일 110,000원으로 조정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주요골자]

○ 제244회 임시회 기간을 2005. 10. 19일부터 11. 1일까지 14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 상정일자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주요골자]

○ 행정자치부의「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에 의한 소방력 보강

○ 진천소방서 및 봉양·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원의 총수 : 2,545명⇒2,595명(증 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97명⇒1,047명(증 50명)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북개발공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05년 6월 2일

○ 상정일자

- 2005. 6. 14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5. 9. 7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의결

[주요골자]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 도 핵심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가 직접 출자하는 운영방식에 의한 지방공사(안 제4조)

○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이외의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8. 29

○ 회　부 : 2005. 8. 29

○ 상　정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9. 8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매입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와 동계체전 충북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건립된 용평전지훈련관의 소유권을 확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①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

○ 규　모

- 토지 : 323.40㎡(97평)
- 건물 : 연면적 1,196.73㎡(362평)

※ (사) 굿네이버스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재산기부

○ 사업기간 : 2005년 하반기

○ 재산가액 : 928,718천원(토지 200,508　건물 728,210)

②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등 3필지

○ 재산규모

- 토지 : 3필지 991.00㎡ (300평)
- 건물 : 연면적 531.43㎡(160평) 철근콘크리트(1.2층)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재산가액 : 649,338천원(토지 23,388 건물 626,000)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16 節 第244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10. 11(2005 - 13호)

※ 유동찬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5. 10. 19(수) 오후 2시

2. 會 期 : 2005. 10. 19 ~ 11. 1(14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4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건

○ 5분 자유발언

○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1건	4		2	2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10. 19(수)

1. 제2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건

※ 회의록서명의원 : 이필용 의원, 이광종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10. 27(목)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

[질문요지]

○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
○ 대중교통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 관련
○ 청주지역의 고교평준화와 관련
○ 교사평가제와 관련
○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도심 공동화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 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 충주, 제천 등의 중소도시는 시가지확장 등으로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중심 상권 외의 외곽 지역에 새로운 주거·상권이 형성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발생되고 있음.

○ 앞으로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는 시가지 정비 계획과 도심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등 도심 공동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도록 하겠음.

○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심균형발전협의체 구성 사항과 세 번째로 지적하신 도심 상권과 전래 시장 연계 공동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 또 넷째, 재래시장의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음.

○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많은 사항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주변 도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심균형발전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안 제16조에 시·군 시장상인, 인근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권가꾸기 주민 자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또 지원하겠음.

○ 다음으로 재래시장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법안 제8조의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9조에서는 상권과 경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상권 실태 조사를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특성별 육성을 명기화 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어서 도심 상권 및 재래시장 육성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 중에 있음.

[질문요지]

○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

○ 대중교통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 관련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시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여가 문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또 도 소속 공무원의 자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직원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 개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 배낭 연수, 또 직원 단체 보험 가입 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렇듯 현재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 제도는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공사, 사기업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들도 대다수의 공무원이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시행을 바라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답변 :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 먼저 대중 교통 업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의 매년 정기적 조사 발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도민에 대한 대중 교통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음.

○ 둘째, 친절한 운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임.

우리 도는 매년 모범 운수 종사자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상반기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질서 확립 유공자 47명을 표창한 바 있음.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에 행자부, 건교부, 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에 가점이 있으나 표창 가점은 후순위인 4~5순위이며 최근 개인 택시 신규 면허 축소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공정성 확보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민간 소비자 단체 등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대중 교통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

○ 청주지역의 고교평준화와 관련
○ 교사평가제와 관련
○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

[답변 : 교육감 김천호]

○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1979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였으며 일부에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성적 우수자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 과정운영의 정상화, 입시 경쟁의 완화, 전인 교육의 여건 성숙 등 공교육 정상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평준화 제도가 상당히 안착되었다고 봅니다.

○ 입시 제도의 변화는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장점과 성과는 극대화하면서 단점과 문제점이 있을 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함.

[답변 : 부교육감 서명범]

○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체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쿨 및 실고생 예비 창업제 운영, 학교 기업 경영 확대, 취업 박람회 및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취업 촉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동일계 진학 지도를 위해서 '2+2'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진로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답변 : 교육국장 노재전]

○ 교원 평가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나아가 전체 교사들에게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나 지침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

○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관련

○ 사립유치원 지원대책과 도내 학생 음주예방과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민선3기 도지사 공약 사업의 개요는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사업이 87개 사업이고 임기내 착수 및 기반 조성할 사업이 43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총 15조6,990억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조6,325억원, 도비가 1조64억원, 시·군비가 6,429억원, 민자 등 기타 3조4,172억원임.

○ 우선 2002년 7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제31대 도지사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을 8월 19일 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하였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서 각급 사회단체와 시·군에 배포한 바가 있음.

또한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지방언론에도 수시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음.

또한 경실련 등 시민 단체에서도 연간 실적과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 한편 지난 6월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 충북행정학회, 언론사, 각급 단체 대표 등 120여 명을 모신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10년 도정평가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도민과 약속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또 공개한 바가 있음.

[답변 : 농정국장 우병수]

○ 1999년 IMF 환란 이후 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품종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종자보급률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1년 6월 1일자로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를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음.

○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종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를 확충해서 종자 보급률을 현재 33%에서 50% 수준까지 확대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자 생산 및 공급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첫 번째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에서 도축·유통 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대해서 가축사육업 등록, 환경 시설 개선, 사양·질병 관리는 물론 동물 약품안전 사용에 대한 지도·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둘째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양식장에 대해서 수시로 항생물질 잔류 검사와 기타 기생충 감염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답변 : 교육감 이기용]

○ 사립유치원의 지원 방향은 공립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어려운 교육 재정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2005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무상 교육비, 교재·교구비, 교원 연수비, 장학자료 보급, 학급 보조 자원 봉사자 교육, 동화구연대회 등의 지원에 29억 234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답변 : 교육국장 노재전]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의 기본 방향을 학생의 인권 존중, 자율, 책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446교에 1억 2,8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기술, 가정, 보건 등의 교과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함은 물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교육을 각 학교별로 연 4회 이상 특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소와의 협조 유지, 국제절제협회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가고 있음.

○ 이러한 일선에서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는 11월 25일 CJB와의 협조로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트를 개최하여 흡연과 음주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제3차 본회의 - 2005. 10. 28(금)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

[질문요지]

○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
○ 학교폭력근절대책과 관련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및 활성화와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작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써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85년도 2만3,410명에서 10년 후인 '04년에는 1만4,226명으로 무려 39.2%가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청원군의 예를 보면 200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시 35만원 상당의 출산 육아용품을 지급함에 따라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음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으로는 제천시가 셋째자녀 출산 시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고 증평군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2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다행스럽게도 조만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계획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갖고 이에 맞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육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함으로써 안심하고 낳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답변 : 도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우리 도에는 6만3,561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이중에 선천적인 장애는 10%에 불과하고 90%가 모두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중 28%인 1만7,957명이 1·2급 중증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6개소, 장애자용 체육관 1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8개소, 수화통역센터 3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7개소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5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지난해말 수립한 제2차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2009년까지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먼저 기초생활 안정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과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11개소에서 29개소로 확충하고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등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이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16개소를 21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현재 45개소에서 77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답변 : 교육감 이기용]

○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0월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담 상담순회교사 16명과 상담자원봉사자 231명을 배치하였으며 19개교에 CCTV를 설치하였고 교장, 교감, 생활부장 회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

○ 앞으로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한 학생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한 가해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를 시범 운영하겠음.

[답변 : 부교육감 서명범]

○ 저출산과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규모의 과소화가 지속되어 학생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여 작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금년부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농촌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및 오지학교의 교직원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며 도서벽지근무수당과는 별도로 2개 이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수당을 2개학년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음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학생의 소질, 적성 개발 및 취미, 특기신장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순회강사를 확보하고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복식수업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자료와 정보를 활용한 원격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음.

○ 마지막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애듀넷 인터넷교육방송국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등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질문요지]

○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
○ 쌀생산조정제 즉, 휴경보상제와 관련
○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방과 관련
○ 특수학교 교육제도 개선과 관련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는 전통 산업도로 각종 인프라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산업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게 됐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IT와 BT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 효과를 도내 전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가고 있음.
앞으로 금년 내에 이와 관련된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5년 동안에 도비 등 모두 1,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도로, 교량 등의 돈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엄선하여 지원할 계획임.

○ 지난해 수립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과학영농지구로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100만평 규모의 첨단 Bio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도정의 큰 방향을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

[답변 : 농정국장 우병수]

○ 쌀생산조정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생산의 신축적 감축을 통한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벼를 재배하던 논을 대상으로 휴경 또는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농가에 대해서 매년 1ha당 300만원씩을 휴경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해서 금년이 사업시행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년간 휴경 보조금으로 88억 4,9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도에도 약정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에 3,799농가에 45억8,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정부에 계속 시행을 건의를 하고 재시행될 경우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농가와 축산농가 상호 협의에 의한 무상임대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주말농장, 현장체험 실습농지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안을 마련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쌀생산조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답변 : 교육감 이기용]

○ 2003년도부터 청소년들의 예술 혼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체육 및 여가활용 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시설, 치료시설, 주민자치 시설 등 후생복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도록 폐교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영동지역의 특산물인 포도를 가공·판매하는 공장

과 음성 생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무공해 유기농 연구소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보급하여 협약 재배하는 등 폐교를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되도록 운영하는 좋은 사례도 있음.

○ 폐교를 잘못 활용 처리해서 주민들이 애향심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폐교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 폐교의 생산적 활용률의 제고 및 관리운영 시스템이 전환되도록 지역별 폐교활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청 및 시·군 관계자,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지역문화 예술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2006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달하였음.

이와 같은 관리운영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연초 폐교현황 및 미활용 폐교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고지하고 폐교 대부 관련지자체 운영계획,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답변드림.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대비 특수교육 수혜비율은 0.98%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위이며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2.52%로 전국 평균 2.40%를 상위하는 전국 6위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 이상이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 향후에도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도 강화 및 연수기회확대, 직업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직업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여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시설은 공·사립 특수학교 9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42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 984학급이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조성,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겠음.

□ 제4차 본회의 - 2005. 11. 1(화)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5. 10. 19(수)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1시간 54분 (2시간 59분)	
1차(10. 19)	14:08~14:49	41분
2차(10. 27)	10:30~15:29	4시간 59분
3차(10. 28)	10:29~16:01	5시간 32분
4차(11. 1)	11:00~11:42	4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99.08%)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3차 본회의	27명	27	-	100
4차 본회의	27명	27	-	100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5.10.19	1	1. 제24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10.24	1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5.10.25	2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5.10.28	3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10.20	1	1.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05.10.25	2	1.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산업경제 위 원 회	2005.10.26	1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5.11. 2	2	1.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관광건설 위 원 회	2005.10.24	1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2005.10.19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4	14	13	1			
의회운영 위 원 회	2	2	2				
기획행정 위 원 회	4	4	3	1			
교육사회 위 원 회	4	4	4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

[주요골자]

○ 제245회 정례회 기간을 2005. 11. 21일부터 12.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19(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주요감사사항]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 및 처리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12

○ 회 부 : 2005. 10. 14

○ 상 정 : 2005. 10. 2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함(안 제4조)
-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 하도록 함(안 제5조)
-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

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 매회계년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4(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감사사항]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 및 처리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5(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조성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 재산규모 : 2,540,325㎡(254ha)
- 사업기간 : 2005. 하반기
- 사 업 비 : 3,142백만원(도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8(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내용]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중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한다.
- 부칙 안 제3조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한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12
○ 회　부 : 2005. 10. 14
○ 상　정 : 2005. 10. 20(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내용]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및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계획의 변경, 시행 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안 제6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5(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내용]

- 제명을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 운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

- 각종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창구발급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하도록 구분하고, 수수료를 1통당 500원에 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5(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감사사항]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 및 처리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5(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내용]

- 의무부담액 : 94,428백만원(국비60%, 도비20%, 군비20%)
  - 부가세 제외, 기본계획고시일 기준('05.6) 현재 불변가격 기준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 채 무 자 : 주관관청(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 환경부, 충청북도(국·도비 지원)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심사결과] 원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6(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감사사항]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 및 처리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26

○ 회　부 : 2005. 10. 27

○ 상　정 : 2005. 11. 1(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내용]

- 쌀 개방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라.
-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24(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감사사항]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 및 처리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채택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0 5

○ 회 부 : 2005. 10 7

○ 상 정 : 2005. 10 19(제1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주요내용]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헌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 노무현 대통령님, 김원기 국회의장님,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들께 청원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17 節 第245回 定例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5. 11. 11(2005 - 14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집회공고

○ 개회 : 2005. 11. 21(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5. 11. 21 ~ 12. 23(33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충청북도시 ·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구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49건	20	22			7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5. 11. 21(월) 14시

1. 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 ○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 쌀농업과 관련하여

※ **회의록서명의원 : 이범윤 의원, 강우신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5. 12. 15(목) 10시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8.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 제3차 본회의 - 2005. 12. 23(금) 11시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8.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 회의진행시간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시간 56분(1시간 19분)	
1차(11. 21)	14:08~15:48	1시간 40분
2차(12. 15)	10:02~11:26	1시간 24분
3차(12. 23)	11:00~11:52	5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5%)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3차 본회의	27명	24	3	88.9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5.12. 1	1	1.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5.12.16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5.11.30	1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12. 5	2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6	3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7	4	1.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예산안 계수수정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5.12.12	5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12.19	6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05.12.23	7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교육사회위원회	2005.11.22	1	1.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2005.11.24	2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요구의 건
	2005.12. 2	3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5	4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12. 6	5	1.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5.12.12	6	1.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5.12.15	7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5.12.16	8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건
	2005.12.19	9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 위 원 회	2005.12. 5	1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6	2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7	3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건
	2005.12.16	4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에너지기본조례안
	2005.12.19	5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정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건
관광건설 위 원 회	2005.12. 2	1	1. 충청북도사전지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12. 5	2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12. 6	3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 7	4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2006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5.12.16	5	1. 2005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12. 9	1	1.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12	2	1.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5.12.13	3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005.12.21	4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 건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2005.11.23	1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헌법재판소 판결 관련성명서 채택의건
지방분권 및국가균형 발전특별위원회	2005.12.15	1	1. 혁신도시 입지선정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49	49	26	23			
의회운영 위 원 회	4	4	1	3			
기획행정 위 원 회	16	16	12	4			
교육사회 위 원 회	12	12	7	5			
산업경제 위 원 회	7	7	4	3			
관광건설 위 원 회	6	6	1	5			
예산특별 위 원 회	4	4	1	3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회사무처)

[주요골자]

○ 예산액 : 57억7,700만원(전년대비 12%증액)
- 인건비 : 29억3,700만원
- 일반수용비 : 1억3,400만원
- 경상사업비 : 2억3,800만원
- 일반운영비 : 1억3,900만원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채택의건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고유의 자치입법과 예산통계, 집행, 감시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

[주요감사 사항]

○ 업무추진 현황
○ 조직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
○ 청원 및 진정의 접수·처리사항
○ 의정활동 홍보 실적 등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11. 25
○ 회부일자 : 2005. 11. 25
○ 상정일자 : 2005. 11. 30(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 재산규모

- 토지매입 : 33,000㎡(9,982평) 5,000백만원
- 건물신축 : 3,300㎡(998평)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1~2007. 9월

○ 사 업 비 : 9,500백만원(도비)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골자]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83-2일원

○ 단지규모 : 375,884㎡(113,704평)

○ 사업기간 : 2006. 1~12월

○ 사 업 비 : 56,852백만원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 위 치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1번지외 1필지

○ 조성규모 : 7,736㎡

○ 사업기간 : 2006. 1~12월

○ 사 업 비 : 702백만원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

○ 신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320㎡(399.3평)

○ 사업기간 : 2006. 1~12월

○ 사 업 비 : 1,481백만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에서 규정된 근무시간, 특별휴가, 영리업무의 금지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주요내용]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업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전 전담기구 설치, 지방행정혁신, 사업별예산제도,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관련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595명⇒2,616명 (증 21명)

○ 직급별 증원 : 증 21명

○ 한시직급정원 존속기한 : 2007년 6. 30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시 ·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신설등 중선거구제에 따라 시 · 군의회의원정수와 시 ·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제명의 개정 : "충청북도시 · 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시 · 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시 · 군의회의 의원정수 조정(안 제2조)

- 현행 155명을 ⇒131명으로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제3조)
- 총150개소를 ⇒37개소로
  · 2인 선거구 : 7개소
  · 3인 선거구 : 20개소
  · 4인 선거구 : 10개소

[심사결과] 수정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정이유]

○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본문 4장 40조, 부칙 3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 제1장은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 및 도민의 책무 적극적인 조치 등을 규정

○ 제2장은 여성정책으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여성주간행사와 정책 결정과정 도정참여 확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성차별 개선, 여성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

○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화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기금운용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부칙으로 시행일 및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규정을 둠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2004.1.30))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정

정원 범위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71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15명으로 함(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971명 ⇒ 3,015명(증 44명)
  -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2,958명 ⇒ 3,002명(증 44명)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을 기존 9명에서 16명을 증원하여 25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제2조)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 제19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2004.1.30)〕

[심사결과] **수정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11. 14

○ 회부일자 : 2005. 11. 14

[제안이유]

○ 「바이오토피아 충북」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육성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와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 공무사업을 첨단산업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

○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신설

○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 신설

○ 제2조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 근거 신설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12. 8

○ 회부일자 : 2005. 12. 9

[제안이유]

○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보강하는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 도모

○ 관계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북도에너지 기본조례안

[제안이유]

○ 에너지 절약 및 에어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공공기관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 이 조례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

[제안이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지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40인 이하로 구성
○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심사결과]　수정가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11. 14
○ 회부일자 : 2005. 11. 14

[제안이유]

○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설립 및 임용권을 도지사로 일원화
○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통일
○ 의용소방대 운영주체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수당·활동보조비·보상금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규정 마련
○ 재해보상금의 피청구자 및 결정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심사결과] **수정가결**

第 18 節 第246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6. 1. 11(2006 - 1호)

※ 김홍운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6. 1. 20(금) 오후 2시

2. 會 期 : 2006. 1. 20 ~ 1. 26(7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8건	4		1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6. 1. 20(금)**

1. 제2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3.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김홍운 의원)
- 혁신도시 입지 취소 및 남부지역의 개발
○ 5분 자유발언(장준호 의원)
- 혁신도시입지선정 결과 관련
○ 5분 자유발언(강우신 의원)
- 서민생활 관련
○ 5분 자유발언(정상혁 의원)
- 혁신도시 선정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조계숙 의원, 정윤숙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6. 1. 26(목)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정윤숙 의원)
- 여성의 복지와 지위 향상 관련
○ 5분 자유발언(이범윤 의원)
- 공무원 관행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6. 1. 20(금)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50분(55분)	
1차(1. 20)	14:09~15:30	1시간 21분
2차(1. 26)	10:59~11:28	2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3%)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7	-	100
2차 본회외	27명	25	2	92.6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6. 1.20	1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6. 1.23	1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2006. 1.24	2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나. 감사관실 다. 자치행정국
교육사회 위 원 회	2006. 1.20	1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2006. 1.23	2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2005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 1.24	3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이범윤의원외발의)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복지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006. 1.25	4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사회 위 원 회	2006. 1.26	5	1. 2006년도 충청북도 여성정책분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계획 채택의 건 2. 2006년도 충청북도 여성정책분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06. 1.23	1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농정국 나. 경제통상국
	2006. 1.24	2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농업기술원
관광건설 위 원 회	2006. 1.24	1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교통구 나. 소방본부 다. 문화관광국 라. 바이오산업추진단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 별 위 원 회	2006. 1.20	1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추진상황 보고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0	20	8	1			11
의회운영 위 원 회	3	3	2				1
기획행정 위 원 회	2	2					2
교육사회 위 원 회	11	11	6	1			4
산업경제 위 원 회	2	2					2
관광건설 위 원 회	1	1					1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특 별 위 원 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의정성과와 금년도 의정방향

○ 주요업무추진 계획

◉ 제2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

○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안 제2조)

- 기획행정위원회 : 7인 ⇒ 8인
- 교육사회위원회 : 6인 ⇒ 7인
- 산업경제위원회 : 6인 ⇒ 7인
- 관광건설위원회 : 7인 ⇒ 8인

○ 상임위원회의 소관 (안 제3조)

- 기획행정위원회 :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 사항 삭제
  충북개발공사 운영 사항 신설
- 교육사회위원회 : 지방의료원 운영 사항 신설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

○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무·통계행정의 구현

[공보관실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 역점추진 혁신과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
○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식영역을 확대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적극 추진

[감사관실 소관]

○ 일반현황
○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자치행정국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 2006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주요현안사업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2. 1. 12
○ 상　정 : 2002. 1. 23(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 신설 (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안 별표 1)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함 (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2. 1. 12

○ 상　정 : 2002. 1. 23(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안 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연가일수의 탄력정 운용(안 제18조제6항)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1. 13(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2. 1. 16

○ 상　정 : 2002. 1. 24(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985명 ⇒ 3,072명(증 87명)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72명 ⇒ 3,059명(증 87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72명"을 "3,008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59명"을 "2,995명"으로 한다.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복지환경국 소관]

○ 일반현황
○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주요 현안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주요성과
○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신규시책 및 혁신과제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충북과학대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 결과
○ 대학의 비전과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서비스의 실시
○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구축
○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
○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활동의 강화
○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강화
○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구현
○ 웹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기숙사 신축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역점추진 신규 시책 및 혁신과제

□ 산업경제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농정국 소관]
○ 기본현황
○ 2005년도 주요성과
○ 2006년도 농정비전과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혁신과제와 현안사업

[경제통상국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 2006년도 지역경제 여건과 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
○ 혁신사업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현안사업

□ 관광건설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현황
○ 현안사업

[소방본부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현안사업
○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후속조치 대상업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 후속조치 대상 업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역점추진 신규시책
○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第 19 節 第247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6. 2. 21(2006 - 2호)

※ 김홍운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6. 2. 21(화) 오후 2시

2. 會 期 : 2006. 2. 21 ~ 2. 28(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6건	4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6. 2. 21(화)**

1.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2.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분 자유발언(조영재 의원)
- 농민 생존권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김정복 의원, 김문천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6. 2. 28(화)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련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6. 2. 21(화) 14:00~14:07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37분(19분)	
1차(2. 21)	14:08~14:24	16분
2차(2. 28)	11:00~11:21	2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96.3 %)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6	1	96.3
2차 본회의	27명	26	1	96.3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6. 2.21	1	1.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6. 2.22	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2006. 2.23	1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청주의료원 다.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3-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의원 발의)
산업경제위원회	2006. 2.23	1	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의원외8인발의) 1-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의원발의)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2006. 2.21	1	1.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2006. 2.28	1	1.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8	8	2	2			4
의회운영위원회	1	1					1
기획행정위원회	1	1	1				
교육사회위원회	3	3	1	1			1
산업경제위원회	1	1		1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1	1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주요골자]

○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2. 13(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2. 13

○ 상 정 : 2006. 2. 22(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분장사무 조정

- 건설교통국 : 기업도시 건설·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

○ 명칭변경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여성정책관실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 역점추진 신규시책과 혁신과제

[청주의료원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 성과평과 및 시사점

○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

○ 200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충주의료원 소관]

○ 일반현황

○ 2005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 역점추진 혁신과제

○ 200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6. 1. 12

○ 상　정 : 2006. 2. 23(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함 (안 제3조 제1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1. 11(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6. 1. 12

○ 상　정 : 2006. 2. 23(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함 (안 제3조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함(안 제5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함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5. 12. 8(박종갑 의원 외 8인)

○ 회　부 : 2005. 12. 9

○ 상　정 : 2006. 2. 23(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 변경

- 생활개선회 ⇒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 농촌지도자회 ⇒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 4-H회 ⇒ 충청북도 4-H연합회
- 농촌경영인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임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 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함 (안 제5조)

○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함 (안 제10조)

○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 2항의 "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기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

장으로 한다."로 한다.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 제천 종합연수타운

○ 기업도시 건설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第 20 節 第248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6. 3. 14(2006 - 3호)

※ 김홍운 의원 외 9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6. 3. 22(금) 오후 2시

2. 會 期 : 2006. 3. 22 ~ 3. 31(10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충청북도의회의장(권영관) 사임의 건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7건	3			1	3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6. 3. 22(수)

1. 제24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가결)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3. 충청북도의회의장(권영관) 사임의 건(가결)

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회의록서명의원 : 연철웅 의원, 한창동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6. 3. 23(목)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질문요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전략
○ 기업이전 대책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저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해서 17개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전략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면대책으로는 기업의 판로개척 또 지역내 기업 입점을 위한 대도시 유통업체와의 협력, 저리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중부권내륙화물기지의 건설, 제천·음성유통단지의 조성 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U-BIT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U-BIT 융합기술 개발거점의 건설과 아울러 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오창캠퍼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센터 등 BINT 국가연구기관 조성이 지금 속속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증평연구소의 설립, 제천지역의 전통의약산업센터의 운영 또 단양지역의 석회석 신소재공동연

구기반 구축 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조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선점을 하나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기술 교류, 이업종간 교류 등 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 기업은 신바람나게 투자하고 농촌은 영농의 부를 일으키는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에서 기업과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운동전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 충북농협지역본부와 협약식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이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충청북도는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상공회의소는 향토제품을 팔아주며 농협은 기업사랑카드 및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민소득 1인당 2만달러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지역의 국제종합기계의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수도권 기업의 이전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300여개의 업체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일부 기업이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기업유치위원회 등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천지역에 소재한 국제종합기계의 경우에는 신규 소요자금의 융자, 대출기한의 연장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또 시·군과 농협을 통해서 국제종합기계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를 우선 구매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정보의 조기 입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의 조치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제종합기계 중심의 기계부품 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 셋째로 도내 제품구매 촉진과 행·재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기업인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35.2%가 판로개척 및 마케팅으로 조사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사랑과 향토제품 구매 촉진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대전 및 충청권 판매기획전의 개최,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무료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향토제품 판매촉진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4월 롯데마트기업박람회에 전국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이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배려가 되어서 우리 향토기업 7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기업 생산제품은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할 때 주관 기관·단체, 담당부서, 책임자 지정 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요지]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

[답변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도시지역의 시범운영에 이어 매년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내에서 153개 읍·면·동 중 87%인 13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행초기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계층별 다양한 욕구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구성방법 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주제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면서 발전방안을 강구도 해봤습니다.

○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역특화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리 도가 입상하는 등 생활 속의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기능이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위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존건물을 활용하다 보니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20개소 중 충주시 이류면 등 8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을 제작 보급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도내 자치센터가 다수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간의 비교견학을 실현하여 자율적인 발전방안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위원의 자세와 역할, 자치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산,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위원회의 구성 및 의무와 권한 확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구성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자치 중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 도와 농업부문 예산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자주재원의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농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조금은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음. 따라서 타 도에 비해서 농가수와 경지면적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도의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또한 적게 편성되어 왔음.

[질문요지]

○ 노인 장애인 복지 및 출산장려 지원대책

[답변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그리고 노인보호대책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총 38개 사업에 대해 83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노인 3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전체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비롯해서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노인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의료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함께 취업 알선을 위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저소득 청각 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 재가 중증·시설입소노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지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13년 후인 2019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의 진입

이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요양비용을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한정되었던 서비스가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어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욕구에 걸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요양보장제도와 우리 도의 중기계획인 제2차 충청북도 복지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변화되는 환경에 걸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책과 장애인들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지급과 함께 가사도우미, 재활보조기구, 생활이 어려운 농촌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76개소에 대해 원활한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266억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재활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이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장애인고용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와 협조하여 해마다 장애인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5년말 현재 의무고용사업장에는 333명의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고용목표를 설정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등 도내 11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서 407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제2차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한 사업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말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써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85년도에 2만3,410명의 출산이 2004년도에는 1만4,226명으로 39.2%가 감소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성장 동력의 저해요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03년 11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지원을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1만 5,189명에 464억8,89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우리 도에는 459명에게 14억6,430만원이 지원되어 실질적으로 도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정관 복원비 19만8,170만원 중 13만8,720원, 난관 복원비 23만9,280원 중 16만7,500원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한 바가 있습니다.

○ 금년도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380명에 1억 5,20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02명에 5억 1,2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만4,487명에 3억1,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594명에 1,3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한 인구자질향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 지원 시책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산장려 유인책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출산한 아기에 대한 단순한

축하 성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구축,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과 출산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장기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저 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 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갖고 출산장려에 대한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농가부채 해소 및 묘목축제 지원 대책

[답변 : 농정국장 김문기]

○ 농산물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위험요인으로 투자가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부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의 2004년도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3년 2,205만6,000원보다 15.7% 증가한 2,552만7,000원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보다 가구당 136만5,000원이 적고 농가부채 전국 순위는 6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농기계구입, 시설하우스설치,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로 인한 생산성 부채와 교육비, 문화생활 등 가계부채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동안 농가부채 해소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1년에 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9차례의 부채경감대책 실시와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1993년부터 농어촌개발기금을 자체 조성하여 농업인, 작목반, 농업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협에서도 지난해에 중장기 대환자금, 상호금융 저리대체 등 4개 부문 총 3,804억원을 운용하여 왔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바이오·친환경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농가부채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이원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 이원묘목 산업은 연간 1,200만주의 묘목을 생산하여 130억원 정도의 농가 조수익을 올리는 중요한 지역특산품으로서 지난해에는 묘목유통센터 개관과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 제1의 묘목 고장으로 확고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묘목 보내기 사업에 5,000만원, 강원도 양양군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묘목지원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도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옥천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축제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도내 각 지역에서 30여개의 크고 작은 농특산품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모든 축제에 도비를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묘목 축제비 지원 또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묘목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관광산업개발 및 활성화 대책

[답변 :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 주 5일 근무의 실시와 국민소득의 증대, 고속철도 개통 등 국내 여건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유입 등 국내외적으로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패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과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가족중심의 체험형 관광지 그리고 특히 21세기 첨단 Bio산업을 접목시킨 웰빙 관광지조성을 관광산업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10월로 예정된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충북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광객 감동과 도민소득이 관광육성"에 관광정책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시·도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등 주제와 테마별로 관광코스의 발굴 그리고 각종 축제와 관광기념품, 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와 특히 지난해 최우수 관광홍보물로 선정된 "짧은 만남 긴 여운" 홍보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홍보 등 충북관광을 알리는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또한 새로운 관광 패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관광협의회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시책발굴토론회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전통테마마을 등을 연계한 체험관광 개발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활성화 제안공모, 수준 높은 축제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평가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전 세기 취항에 따른 지원과 청주국제공항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청남대, 초정약수, 흥덕사지 등 청주공항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장점을 특성화하고 숨겨진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한편 각종 계획이 착실히 실행되어 다시 찾는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도시재해 안전대책

[답변 :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인하여 대형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등 도시형 재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재난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소방방재청을 개청하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2005년도에 재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예방과 복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재해 등 자연 및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전기·가스, 폭발, 건축물,통신 등 18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적십자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재난관련 32개 유관기관에서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 대응 및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해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500내지 600세대에 노후된 가스, 전기시설을 무료·점검·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량, 건물, 가스 취급시설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2,872개소를 지정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철, 동절기 등에 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도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단계별,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 의거 재난에 대처하

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난에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행동요령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닥칠 수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주민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높이고 홍보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 최근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학계,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청주시, 영동군, 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금년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앙,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안전한 선진충북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질문요지]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책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청권배제 방침으로 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내 지역들을 인식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충북 배제 철회운동을 펼친 결과 12개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이 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다

른 것과 상이한 3개의 연수기관을 제천의 종합연수타운으로 개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도의 방침은 지역발전을 위한 북부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방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기관과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종합연수타운 건설 사업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익성을 중시하는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관여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이후 금년 2월 3일에는 정부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2월 9일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완성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기관을 동반 유치하는 등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도에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참여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대한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세 번째 말씀하신 편입지역 내 주민이주 대책과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지역 내 주민이주 대책으로 혁신도시 내 조성하는 주거단지의 택지 우선 분양과 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한 집단이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진천군과 음성군전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 1월 4일 부터 5년간 혁신도시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입지지역 내 보상 목적의 건축물 구축과 수목 식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정주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복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여가시설 지원, 교육 기반시설과 주거 및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허가, 세제감면 등 행정·재정적인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여서 자족적 혁신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 등 공공기관이 청주·청원이 아닌 소외지역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이전지역 발전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지역에 미치는 손실감이라든지 이전비용, 업무 효율성의 저하 등 역기능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요지]

○ 충북개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답변 :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등 지역내 핵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30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조기 개청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서 향후 3년간 공사를 이끌어갈 개발공사 사장과 사업이사, 기술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등 공사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 16일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 또한 공사 설립 후에는 창의적인 기획능력과 모범적인 사업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지역인재 32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들 중 필수요원 16명을 두 차례에 걸쳐 임용하였으며 이들을 3개팀으로 나누어서 9개소의 선진 개발 공사의 경영실태 벤치마킹과 도내 시·군 주요사업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을 율량동 KT 상당지점 건물로 이전하고 지난3월 22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둘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77만평 규모의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충청북도로부터 출자 받은 미분양택지 활용 그리고 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은 출범 첫해인 만큼 업무환경의 조성, 직원의 교육훈련 등 조직의 정착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 사업착수 시까지 다소간 기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업수익 발생에 따른 흑자수익 발생시점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발전을 위하여 출범한 조직이니만큼 공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극대화되도록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충북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경에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2008년부터 흑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대책

[답변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 도유재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청사부지, 하천, 도로 등 재산의 용도에 따라 업무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해마다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대부하는 등 재산의 활용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재산관리관별로 4월부터 8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 점유된 토지 98필지 14만3,000㎡를 적발하여 28필지 5만4,000㎡에 대하여 1,605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나머지 자투리 토지는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또 도로, 하천 등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지목으로 남아있어 관리대장에 누락된 토지 1만 2,038필지 608만3,000㎡를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해당 재산 관리관별로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금년에도 도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부중인 지목이 하천인 농경지 732필지 중 168필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인접지 수준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규모나 형태로 보아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재산 93필지 5만8,703㎡를 매각하여 청주동부소방서 부지 등 6필지 3,589㎡를 대체 취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도 공사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미활용 상태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재산관리관들로 하여금 조속히 용도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게 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재산관리의 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잡종 재산은 도 및 시·군에 전담부서로서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하천, 제방 등의 행정재산은 업무주관부서에 1명의 담당자가 다른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각종 공사의 시행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관리인력의 부족현상 해소 및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유재산전산프로그램이 금년에 보급되면 이를 신속히 전파해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게 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연찬회는 물론 사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은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인력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는 2005년도부터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5급 이하에게 월 5만원씩의 관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 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지난해 말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의 도유재산 관리실적을 평가해서 선발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 중에 있으므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충북지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전략

[답변 :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과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와 역사의 보존과 복원으로 문화한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1

송단지를 포함하여 800만평의 규모로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19일 신도시 구역 내 난개발 조짐이 있고 청원군 기본 및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는 청원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기간인 3년 이내인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연장할 계획입니다.

○ 청원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 오송신도시 건설의 핵심사업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조 속히 완료하여 개별법상의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며 잔여구역에 대하여는 청원군 관리계획상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으로 결정하여 향후 용도지역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 2025년까지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의 개발주체는 충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시행 방식은 전면매수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으나 구역 내 현황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오송신도시 인근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할 경우 오송신도시에 인구 10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도까지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의 이전에 따라 이에 관련된 업무, 상업, 생산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활공간으로 약 50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도시규모로 조성되며 오송신도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5대 국책기관의 이전과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또한 국토의 중심지이며 국가간선망의 교차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신도시를 건설하면 2025년까지 10만명 도시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의 인구 예측결과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로 구성되며 기존 인구 및 자연적 증가 인구는 1만4,000명이며 사회적 증가인구는 8만 6,000명으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관련한 상주인구 1만4,000명,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업, 업무 종사인구 2만1,000명, 추후 개발할 주거, 생산, 연구시설 관련 인구 3만7,000명, 교육 및 레저 관련 인구 1만4,000명으로 2025년까지 10만명이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 한 걸음 빠른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입주수요의 흡수여부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오송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접목하는 방안과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정보화 신도시를 건설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를 이용한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도민의 정보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충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유비쿼터스 기반 위에 최첨단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오송 UBio-City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립 중인 오송 UBio-City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하여 초고속 광대역통신망(BcN) 인프라 구축,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등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 예정으로 향후 신도시 건설 시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추진모델로서 조성하겠습니다.

○ 네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지난 2001년 12월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수립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도시계획을 건

교부 실무팀과 협의를 하고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청원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최종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예정입니다.

[질문요지]

○ 교직의 남교사 감소에 따른 개선방안

[답변 : 부교육감 서명범]

○ 성별로 본 교직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교직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질이 우수한 많은 여성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택하는 사회적인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차질 발생 우려, 학생들의 여성화 내지는 중성화 현상, 체육특기생 관리 및 체육 수업에서의 부진우려, 각종 행사 추진 즉, 야영수련 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 등 학교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교직에의 여교원 비율의 대폭적인 증가는 우리만이 아닌 많은 OECD 선진국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여교사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여교사들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출·퇴근이 용이하며 문화생활 영위가 유리한 도시 지역 학교에의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둘째는 남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교사의 승진욕구가 낮은 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교사는 승진을 위하여 농촌지역 학교가 다소 출·퇴근이 어렵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좋지 않더라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농촌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셋째는 여교사의 생활근거지 근무욕구가 강해서 타 지역에서 2~3년 정도를 근무한 여교사들의 경우 생활근거지인 도시지역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교사의 도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초·중등교직의 여성화 심화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연수 및 자기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원양성 대학인 청주교육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자질이 우수한 남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욕구가 강한 우리 여교사들에게 농촌학교 근무의 가산점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촌지역 학교 근무를 유도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교장, 교감의 승진 임용 시 여성 우대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남성 역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의 소지를 해소하고 여교사들도 남교사들과 당당히 경쟁하여서 승진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현재 시행 중인 농촌학교 순회·복식수업 교사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농촌근무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 근무 교사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지역으로의 여교사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학교급식 위생관리 대책

[답변 : 교육국장 박의상]

○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야함에도 제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3월 8일 28명, 3월 9일 11명 모두 39명의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10일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제천보건소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 및 보존식, 음용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추정할 것이며 학교급식 관계자의 잘못으로 인정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3년째 집단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두 번 모두 보존식 및 가검물, 음용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

출되지 않아 단순 설사 증세인 장염으로 판명되어 학교급식 외의 사고로 처리되어 학교관계자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 관련학교는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낡고 협소한 급식소를 2005년에 교육비특별회계 4억5,000만원과 제천시청의 1억원을 투자하여 급식시설을 증·개축하여 위생기구 구입 및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식품보관실, 식당 및 영양 상담실 등을 갖추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하고자 노력하던 중 집단 환자가 발생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매일 급식시마다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도청, 식약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5년에 실시한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 상·하반기 평점 91.4점으로 A등급으로 위생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급식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학교관계자 및 위탁업체는 주의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위생·안전 분야는 지적이 없었고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 또한 2003년부터 보존식, 고무장갑, 앞치마, 식기구 등 급식소 전반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균 검사인 미생물 오염도 표본검사를 계속 실시한 결과, 2003년 2학교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1건도 검출되지 않은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하여 자체조리 371개교에서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1일 식중독 위험지수를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식중독 예방대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2004년에 마련되어 관련공무원, 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의 잘못

이 인정되면 처분기준에 따라 엄중문책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위생·안전점검과 단위학교의 자주위생능력을 배양하는 등 식중독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제3차 본회의 - 2006. 3. 24(금)

○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질문요지]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도민통합을 저해하거나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도내 지역간 불균형 실태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이번 용역을 통해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등 4개 부문에서 의원님께서 예시한 재정자립도를 포함해 13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측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발전도 지수가 가장 높은 청주시가 2.06인 반면에 가장 낮은 괴산군은 -1.18로 나타나는 등 청주시를 비롯한 상위 6개 시·

군과 괴산군 등 하위 6개 시·군간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또 권역별로도 남부권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계량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오송단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오송신도시 등이 건설되는 경우에 청주권과 기타 지역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도정의 아주 큰 역점 과제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조성해서 발전도 측정결과 하위그룹인 6개 군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 3년마다 불균형 실태를 정례화 했고 도, 의회, 시·군간에 투자협약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사업추진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추진상황

[답변 :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정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불균형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도 체계적인 발전도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 4개 지표만을 측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금번 지역간 불균형 측정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활용한 지표를 확대하여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등 4개 부문에 재정자립도, 재산세, 제조업종사자수,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문화공간수 등 13개 지표를 개발해

발전도 지수를 측정하였으나 이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사항 등의 지표도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측정지표의 개발·보안 및 측정기법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불균형 원인분석과 전략도출이 심층적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불균형의 원인과 전략도출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시·군의원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및 지역혁신협의회 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시 심층적인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과 재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계획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와 도의회 그리고 해당 시·군의 3자 협약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자문 및 컨설팅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중간평가 및 진도관리를 통해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를 차등화시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도 산하기관의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산하기관의 이전방안은 지난해 말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도의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도 산하기관을 남부권으로 이전함으로써 남부권에 조성계획인 바이오 농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도 차원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이전대상기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업무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

[질문요지]

○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실태

[답변 : 도지사 이원종]

○ 민선3기의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이고 총 소요예산은 15조6,990억원으로써 선거당시 도민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사유를 분석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도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지난 2005년 8월달에는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테마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사업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올해까지 8조9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3개의 추진

불가사업을 제외한 84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4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당초 계획한 87개 사업을 무난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견사업장 건설 등 3개 사업은 제도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시행이 어렵게 된 것들입니다. 먼저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민자로 추진하려던 경견사업장 건설 및 유치 사업은 2002년 1월 29일 민간투자자와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6일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 대책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계획에 경견을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현재 동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어서 추진에 제약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자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 시킨 바가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제천외국인전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천지방산업단지 내 3만평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천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상용지를 그 기업에 분양함에 따라서 조성하려는 대상용지가 소멸되었고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대상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 세 번째로는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입니다.

충북에서는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0년에는 보은군과 진천군이 유치신청을 했고 전국에서는 모두 17개 시청과 군청이 신청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충북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바 있지만 중앙차원의 종합평가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국가 대표선수촌이 우리 도내에 유치 결정이 되어서 현재 진전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민선4기에도 연계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완성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 충북의 과제입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첨단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발전전

략산업으로 선택하여 도내 전역에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국책기관과 각급 연구시설을 집적해 감으로써 가장 앞서가는 첨단산업도로 위상을 확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완성입니다.

○ 두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및 오송역 건설을 통한 국가중심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 또한 민선4기에도 확고하게 이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충북은 행복도시로의 관문역할과 배후지역으로서 발전의 호기를 얻었고 도민 모두가 염원하던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의 유치로 국가의 새로운 중심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을 행복도시 관문공항의 위상에 맞도록 국내외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공항시설투자계획 반영과 청주공항의 편리성을 집중 홍보하여 항공수요를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을 조기 건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국가의 중심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도는 BIT산업의 선점, 국가 중심부로의 도약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선 최근 새롭게 변화된 우리 도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수립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기본으로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지원해 가면서 지역개발, 산업과 기능의 배치, 투자순위 결정 등 제반 시책을 통하여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하는 시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네 번째로 지속돼야 할 중요한 사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서 복지·문화·체육분야 등에도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합니다.

○ 농민의 소득보장과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해 각급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개관, 저소득층 생활보장의 확대, 여성발전 계획 추진 등 복지혜택을 더욱 늘리고

수준 높은 문화활동과 레저스포츠산업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민선4기에도 반드시 지속돼야 할 도정의 과제들입니다. 저희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과제들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고 충북인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요지]

○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실태

[답변 : 교육감 이기용]

○ 공약사업은 3개 분야, 6개 영역, 41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분야별로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학생 분야입니다.

최적화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1인 1특기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재능아에 대한 초·중·고 연계교육, 12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 등 영재교육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2005년도 전국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학생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하고 기본과정, 심화과정, 주말캠프 등을 운영하여 1,10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이 참여하여 만들고 지키는 학생생활규정도 적극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학생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증·개축 5개교, 건물 대수선 130개교, 냉난방 시설 37개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22개교를 추진하고 도서관 현대화사업 66개교, 과학실 현대화사업 75개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보람찬 선생님 분야입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보고문서 폐지 31건, 주기 조정 7건, 인터넷 보고제, 전자회보 활용 등 보고사무를 정비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종이문서 감축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교직원 출장여비, 연수여비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06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1% 증액 지원하였으며 교원의 자율적 자기계발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3,590명에게 2억1,000여 만원의 자율연수경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과 봉사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을 운영하였으며 인사 사전예고제와 능력 중심의 보직관리 등 투명한 인사행정에 힘쓰고 감사실시 사전예고제, 일상감사제, 기동감사반 운영 등 예방중심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만족하는 학부모 분야입니다.

우선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현안 건의함을 개설하고 정책착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현안과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직단체의 각종 교육

활동 지원과 정기교섭, 협의를 추진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교단 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재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재정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등을 통한 중앙부처의 교부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예금이자수입 증대,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확충 등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과 비법정 전입금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공약사업은 국가인적자원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충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금년도에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스타 영재육성을 위해 학생의 개인차에 알맞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입체적 학력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개방형 방과후 학교운영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수련체험형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국제학습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운영과 과학문화도시 운영, 학교별 과학특화사업 등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고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학생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1군 1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특수교육 진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 강화, 지방대학과의 교육협력네트워크 등 지역사회교육 혁신체제 구축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공약사업은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가교육정책 사업과도 연계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4차 본회의 - 2006. 3. 31(금)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6. 3. 22(수) 14:01~14:06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0시간 23분 (2시간 36분)	
1차(3. 22)	14:06~14:37	31분
2차(3. 23)	10:00~15:25	5시간 25분
3차(3. 24)	10:30~14:39	4시간 09분
4차(3. 31)	11:00~11:18	1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률 : 97.2%)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률(%)
1차 본회의	27명	25	2	92.59
2차 본회의	27명	25	2	92.59
3차 본회의	27명	25	2	92.59
4차 본회의	27명	24	3	88.89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6. 3.22	1	1. 제249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6. 3.27	1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2006. 3.27	1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2006. 3.24	1	1. 충청북도 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7	7	5	2			
의회운영위원회	3	3	3				
기획행정위원회	2	2	1	1			
교육사회위원회	1	1		1			
관광건설위원회	1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9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주요골자]

○ 제249회 임시회 기간을 2006. 4. 21일부터 5. 1일까지 11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경과]

○ 제 출 : 2006. 3. 6(김문천의원외 5인)

○ 회 부 : 2006. 3. 6

○ 상 정 : 2006. 3. 22(제1차 운영위원회)

[주요골자]

○ 출석일시 : 2006. 3. 23 - 3. 24 <2일간>
○ 출석장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 출석이유 :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 출석대상 :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 · 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 · 국 · 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주요골자]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 8명
- 도의원 2명,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3.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3. 15
○ 상 정 : 2006. 3.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기업지원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

〈환 경 과〉

○「소음 · 진동규제법」및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소음 · 진동규제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 · 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 등"이 도에서 시 · 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농 정 과〉

○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의 준공검사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3.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3. 15

○ 상 정 : 2006. 3.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함

○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수정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2. 20(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6. 2. 21

○ 상 정 : 2006. 3. 22(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내용]

○ 부교육감의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함

○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함

[심사결과] 수정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안 : 2006. 3. 24(관광건설위원장)

○ 상 정 : 2006. 3. 24(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청남대운영조례→청남대관리 · 운영조례)

○ 민원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동절기 관람시간 단축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료, 사용료 감면 기준

○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설 설치 · 운영 기준

○ 운영수익 증대를 위한 사용료 부과기준

○ 시설 증설로 인한 위탁근거 추가

○ 청남대 등록상표(BI) 유 · 무상 사용허가 규정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21 節 第249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6. 4. 12(2006 - 4호)

※ 정윤숙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6. 4. 21(금) 오후 2시

2. 會 期 : 2006. 4. 21 ~ 5. 1(11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1건	15	2			4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6. 4. 21(금)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송은섭 의원)
- 시설농업 에너지 현대화사업과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박종갑 의원, 조영재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6. 5. 1(월)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4. 4. 21(금) 14:00~14:09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30분 (45분)	
1차(4. 21)	14:09~14:38	29분
2차(5. 1)	11:00~12:01	1시간 0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75.9%)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22	5	81.4
2차 본회의	27명	19	8	70.4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06. 4.21	1	1.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2006. 4.27	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2006. 4.21	1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2006. 4.24	2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2006. 4.24	1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2006. 4.25	1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4.26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 건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21	21	13	8			
의회운영위원회	4	4	4				
기획행정위원회	8	8	7	1			
교육사회위원회	5	5	1	4			
산업경제위원회	1	1		1			
관광건설위원회	1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	1	1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골자]

○ 제249회 임시회 기간을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골자]

○ 제250회 임시회 기간을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협의의 건

[주요골자]

○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총8명(도의원 2, 세무사 2, 공인회계사 2, 유경험자 2)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월정수당은 월 1,830,000원으로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명칭 변경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충청북도자치연수원

○ 다른 조례의 개정(명칭 변경)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

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

○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추가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 조성 》

- 위　　치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등 8개 지역
- 재산규모 : 1,918,023㎡(191.8ha)
- 사업기간 : 2006. 4 — 12(9개월)
- 사 업 비 : 2,079백만원(도비)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착오 및 혼선을 없애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10,000원으로 조정
- 종전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
○ 도의원 및 교육위원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조치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삶의질향상협의회 등 3개협의회에 부의장 직을 신설하여 의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함 (안 제9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
○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발행근거규정이 신설되어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

○ 공채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되어 관련규정 정비(안 제5조)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동조례로 정함(안 제6조~제12조)

○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융자대상범위 확대(안 제15조)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상·하수도, 도로·공영개발사업등), IT, 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경영수익사업, 국가시책사업 추가

○ 일부 매출기준의 미비점 보완(안 제7조 별표1)

- 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 1,500cc → 1,600cc로 변경
- 승합자동차 매출대상을 11인승이상 → 1,000cc이상으로 변경
- 화물·특수자동차 매출대상을 1톤이상 → 1,000cc이상으로 변경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7(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정함(안 제2조)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

○ 지방의료원 임원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이사장(원장이 겸임) : 1인
- 이 사 : 6인 이상 10인 이하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
- 감 사 : 1인
-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최소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지방의료원의 운영·위탁규정을 명시(안 제6조)
-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준 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1(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함(안 제4조)

○ 공공기관, 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 사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5조)

○ 시장·군수는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7이내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4(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센터는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교육, 연구·조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안 제3조)
○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안 제4조)
○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함(안 제5조)
○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안 제6조)
○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함(안 제8조)
- 다목적실 5~10만원, 기타시설은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7
○ 상　　정 : 2006. 4. 24(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기금조성 (안 제2조)
-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금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환수렵장」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충청북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3(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4

○ 상　정 : 2006. 4. 24(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주요골자]

○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예우 및 지원 대상과 방법에 규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 우수기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창업지원, 품질경영 활동지원, 판로지원,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3조)

○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기업애로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4

○ 상　정 : 2006. 4. 25(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조례」로 개정

○ 주택에 대한 중개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규정(안 제2조)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실비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안 제3조)

○ 중개 수수료 지불시기 규정(안 제4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4(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4. 14

○ 상　정 : 2006. 4. 25(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종의 명칭 "충북천년대종"으로 함(안 제2조)

○ 종의 보존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 타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
-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4. 12(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6. 4. 25

○ 상　정 : 2006. 4. 26(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골자]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회복 및 학력제고

○ 교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
○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제1회추경)	당초예산액	증/감	비 고
1,221,524,084	1,157,031,847	64,492,237	기정예산대비 5.6%증

2.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제1회 추경)		당 초 예 산 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0	100.0	0	100.0	0	5.6
국가부담수입	1,033,927,470	84.6	1,008,094,078	87.2	25,833,392	2.6
- 지방재정교부금	1,022,868,604	83.7	1001610337	86.6	21,258,267	2.1
- 국고지원금	11,058,866	0.9	6,483,741	0.6	4,575,125	70.6
지방자치단체일반 회계부담수입	96,355,498	7.9	94,145,895	8.1	2,209,603	2.3
- 법정전입금	95,890,168	7.9	94,076,000	8.1	1,814,168	1.9
- 비법정전입금	465,330	0,.0	69,895	0.0	395,435	565.8
자체수입	75,735,853	6.2	53,195,874	4.6	22,539,979	42.4
- 재산수입	978,534	0.1	829,743	0.1	148,791	17.9
- 입학금및수업료	27,282,640	2.2	27,282,640	2.3	0	0.0
- 사용료및수수료	1,656,291	0.1	1,656,291	0.1	0	0.0
- 잡수입	14,986,971	1.3	5,427,200	0.5	9,559,771	176.1
- 이월금	30,831,417	2.5	18,000,000	1.6	12,831,417	71.3
지방교육채	15,480,263	1.3	1,596,000	0.1	13,884,263	869.9
- 지방교육채	15,480,263	1.3	1,596,000	0.1	13,884,263	869.9
주민(기관등)부담 수입및기타	25,000	2.1	0	0.0	25,000	100.0
-주민 등 부담금	25,000	0.0	0	0.0	25,000	0.0

3.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 산 액 (제1회추경)	당초예산액	증 /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221,524,084	1,157,031,847	64,492,237	5.6
학 교 교 육	377,997,431	335,044,244	42,953,187	12.8
유 치 원	19,955,409	14,112,693	5,842,716	41.4
초 등 학 교	130,771,483	110,566,207	20,205,276	18.3
중 학 교	95,195,069	86,249,263	8,945,806	10.4
고 등 학 교	115,347,744	107,322,198	8,025,546	7.5
특 수 학 교	16,351,611	16,417,768	△66,157	△0.4
기 타 학 교	376,115	376,115	0	0.0
평 생 교 육	2,264,625	1,663,916	600,709	36.1
평 생 교 육	2,264,625	1,663,916	600,709	36.1
급 여 관 리	789,549,368	780,137,261	9,412,107	1.2
급 여 관 리	789,549,368	780,137,261	9,412,107	1.2
교 육 행 정	35,742,937	27,652,866	8,090,071	30.4
교육위원회	473,185	456,185	17,000	3.7
선 거 관 리	272,612	272,612	0	0.0
본 청	19,815,735	14,355,081	5,460,654	38.0
지역교육청	7,194,968	5,553,046	1,641,922	29.6
교육지원기관	7,986,437	7,015,942	970,495	13.8
기 타 경 비	15,969,723	12,533,560	3,436,163	25.4
지방채상환	10,600,000	5,000,000	5,600,000	112.0
예 비 비	5,369,723	7,533,560	△2,163,837	△28.7

第 22 節 第250回 臨時會

1. 集會公告 및 開會

○ 공고 : 2006. 6. 2(2006 - 5호)

※ 정윤숙 의원 외 8인 집회요구(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 개회 : 2006. 6. 12(월) 오후 2시

2. 會 期 : 2006. 6. 12 ~ 6. 19(8일간)

3. 本會議 活動

1) 주요안건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3건	9	2			2

3) 회의별 처리안건

□ 제1차 본회의 - 2006. 6. 12(월)

1.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이필용 의원)

- 복숭아 동해 피해의 관심과 지원 촉구 관련

※ 회의록서명의원 :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 제2차 본회의 - 2006. 6. 19(월)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06. 6. 12(월) 14:00~14:08

구 분	회 의 시 간	소 요 시 간
계(평균)	1시간 01분 (30분)	
1차(6. 12)	14:09~14:28	19분
2차(6. 19)	11:00~11:42	4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5) 의원출석(출석율 : 64.8%)

차수별	대상인원	참 석	불 참	출석율(%)
1차 본회의	27명	18	9	66.6
2차 본회의	27명	17	10	62.9

4. 委員會 活動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상 정	처 리	처 리 결 과				
			가 결		부결	계류	기타
			원안	수정			
계	16	16	10	6			
의회운영 위 원 회	1	1	1				
기획행정 위 원 회	5	5	4	1			
교육사회 위 원 회	3	3	1	2			
산업경제 위 원 회	1	1		1			
관광건설 위 원 회	5	5	4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1		1			

2) 안건처리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06. 6.12	1	1.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기획행정 위 원 회	2006. 6.13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 6.14	2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 위 원 회	2006. 6.13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6.14	2	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 원 회	2006. 6.13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06. 6.14	2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관광건설 위 원 회	2006. 6.13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 6.15	2	1.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6. 6.16	1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주요안건심사경과 및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2(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14

○ 상　정 : 2006. 6. 16(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골자]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총 계		**2,137,500,563**	**2,003,698,584**	**133,801,979**	**6.7**
일 반 회 계		1,687,139,999	1,571,479,356	115,660,643	7.4
특 별 회 계		450,360,564	432,219,228	18,141,336	4.2
공기업	소 계	276,276,410	281,571,494	△5,295,084	△1.9
	지역개발기금	276,276,410	281,571,494	△5,295,084	1△1.9
기타	소 계	174,084,154	150,647,734	23,436,420	15.6
	충북과학대학운영	6,355,026	5,709,414	645,612	11.3
	의료급여기금	133,964,671	121,666,471	12,298,200	10.1
	농어촌개발기금	16,166,471	8,619,291	7,547,180	87.6
	학교용지부담금	14,406,855	11,840,204	2,566,651	2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191,131	2,812,354	378,777	13.5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증	감
합 계	**1,686,959,999**	**1,687,139,999**	**0**	**180,000**
의회운영위원회	**6,339,628**	**6,339,628**	**-**	**-**
의회사무처	6,339,628	6,339,628	-	-
기획행정위원회	**408,258,179**	**408,308,179**	**0**	**50,000**
공보관실	2,017,373	2,017,373	-	-
감사관실	215,932	215,932	-	-
기획관리실	129,327,449	129,377,449	-	50,000
자치행정국	276,697,425	276,697,425	-	-
교육사회위원회	**450,550,180**	**450,620,180**	**0**	**70,000**
여성정책관실	67,548,064	67,548,064	-	-
복지환경국	370,126,749	370,186,749	-	60,000
충북과학대학	4,000,000	4,000,000	-	-
공무원교육원	4,392,664	4,402,664	-	10,000
보건환경연구원	4,482,703	4,482,703	-	-
산업경제위원회	**378,052,753**	**378,092,753**	**0**	**40,000**
경제통상국	101,060,382	101,080,382	-	20,000
농정국	256,627,726	256,647,726	-	20,000
농업기술원	20,364,645	20,364,645	-	-
관광건설위원회	**443,759,259**	**443,779,259**	**0**	**20,000**
문화관광국	94,774,565	94,794,565	-	20,000
건설교통국	271,889,339	271,889,339	-	-
소방본부및관서	77,095,355	77,095,355	-	-

○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제출예산액	수정내역	
				증	감
특 별 회 계		**450,360,564**	**450,360,564**	**0**	**0**
공기업	소 계	276,276,410	276,276,410	-	-
	지역개발기금	276,276,410	276,276,410	-	-
기타	소 계	174,084,154	174,084,154	-	-
	충북과학대학운영	6,355,026	6,355,026	-	-
	의료급여기금	133,964,671	133,964,671	-	-
	농어촌개발기금	16,166,471	16,166,471	-	-
	학교용지부담금	14,406,855	14,406,855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191,131	3,191,131	-	-

□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4(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2조)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 20인 이내(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다만, 필요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토록 함.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9조)
○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15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4(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조례의 인용법령중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관리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안 제3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재산 신설 및 가액 변경(안 제5조)
- 신 설 : 특별시(광역시 포함) 소재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변 경 : 기타 시·군지역 :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
○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필요시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근거 마련(안 제22조)
○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마련(안 제29조)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경우 공용면적은 건물 신축시 적용하는 공용면적 비율로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추가
○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 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업무의 혼란 방지(안 제63조)
○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지급액이 그동안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4(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11조)

○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안 제19조 및 안 제24조)

○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안 제60조)

-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 근거 규정 마련
  - 변경전 : 7. 16일 ~ 7. 31일, 9. 16일 ~9. 30일
  - 변경후 : 7. 16일 ~ 7. 31일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규정 정비(안 제74조 및 안 제75조)

- 납세의무자변경
  - 변경전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 자
  - 변경후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세 율 : 1,000분의 2 → 1,000분의 5

[심사결과] 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4(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안 제9조)

- 위원 구성 : 7인 이내
  - · 위원장 : 복지환경국장
  - · 위 원 : 민간전문가 3명 이상
- 기 능 :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 심의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5. 30(충청북도교육감)
○ 회　부 : 2006. 6. 7
○ 상　정 : 2006. 6. 14(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주요골자]

○ 초·중·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추가함(안 제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으로 구성하고,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함(안 제5조)
○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기준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등을 정함(안 제22조)
○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함(안 제30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함(안 제34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5(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체육시설(충청북도체육회관 및 충북스포츠훈련관)관리 및 위탁운영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체육시설 변경·임대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비용 징수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위탁 운영규정, 해지 등을 정함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5(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함(안 제4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1/4이상 참석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5(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별도 관리함(안 제3조제3항)

[심사결과] 원안가결

◉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5(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현실에 맞게 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심사결과] 원안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조례안

[심사경과]

○ 제　　출 : 2006. 6.　5(충청북도지사)

○ 회　　부 : 2006. 6.　5

○ 상　　정 : 2006. 6. 14(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

○ 위　　치 : 충주시 목행동 489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필지　13,350㎡
- 건물신축 : 1/3층　3,960㎡(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사업기간 : 2006. 6~ 2007. 12

○ 사 업 비 : 6,600백만원(도비)

≪ 재산의 취득 ;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

○ 위　　치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1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필지　2,812㎡
- 건물신축 :　2층　　825㎡(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사업기간 : 2006. 6~ 2007. 12

○ 사 업 비 : 1,875백만원(도비)

≪ 재산의 처분 ; 오창벤처프라자 및 U-플렛홈운영센터 부지매각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번지 등 2필지

○ 매각면적 : 9,920.9㎡

- 오창벤처프라자 부지　　6,614.9㎡
- U플렛홈운영센터 부지　3,306.0㎡

○ 매각시기 : 2006. 10 ~ 12

○ 재산가액 : 2,189,216천원

○ 매 수 자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第 3 章 行政事務監査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第 2 節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第 3 節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概要

1.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범 위	도정업무전반	도정업무중 특정사안
시 기	매년 정례회중 10일 이내	수 시
요 건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성 격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주 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방 법	감사와 조사는 같은 방법에 의해 실시	

2. 監査過程 및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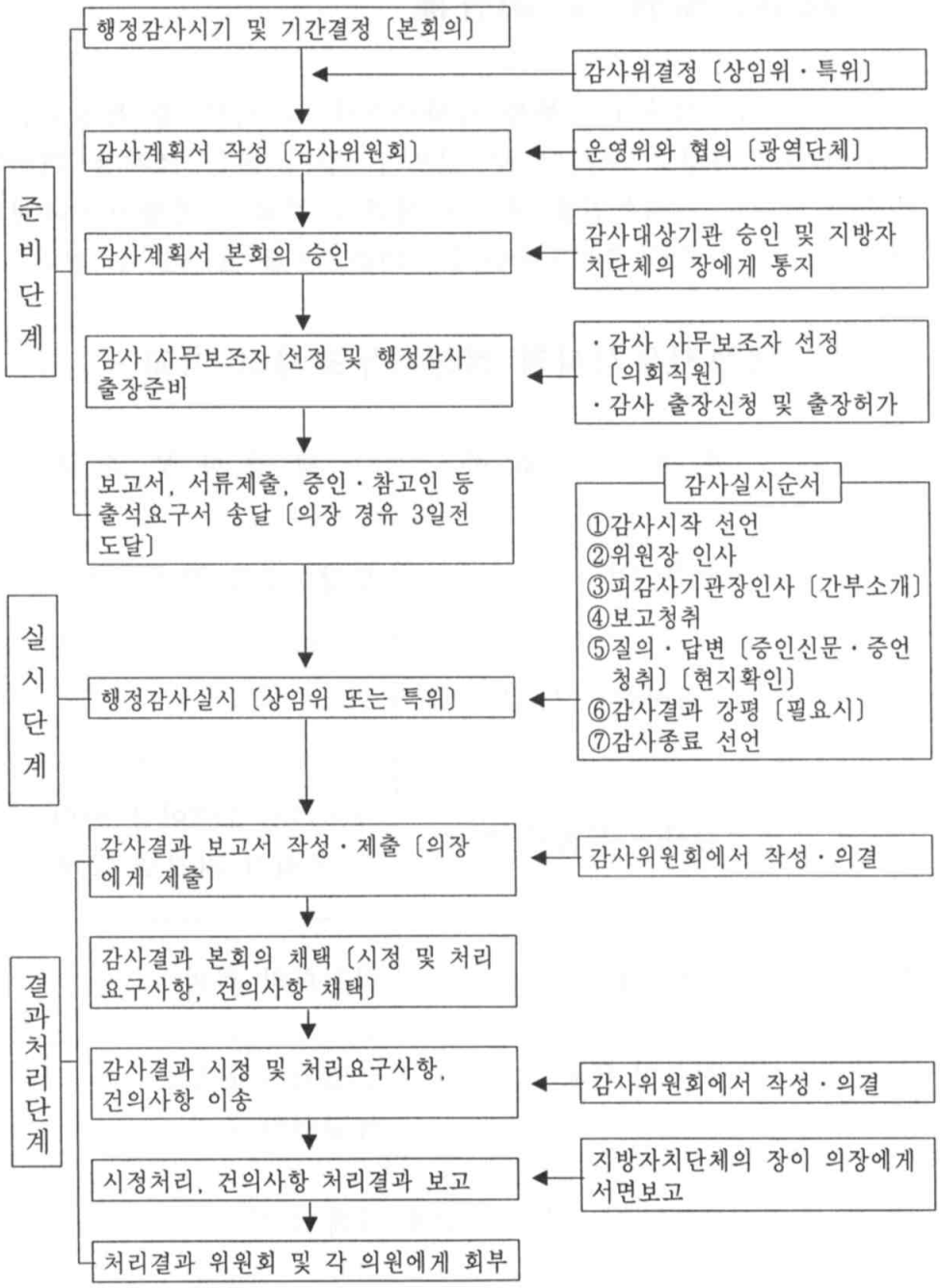
준비단계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감사위결정〔상임위·특위〕
감사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운영위와 협의〔광역단체〕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 및 행정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실시단계
행정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순서
①감사시작 선언
②위원장 인사
③피감사기관장인사〔간부소개〕
④보고청취
⑤질의·답변〔증인신문·증언청취〕〔현지확인〕
⑥감사결과 강평〔필요시〕
⑦감사종료 선언
결과처리단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의결
감사결과 본회의 채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감사위원회에서 작성·의결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회부

第 2 節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 행정수행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기 간 :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10일간)

※ 각 위원회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위원회별	대 상 기 관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가. 도본청(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다. 출연법인(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가. 도본청(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나. 직속기관・사업소(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산업경제위원회	가. 도본청(경제통상국, 농정국) 나. 직속기관・사업소(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산사업소)
관광건설위원회	가. 도본청(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나. 직속기관・사업소(건설종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청남대관리사업소) 다. 소방본부

4. 監査班 編成

위원회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의회운영위원회	김 홍 운	정 윤 숙 이 필 용 이 범 윤 조 계 숙 박 종 갑 이 광 종 강 우 신	전문위원 김승진 운영담당 송병태 보조직원 오유길
기획행정위원회	최 재 옥	이 필 용 유 동 찬 김 정 복 김 홍 운 오 장 세 정 상 혁	전문위원 이상만 보조직원 김만철 강창식
교육사회위원회	이 대 원	조 계 숙 김 문 천 장 준 호 이 기 동 이 범 윤	전문위원 지용옥 보조직원 맹경재 김병태
산업경제위원회	김 환 동	박 종 갑 강 구 성 박 재 국 장 주 식 정 윤 숙	전문위원 이상업 보조직원 원종현 박종복
관광건설위원회	심 홍 섭	강 우 신 연 철 웅 한 창 동 조 영 재 송 은 섭 이 광 종	전문위원 박일수 보조직원 손재규 조병철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원회별	날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의회운영 위 원 회	11. 30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기획행정 위 원 회	11. 22	· 공보관실 · 감사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23	· 기획관리실	〃
	11. 24	· 자치행정국	〃
	11. 25	·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회의실
	11. 26	·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회의실
	11. 29	·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11. 30 12. 1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교육사회 위 원 회	11. 22	·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23	· 환경과, 수질관리과	〃
	11. 24	· 도 교육청	현 장
	11. 25	· 충주교육청	피감사기관
	11. 26	· 도 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1. 29	· 공무원교육원 · 충북과학대학	피감사기관
	11. 30	· 보건환경연구원 · 여성정책관실	교육사회위원회 회 의 실
	12. 1	· 감사보고서작성	〃

위원회별	날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산업경제 위 원 회	11. 22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 23	· 농업기술원	〃
	11. 24	· 농정국	〃
	11. 25	· 현지확인	현 지
	11. 26	· 현지확인	〃
	11. 29	· 현지확인	〃
	11. 29	· 현지확인	〃
	11. 30	· 종합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2. 1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관광건설 위 원 회	11. 22	· 문화관광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 23	· 건설교통국	〃
	11. 24	· 소방본부 · 바이오산업추진단	〃
	11. 25	· 문화관광국(자연학습원)	현 지
	11. 26	· 소방본부(119구급대)	〃
	11. 29 11. 30	· 종합감사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2. 1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6. 委員會別 指摘事項

위 원 회 별	계	시정 · 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197 건	90 건	107 건
의회운영위원회	3	1	2
기획행정위원회	45	40	5
교육사회위원회	75	22	53
산업경제위원회	46	18	28
관광건설위원회	28	9	19

7. 主要 指摘內容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1. 의회자료실 원칙 운영 촉구

○ 의회자료실의 인력 및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의 의정수집. 열람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실 운영에 원칙을 지키도록 촉구.

□ 건의사항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부 철저

○ 의정활동 홍보매체인 의회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수요량에 따른 적정 부수를 발행하고 이장, 통장, 남녀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구민에게 의회소식지를 배부

할 경우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과, 사전에 신청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2. 원격지거주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
   ○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한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은 적용기준 및 지급방법 등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 하여 주기 바람.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감사관실 】 - 4건

1. 의료원 의료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와 구상권 확보방안 강구
2. 시장·군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감사차원의 선심성공사 근절방안 강구
3.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가칭 "집단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측과 행정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4. 증가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도 감사관의 직급상향 조정 필요

【 공보관실 】 - 3건

1. KBS와 협의하여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강구와 아울러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으로 TV 시청시 KBS의 시청료 징수는 부당함으로 해결방안 모색
2. 대도시 전광판 이용 충북홍보는 홍보자료를 수시제작 교체로 동일내용의 장기홍보로 인한 효과 감소 방지
3. 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인터넷 도정홍보 강화등 도정홍보 방법 개선

【 기획관리실 】 - 9건

1. 각종위원회 정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 필요
2.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소대책을 강구
3.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액의 검증 및 지방교부세 연구 전담요원 육성 방안 강구(인사이동시 고려)
4.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예산편성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에서 탈피, 재정운용에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정확한 사업계획 반영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후 대략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심사의뢰
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6.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정 시정
7. 공기업인 의료원이 본업인 의업부분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장례식장 운영에서 과다한 수익금으로 의료원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
8. 의료원 직원의 인건비는 의료원의 경영성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수년간 경영적자가 지속되는데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시정필요
9.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 자치행정국 】 - 10건

1.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심사가 되도록 운영

2. 시·군 조직안정 및 지역발전 토대가 구축되도록 부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은 2년이상이 되도록 운영
3. 명예도민 선정 결과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
4.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원칙(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에 의거 장기보직자 순환인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전보인사 실시
5. 소위「전공노」총파업 등 일련의 사례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가 미흡함. 지역현안 발생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대책 조치방안 강구 필요
6. 실효성이 없는 지역협력관제도는 폐지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
7. 합리적·능률적 조직운영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용역 조직진단 실시
8. 과오납 환불은 행정기관의 입장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행정기관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사이버 환불제도」도입방안 강구
9. 지역정보화위원은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10. 민방위 강사중 3년이상 장기간 활동한 자는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여 민방위 교육을 신선하게 개선 필요

【 청주의료원 】 - 5건

1. 의료원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업분야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2. 장례식장 부가가치세 추징에 따른 행정소송은 도청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3.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장례식장 경상이익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 필요

4. 직원의 인건비는 상위법에 의료원 경영성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건비는 지나치게 인상되어 의업수익의 60.5%에 이르고 있어 시정 필요
5.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경영개선대책을 강구 필요

【 충주의료원 】 - 7건

1. 의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2. 경영 슬림화와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용직 감축 필요
3. 전화자동안내시스템(ARS)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해소방안 강구
4. 회계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은 의료원 경영에 최우선 반영하여 시행
5. 이사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원의 전분야에 걸쳐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6.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장례식장 경상이익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7. 직원의 인건비는 상위법에 의료원 경영성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건비는 지나치게 인상되어 의업수익의 60.5%에 이르고 있어 시 필요

【 충북개발연구원 】 - 2건

1. 연구원 요원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
2. 수탁과제 외주용역시 과제관리위원회 심사 강화 및 회의결과 관리 철저

□ 건의사항

【 공통사항 】 - 2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시 연관통계의 불일치,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작성

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종합편철을 지양하고 실·국·원단위로 분철하여 제출

【 감사관실 】 - 1건

1. 감사관실소관 안건심사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답변

【 기획관리실 】 - 2건

1. 『충청북도 화보집』발간은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으나 업체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음. 모든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2.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NURI)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의회보고 촉구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여성정책관실 】 - 4건

1. 여성발전 3개년 2차 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되는바 추진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해 줄 것
2.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부담분 이행, 지출내용 사실 확인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
3. 민간단체 보조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행사성 위주와 사업추진 단체 회원 위주가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 되도록 개선 촉구
4.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과 위원 위촉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참여시킬 것

【 복지환경국 】 - 5건

1. 충청북도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규를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 할 것

2.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시 시군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도 조치 할 것 촉구
3.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부담분 이행, 지출내용 사실 확인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
4. 보건진료소 설치운영관련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당초설치목적에 불부합되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폐지 등 시정토록 할 것
5. 마을하수도 방류수의 기준이 초과되는 곳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촉구

【 공무원교육원 】 - 2건

1.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 교육계획수립시 반드시 반영 되도록 개선
2. 공무원교육 계획수립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실적이 저조한 과정이 없도록 개선 할 것을 촉구

【 충청북도 교육청 】 - 11건

1. 교직원 복지회관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2. 각급 학교의 강당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 한 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3. 한글사랑관내에 위치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을 조속히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촉구
4.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촉구
5.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감점기준을 강화 해줄 것을 촉구
6. 감사결과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정
7. 민간단체 보조사업 정산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등 영수증 사본을 첨부토록 해줄 것 촉구

8.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현금비율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정
9.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실을 조속한 시일내 100%확보 할 수 있도록 촉구
10.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집행후 반납조치 철저히 이행토록 시정
11. 학교회계운영시 일반예산에 편성 운영해야할 예산을 세입세출외현금회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점검후 시정

□ 건의사항

【 여성정책관실 】 - 6건

1.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운영 과정 중 분기별 실적을 보면 신청자가 전무한 과정이 일부 있어 예산의 낭비가 우려 되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개선 촉구
2.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계속하여 감소되므로 이와 함께 사업비도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측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
3.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 촉구
4.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5. 도 여성발전센터로서 시군여성발전센터와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6.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중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과정에 대하여는 자격증 취득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촉구

【 복지환경국 】 - 16건

1.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수립을 해줄 것 건의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물가인상 수준에 맞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3. 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마련 강구
4. 저소득층에 대부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1%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5.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촉구
6.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처리 특별대책 마련 강구촉구
7. 계곡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촉구
8.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 운영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이행해 줄 것 촉구
9. 환경개선부담금의 다년간 미징수된 내역에 대하여는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을 건의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
11. 자연발생 유원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 건의
12. 응급의료센터운영관련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13.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 촉구
14. 도 노인전문병원 입구에 설치된 표석(참사랑병원을 알리는 표석)의 위치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 할 것을 건의
15.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건의
16. 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처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 충북과학대학 】 - 7건

1. 국제 IT전문대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충북과학대학의 패소로 275,000천원(기지급 215,000천원, 향후 지급예상 60,000천원)의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 감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위원회에 보고할 것 촉구

2.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촉구건의
3. 교수들의 외부출강시간을 줄이고 교내출강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 건의
4. 중국의 연변대학과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5. 장학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금확대 방안 강구 촉구
6. 교수들 복무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촉구
7.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촉구

【 공무원교육원 】 - 2건

1. 교수요원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
2. 부부사랑 과정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

【 보건환경연구원 】 - 7건

1.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업무외에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 건의
2.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결과 의뢰 및 통보시 국산여부를 명기토록 해줄 것 건의
3. 먹는 물 검사결과 동일한 지점에서 3회 이상 기준치 초과한 곳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해 줄 것 건의
4. 영동군관내 금계천 상류의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실시 건의
5.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6. 교육청에서 학교급식현장의 각종 식기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 요청시 협조해 줄 것을 건의
7. 감사자료 제출시 각종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명기

【 충청북도 교육청 】 - 10건

1. 육류 납품 급식학교의 육류 납품 시료 검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불시검사(DNA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2. 학교급식현장의 각종 식기류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
3. 학업성취도의 제고 방안 강구 노력 촉구
4. 잉글리쉬 캠프 운영시 제2외국어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도록 방안 강구건의
5. 수능 시험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촉구
6. 유치원 등 기간제 교사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 촉구
7. 각종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의결 전에 법적 하자여부 등 각종 절차를 완벽히 검토 해 줄 것 촉구
8. 각급학교나 시군교육청에서 소액의 물품구입시 소재지역의 업체를 이용토록 촉구
9.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의 보험가입(자차보험 포함)철저와 운전원 유고시 대체인력을 확보해줄 것 건의
10. 학원차량의 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건의

【 충주교육청 】 - 5건

1. 급식학교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줄 것과 DNA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
2. 제천지역의 특수학교인 청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주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노후된 통학 버스를 교체해 줄 것을 건의
3. 충주지역의 관내학교의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음용토록 하여 수돗물 불신풍조를 없애도록 해줄 것 건의
4. 학교회계운영관련 유휴자금운용시 안전성부문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용해 줄 것 건의
5.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운동부 훈련지원금 납부에 대하여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후 철저한 정산보고 이행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경제통상국 】 - 7건

1.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후 방치되거나 분양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조치
2.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중도탈락자 과다 발생과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데 보완대책 마련
3. 해외파견 장기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대책 마련 추진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동향에 적극 대처
5.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 경제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고유가시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시책을 솔선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
6. 진천·음성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지연되는데 사업 책정시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완공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속히 완공되도록 지도
7. 채용박람회 개최시 생산직 참여 방안 검토

【 농 정 국 】 - 5건

1. 바이오조림지에 다수 발생된 고사목을 조속히 보식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
2. 충청북도농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에는 우리도내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소로 활성화 되도록 개선
3. 여성농업인센타의 보조금 관리·운영등 전반적으로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4. 농어촌개발기금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5. 단양의 농특산품 직판장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전시 판매되도록 개선

【 농업기술원 】 - 6건

1. 폭설·폭우시 시설채소 등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단계별 시설자재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 실시
2.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이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에 보고
3.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결과가 많은데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대책마련
4.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운용을 관련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은 일제 정비
5. 건강관리실 사업 책정시 마을 여건을 감안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이용율이 저조한 시설은 타시설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상지 선정시에는 신중을 기할 것
6. 시범사업 선정시에는 해당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선정되도록 개선

□ 건의사항

【 경제통상국 】 - 10건

1.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
2.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취급은행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원스톱 서비스화 등 시스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마련
3.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소기업 활동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 강구

4.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특정사업 또는 특정시군에는 일률 적용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는데 사업별, 시군별 등 형평에 맞도록 추진
5. 각종 재단 설립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실시
6.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기업을 입주 시켜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행정불신을 초래하는데 대책 강구
7. 농공단지내의 휴·폐업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 방안 강구 등 대책마련 추진
8. 농촌·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수출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방안 강구
9. 도정의 국제화를 위하여는 전문통역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언어능력향상 방안 강구
10. 불경기 지속에 따른 지역경제 조기 활력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대책 추진

【 농 정 국 】- 9건

1. 농작물 재해보험에 고추 등 채소류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 도보다 가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적극 추진
2. 농가도우미 홍보강화와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남자 활용 방안, 간병도우미제 시범 도입 등 발전방안마련 적극 추진
3. 농가소득보전차원의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
4. 친환경농업의 효율화를 위해 우렁이 양식 확대 보급방안 강구
5. 과학영농특화지구의 도비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남부3군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6.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단체 등의 활용대책 마련

7. 전국체전 등 대규모행사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도내 화훼농가와 계약재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증대 대책 마련
8.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하여 신설된 WTO대책팀 활성화 방안 마련
9.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의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 농업기술원 】 - 9건

1.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증시험 등을 거친 최종연구결과는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
2.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사업 등의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향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정된 보조 비율은 이행되도록 개선
3. 옥천 포도시험장에서는 무가온 연구 재배법 등 칠레산보다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연구사업 실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
4. 농가에서 농약사용 잘못으로 인해 농약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사용 요령 농가지도 실시
5. 농업기술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시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6. 농가소득증대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작목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것
7.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맥잇기사업 등은 농촌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강구
8. 잠사박물관을 활용한 홍보와 누에환 등 잠상품 연구개발 방안 적극 추진
9. 벼 육묘 황토매트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농가보급 확대방안을 연구토록 하되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재검토

관광건설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문화관광국 】 - 4건

1. 문화재 보수 재정비시 옛 고증을 거쳐 정비하여야 함에도 일부 문화재 정비시 시멘트 사용 등 불합리성이 발견됨 문화재 보수 정비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조치
2.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추진이 미흡함, 명시 이월된 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2004년도 말까지 집행 조치
3.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에 대한 백서 등의 발간으로 투자에 대한 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생활체육협의회 도비지원과 관련 사업별 성과분석과 철저한 정산 검사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교통국 】 - 3건

1.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새 지번 표시에 대한 활용이 미흡함 주민홍보와 노력으로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
2. 각종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잔여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3.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자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도내 업체가 공사자재 및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 소방본부 】- 1건

1.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및 공장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바이오산업추진단 】- 1건

1.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요망

□ 건의사항

【 문화관광국 】- 6건

1.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청남대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대안 마련
2. 도내 시군예술단 활동실적이 미약함, 시 · 군간 상호 협력으로 예술단의 창의력 향상과 도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3.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도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도민의 역량 결집과 특단의 대책 마련
4.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개보수 공사 및 운영관리비에 도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위탁업체경영 활성화를 통한 자활 운영토록 방안 모색
5.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롭게 개보수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운영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 강구

【 건설교통국 】- 6건

1.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관계 장관

의 발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새로운 재원확보 및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대전권 그린벨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불편과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대책 검토
3.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수단을 도모하는 저상 버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 강구
4.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건설장비에 대한 교체로 활용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건설장비 확보 방안 모색
5. 덕산~울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장기간 지역주민 불편초래,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
6.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통 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소방본부 】- 4건

1.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전시성,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교육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
2.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등 재해시 보상 현실화 방안 검토
3. 2교대 근무, 비번 미이행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강구
4.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 강구

【 바이오산업추진단 】- 3건

1.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2.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상업용지 공급과 관련 토지공사와 원주

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3.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100% 분양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 강구

第 3 節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1. 監査의 目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 행정수행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10일간)

※ 각 위원회 같음

3. 監査實施 對象機關

위원회별	대 상 기 관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가. 도본청(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다. 출연법인(충북개발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가. 도본청(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나. 직속기관・사업소(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산업경제위원회	가. 도본청(경제통상국, 농정국) 나. 직속기관・사업소(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산사업소)
관광건설위원회	가. 도본청(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나. 직속기관・사업소(건설종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청남대관리사업소) 다. 소방본부

4. 監査班 編成

위원회별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의회운영위원회	김 홍 운	정 윤 숙 이 필 용 이 범 윤 조 계 숙 박 종 갑 이 광 종 강 우 신	전문위원 조재학 운영담당 김창현 보조직원 오유길
기획행정위원회	최 재 옥	이 필 용 유 동 찬 김 정 복 김 홍 운 오 장 세 정 상 혁	전문위원 연기봉 보조직원 김만철 최영지 강창식
교육사회위원회	이 대 원	조 계 숙 김 문 천 장 준 호 이 기 동 이 범 윤	전문위원 김재준 보조직원 맹경재 정완수
산업경제위원회	김 환 동	박 종 갑 강 구 성 박 재 국 장 주 식 정 윤 숙	전문위원 한종천 보조직원 채홍경 박종복
관광건설위원회	심 홍 섭	강 우 신 연 철 웅 한 창 동 조 영 재 송 은 섭 이 광 종	전문위원 윤기복 보조직원 손재규 강준식

5. 監査日程 및 場所

위원회별	날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12. 1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기획행정위원회	11. 22	· 공보관실 · 감사관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1. 23	· 기획관리실	〃
	11. 24	· 자치행정국	〃
	11. 25	· 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회의실
	11. 28	·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회의실
	11. 29	·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1. 30 12. 1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교육사회위원회	11. 22	· 여성정책관실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11. 23	· 복지환경국	〃
	11. 24	· 도 교육청	현 장
	11. 25	· 도 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11. 28	· 옥천교육청	현장 및 서류
	11. 29	· 충북과학대학 ·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11. 30	·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12. 1	· 감사보고서작성	〃

위원회별	날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산업경제 위 원 회	11. 22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 23	· 농정국	〃
	11. 24	· 농업기술원	〃
	11. 25	· 현지확인	현 지
	11. 28	· 현지확인	〃
	11. 29	· 종합감사	〃
	11. 29	· 현지확인	〃
	11. 30 12. 1	·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관광건설 위 원 회	11. 22	· 문화관광국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1. 23	· 건설교통국	〃
	11. 24	· 소방본부 · 바이오산업추진단	〃
	11. 25	· 문화관광국	현 지
	11. 28	· 건설교통국	〃
	11. 29	· 소방본부 · 바이오산업추진단	〃
	11. 30	· 종합감사	관광건설위원회 회 의 실
	12. 1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6. 委員會別 指摘事項

위원회별	계	시정 · 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194 건	125 건	69 건
의회운영위원회	2	1	1
기획행정위원회	51	44	7
교육사회위원회	75	53	22
산업경제위원회	39	13	26
관광건설위원회	27	14	13

7. 主要 指摘內容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의회사무처 】

1. 상임위원회별 직원배치 형평성 촉구

○ 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에 정원대비 현원을 1명 더 배치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적의 조치 할 것을 시정 촉구

□ 건의사항

1. 모범공무원 표창 선발 기준 철저

○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 직원 선발시 의정활동 기여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고 인사고과 등에도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 2건

1. 감사자료 작성시 사안별로 구체화가 필요한 분야는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자료작성
2. 각 소관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작성시 정확한 실적표기 등 통일성을 기하도록 조치

【 공보관실 】 - 4건

1.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는 도정정책 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2.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시 시·군과 공조하여 지역특산품 홍보 방안 강구
3.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 활용, 도정홍보 확대 방안 강구
4. 공직자의 홍보마인드 제고 방안 마련

【 감사관실 】 - 5건

1.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조사에 의한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집행부내에 관련부서장들로 가칭 "집단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측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전하게 함으로써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매년 백서로 발간하여 배부하는 방안 검토
3. 연구용역 활용도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 강구
4. 도 홈페이지 "사이버감사 소식 코너"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 강구
5.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근절 방안 강구

【 기획관리실 】 - 10건

1. 통계연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발간시기 개선 및 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3. 민사소송 결과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 강구
4. 소송비용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5. 정보화 시범마을의 확대조성에 따른 운영내실화 방안 강구
6. 도 홈페이지 행정조직의 부서별 구성원 등 변동자료 즉시 조치
7. 지방공기업인 청주·충주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인 예산담당관의 역할 및 권한 증대 방안 모색
8.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수상자중 연도별 중복수상자를 배제하여 직원 참여기회 확대
9.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례식장 사용료 인하 방안 강구
10. 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중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자치행정국 】 - 7건

1. 여권발급 제도의 변경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보급하는 장비부족에 기인한 것인데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 12월중으로 장비 추가 설치 방안 강구
2. 명예도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관리 방안 강구
3. 주요선호직위 부서에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직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 강구

4.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5.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관리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바 앞으로 하위직 위주로 실시하여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 방안으로 모색할 것
6. 사업시행시 빈번한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의 초래에 따른 예방 대책을 강구 할것
7. 행정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인사의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기간 단축 방안 강구

【 청주의료원 】 - 4건

1. 주요업무추진상황 작성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97년 외부 전문기관 경영진단 실시이후 경영진단이 없었음. 2006년도에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강구
3. 의료서비스는 물론 직원 친절도가 미흡한 실정임으로 이의 개선 방안 강구
4. 청주의료원은 수익증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비용절감(인건비관리비)이 선행 되어야 하는바, 비용절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기법 개발과 관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

【 충주의료원 】 - 5건

1. 조례와 재무 제표상(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일치 되도록 할 것
   - 조례(자본금) : 1,717,899,642원,
   - 2005년도 재무제표(자본금) : 1,716,442,642원
2. 충주는 앞으로 기업도시 유치 등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바 이런 예측결과 내용이 충주의료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의료원의 토지와 건물은 충청북도지사 소유(충청북도 공유재산)로 되어 있으면서, 의료원의 고정자산으로 자본금에도 포

함되어 있는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정리토록 할 것.

4. 오지마을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 무료 진료서비스를 확대 방안 강구
5. 인접병원(건국대병원, 원주기독교병원)과 차별화된 공익서비스 영역개발 강안 강구

【 충북개발연구원 】 - 7건

1. 도내 균형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결과 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 중간보고 실시
2. 충북개발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설립하여 부단한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충북개발연구원이 선두 주자로서 위상정립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3. 연구요원은 연구에 전념하고 과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출강 및 연구외의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
4. 수탁 연구과제 용역 결과물에 대해 사후에도 과제별로 연구한 연구위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수탁 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많은 연구과제 용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연구원에서는 시장·군수 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 강구
6.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한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7. 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성시 도청 실국의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추후 작성시 개선 촉구

□ 건의사항

【 공보관실 】 - 1건

1. 도정에 대한 기사중 비판기사를 분석한 결과 올바르게 비판한 기사 내용이 도정에 반영된 경우 제공자에게 표창등 인센

티브 부여

【 감 사 관 실 】 - 2건

1.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답변
2. 감사관실에 농업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직렬 신설

【 기획관리실 】 - 1건

1. 충청북도명예연구소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자치행정국 】 - 3건

1.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의 확대, 입찰의 지역제한 등 지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3. 해외 자매결연 지역(야마나시현, 흑룡강성) 파견 공무원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사회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각 기관별 공통 】 - 3건

1.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
2. 각종 행사의 민간위탁시 가능한 공모절차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줄 것.
3.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재원과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

【 여성정책관실 】 - 7건

1.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금 사업 내용 중 1회성이고 행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 해 줄 것과, 사업 추진시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할 것.
2. 업무추진비의 과다 미집행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연중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3. 보육시설 운영비 18억여원 등 국비 반납액이 많은 것은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 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
4. 여성·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확인을 확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
5. 민간위탁 행사 추진결과보고서 작성시 총평, 행사개요, 잘된 점, 잘못 된점, 향후 개선 점 등의 체계적인 보고서가 되도록 조치 할 것.
6.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부담부분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
7. 2004년과 2005년도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산결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결과와 상이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복지환경국 】 - 7건

1.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2. 환경신문고 등 각종 신고센터의 실적이 미비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할 것.
3.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이듬해 지원사업 선정시 반영되도록 할 것.
4. 물관리수요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목표가 달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

5.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에 공중보건의사 3명 배치한 것에 대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여 조치를 취할 것.
6. 도내 정신병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7. 학교급식위탁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해 줄 것.

【 충북과학대학 】 - 10건

1. 충북과학대학의 기성회계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2. 책임시수에 비해 강의시수가 부족한 교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3. 긴축재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미확보하고 있는 교수 3명에 대하여 조기에 확보 되도록 노력해 줄 것.
4. 학생들의 해외연수 방법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5. 충북대학 장기발전계획중 연도별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
6. 학과별 취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학생들의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실 환경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
9. 신입생 모집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강구.
10.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무원교육원 】 - 4건

1. 근태점수와 관련한 제규정의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
2.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기준에 맞도

록 운영해 줄 것.

3.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입교하는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해직급의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4.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100%교육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보건환경연구원 】 - 1건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의거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할 것.

【 도 교육청 】 - 14건

1. 충주여상 학생 자살 및 학교폭력발생 사건과 사후 보고처리 미흡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관련학교장 및 충주교육장, 도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 할 것.
2. 충주여상 교장의 현재 정년을 넘기고 기간제 교장으로 보임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기간제교장제는 가급적 제한해 줄 것을 촉구.
3. 제천 단설유치원설립은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조속한 시일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4. 학교내의 각종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5. 교육연수 실적이 부진한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교육계획대비 100%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6. 단재교육원의 원격연수과정의 교육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7. 설계변경사업관련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심의자문단 심의기준을 단위 사업당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것.
8.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9.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을 관리함에 있어 불·부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할 것.
10. 사립학교법인에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상황을 판단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
11.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단의 직급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개선 할 것.
12. 단재연수원에서 운영한 각 과정별 분임토의 결과물에 대하여 업무현장에 전파하여 반영되도록 개선.
13.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14. 학교회계운영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옥천교육청 】 - 7건

1. 각 과목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이 되도록 시정해 줄 것.
2. 각급학교에서 시공중인 공사싯점을 수업이 진행중인 시간은 가급적 피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삼양초등학교를 옥천초등학교(가칭)와 분교를 함에 있어 그동안 인구 증감율과 향후 인구증감율을 비교하여 볼 때 분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우리위원회의 보고할 것.
4. 각급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모든 학부형과 학생,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

5.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해 줄 것을 시정.
6. 목적사업비 집행 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납되도록 시정.
7.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육류의 DNA검사를 불시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할 것.

□ 건의사항

【 여성정책관실 】 - 5건

1. 우리의 전통문화,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왜곡되어가는 결혼문화를 개선 하기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금의 지정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
2.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 운영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것.
3.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2004년도에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 되지 않고 있어 2006년도는 꼭 설치 되도록 노력해 줄 것.
4. 성폭력 상담소가 청주·청원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북부·남부지역에도 설치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
5.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우려가 있어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 촉구.

【 복지환경국 】 - 4건

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적인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에 건의 등 조치 할 것.
2. 환경분야에 투입한 총 예산이 타시도에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환경분야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3. 청주·청원권의 제2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4. 사업부도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중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 등은 산업체의 열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으므로 단양의 시멘트 공장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충북과학대학 】 - 1건

1.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지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을 기울여 줄 것.

【 공무원교육원 】 - 2건

1.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받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 2007년도부터 중견간부양성 과정에 대해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그 이후 확대 시행토록 할 것.
2. 교수별 강의시간이 편중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교수별 강의시간이 평균('04년 109시간) 이하인 교수는 평균이상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

【 보건환경연구원 】 - 3건

1. 김치 등 먹거리에 대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검사를 확대해 줄 것.
2. 토양오염도 조사 등 각종 검사결과를 반드시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
3. 각종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

【 도교육청 】 - 6건

1. 학교폭력사실을 사법기관에 알려 학교내에서의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대표를 비롯한 학생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
2.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육류 중 소고기 납품은 한우 2등급 이상되는 품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규정은 부정부패를 조장 할 수 있는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할 것.
3. 학교내의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 할 것.
4. 충주·제천시 관리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방안 연구검토 할 것.
5. 2006년 도내 교사평가제 시행학교가 3개 학교로서 도내 전 학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 할 것.
6. 수능시험 고사장을 설치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학생들의 편의적 측면에서 시군 교육청별로 설치 되도록 해 줄 것.

【 옥천교육청 】 - 1건

1.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해 줄 것.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경제통상국 】 - 5건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확인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2. 오창벤처프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격(IT, BT와 관련된 벤처·중소기업)의 엄격한 심사로 자격기준 미달 입주자 퇴실 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 추진
3. 충북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도외이주로 인한 수출감소,실업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업 적극 유치 및 기존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강구
4.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계약 후 장기간 방치된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난 해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5.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평가시스템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농 정 국 】 - 4건

1. 임도시설 후 피해지 복구 및 보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이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
2. 부르세라병 감염 소를 집단거주 지역, 상수도 구역 등에 주민동의 없이 매립하여 환경오염 및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3. 수입냉동고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농산물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대처
4. 농산사업소 보유 관리재산 중 산재한 소규모 전·답 등을 집단화하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농업기술원 】 - 4건

1. 특정사업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조치

2.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제규정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시험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 의회보고시 상임위 전 위원에게 보고되도록 개선
4. 행정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행정목적에 불부합되므로 용도폐지 후 처분 조치

□ 건의사항

【 경제통상국 】 - 8건

1. 혁신도시 선정 이후 시·군간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2.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교류 및 대외협력 위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및 수출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보다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강구
3.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현장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도내 기업의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노사대립 재발방지 노력
5.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간부위주로 편중된 비효율적 조직을 실무위주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영세업체 및 시·군간 균형적 신용보증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6. 중소기업의 인력·자금지원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화 등 기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7.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핵심적인 오창·오송단지가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8.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한 비수도권 공동대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 농 정 국 】 - 10건

1.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 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이용에 편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2. 농정관련 국·도비지원 사업이 특정지역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별, 시·군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3.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매입물량 축소로 쌀농가 대부분 농협·RPC매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농협에서 매입한 쌀값하락으로 발생되는 적자부분에 대하여 운영자금 및 2차보전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우리도 낙후지역인 남부 3군에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5. 각종 산림사업이 특정 조합의 편중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추진
6. 1사 1촌 운동이 어려운 농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도·농간 상생기반 구축 활성화 방안 강구
7. 농기계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 제품이 적극 구입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8. 농산물 수입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쌀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강구
9. 축산위생연구소내 사유지 매입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10.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가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 농업기술원 】 - 8건

1.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상호교류 방문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2. 기술원 부서내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조직의 활력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3. 원내 전보인사시 인사협의회의 실질심사를 할 것과 정원규정에 의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추진
4. 기술원 관리자 직무실의 초과면적은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규모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5.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되도록 적극 추진
6. 각종 시범사업이 일부시군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이 균형적 배분되도록 사업별, 시군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7. 건강관리실 활용실태 및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8. 신품종 장미개발로 수입대체 및 로열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농가보급을 확대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관광건설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 문화관광국 】 - 5건

1. 문화재 보수 재정비시 옛 고증을 거쳐 정비하여 원형에 가까운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조치
2. 위원회를 설치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면밀히 검토 한 후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정비하기 바람

3. 지역문화축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평가 등을 통하여 축소 또는 통합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방안 강구 바람
4. 단체·협의회 등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중복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하여는 중단 및 조정 지원 토록하여 보조사업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 대책을 강구 바람
5.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북도 대표팀의 성적을 보면 매우 부진하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 3건

1. 불법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미흡한 실정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불법광고물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체 유치와 8,5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청주~오창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도로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보상 사례가 있음 도로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소방본부 】 - 3건

1.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및 공장 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낭떨어지기형 비상구가 도내 43개소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시설 보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119구급차 기준장비 확보와 탄력적인 장비 공급으로 구급활동

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바이오산업추진단 】- 3건

1.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조성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정이 부진하니 계획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3.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내 전시컨벤션시설 증액분 25억원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 건의사항

【 문화관광국 】- 3건

1. 청남대 명소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남대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주변 공간 및 연계 관광개발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
2.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뿐만 아니라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3.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람

【 건설교통국 】- 5건

1.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수단을 도모하는 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 바람
2. 청주시 월오택지개발예정지구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지구지정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조정과 건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책 강구
3. 도로 신설 및 선형개선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신규로 발생되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

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

4.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이를 이용한 친일파 후손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방안 강구
5.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호구 확보와 착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소방본부 】 - 3건

1.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전시성,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교육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
2.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등 재해시 보상 현실화 방안 검토
3.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등 내구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 대책을 강구 바람

【 바이오산업추진단 】 - 2건

1. 2007년 10월에 예정된 "오송국제 Bio하이테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오송이 동북아 바이오 메카로 급부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오송신도시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

第 4 章 請願 및 陳情處理

第 1 節 請　　願
第 2 節 陳　　情

第 1 節 請 願

1. 處理槪要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주소, 성명,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와 의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이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원은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 및 각 의원에게 통지한다.

2. 請願 不受理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3. 處理現況

○ 없음

4. 處理節次

청원서 제출 ← 주 민 (· 의원1인이상 서명 · 소개서(의견서)첨부)

↓

청원서 접수

↓ ← (· 청원요지서작성 · 의원에게 인쇄 · 배부)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 필요시 (· 소개의원 요지설명 · 청원인진술, 현지조사)

소관위원회 상정, 심의 · 의결

위원회 부결시 →

↓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 ← 의장 및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본 회 의 상정, 심의 · 의결

본회의 부결시 →

↓

도지사에게 이송

↓

처 리 결 과 의 회 보 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및 각의원)

※접수하지 않는 청원
- ㅇ재판에간섭하는것
- ㅇ국가기관을 모독하는것
- ㅇ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ㅇ법령에 위배되는 것

第 2 節 陳 情

1. 處理概要

○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치 않으며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그리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심사를 하여 처리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 및 지역의원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2. 處理現況

구 분 / 위원회별	접 수	처 리					비고
		소계	해결	불가	관련기관 통 보	기타	
계	42건	42	10	6	23	3	
기획행정	1	1	1				
교육사회	10	10	3	1	5	1	
산업경제	6	6	2	2	2		
관광건설	24	24	3	3	16	2	
기 타	1	1	1				

3. 處理節次

▶ 처리근거 : 충청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회훈령 제7호)

진 정 서 제 출	ㅇ 진정인
↓	
진 정 서 접 수	ㅇ 진정요지서 작성 ㅇ 의장결재 ㅇ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ㅇ 접수사항 및 지역의원에게 통보 ※ 경미한 사항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처리
↓	
소관위원회 회부	ㅇ 검토 ㅇ 처리의견, 의사담당관실에 통보
↓	
처리의견접수 및 해당기관 이송	ㅇ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의견에 따라 처리
↓	
처리결과회신 (통지)	ㅇ 진정인에게 회신 ㅇ 지역구 의원, 관련기관 · 단체에 통보

4. 處理內容

(1) 기획행정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지부장 변광수)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관련법은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음

(2) 교육사회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학교사랑모임회 충주시지회 (회장 이규학)	교육청 교육행정 감사 관련 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 의거 매년 정례회기중 실시하였으며, 교육시책들이 반영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주요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음성 금왕읍 용계리(표영석)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대 진정	충청북도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진정사항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참사랑상담원 (이사장김준환)	충청북도교육감 관사 활용	교육감 관사를 교육시설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리비용 및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임대 및 무상사용건은 관련 규정에 불부합되어 임대(무상사용)가 불가한 실정임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오창단지아파트 입주자연합회 (대표 박상근)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학교신설 진정	교육청과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학교부지 추가확보와 관련한 민원해결 촉구하였고 후속조치 대상사무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노력 할 계획임
충주시 칠금동 삼일A 101-304 (이상균)	충주교육청의 학교신설에 따른 부당행정 진정	충주시 교육장에게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의결된 사항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당부
화장장반대대책위원회 및 월오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박광선)	월오화장장 화장로 설계변경 반대 및 공사비 지원요청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음
옥천 사랑의 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위원장 하숙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대안책 마련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등 집행부에 철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50 (박 철)	청각(장애)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	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청기 무상보급(20명) 및 지원계획(120명),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복지기관설립 검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추진등을 계획하고 있음

(3) 산업경제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단양 영춘면 의풍리 (유재호)	백두대간 보호구역 해지 건의	도지사와 단양군수에게 진정인의 해당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조정 요청에 대한 진정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촉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충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김학복)	한국노총 지원예산 관련 적정배분 지원 건의	보조금 지원결정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첩하였음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이환)	시내버스 가스 공급 가격 부과제도 건의	도시가스 수송용 요금제도 폐지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공급비용 결정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9-3. (김재선)	채광계획 불인가에 따른 공무원직권남용 진정	신청지는 관광요충지 및 공익이 현저히 침해 우려되어 불인가 되었으며 산업자원부에 제기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 될 사안임
성암리진흥지역 해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석태)	진흥지역 해제 건의	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는 주체인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한바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불가함을 통보하였음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 횡포 탄원	매입 물량은 지원금액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고 있으며 타 RPC보다 매입 수량이 적은 것은 수량을 늘리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음

(4) 관광건설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충주 금능동 700 (김대식)	괴산 IC명칭 변경 및 월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건의	충청북도지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도 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옥천 군북면 증약리 산 75번. (육재수)	종교단체 휴양시설 건립반대 탄원	충청북도와 옥천군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청주 흥덕구 복대 1동 221-7 (유성종)	전국체육대회 평가에 대한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도의회에서도 체육 발전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음을 회신
충주 교현동 584-1 (이준득)	충청북도소방의용대설치조례에 관한 개정 건의	충청북도 관련부서(소방본부)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조례 개정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청주 흥덕구 향정동 1 (주) 하이닉스반도체	도로안내표지판 회사명 설치 요청	충청북도지사에게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청주 흥덕구 정봉동 27-3 (조관희)	휴암~오동간 건설공사 선형변경 요구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충주 이류면 검단리 78-7번지 (이정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용도변경 및 기반시설 확충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태호)	충북선철도 전철화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하고,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추진토록 촉구하였음
청주시 상당구 용1동 42-4 (박종원)	자연녹지 공원지역 해제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요청
단양이주역사 바로세우기운동회 (회장 최순교)	단양군 위법행정 피해도민 구제	충청북도로부터 종결처리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판단 또한 종결된 민원이며 단양군은 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직접감사 또는 조사를 할수 없음
청원군 의회 (의장 변장섭)	청주 국도대체 3차우회도로 건설 관련 의견조회	충청북도지사가 관련기관 및 부서간 의견조율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귀 의회에서도 관계기관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 당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39 (우상익)	오송분기역 즉각확정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하여 성명서 채택과 국회 등에 수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것임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 156 (정찬화)	청풍 ~동량간 도로 확포장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에게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청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이규철)	석천리 양금마을 잠수교 가설 건의	충청북도지사에게 충주시와 협의하여 검토 요청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는 추후 충주시로 하여금 오지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조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6-2. (진영진)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충청북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에 공정을 기할 것을 당부 교육자원부에 모두환급 및 기사용된 것은 국고 특별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장호원CC회원찾기 모임 (회장 이기곤)	골프회원모집 이중승인으로 인해 피해진정	충청북도 관련부서에 알려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조치 하여줄 것을 통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2096. (권중원)	하천부지 보상요구	하천에 편입된 토지눈 하천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보상이 어려움 (4차례 불가회신)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권상봉)	제방공사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요구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충주시로부터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구간외의 토지는 하천공사를 시행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현지 실사후 산정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0-1 (노관영)	하천제방축조 편입토지 보상요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토지로 향후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방서도시개발사업 조합 (채희석)	청주 월오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탄원	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하여줄 것을 충청북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의견 제출 건설교통부에서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자체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됨
충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이준득)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시 거론하였으나 표준안에 의거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어려우나 소방대 상호간 협력강화 등 최선의 방안 모색을 소방서에 촉구 하였음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식금리 42-1 (구교성)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 침해 진정	충청북도 관련부서와 협의 한바 도비보조 문화재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음
오창과학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박상근)	오창산업단지 호수공원개발관련 진정	충북도에서 호수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은 부적절함을 통보 및 권고하였으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위법사항 발견시 관계공무원 엄중문책
청원군 가덕면 상야1리. (김종국)	「가덕면 한계리~청주시 월오동」간 터널도로 설치	도로 확포장 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이 조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터널도로 신설은 예산 및 지역간 협의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청주시 상당구 탑동 146-7 (이상욱)	명암천 하천부지 용도폐지 및 불하	청주시로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계획 수립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유지관리, 공원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청주시장에게 이첩 조치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일선)	중부내륙철도 노선안 건의	충북발전에 기여할 노선이 선정되도록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노선안을 검토중에 있고 향후 노선 선정을 위하여 용역기관에 자료제공과 노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第 5 章 議政研究會 活動

第 1 節 2004年度 活動
第 2 節 2005年度 活動

第 1 節 2004年度 活動

1. 概 要

(1) 구성일자 : 2004. 8. 31

(2) 회 원 : 총 9 명

· 회 장 : 정상혁의원

· 총 무 : 강구성의원

· 회 원 : 김정복, 김환동, 이대원, 이범윤, 이필용, 정윤숙, 조계숙 의원

(3) 활동기간 : 2004. 8.31~2004.11.30

(4) 결과보고 : 2004.12. 7

2. 研究成果

(1)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노후 및 협소문제

⇒ 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도 자체 사업의 적극적 추진 계기 마련

(2)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 소방파출소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 문제제기

⇒ 소방본부 통합상황실 3교대 추진 등 단계적 인력확보 및 예산확보 계기마련

·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이원화 문제제기

⇒ 일원화로 관련조례 개정(2005.12.15 제245회 2차 본회의)

3. 活動報告書 製作 : 300부 제작

第 2 節 2005年度 活動

1. 概　　要

(1) 구성일자 : 2005. 3. 15

(2) 회　　원 : 총 7 명

· 회　장 : 정상혁의원

· 총　무 : 김문천의원

· 회　원 : 이필용, 이범윤, 강구성, 김환동, 조영재 의원

(3) 활동기간 : 2005. 3.15 ~ 2005.11.30

(4) 결과보고 : 2005.12. 1

2. 研究成果

(1) 도계지역 실태조사

· 도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문제제기

⇒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 도계지역 육성사업의 활발한 추진 계기 마련

(2)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실태

·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의 님비현상 팽배, 부대장비 및 시설부족, 사용 종료 매립장 문제, 근무여건 열악 등 문제제기

⇒ 혐오시설 인식 전환을 위한 시설조성·운영, 광역화 추진, 예산 및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 계기 마련

3. 活動報告書 製作 : 450부 제작

附　　錄

Ⅰ. 歷代 道議員 名單

Ⅱ. 議會日誌

Ⅲ. 演說文集

Ⅳ.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運營
2. 議案處理 現況
3. 道政質問
4. 行政事務監査結果 指摘現況
5. 議員研鑽 活動

Ⅴ. 議事堂 施設配置圖

Ⅰ. 歷代 道議員 名單

1. 初 1 代 : 28名(1952.5.29.~1956.8.13.)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田 命 植	1903.04.07	청주 사직2구 126	1954. 3. 25 보선
	崔 東 善	1900.10.25	북문로2가 137	제1대 의장
청 원 군	韓 廷 求	1910.10.08	청원 남이 양촌84	제1대 내무위원장
	張 應 斗	1903.05.04		제1대 징계자격위원장
	全 炳 壽	1898.09.26	청주 북문2가 114	제1대 문교사회위원장
	閔 丙 斗	1898.11.29	청원 북일 현동66	제1,2,4대 산업위원장
보 은 군	具 然 鴻	1915.10.20	보은 마로 관기386	제4대 내무위원장
	李 殷 濟	1915.06.08	보은 삼산	
옥 천 군	權 福 仁	1911.08.29	옥천 청산 지전34	제1대 부의장
	姜 在 仁	1905.07.26	옥천 금구113	제2대 문교사회위원장
영 동 군	朴 貞 鉉	1910.09.10	영동 학산 봉산481	제3대 문교사회위원장
	孫 俊 鉉	1901.12.04	영동 계산662	제3대 내무위원장
	柳 性 淵	1902.12.08	매곡 노천84	제1대 예산결산위원장
진 천 군	李 再 範	1905.08.17	진천 덕산 옥동209	제3대 징계자격위원장
	盧 達 先	1917.03.01	진천 읍내275	제2대 징계자격위원장
괴 산 군	金 泳 泰	1904.01.05	괴산 상모 온천376	
	金 瑞 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李 錫 圭	1912.01.20	괴산 동부623	
음 성 군	鄭 用 彦	1906.04.24	음성 금왕 무극126	
	李 起 浩	1912.07.20	음성 읍내307	
중 원 군	李 孝 承	1910.11.05	중원 엄정 미내47	제4대 징계자격위원장
	洪 鍾 漢	1901.12.15	충주 성서동129	제2대 내무위원장
	金 興 吉	1915.02.23	충주 용산동663	
	李 元 培	1918.04.19	중원 주덕 제내345	
제 천 군	韓 源 錫	1918.06.06	제천 수산 수산602	1954. 11. 24 보선
	盧 意 重	1909.02.20	제천 의림87	제3대 산업위원장
	柳 浩 烈	1910.02.10	청풍 읍리380	제4대 문교사회위원장
단 양 군	金 重 熙	1919.03.05	단양 단양 상방241	
청 주 시	洪 元 吉	1915.10.15	청주 수동2구441-9	1953. 11. 16 사퇴
제 천 군	金 鏡	1918.06.19	제천 신동476	1954. 8. 6 사퇴

2. 第 2 代 : 30名(1956.8.14.~1960.8.12.)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安 相 烈	1915.01.20	청주 우암동104-2	제8대 징계자격위원장
	金 元 會	1898.10.03	영동103-5	1959. 4. 25 보선
충 주 시	李 夏 榮	1914.12.01	충주 용산동481	제7대 내무위원장
청 원 군	吳 永 鎭	1922.09.04	청원 문의 남계374	
	吳 鎭 世	1921.04.05	현도 죽전65	제7대 징계자격위원장
	韓 相 大	1909.08.24	송파구잠실주공A410-501	제6대문교사회위원장,60.7.2사퇴
	趙 壽 石	1916.12.09	청원 강내 신촌65-2	제5대 징계자격위원장
	李 濟 世	1911.01.17	청주 수동1295	제2, 4대 부의장
보 은 군	尹 瀅 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	1958. 6. 5 보선
	尹 台 勳	1924.02.15	청주 상당 용암 2068	제4대 예산결산위원장
옥 천 군	李 仲 茂	1916.12.05	옥천 이원 지정48-2	1958. 6. 5 보선
	姜 晃 會	1900.04.06	이원 강청39	1958. 6. 5 보선
영 동 군	金 秉 淵	1897.02.05	영동 영동 계산205	
	李 鍾 命	1905.08.02	황금 추풍령415	1959. 9. 22 보선
	韓 秉 洙	1911.10.18	영동 중앙185-1	제5대 예산결산위원장
진 천 군	柳 義 烈	1909.05.22	진천 진천 읍내328-1	제7대 산업위원장
	金 振 穆	1925.07.14	청주율량현대A402-704	제8대 내무위원장
괴 산 군	金 振 聲	1909.07.02	괴산 괴산 서부226	제8대 산업위원장
	金 泳 泰	1905.01.05	상모 온천376	제5대 문교사회위원장
	金 瑞 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제6대 내무위원장
음 성 군	李 起 浩	1912.07.20	음성 읍내307	제2대의장,3부의장,5산업위원장
	宋 馨 植	1904.04.01	대소 윤리178	
	趙 春 衡	1905.01.10	금왕 무극103	제8대 문교사회위원장
중 원 군	禹 柄 勳	1919.07.15	중원 엄정 신만416	제6대 징계자격위원장
	李 元 培	1918.04.19	주덕 제내345	제5대 내무위원장
	洪 鍾 漢	1899.12.15	앙성 본평382	제5대예결위원장,6대산업위원장
제 천 군	金 容 翼	1919.11.06	제천 제천 의림43	1958. 6. 5 보선
	朴 永 聲	1916.03.03	금성 구룡309	
	韓 源 錫	1918.06.06	수산 수산589	제3대 예산결산위원장
단 양 군	池 德 九	1915.11.06	단양 단양 하방142	1960. 7. 5 사퇴
청 주 시	崔 東 善	1900.10.25	청주 북문2가137	제4대 의장, 1959.2.10사퇴
보 은 군	具 然 鴻	1918.06.06	보은 보은 관리38-6	1959. 2. 24 사퇴
옥 천 군	郭 楨 觀	1896.02.24	옥천 옥천 금구258	1958. 1. 31 사퇴
	權 福 仁	1911.08.29	청산 명치179	1958. 2. 24 사퇴
영 동 군	金 善 行	1909.11.10	영동 영동 부용334	제7대문교사회위원,59.8.5사퇴
제 천 군	盧 意 重	1909.02.20	제천 제천 의림87	제2대 의장, 1958.2.24사퇴

3. 第 3 代 : 26名(1960.12.12.~1961.5.16.)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徐 丙 周	1918.01.03	청주 내덕174	제6대 의장
	朴 魯 精	1906.09.03	북문1가1-2	
충 주 시	申 相 玉	1925.02.29	경기 고양 일산 백석2동1349	
	閔 昌 基	1909.03.25	충주 성서85-5	
청 원 군	李 長 壽	1905.11.13	청원 문의 문산22	
	洪 性 來	1918.09.19	남이 척산638	
	朴 鍾 和	1930.10.11	경기이천증포 신안A108-403	
	金 漢 植	1918.01.11	청원 오창 백현52	
보 은 군	尹 瀅 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99-1	
	尹 台 勳	1924.02.15	청주 상당 용암 2419	제5대 부의장
옥 천 군	李 熙 昌	1920.01.20	옥천 옥천 하계32-1	제9대 산업위원장
	李 龍 熙	1931.06.10	서울 서초 방배809-27	
영 동 군	韓 秉 洙	1911.10.08	영동 학산 조산536	
	鄭 喜 澤	1922.08.30	대전동구가양1동옥수A706	
진 천 군	李 仁 澤	1912.07.24	진천 진천 읍내277	1961. 4. 보선
	李 政 儀	1914.05.15	덕산 옥동209	
괴 산 군	朴 元 植	1907.07.07	괴산 불정 탑평682	
	李 圭 弘	1909.02.25	증평 송산454	
음 성 군	朴 魯 昇	1927.04.22	음성 음성 평곡325	
	趙 春 衡	1905.01.10	금왕 삼봉103	제9대 문교사회위원장
중 원 군	李 成 圭	1912.09.17	중원 신니 선당357	제9대 내무위원장
	崔 勉 昇	1925.06.13	동량 조동1284	제6대 예산결산위원장
제 천 군	元 容 轍	1900.06.09	제천 제천 명동169	
	嚴 鳳 翼	1914.06.04	청풍 읍리366	
단 양 군	趙 東 秀	1907.04.08	단양 대강 장림113	
	金 鳳 云	1914.03.15	영춘 상리414-1	
진 천 군	柳 義 烈	1909.05.22	진천 진천 읍내328-2	1961. 1. 25 사망

4. 第 4 代 : 38名(1991.7.1.~1995.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韓 章 壎	1943.12.11	청주 우암동326-5 감초당	문교사회위원장(전)
	金 俊 錫	1942.11.08	내덕2동516북부도정공장	
	尹 泰 漢	1947.01.01	영운동70-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吳 運 均	1950.06.23	수동140-24	의회운영위원장(전), 부의장(후)
	趙 誠 勳	1939.03.01	사직2동벨라A A동302호	제8대 의장
	朴 晩 淳	1941.03.19	복대동2607세원테마빌A206-101	
충 주 시	金 仁 植	1936.12.06	충주 안림578-1	건설위원장(후)
	朴 鍾 浣	1939.05.24	문화232-1	
	金 演 權	1933.08.04	교현1동 185-3	내무위원장(전), 부의장(후)
제 천 시	張 寅 基	1937.09.11	제천 남천56-3	
	李 炳 斗	1946.09.16	중앙로2가 76-30	
	權 湧 河	1929.01.07	영천동 322	부의장(전)
청 원 군	金 孝 天	1950.05.27	청원 미원 미원522-3	
	韓 玹 求	1939.04.19	서울송파방이동웅산빌딩4층	제7대 의장
	車 珠 龍	1937.09.13	내수은곡무지개A105-119	교육사회위원장(후)
보 은 군	朴 商 浩	1936.11.26	보은 보은 죽전52	부의장(전)
	朴 鍾 起	1939.11.29	삼승 우진34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 천 군	鄭 震 澈	1940.08.30	옥천 옥천 금구5-70	의회운영위원장(후)
	陸 鳳 鎬	1936.02.16	이원 대흥529-1	
	安 哲 浩	1940.12.08	청산 지전37-2	산업위원장(전)
영 동 군	鄭 光 洙	1953.01.10	영동 영동 준산695-69	
	李 炳 圭	1927.11.10	황간 마산42-12	
	李 光 浩	1933.04.01	양산 가곡468	내무위원장(후)
진 천 군	金 慶 會	1952.06.15	진천 진천 교성 203-1	
	劉 永 勳	1955.04.30	초평 용정376-3	
괴 산 군	金 基 韓	1937.12.15	괴산 사리 방축307-3	기획경제위원장(후)
	金 奉 三	1935.01.30	증평 교동60	건설위원장(전)
음 성 군	車 珠 元	1929.12.11	음성 읍내299	
	成 耆 德	1957.06.20	금왕 무극134	
	奉 夏 勇	1946.07.09	대소 태생 개나리A101-1001	
중 원 군	金 在 根	1955.04.23	충주 충인316충주온누리약국	
	李 殷 載	1938.12.01	중원 노은 수룡757	
	禹 范 成	1938.12.09	엄정 용산387-1	
제 천 군	金 鎭 學	1949.02.19	제천 수산 수산592-2	
	朴 起 陽	1936.03.30	봉양 주포152-12	농림수산위원장(후)
단 양 군	申 完 燮	1940.11.16	단양 단성 별곡 394	예결, 댐특위위원장
	安 載 元	1950.02.03	매포 평동7리 1182	
괴 산 군	柳 明 熙	1939.10.13	괴산 괴산 동부545	1993. 11. 12 사망

5. 第 5 代 : 39名(1995.7.1.~1998.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朴 用 仁	1937.10.10	청주 북문로2가 116-29	기획경제위원장(후)
	金 俊 錫	1942.11.08	내덕2동 516	의회운영위원장(전)
	金 春 植	1958.09.02	분평우성A105-606	
	崔 鍾 哲	1954.01.03	운천동세원105-106	
	林 憲 用	1958.06.12	비하효성A302-107	
	朴 晩 淳	1941.03.19	복대2607세원테마빌206-101	
충 주 시	金 仁 植	1936.12.06	충주 안림 578-1	
	權 寧 觀	1947.01.09	칠금동 3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尹 炳 泰	1951.05.20	교현1동동아A806	
	金 在 根	1955.04.23	충인316충주온누리약국	의회운영위원장(후)
	李 善 鎬	1958.09.27	신니 대화462-3	
	崔 先 煥	1945.03.25	동량 대전289	
제 천 시	李 吉 廈	1957.02.19	제천 고암 금용A103-1012	
	李 炳 斗	1946.09.16	중앙로2가 76-30	부 의 장(후)
	李 丙 哲	1955.06.24	화산1동657공설빌라401	
	朴 尙 秀	1945.10.26	화산 291-1	
	崔 英 洛	1958.02.28	봉양 명암 122	
청 원 군	李 敏 熙	1950.04.13	청원 남일 고은 419-2	
	吳 成 鎭	1948.09.26	현도 양지 41-9	1998. 4. 3 사퇴 건설교통위원장(후)
	車 珠 龍	1937.09.13	내수 은곡무지개A105-119	1998. 4. 3 사퇴 내무위원장(후)
보 은 군	李 香 來	1950.10.16	보은 이평 강변리치빌302호	1998. 4. 4 사퇴 농림수산위원장(후)
	劉 載 喆	1928.10.25	산외 장갑 404	교육사회위원장(전)
옥 천 군	宋 在 周	1937.11.07	옥천 옥천 금구 104	1998. 5. 2 사퇴 기획경제위원장(전)
	安 哲 浩	1940.12.08	청산 지전 32-7	부 의 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1941.04.01	영동 영동 계산 688	
	鄭 泰 禎	1946.04.29	황간 송원 350	
진 천 군	韓 相 文	1934.10.05	진천 교성신양빌라가-304	건설교통위원장(전)
	劉 永 勳	1955.04.30	초평 용정376-3	1998. 4. 3 사퇴 부의장(전)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괴 산 군	金 大 鎬	1952.02.21	괴산 동부 441	
	朴 蘊 燮	1940.12.13	청천 송면 32	
	柳 明 昊	1942.02.28	증평 중동 62	1998. 4. 3 사퇴
음 성 군	車 珠 元	1929.12.21	음성 음성 읍내 299	제9대 의장
	成 耆 德	1957.06.20	금왕 무극 134	내무위원장(전)
	朴 濟 國	1938.08.18	삼성 덕정765-10	교육사회위원장(후)
단 양 군	安 載 元	1950.02.03	단양 매포 평동 1182	1998. 4. 4 사퇴 농림수산위원장(전)
비례대표	宋 玉 順	1942.04.02	청주 대성동우성A107-1103	
	金 東 鎭	1936.10.02	석교동 120-4	제10대 의장
	李 鍾 國	1929.06.06	청주 내덕2동신라A2-203	
	崔 準 九	1944.09.04	보은 내속리 사내 283	1998. 5. 8 의석승계
제 천 시	金 元 植	1956.12.30	제천 서부 97-4	1996.10.15 자격상실
	金 鎭 學	1949.02.19	제천 수산 수산578	1996. 4.12 자격상실
옥 천 군	李 喜 福	1954.11.18	옥천 청산 백운578	1996. 4.12 자격상실
단 양 군	申 完 燮	1957.10.13	단양 단성 북하96	1997. 5.19 사퇴 부의장(전)
비례대표	朴 鶴 來	1923.03.11	청주 석교동 34-10	1998. 4.25 사퇴

6. 第 6 代 : 27名(1998. 7. 1.~2002.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金 俊 錫 (무소속)	1942.11.08	청주 내덕2동 516북부도정공장	제11대 의장
	黃 太 模 (한나라)	1940.06.03	탑동 현대A107-303	2000.6.12. 보궐 교육사회위원장(후)
	金 珍 鎬 (한나라)	1948.12.22	봉명 781 청주약품	제12대 의장
	申 澤 秀 (한나라)	1945.10.11	복대1동 82-5	관광건설위원장(후)
	金 春 植 (자민련)	1958.09.02	청주 사직2 한진빌라트 702	2000.2.12. 사퇴
충 주 시	權 寧 觀 (한나라)	1947.01.09	충주 칠금동 381	부의장(전)
	沈 興 燮 (한나라)	1962.04.14	연수 주공A406-1101	2000.6.12. 보궐
	尹 炳 泰 (자민련)	1951.05.20	교현1동 동아A 1-806	2000.2.12. 사퇴
제 천 시	崔 英 洛 (무소속)	1958.02.28	제천 봉양읍 명암 122	부의장(후) 산업경제위원장(전)
	李 吉 廈 (무소속)	1957.02.19	고암동 고암A104-406	
청 원 군	申 大 植 (한나라)	1939.03.25	청원 남일 두산 349-2	부의장(후)
	朴 魯 喆 (한나라)	1948.11.03	오창 원리 213-1	교육사회위원장(전)
보 은 군	具 本 善 (민주당)	1949.03.25	보은 보은 교사그린A4-201	2001.7.27. 자격상실
	朴 鍾 起 (한나라)	1939.11.29	삼승 우진 348-1	부의장(전)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옥 천 군	李 根 成 (자민련)	1949.09.26	옥천 옥천 마암 현대A101-203	2002.5.27. 사퇴
	庾 東 燦 (무소속)	1939.10.25	안남 도농 353	의회운영위원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한나라)	1941.04.01	영동 영동 계산 688	의회운영위원장(전)
	曺 永 在 (한나라)	1953.06.19	황간 신흥 28	2000.11.1. 보궐
	鄭 泰 禎 (자민련)	1946.04.29	황간 서송원 350	2000.9.4. 사퇴 관광건설위원장(전)
진 천 군	崔 種 錄 (한나라)	1940.11.11	진천 진천 읍내5리 453	2000.11.1. 보궐
	趙 平 熙 (민주당)	1955.02.18	덕산 신척 398	2000.11.1. 보궐
	金 柱 泊 (민주당)	1940.04.05	진천 가산 185	2000.9.15. 사퇴
	金 炯 泰 (자민련)	1937.02.13	광혜원 광혜원 266-1	2000.9.15. 사퇴
괴 산 군	金 大 鎬 (한나라)	1952.02.21	괴산 괴산 동부 441	산업경제위원장(후)
	韓 賢 泰 (한나라)	1958.09.25	증평 증평 삼일A108-104	기획행정위원장(전)
음 성 군	金 昭 政 (한나라)	1943.06.29	음성 음성 읍내 478-1	
	柳 周 烈 (한나라)	1952.01.25	감곡 주천 380	기획행정위원장(후)
단 양 군	李 光 鍾 (한나라)	1944.02.26	단양 단양 상진 536	댐관련특위위원장
	李 完 永 (무소속)	1953.05.13	매포 평동3 272-14	2001.7.27. 자격상실
비례대표	朴 在 秀	1955.05.12	청주 탑동 308-1	2000.7.13. 사퇴
	吳 長 世	1955.05.12	분평 우성A 202-505	2002.2.21. 자격상실
	朴 鶴 來	1923.03.11	석교 43-10	윤리특위위원장
	任 鳳 彬	1940.02.21	충주 문화 럭키A 103-705	2000.7.25. 승계

7. 第 7 代 : 27名(2002. 7. 1.~2006. 6. 30.현재)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吳長世 (한나라)	1955.05.12	청주 율량동 삼성A 105-207	교육사회위원장(전) 부의장(후)
	李大遠 (한나라)	1956.02.05	금천동 270 장자마을 현대A 201-1402	2003.12.24 보궐 교육사회위원장(후)
	朴在國 (한나라)	1940.11.05	장성동 158-3	부의장(전)
	金正福 (한나라)	1959.12.22	봉명동 2145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특위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 위원장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 추진특위위원장(1기)
	黃太模 (한나라)	1940.06.03	탑동 현대A 107동 303호	2002.10. 3 별세
충주시	權寧觀 (한나라)	1947.01.09	충주 칠금동 381	제14·15대 의장 2006. 3.31 사퇴
	沈興燮 (한나라)	1962.04.14	연수동 주공A406-1101	예산결산특위위원장(2기) 관광건설위원장(후)
제천시	金文天 (한나라)	1954.09.07	제천 의림동 11-7	
	延哲雄 (한나라)	1942.07.12	화산동 109-15	예산결산특위위원장(3기)
청원군	韓昌東 (한나라)	1956.02.26	청원 남이면 가좌리 351	의회운영위원장(전)
	朴鍾甲 (한나라)	1959.03.30	내수읍 원통리 388	
보은군	金洪云 (한나라)	1938.07.04	보은 보은읍 누청리 345	의회운영위원장(후)
	鄭相赫 (한나라)	1941.12.25	화북면 쌍암리 354-3	댐관련대책특위위원장 2006. 4. 3 사퇴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옥 천 군	姜 求 星 (열린우리)	1946.07.07	옥천 옥천 금구리 5-39	예산결산특위위원장(1기)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 추진특위위원장(2기) 2006. 4.10사퇴
	庾 東 燦 (한나라)	1939.10.25	안남 도농 353	기획행정위원장(전) 부위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한나라)	1941.04.01	영동 영동 계산 688-28	부의장(전) 제16대 의장
	曺 永 在 (한나라)	1953.06.19	황간 신흥 28	산업경제위원장(전)
증 평 군	崔 在 玉 (한나라)	1954.10.04	증평 증평 장동 189	기획행정위원장(후)
진 천 군	張 柱 植 (한나라)	1957.11.12	진천 진천 읍내리 126	
	宋 殷 燮 (자민련)	1940.09.16	이월 송림리 459	윤리특위위원장
괴 산 군	金 煥 東 (무소속)	1950.03.10	괴산 괴산 동부 661-16	산업경제위원장(4기)
음 성 군	李 基 東 (한나라)	1959.07.28	음성 음성 읍내 805 한성진주A 103-1402	
	李 泌 鎔 (한나라)	1961.11.28	금왕 내송리 441	2003. 11. 5보궐
	柳 周 烈 (한나라)	1952.01.25	음성 감곡 추천리 380	제13대 의장 2003. 9. 30 퇴직
단 양 군	李 光 鍾 (한나라)	1944.02.26	단양 단양 상진 536	관광건설위원장(전)
	李 範 潤 (한나라)	1939.05.12	매포 평동4리 6-1	
비례대표	姜 祐 信	1946.01.30	청주 상당 수동 159-20	
	趙 季 淑	1941.01.22	홍덕 봉명1동 921	
	鄭 潤 淑	1956.09.23	홍덕 운천동 1119	

II 議會日誌

1. 2004年度(7. 1 ~ 12.31)

월 일	내 용	비 고
7. 2	○ 제229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7. 2~ 7. 5(4일간)	
7. 5	○ 신임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회의(13:30)	의장실
7. 12	○ 도의회 개원2주년 기념다과회	의원휴게실
7. 12	○ 제230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7.12~ 7.20(9일간)	
7. 23	○ 시군의회의장초청 간담회(11:00) · 내 용 : 당면 주요현안설명 및 공조방안 토의	의회 특위회의실
7. 29	○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4. 7.29~ 7.30 · 내 용 : 후반기 임원선출, 지방의회발전방안 토의	서울특별시 의회
8. 23	○ 도의회 자문위원 위촉(11:30)	의장실
8. 24	○ 의회사무처직원 직무 연찬 · 일 시 : 8.24~ 8.25	의회소회의실
8. 25	○ 2004 을지연습참관 및 격려(14:00)	충무시설
9. 7	○ 통일의 불 금강산 성화채화단 참가 · 기 간 : 9. 7~9. 9 · 내 용 : 제85회 전국체전 성화채화 및 봉송	금강산 삼선암

월 일	내 용	비 고
9. 13	○ 제231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9.13~9.20(8일간)	
9. 20	○ 제주도성화채화단 참가 · 기 간 : 9.20~9.21 · 내 용 : 성화인수 및 수송 등	한라산 마라도
10. 8	○ 제232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10.21~10.27(7일간)	
10.22	○ 지방분권및균형발전추진관련 의정워크숍(10:00) · 내 용 :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지방의 역할과 과제 등	
11. 1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긴급토론회(10:30) · 주 관 : 충북지역개발회,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 내 용 : 향후 대응방안 모색	예술의전당
11. 1	○ 충청권3개시 · 도의회의장간단회(11:30) · 주 관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내 용 : 행정수도관련 의견교환 등	대전광역시 의회의장실
11. 3	○ 중국 흑룡강성인대상무위대표단 도의회방문 · 일 시 : 11. 3~11. 6	
11. 6	○ 추계직원체육대회(09:00)	자연학습원
11. 8	○ 제233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11. 5~11.12(8일간)	

월 일	내 용	비 고
11.15	○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 · 일 시 : 2004.11.15~11.18 · 내 용 : 야마나시현 및 의회방문, 주요지역 시찰	야마나시현
11.15	○ 의장표창수상자 선진지 시찰 · 일 시 : 2004.11.15~11.17	제주도일원
11.17	○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4.11.17~11.18 · 내 용 : 지방의회 기능발전 방안 등	경기도의회
11.20	○ 제234회 정례회 · 회 기 : 11.20~12.20(31일간)	
12. 20	○ 2004 도의회 정례회 폐회연(12:00)	도청구내식당
12. 31	○ 2004년도 종무식(11:00) · 내 용 : 표창장 전수 및 의장표창 수여, 송년사, 의장인사말씀	의회소회의실
12. 31	○ 새해맞이 희망축제 제야의타종행사(23:00)	예술의전당

2. 2005年度(1. 1 ~ 12.31)

월 일	내 용	비 고
1. 3	○ 충혼탑 참배(09:00)	충혼탑
1. 3	○ 2005년도 시무식(09:30)	의회소회의실
1. 3	○ 신행정수도관철 및 오송분기역유치도민결의대회 · 일 시 : 2005. 1. 3(월) 11:40~12:00 · 주 최 : 오송유치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범충북도민연대 · 내 용 : 도민 결의대회 개최 배경보고, 결의문낭독 및 만세삼창	명암타워 대연회장
1. 4	○ 충청북도의회대표단 중국흑룡강성 공식방문 · 기 간 : 1. 4~1. 7 · 일 정 : 흑룡강성인문대표대회 · 인민정부공식 방문, 국제빙설제 개막식 참석 등	중국 흑룡강성
1. 10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5. 1.10(월) 11:00~13:00 · 주 관 : 신행정수도범충청권도민연대 · 내 용 : 경과보고, 계획발표, 결의문채택	충북도청 대회의실
1. 11	○ 의회홍보비디오 시사회 개최(10:00)	의장실
1. 11	○ 제235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1. 11~ 1. 14(4일간)	
1. 12	○ 전체의원연찬(12:00~16:30)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1. 14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재구성 · 재구성일자 : 2005. 1.14 · 운영기간 : 2005. 1. 14~제7대도의회 임기말	

월 일	내 용	비 고
2. 24	○ 제5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2.24~ 2.25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토의	인천광역시 의회
2. 26	○ 제236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 15~ 2. 25(11일간)	
3. 1	○ 3·1절 기념 행사 참석(11:00) · 참석대상 : 도의원, 기관단체 등	예술의전당
3. 11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14:00) · 내 용 : 제1차 임시회의, 현지시찰 등	대구 인터불고호텔
3. 15	○ 직원조회 개최(09:00)	의회소회의실
3. 14	○ 제237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3. 15~ 3. 25(10일간)	
3. 24	○ 제6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3.24~ 3.25 · 내 용 : 제출안건 및 현안사항 협의 등	광주광역시 의회
4. 4	○ 1사 1촌 자매결연식(11:30) · 참 석 : 80명 정도 (도의원, 모점리 주민, 사무처직원)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
4. 7	○ 의회사무처 여성공무원 연찬회 · 일 시 : 2005. 4. 7~ 4. 8 · 내 용 : 업무연찬을 통한 자기 혁신	KT 용평수련관

월 일	내 용	비 고
4. 7	○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 회 기 : 4. 7 ~ 4. 8 · 내 용 : 지방의회 관련사무범위, 위원회 회의진행 등	임해수련원
4. 16	○ 제238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4. 16 ~ 4. 22(7일간)	
5. 24	○ 제7차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5.24~ 5.25 · 내 용 : 의회발전방안 협의 등	울산 광역시의회
5. 27	○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14:00~20:00) · 내 용 : 금산인삼엑스포, 인삼유통센터견학	충남금산군 다락원
6. 8	○ 제239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6. 8 ~ 6.22(15일간) · 도정질문 : 정상혁, 이기동, 박재국, 심홍섭의원	
6. 17	○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14:00)	경기도의회
6. 23	○ 유공공무원 제주도 연수 · 일 시 : 2005. 6.23~ 6.25(2박3일) · 대 상 : 의장상 표창자6 부부동반, 안내1	제주도
6. 28	○ 충북의정연구회 도계지역 실태 현지조사 · 일 시 : 2005. 6.28~ 6.29 · 참 석 : 연구위원7명 및 관계직원 등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토의	보은,옥천, 음성,단양, 상주,대전, 이천,영월
6. 30	○ 제8차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6.30~ 7. 2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토의	강원도속초 캔싱턴호텔

월 일	내 용	비 고
7. 1	○ 직원조회 개최(09:00)	의회소회의실
7. 11	○ 제240회 정례회 운영 · 회 기 : 7.11 ~ 7.20(10일간)	
7. 20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확정 도민환영대회(14:00) · 참 석 : 국회의원, 도의원 등 200명 · 내 용 : 경과보고 및 축사	충북도청 대회의실
7. 21	○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14:00) · 내 용 : 임시회의, 현지시찰 등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7. 25	○ 충북의정연구회 2005상반기활동보고서발간 · 과제명 : 도계지역 실태조사 · 작성자 : 충북의정연구회(정상혁의원 등 7명)	
8. 1	○ 제241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8. 1 ~ 8. 1(1일간) · 내 용 :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11	○ 제242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8. 11 ~ 8. 11(1일간) · 내 용 : 청주시 ·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15	○ 제6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10:00)	예술의전당

월 일	내 용	비 고
8. 18	○ 제10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8.18~ 8.19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협의 및 토론	대전광역시 의회
8. 31	○ 전국시의회의장단회의(12:00) · 내 용 : 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관 등	라마다호텔 인천송도
9. 5	○ 제243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9. 5 ~ 9.14(10일간)	
9. 6	○ 전체의원연찬회(14:00) · 대 상 :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 내 용 : 개정공직법해설, 성인지적 관점과 정책형성	의회소회의실
9. 8	○ 지방자치법개정 공청회(15:00~17:00) · 내 용 : 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 인사권독립 등	국회의원회관 1층회의실
9. 22	○ 제11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8.18~ 8.19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협의 및 토론	경상남도의회
9. 22	○ 농촌일손돕기(10:30) · 주요작업 : 밤따리(4,500평)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
9 26	○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대표단 영접(17:30) ○ 의장주재 환영만찬(18:30)	의원휴게실 도림
9. 28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12:00) · 내 용 : 세계소리축제행사관람 등	전국코아 리베라호텔

월 일	내 용	비 고
10. 10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일 시 : 2005.10.14~10.15 · 내 용 : 전국체전개회식 참관, 임시회의 등	울산 롯데호텔
10. 15	○ 제86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10:00) · 대 상 : 충북선수단 본부 및 선수 · 내 용 : 현지방문 격려금 전달	울산 종합경기장
10. 19	○ 제244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10.19~11. 1(14일간)	
10. 20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람(14:00~16:00) · 참 석 :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40여명	예술의전당
10. 21	○ 도청직원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09:30) · 참 석 : 사무처 직원 · 내 용 : 응원상 수상	농업기술원 운동장
10. 22	○ 사무처직원 체육행사(09:00) · 참 석 : 사무처 직원 · 내 용 : 등산, 단합행사 등	충남 보령
10. 31	○ 제11차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10.31~11. 1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협의 및 토론	전라남도의회

월 일	내 용	비 고
10. 31	○ 의정모니터 및 도의원 합동연찬회 개최(10:00) · 참 석 : 모니터요원, 도의원, 관계공무원 · 내 용 : 도정 주요업무 현황보고, 초청강의 등	청원 초청스파텔
10. 15	○ 제86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10:00) · 대 상 : 충북선수단 본부 및 선수 · 내 용 : 현지방문 격려금 전달	울산 종합경기장
11.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 일 시 : 2005.11.10~11.11 · 내 용 : 2006년도 당초예산안심사기법 등	임해수련원
11. 21	○ 제245회 정례회 운영 · 회 기 : 11.21~12.23(33일간)	
12. 1	○ 의정연구회 심의위원회 회의(15:00) · 안 건 : 도계지역 실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실태 결과보고서 발간	농업기술원 운동장
12. 5	○ 전체의원 경찰청 방문(12:00) · 내 용 : 시설방문, 오찬 등	충북지방 경찰청
12. 8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12:00) · 일 시 : 2005.12. 8~12. 9 · 내 용 : 임시회의 및 현안사항 협의 등	경상남도의회
12. 23	○ 2005 도의회 정례회 폐회연(12:00)	도청구내식당
12. 30	○ 2005년도 종무식(11:00) · 내 용 : 표창장 전수 및 의장표창 수여, 송년사, 의장인사말씀	의회소회의실

3. 2006年度(1. 1 ~ 6.30)

월 일	내 용	비 고
1. 1	○ 새해맞이 희망축제 제야의타종행사(00:00)	예술의전당
1. 2	○ 충혼탑 참배(09:00)	충혼탑
1. 3	○ 사무처직원 신년인사(09:20) ○ 2006년도 시무식(09:30)	의 장 실 의회소회의실
1. 12	○ 행복건설청 개청 기념행사 도의원 참석	연기군 금남면
1. 19	○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6. 1.19~ 1.20 · 내 용 : 지방의회발전방안 협의 및 토론	서울시의회
1. 20	○ 제246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006. 1.20 ~ 1.26(7일간)	
1. 23	○ 오송특위결과보고서 발간	
2. 1	○ 직원조회 개최(09:00)	의회소회의실
2. 4	○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 · 일 시 : 2006. 2. 4~ 2. 8 · 내 용 : 외국 의회운영사례비교 및 토의	인도네시아
2. 13	○ 의정화보 책자 발간	

월 일	내 용	비 고
2. 21	○ 제247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006. 2.21 ~ 2.28(8일간)	
2. 21	○ 의회자료실 환경정비공사 · 기 간 : 2006. 2.21~ 2.24 · 내 용 : 바닥교체공사, 서가재배열, 구서가 폐기 및 수리	
2. 27	○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15:00) · 내 용 : 지방자치법상 의회 및 질서유지규정 신설 건의의 건 등	전라남도의회
3. 1	○ 3 · 1절 기념 행사 참석(11:00) · 참석대상 : 도의원, 기관단체 등	예술의전당
3. 7	○ 전국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16:00) · 주 관 : 충청북도의회 · 내 용 : 국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 확대 시행 철회 건의 외 1건	초청스파텔 세미나실
3. 22	○ 제248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006. 3.22 ~ 3.31(10일간)	
3. 22	○ 충북개발공사 개소식 참석(11:00)	
3. 27	○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14:00)	영상회의실
4. 6	○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16:00)	영상회의실

월 일	내 용	비 고
4. 3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16:00) ·내 용 : 지방의회 당면 현안사항 논의	충남금산군 금산읍다락원
4. 6	○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13:30)	영상회의실
4. 21	○ 제249회 임시회 운영 ·회 기 : 2006. 4.21 ~ 5. 1(11일간)	
4. 24	○ 제8대의회 슬로건 공모 ·기 간 : 4. 24~ 4.28	
4. 27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11:30) ·대 상 : 이범윤, 강우신의원	의장실
5. 1	○ 역대의장초청 의정간담회개최(12:00) ·장 소 : 경북집 ·대 상 : 제7대~제15대 도의회 의장	
5. 3	○ 직원업무연찬 ·참 석 : 의회사무처 전 직원 ·내 용 : 제8대 의회개원준비대책 특강 제7대의회 폐원준비 보고 및 토의	한화콘도
5. 9	○ 인도네시아 반텐주 대표단 의회 방문(17:20) ·방문자 : 반텐주 주지사, 교육감 등 10명 ·목 적 : 교육정보화 교류사업발전방안 모색 및 이해증진	의원휴게실
6. 2	○ 당선의원 등록안내문 발송 ·내 용 : 등록에 따른 안내문, 의원 등록신청서 등	

월 일	내 용	비 고
6. 8	○ 신규시책발굴 설명회(10:30) · 내 용 : 신규시책 발표, 토의 ,제안자격려품전달	의회소회의실
6. 9	○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해단식(14:00)	충북도청 대회의실
6. 9	○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16:00) · 내 용 : 임기중 활동상황에 대한 경과보고	대전광역시 의회
6. 15	○ 제8대 도의원 등록 · 기 간 : 2006. 6.15~ 6.19	
6. 12	○ 제250회 임시회 운영 · 회 기 : 2006. 6.12 ~ 6.19(8일간)	
6. 19	○ 제7대 도의회 폐회연(12:00) · 대 상 : 의원, 도관계관, 교육청관계관, 기자단 등 · 내 용 : 감사, 공로패 전달	충북도청 대회의실
6. 26	○ 제8대 도의회 슬로건 확정 · 선정작 :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손재규) · 내 용 : 응모자 19명 상품지급	사무처장실
6. 27	○ 시설환경정비(14:00) · 대 상 : 의회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일체등 · 내 용 : 청소상태, 비품, 집기류 정돈상태, 조명시설 등 점검	
6. 27	○ 전국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17:00) · 내 용 : 제7대 활동 총결산, 당면현안사항 논의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6. 28	○ 제8대 도의원 상견례(11:30) · 내 용 : 의원간 상견례 및 교육, 오찬	의원휴게실
6. 30	○ 제16대 장준호 의장 퇴임식(11:00) · 내 용 : 감사패전달, 퇴임사, 기념촬영, 오찬	의회소회의실

III. 演說文集

□ 제229회 임시회(2004. 7. 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일주일만에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오늘 다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 디앤무에 의한 피해지역의 피해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4회의 정례회와 23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안 101건 등 208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6회의 도정질문과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현장방문은 물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7대의회 후반기에서도 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뜻있는 회기입니다. 우리가 제7대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등록을 하고 원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제7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원님들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등 아주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우리 의원 27명 모두를 대표할 수 있고 의회발전과 충청북도의 발전은 물론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더위(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30회 정례회(2004. 7. 1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제7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한 후 처음 열리는 제230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의회발전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에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와 정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참 봉사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은 도민의 기대와 열망속에 출범한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회로 2년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 평소 수렴했던 민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느꼈던 생각들을 후반기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시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7대 의회는 전반기 동안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기

치아래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후반기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의 토대위에 생동감 넘치는 의회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정방향을 도민을 위한 수준 높은 자치의정 실현과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북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후반기 의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첫째,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와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시군순회 의정간담회, 의정모니터제의 적극 활용 등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조정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요도정 현안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를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는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유급제, 그리고 입법보좌관제 도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 국회 권오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7일 국회에 접수되어 아주 희망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특위, 오송분기역유치 특위, 지방분권 특위는 물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여성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등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정부의 공공기관 우리도 유치 등 현안사업 추

진은 물론, 청주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와 북부 등 지역의 균형발전에 앞장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 사실상 최종 후보지가 결정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후보지역은 물론 지역별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음성 진천 지역의 경우 후보지역의 들러리로 끼워 넣기를 한 지역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부정적 여론도 있습니다만 충남 연기, 공주지역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에 미치는 영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아쉬움을 뒤로 하며 더 이상의 논쟁은 접고 행정수도가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사실상 충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 도민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마저 충북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치 않으며 또 한번 우리도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대상 기관들 대부분이 우리 충북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배제시키는 것은 더욱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의 민심을 아우르고 국가균형발전 및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충북이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최대한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전략을 세워 전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

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시책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등에 대한 답변사항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정례회기를 시작으로 7대 의회 후반기가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31회 임시회(2004. 9. 13)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30회 정례회 이후, 근 2개월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 이였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민생 현장 등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느라 매우 바쁘신 하루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3도 의회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복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 위상을 한층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의원 연구모임인 "의정연구회"를 발족하여 금년도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3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을지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결정에 따른 우리 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온갖 노력, 그리고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향후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오창·오송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북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공공기관 유치, 호남고

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충북 배제철회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 모두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제공 등 도민을 위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1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 행사와 손님맞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보시어 누구나 다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는 한편, 고향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32회 임시회(2004. 10. 2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제231회 임시회 이후, 근 1개월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민생 현장 등을 찾아 도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14년 만에 개최된 제8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관, 또한 우리 고장의 명예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선수·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2천여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5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풍명월의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온정과 화합의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그 어느 해와 달리 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향한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우리 충북의 훈훈한 인심을 해외동포에게는 물론,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만 도민이 하나로 일치 단결된 힘과 결속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체전에서 보여준 150만 도민의 단합된 힘과 결집된 응집력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도의 당면 현안과제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천시청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발표된 지역혁신 발전 전략은 충북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이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차세대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가장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동안 심혈을 기우려 노력하여 주신 이원종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의 미래 발전전략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성숙한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타 시도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와 연대하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 주장하여 왔던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

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 관련 의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모니터 요원 및 의회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실시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보다 발전적이며, 꼭 필요한 분야가 감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도정과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없는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 등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에 추진되었던 주요시책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도 철저히 하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하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33회 임시회(2004. 11. 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색단풍으로 온 산하가 물들어 가고 늦가을의 정취가 더욱 짙어가는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 방문과 지역의 현안사업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광역의회 합동의원총회를 통한 결의문 채택과 각 지역의 결의대회 참석 그리고 강경한 대응책 모색 등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하여 적극 대처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난달 28일에는 충청권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폭발하여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어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의 삭발과 혈서 등을 통하여 500만 충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의 곳곳에서는 잇단 결의대회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별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범도민이 참여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데 전 도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개 시도 의회의장단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바 있으며, 11월 4일은 이른 새벽부터 충청권 3개시도 광역의회의장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 후 공동성명서를 발

표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곧 수도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과제이므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계획대로 재추진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연대로 강력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에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일행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방문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대표단 일행이 머무는 동안 새로운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 좋은 인상과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제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과 여론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전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주요시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동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월동대책을 수립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총 8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과 9일에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연초에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회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하고 소신 있게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얼마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34회 정례회(2004. 11. 20)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일주일 만에 금년도 마지막이 될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다짐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곧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활현장 등을 방문하면서 헌신적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알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분노와 희망을 함께 가져다 준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의 폭설피해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제17대 총선과 대통령 탄핵사건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과 특별법의 위헌결정, 그리고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국내 또는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슬기롭게 극복 대처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현실로써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 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생각나는 바 보다 신뢰받는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겨울철 화재예방 등 동절기 각종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대입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도민을 위해 쓰여질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한편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년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시고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신을 가지고 활기찬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대 명제하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인하시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건의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드려서 도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온 듯 영하의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31일간의 긴 일정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35회 임시회(2005. 1. 11)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생활현장 등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나누시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우리도와 자매결연지연인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 우리 충북의 홍보와 우호협력을 새롭게 다지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돌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안문제 해결 등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과 신년 설계를 성실히 준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3월의 대폭설과 대통령의 탄핵사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 등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로 하여금 도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충격과 분노가 있었는가 하면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도정 및 교육행정 전 분야에서 최우수 시상 등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다하여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동남아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해일

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촌의 대 재앙으로 실로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삼가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회복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함께 지역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지역에는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전국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바로 어제 충청권 국회의원, 3개시도의회 의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협의회장,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를 개최하여 충청권의 단결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충청권이 원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충남권에 위치한 만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반드시 오송역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을유년 새해에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집행부와 지역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의정활동방향을 신년사에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신뢰받는 의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화합 의정을 통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운영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실시하는 전체의원 연찬회는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다짐의 장과 바쁜 의정활동으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연찬회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겨울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임시회가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는 2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제236회 임시회(2005. 2. 1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임시회 이후 한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달여의 비회기중에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오송으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들의 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의정활동의 견문을 보다 더 넓히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각종현안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만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도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민들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현장을 찾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지 않는『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동안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허덕이던 내수경기가 점차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역량을 함께 모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21세기 우리 충북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의 염원인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대덕R&D특구의 오창·오송단지 포함과 공공기관 유치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는 알찬 한해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화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지역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등 서민생활 안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충청북도 의회는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의정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조례 등의 안건에 대하여도 한건, 한건마다 깊이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대안들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알찬 도정과 교육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37회 임시회(2005. 3. 1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활력을 되찾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민생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호남지역 시·도를 방문하여 오송분기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지역인사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년도 도정 현안사업들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과 민법의 개정 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각종 제도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지역의 백년대계는 암울할 수 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대상지역 선정 등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현안들의 해결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15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취해 나감으로써 우리지역은 자손 대대로 살기좋은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풍년농사를 꿈꾸며 영농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총 11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는 물론 금년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정과 교육시책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으로 도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 등 현안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38회 임시회(2005. 4. 1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4월을 맞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 1사 1촌 자매결연 행사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목행사와 산불예방 등 도정과 교육시책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로써 우리 모두는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추스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식목일에는 강원도에서 발생된 대형산불로 인하여 막대한 자연훼손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귀중한 문화유산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잃어버린 아픔은 우리에게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도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ZERO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는 바이며, 지난번의 강원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도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과 20여일 후면 우리도내에서 전국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이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 규모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도 5월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두개 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통하여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우리 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번 체전이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전 도민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해온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조만간 결정 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 있게 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오송분기역으로 결정되도록 막바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의 수출실적만은 계속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체의 이전 등 기업활동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입니다만,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39회 임시회(2005. 6. 8)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40여일 만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민생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 그리고 20여일간에 걸쳐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리도에서 연이어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시에는 시도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85회 전국체전에 이어 전국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마무리 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관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국규모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150만 도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에서 나온 결과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단합되고 결집된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막바지 결정단계에 와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등, 향후 우리도 발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150만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도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도의 미래 농업발전 전략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도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7대의회가 어느덧 3년을 넘기

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 아래 회기중은 물론, 비회기중에도 지역현안과 민생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결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게 자리잡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총 15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와 아울러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정과 교육시책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도정과 교육시책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50만 도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온 지역 현안사업들이 결정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40회 정례회(2005. 7. 1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제240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연구모임에서는 도계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지역구에서의 민생현안 해결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12년여간 우리 도민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우리 충북의 오송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책사업을 우리 도민의 뜻대로 관철시킨 것은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오랜기간 동안 끈기있게 노력해 주신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전 시군이 힘을 합쳐 일구어낸 150만 도민의 쾌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도민의 힘을 결집시켜 도민들의 뜻이 성사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오신 이 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특별위원회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송분기역을 유치한데 대한 성취감으로 안주할 때가 아니라 호남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송분기역이 청주공항과 신행정수도 관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

학단지와 어우러지도록 하는 역세권개발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다시 한번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만 하겠으며, 이러한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서 우리 충청북도가 자손대대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공공기관이전사업과 기업도시 등 우리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성취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기회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는 10일간의 일정으로서 금년도 계획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할 뿐 아니라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하절기 무더위 등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집행부의 지난해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살피는 등 오직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예방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간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41회 임시회(2005. 8. 1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10여일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농업경영인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와 함께 비회기중임에도 우리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도정 당면업무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몇일 간의 비회기중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함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 대안마련에 착수하였는가하면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 지원대상기업으로 우리 도에도 4개의 기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집중 지원을 받게 되는 등 불과 몇일 사이에도 각종 국책사업들이 우리도가 요청한대로 대부분 반영되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유치되도록150만 도민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집된 임시회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충북도정 100년 역사

상 최대의 호기를 맞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일들이 자칫 주민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조성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에 복된 충북, 밝은 미래로 가는 준비과정으로 생각하며 보다나은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온갖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주·청원통합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43회 임시회(2005. 9. 5)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 11일 임시회 이후 20여일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날씨지만 절기상으로 처서가 지난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회기중이었던 지난 8. 22일부터 1주일간은 국가 차원의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국가비상시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을지훈련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로 인한 국제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악화 등 국내·외적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 위기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우리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지방재정은 물론 우리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의원 연

찬회 개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전체의원 연찬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직무분야와 남녀 성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교양분야에 대한 연찬회를 계획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사업들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연초에 계획한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보다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향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매우 심한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44회 임시회(2005. 10. 19)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색단풍이 짙어가면서 가을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오늘 지난달 임시회 이후 한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민생현장을 살피는 한편, 특히, 전국체전 출전선수단을 현장 격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정기감사에 이어 실시된 국정감사 수감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냉전 극복을 위한 학문적 연구라는 명목하에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가뜩이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언행으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선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지진으로 인해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구호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조류독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조류독감 예보가 발령되어 내년 2월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은 사람에게까지도 감염될 우려가 있어 우리 모두 조류독감 방역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온갖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하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을 특별히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총 14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지향상과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정과 교육시책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으로 도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월동 대책을 수립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45회 정례회(2005. 11. 2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 일만에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245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도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열정을 갖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 주요 현안 사업장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우리 충북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도의회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도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뒤돌아보고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는 10회에 걸쳐 85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오면서 당면한 각종 의정과제와 크고 작은 제반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문제의 현장에 직접 달려가 도민의 욕구를 가슴으로 체감하였으며, 때로는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의정연구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참된 민의를 수렴하고 도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민생위주의 생활의정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150만 도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정례회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도민을 위해 쓰여 질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축적된 의정경험과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도민의 뜻과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꾸려질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많은 양이지만 꼼꼼히 살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하나하나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33일간의 긴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연말 도정 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날로 추워져 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정례회의 성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어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겨울철 서민생활보호와 화재예방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46회 임시회(2006. 1. 20)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15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현장 등을 찾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생현안문제 해결 등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과 신년 설계를 성실히 준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청주·청원 통합문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군간의 과열경쟁,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의 노사문제 등으로 공직자를 비롯한 전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확정,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도의 최대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결함으로써 우리 충북역사 100년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여망과 함께 정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에서는 경기회복의 가속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

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아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있을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로서의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차세대 첨단산업의 선점,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 대책 등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당면 현안사항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향한 힘찬 도약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통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제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도정과 교육시책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계획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방향에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벽두부터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신 일정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모두는 제7대 도의회를 차질없이 훌륭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쉼없이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한겨울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임시회가 우리도 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47회 임시회(2006. 2. 21)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입춘과 우수가 지나면서 봄기운을 가까이 느끼는 가운데 오늘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민생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충북 발전의 가장 역동적인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혁명을 이룩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훌륭한 일꾼을 뽑아, 충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축제의 장이 되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50만 도민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낸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기업도시 입지선정, 행정복합중심도시 합헌결정 등은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었던 충북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충북이 국가의 중심, 국토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수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서민경제의 부양을 위해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농촌에서는 풍년농사를 위해 영농준비를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150만 도민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지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는 물론, 금년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즈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알찬 도정과 교육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유 부의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끝으로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48회 임시회(2006. 3. 22)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지역구를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정부예산 확보준비, 개발예정지 투기행위 근절, 등의 주요도정과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당면한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국내 현실을 보면 5. 31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역발전 의제가 양산되고, 사회전반의 리더쉽 약화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물론 150만 도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만 이러한 갈등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는 기업·혁신도시 유치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힘써 나가야 하겠으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시책 확대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봄철 산불예방과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기는 열흘간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

는 물론 금년도 계획된 도정업무와 교육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3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49회 임시회(2006. 4. 21)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비가 온 대지를 흠뻑 적시면서 푸르름을 더해가는 희망찬 계절에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출발했던 제7대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누비고 주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매우 보람 있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훌륭히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이 지방선거 준비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 동안 지역구민들께서 의원님들께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집행부에서도 식목행사와 봄철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의 수감, 5·31 지방선거의 공명한 관리 등 주요도정의 추진은 물론, 제35회 충북 소년체육대회 준비와 「힘차게 비상하는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자, 도정의 당면한 현안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150만 도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 낸 수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조기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국책사업의 추진, 혁신·기업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은 충북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하면서도 절실한 사업으로, 이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이 국가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 문제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민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충북도민들의 여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150만 도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열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열 다섯 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할 안건의 양과 여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봄의 기운과 함께 활력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50회 임시회(2006. 6. 12)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7대 의회를 끝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4년전 우리 도의회는『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제7대 의회 임기를 시작한 이래 도민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토대 마련, IT, BT 등 첨단산업 육성,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 선정,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기업·혁신도시의 유치 등 지역현안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도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기관과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진력해 왔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살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주민간에 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화합에 적극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도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기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뜻 깊은 회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각종 안건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꼼꼼이 확인하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비롯하여, 기업·혁신도시 건설의 빈틈없는 추진과 신임 도지사에 대한 사무 인수인계, 학교폭력 방지 및 교권회복 등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50만 도민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Ⅳ. 議政統計 및 資料

1. 會期運營

□ 총 괄

2004. 7. 1. ~ 2006. 6. 30.

회 수 별	회 기	일수	회 의 운 영 (회)			
			계	본회의	상임위	특 위
총 계	22회	231		54	187	23
소계(2004년)	6회	66		15	58	3
제234회 정례회	11.20-12.20	31		3	21	2
제233회 임시회	11. 5-11.12	8		4	3	
제232회 임시회	10.21-10.27	7		2	5	
제231회 임시회	9.13-9.20	8		2	11	1
제230회 정례회	7.12- 7.19	8		2	14	
제229회 임시회	7. 2- 7. 5	4		2	4	
소계(2005년)	11회	121		27	95	15
제245회 정례회	11.21-12.23	33		3	28	6
제244회 임시회	10.19-11. 4	17		4	9	1
제243회 임시회	9. 5- 9.14	10		2	5	
제242회 임시회	8.11- 8.11	1		1	1	
제241회 임시회	8. 1- 8. 1	1		1	2	
제240회 정례회	7.11- 7.20	10		2	13	4
제239회 임시회	6. 8- 6.22	15		4	11	2
제238회 임시회	4.19- 4.26	8		2	5	
제237회 임시회	3.15- 3.25	11		4	3	
제236회 임시회	2.15- 2.25	11		2	15	
제235회 임시회	1.11- 1.14	4		2	3	2
소계(2006년)	5회	44		12	34	5
제250회 임시회	6.12- 6.19	8		2	9	1
제249회 임시회	4.21- 5. 1	11		2	6	1
제248회 임시회	3.22- 3.31	10		4	4	
제247회 임시회	2.21- 2.28	8		2	4	2
제246회 임시회	1.20- 1.26	7		2	11	1

2. 議案處理現況

(2004. 7. 1 ~ 2006. 6. 30)

구 분			계	조 례 안				예산 · 결산안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규칙	기타
				소계	의원 발의	도지사 제 출	교육감 제 출	소계	도지사 제 출	교육감 제 축				
접 수		계	219	134	30	80	24	17	8	9	20	12	1	35
		2004	70	48	8	33	7	4	2	2	-	5	1	12
		2005	102	52	16	26	10	9	4	5	17	6		18
		2006	47	34	6	21	7	4	2	2	3	1		5
처 리	원안 가결	소계	145	81	24	45	12	1	-	1	15	12	1	34
		2004	46	28	6	18	4	-	-	-	-	5	1	12
		2005	69	32	13	15	4	1		1	12	6		17
		2006	30	21	5	12	4				3	1		5
	수정 가결	소계	65	48	3	35	10	14	8	6	2	-	-	1
		2004	22	18	-	15	3	4	2	2	-	-	-	-
		2005	28	17	2	11	4	8	5	3	2			1
		2006	15	13	1	9	3	2	1	1				
	부결	소계	1	-	-	-	-	-	--	-	1	-	-	-
		2004	-	-	-	-	-	-	-	-	-	-	-	-
		2005	1	-	-	-	-	-	-	-	1	-	-	-
		2006	-	-	-	-	-	-	-	-	-	-	-	-
	기타	소계	8	4	4	-	-	2	1	1	1	-	-	1
		2004	2	2	2	-	-	-	-	-	-	-	-	-
		2005	4	2	2	-	-	-	-	-	1	-	-	1
		2006	2	-	-	-	-	2	1	1	-	-	-	-

3. 道政質問

□ 총 괄

년도별	회 기	질 문 의원수	질 문 건 수			비 고
			계	충청북도	교육청	
합 계		45	255	189	66	
2006년	소 계	4	17	14	3	
	제248회	4	17	14	3	
2005년	소 계	12	68	45	23	
	제244회	4	24	13	11	
	제239회	4	17	12	5	
	제237회	4	27	20	7	
2004년	소 계	4	24	18	6	
	제233회	4	24	18	6	

□ 분야별

년도별	회 기	계	내무	복지 환경	농정	경제	문화 관광	건설 교통	민방 소방	교육 행정
합 계		109	21	9	7	14	11	13	2	32
2006년	소 계	17	4	1	1	3	2	3		3
	제248회	17	4	1	1	3	2	3		3
2005년	소계	68	15	5	5	6	5	8	1	23
	제244회	24	4	3	2	2	1	1	-	11
	제239회	17	5			3	2	2		5
	제237회	27	6	2	3	1	2	5	1	7
2004년	소계	24	2	3	1	5	4	2	1	6
	제233회	24	2	3	1	5	4	2	1	6

4. 行政事務監査 指摘現況

□ 2004년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97 건	90 건	107 건	
의회운영위원회	3	1	2	
기획행정위원회	45	40	5	
교육사회위원회	75	22	53	
산업경제위원회	46	18	28	
관광건설위원회	28	9	19	

□ 2005년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94 건	125 건	69 건	
의회운영위원회	2	1	1	
기획행정위원회	51	44	7	
교육사회위원회	75	53	22	
산업경제위원회	39	13	26	
관광건설위원회	27	14	13	

5. 議員硏鑽活動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2005. 1.12 (목)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ㅇ생활속에 동의보감 ㅇ선거법에 대한 이해	ㅇ신재용 박사 ㅇ정연운(도선관위)
2005. 9. 6 (목)	의 회 소회의실	ㅇ개정 공직선거법 해설 및 질의응답 ㅇ성인지적 관점과 정책형성	ㅇ김승현(도 선관위) ㅇ이상화 교수

V. 議事堂 施設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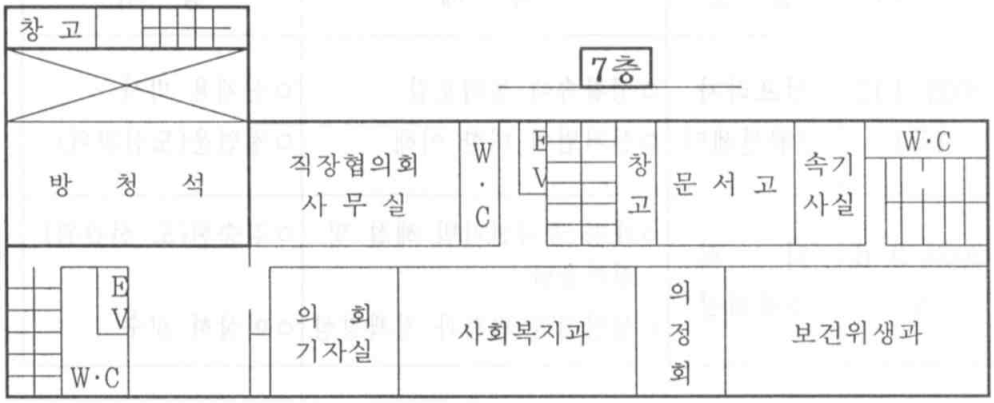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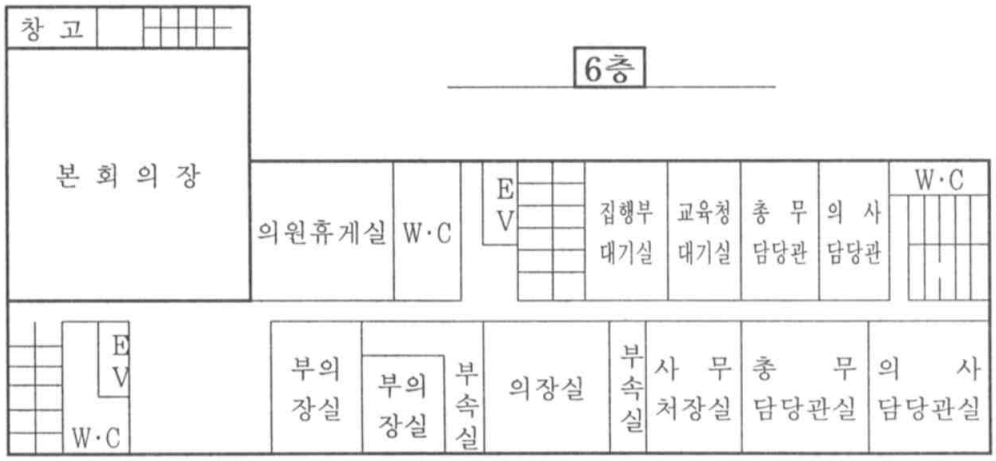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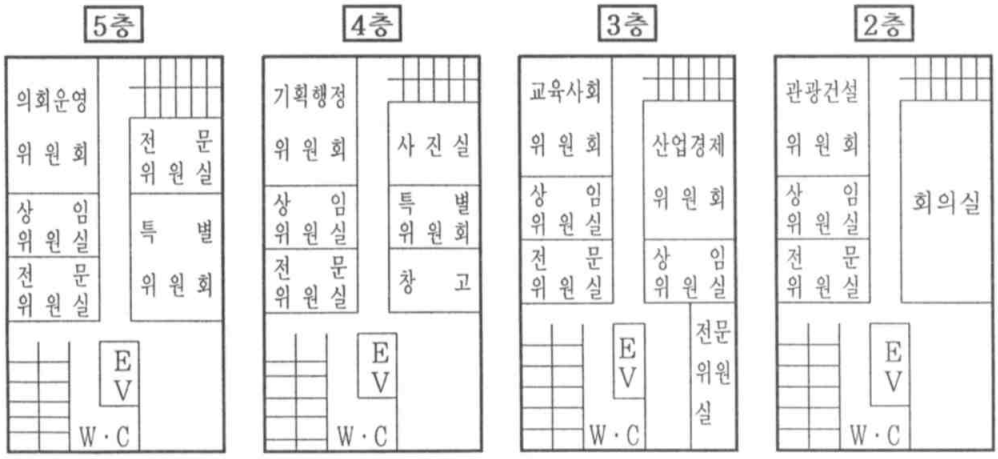

※ 도의회 자료실은 동관 1층

議政白書(제7대 후반기)

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충청북도의회
편 집 : 총무담당관실
043-220-5111
인 쇄 : 선광기획
☎ 043-254-8095

< 비매품>